생명의 땅 전남
Full of Life, Jeonnam

2016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시행지침

전라남도
JeollaNamdo

목 차

Ⅰ. 2016 친환경농업 추진방향 ····· 1

Ⅱ. 친환경농업 분야 ····· 5

1.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7

2. 2016년도 추진계획 ····· 8

3. 기관별 업무분장 ····· 9

4.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10

1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 10

2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 14

3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 18

4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32

5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 39

6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 45

7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 59

8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 63

9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 70

10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 75

1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80

12 유기질비료 지원 ····· 93

13 토양개량제 지원 ····· 125

14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150

15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지구조성) 사업 ····· 168

16 친환경 농자재 지원 ····· 198

5. 2016년도 사업별 달라진 제도 ····· 213

목 차

Ⅲ. 식량작물 분야 ····· 215

1.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217

2. 2016년도 추진계획 ····· 218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219

[1]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식량작물분야) ····· 219

[2] 맥류 건조 · 저장시설 지원 ····· 228

[3] 국산밀 생산장려금 지원 ····· 233

[4]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237

[5] 밭농업 직접지불제 ····· 250

[6]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262

[7]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276

[8]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 286

[9]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 299

[10]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 315

[11]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 317

[12]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322

[13] 농기계 임대사업 ····· 327

[14] 영농안전장비 지원 ····· 342

4. 2016년도 사업별 달라진 제도 ····· 345

목 차

Ⅳ. 원예 · 특작 분야 ····· 347

1.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349

2. 2016년도 추진계획 ····· 350

1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 351

2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 400

– 시설원예 현대화 ····· 400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411

3 첨단온실 사업 ····· 433

4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 463

5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 466

6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 489

7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 498

8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 508

9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 539

10 과실 브랜드 육성지원 ····· 569

11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 607

12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 ····· 619

13 양잠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 629

14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639

15 특용작물(버섯, 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647

16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우수 종묘 중식보급) ····· 656

Ⅴ. 시군별 사업내역 ····· 667

I

2016
친환경농업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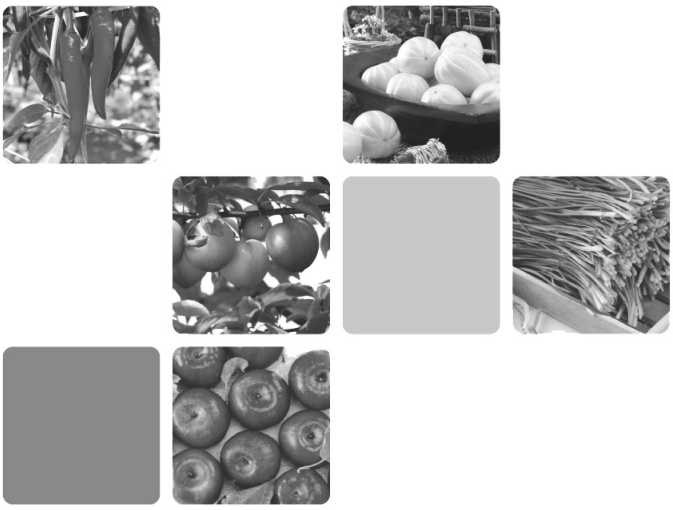

Ⅰ. 2016 친환경농업 추진방향

중점방향 및 목표

○ 유기농업 확산을 통한 생명의 땅 전남 실현
○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비용 농법 확대 보급
○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경영안정 소득 보전
○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육성 및 생산 기반시설 현대화

시책 추진 방향

1 생명의 땅 전남 실현을 위한 유기농 확산

–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2차년도 추진 –

○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로 농업경쟁력 강화
○ 저탄소 자원순환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2 저비용 유기농 실천 및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

○ 유기농 위주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조직화·규모화
○ 미생물, 무제초제 농법 확대 비용절감 시스템 구축

3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및 안정영농 실현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 공동 활용 농기계 및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4 원예·특용작물 육성 생산기반 구축

○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규모화, 에너지 절감시설 확충
○ 주산지 특화품목 원예브랜드 육성을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Ⅱ

친환경농업 분야

Ⅱ. 친환경농업 분야

1 2015년도 주요 추진실적

❑ **친환경농업의 내실있는 육성정책을 통해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1위 차지**

- 인증면적 : '14) 5,250ha → '15) 5,380ha(전년대비 130ha 증가)

1) 유기농 실천 등 교육·홍보 내실화

○ 친환경농업 확산 교육 및 농업인 의식 교육 등 : 41천명, 1억원

○ 친환경농산물 전시 홍보관 운영 : 32개부스, 1억원

2)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살리기 운동 대대적 전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8,616㏊, 27억원

○ 토양개량제 공급 : 159천톤, 221억원

○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 529천톤, 290억원

○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 100천ha, 120억원

3) 규모화·집단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4개소, 108억원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8개소, 84억원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장려금 지원 : 52천㏊, 406억원

4)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안정 지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16천㏊, 105억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18천건, 117억원

○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 1천건, 2.7억원

2 2016년도 추진계획

가. 추진방향

○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 2차년도 유기농 위주 친환경농업 추진

- 유기농·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구축을 위한 흙 살리기 및 친환경농법 교육·지도

○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및 살기 좋은 농촌 모델 조성

- 자원 순환형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규모화 단지 조성 및 농업환경 개선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안정 지원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유기농·무농약 직접 지불,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지원
- 유기농 종합보험, 부정인증·유통신고센터, 민간중심 자율 명예감시원 운영

○ 보조사업 취득재산은 지자체(시·군) 관리 철저 및 공모사업 시군 직접집행

- 보조사업 취득재산 시설물 중 관리대상인 시설물의 관리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도지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를 설정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
- 공모사업 중 가능한 경우 시장, 군수가 직접 발주, 입찰, 집행 등 공정관리 추진

나. 주요사업 추진계획

❑ 기반구축 및 홍보

○ 유기농 종합보험(유기농실천) : 2,000건, 3.8억원

○ 토양개량제 보조 : 159천톤, 221억원

○ 유기질비료 지원 : 529천톤, 290억원

❑ 재배 및 생산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 10개소, 53억원

○ 친환경농업단지(친환경농업 장려금) 조성 : 43천㏊, 371억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18천건, 117억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16천㏊, 100억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11개소, 17억원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 2천건, 6억원

○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 : 100천ha, 120억원

○ 친환경기능성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 4개소, 20억원

○ 유기농업 자재 지원 : 8,920ha, 27억원

○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 3개소, 12억원

○ 유기농 직접지불제 : 20천ha, 63억원

3 기관별 업무분장

기 관 별		분 장 업 무
행 정	도	· 계획수립·평가, 행·재정적 지원, 계획의 집행상황 점검
	시·군	· 계획의 집행 및 실천, 공무원 교육 및 홍보·계도
지 도	도	· 농법 및 농자재 개발·검증·보급, 농업인 교육·홍보·계도
	시·군	· 영농지도 및 기술지원, 현장 애로기술 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및 민간인증기관 지도감독 · 농산물 농약안전성검사 지원
농 협		· 농자재 생산·공급,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수매·가공·판촉

4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1. 목 적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유기농가의 자부담분 지원이라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행농업 또는 무농약 인증 농가가 유기농으로 상향인증 받도록 유도

○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와 유기농업 정착 유도 및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2. 보험의 명칭 : 유기농 종합보험

○ 유기농 인증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자부담분(20%)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100% 지원

3. 추진방침

○ 유기농 종합보험은 무농약 단계에 있는 농가들이 유기농으로 상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료'의 자부담 지원

○ 가입대상 및 품목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지침에 준하고, 재해피해 발생시 '재해보험 기준약관'을 적용,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4.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5.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30%)	시군비(70%)
유기농종합보험 지원	2,000건	383	115	268

6. 세부 운영방안

가. 사업개요

○ 가입품목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49종) 중 유기인증 품목

○ 지원대상 :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지

○ 사 업 비 : 383백만원(도비 115, 시군비 268)

○ 보상기준 :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기준에 따름

나. 사업추진 방법

○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신청

○ 가입신청 시 농가 자부담을 도와 시군에서 지원

- 사업비 지원은 사업완료 시점에 품목별로 차등 지원하고 정산하여야 함
- 최종 교부결정에 따른 부족액은 시군비로 충당

○ 사업정산은 '농작물재해보험' 정산 시 '유기농 종합보험'으로 지원한 내역 별도 정산

※ 각 시군은 지역·단위농협과 연계하여 업무효율성 제고토록 추진

7. 사업비 집행 및 보고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정산)에 만전

나. 유기농 종합보험 추진상황 보고서식

○ 가입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 * 자부담에 대한 지원내역 포함작성

품목	농가수	가입면적 (ha)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기타	

○ 지원결과 및 정산보고 : 익년도 1. 15일 까지

구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도비 집행 잔액
	사업량		예 산 액(원)				사업량		집 행 액(원)				
	농가	면적	계	도비	시군비	기타	농가	면적	계	도비	시군비	기타	
	호	ha					호	ha					

【별첨 1】

유기농 종합보험 가입 신청서

❑ 가입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단체명) : / 농가수 :

- 대표자 : (생년월일), 연락처 :

○ 주 소 :

❑ 운영상황

○ 보험가입 품목 :

○ 유기 인증면적 :

○ 유기 인증번호 :

○ 연간 예상생산량 : kg/10a

○ 계약 재배량 :

붙 임 1. 유기인증 증빙서류 1부.

2. 소속농가별 가입 명부(단체) 1부. 끝.

※ 인증 증빙서류는 농가별 인증면적이 명시되어야 함

위와 같이 유기농 종합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자 성 명 (인)

00시장·군수 귀하

농가별 가입 명부(시군 보관용)

연번	주 소	성 명	품목	인증 면적 (ha)	연 간 생산량 (톤)	유 기 인증번호 *개별인증인 경우 기재	전화번호	가입자 서 명 (날인)

【별첨 2】

○ 유기농종합보험 가입 신청서 명부

품목	시군	단체명 (대표자)	소 속 농가수	인증 면적	연 간 생산량	유 기 인증번호	신청 일자	전화 번호

2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1. 목 적

○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수도권·대도시 등 국내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제고

○ 도시 소비자에 대한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친환경 실천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신뢰성을 확보해 소비자 구매력 향상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등에 수도권 등 전시·홍보 행사 지원
- 전시·홍보 부스 운영 시 부스비용(부스 임차료, 물품 대여비 등)

○ 도내 생산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소비자 홍보로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3. 추진기간 : 연중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등)

4.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개소당 (백만원)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50%)	시군비(50%)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28부스	3	84	42	42

5.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자 시행 : 친환경농업 추진 농업인 단체 및 유통업체

○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친환경농업인연합회, 영농법인, 작목반 등)

○ 시군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업체

나.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가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 단체(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작목반, 영농법인, 영농회사 등), 시군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우수 업체

다. 지원 내용

○ 부스 1개소당 보조금 지원 : 3,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관 부스 임차료, 운송비

- 각종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회 부스 임차료·비품 대여비

- 전시·홍보관 운영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운반비

○ 전시·홍보 행사 시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

-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위한 프랑카드, 홍보 팜플렛 제작

*** 보조금은 전시·홍보 부스 운영 및 기타 행사추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전시·홍보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사업시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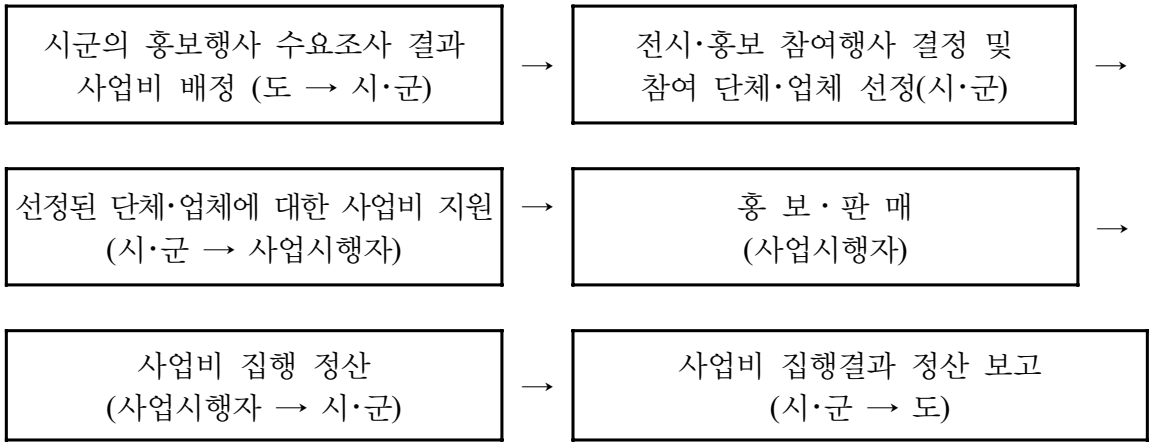

마. 세부 추진사항

○ 도에서는 시군의 전시·홍보 행사 참여 수요조사 실시 : 전년도 9월

- 시군에서는 다음연도 행사 참여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매년 제출

○ 수요조사 결과와 이전에 홍보 부스 운영 실적을 참고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 및 가내시 : 전년도 11월

○ 도에서 전시·홍보행사 안내 및 시군별 행사 참여부스 통보 : 매년 상반기

○ 행사 참여 대상 시군은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을 참고하여 참가 단체 또는 업체 선정

○ 행사 참가 단체 또는 업체에서는 시장·군수로부터 부스임차료 등 전시·홍보 부스 운영비를 지원받아 사업추진

○ 사업시행자는 행사가 끝나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사업비 집행결과를 정산 하여야 함

○ 전시·홍보는 판매위주의 행사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이 대도시 소비자 등에게 널리 홍보되어 구매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둠

○ 시군에서는 전시·홍보 부스 설치 운영 참가 단체 및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관리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추진

○ 전시·홍보부스 운영 시 대도시 소비처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소비처는 상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6.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시군에서 행사참여 추진 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집행

나. 사업비 정산

○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집행 정산하고 시장·군수는 사업비 정산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 제출

7. 행정 사항

○ 당해 년도 도, 시군 참가 전시·홍보행사 결정 통보 : 3월~4월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 4월~11월

○ 다음연도 사업 수요조사(별지 제1호 서식) : 9월 20일까지

○ 정산 보고(별제 제2호 서식) : 12월 31일까지(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 전시·홍보 운영실적 및 소비처 관리실적(별지 제3호 서식) : 12월 31일까지(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운영 수요조사

(단위 : 회, 개소)

시 군	계		수도권 행사		기타지역 행사		대상 품목
	참여횟수	참여부스	참여횟수	참여부스	참여횟수	참여부스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

(단위 : 천원)

사업 참가 단체	참여 행사명	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도 비 집 행 잔 액 (A-B)
		예 산 액			집 행 액			
		계	도비(A)	시군비	계	도비(B)	시군비	

[별지 제3호 서식]

❑ 전시·홍보 실적 및 소비처 관리

(단위 : 회, 천원)

전시·홍보관 운영				친환경농산물 판매실적		대량 소비처 발굴		
수도권		기타지역		수도권행사 판매액 (백만원)	기타지역 판매액 (백만원)	단체명	공급 품목	월판매액 (백만원)
운영 횟수	부스 (개소)	운영 횟수	부스 (개소)					

3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적기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확산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 근 거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한 보조 융자사업의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과정에서 위험요인 해소 등 안전장치 마련과 장기저리자금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을 위한 유통시설자금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적극적인 판로확보

○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개발과 생산시설자금의 지원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 대출취급기관이 신용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 후 회수까지 책임을 지는 체제로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3. 사업개요

가. 융자금액 : 70억원

나.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1년)

다.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시군지부)

라. 융자 신청자격

○ 도내 1년 이상 거주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

※ 법인 : 농업인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관련업체 및 단체 등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및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매입하는 유통업체

마. 융자신청 제외자

○ 융자신청 자격자 중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불부합자

(본인이 금융기관 확인 - 서식1)

- 신용불량, 연체, 담보부족 등

※ 대출담보 부족으로 인한 융자사업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 담보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바.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사. 지원자금

○ 시설자금 : 친환경농산물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사업(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포함) 등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에 직접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개발, 원료구입 및 수매자금,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등)

※ 운영자금은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체를 우선 지원

아. 대출이율 : 연리 1%(연체이율 10%)

자. 융자한도 (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 개 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업체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 도와 협약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 10억원 이상

차. 지원조건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단,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필요시 1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이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카. 융자금 지원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기성 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원

○ 준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완료 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 후 지원

4. 지원 대상자 선정

가.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융자 신청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는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서식 4, 4-1, 4-2)에 따라 사업내용과 융자신청액 등 타당성 검토

○ 현지조사는 반드시 시군 또는 읍면 담당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 합동으로 「현지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

※ 융자대상별로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친환경 관련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분야별 관련실과 협조를 받아 육성기금 추진 주무부서에서 총괄하여 사업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선정 평가표(서식4, 4-1, 4-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시군 자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또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에 보고(서식5)

- 지원대상자가 중도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담보능력, 사업추진의지 등을 재검토 확정

○ 도에서는 시군의 사업신청액과 친환경농업 육성 기여도(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등)를 감안 사업계획 융자금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배정

- 단,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도가 직접 기획한 사업의 경우 우선 배정
-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사항을 본인에게 알려 조기에 사업 착수토록 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발생 예방

(1) 우선지원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소비 및 판매활성화 사업
- 친환경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증대사업 등

(2) 우선지원 대상자

- 친환경농업육성(인증면적 및 매출규모) 기여도가 높은 자 우선
- 신규신청자는 기 지원자 보다 우선
- 기 지원자 중에서 선정할 경우 지원받은 연도가 오래되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자 우선

※ 융자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포기 시 차년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사업계획서 접수시 사업포기인정서 징구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개시 계획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융자사업을 포기한다는 포기인정서(서식 7)를 포함 제출
- 사업개시 계획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미착수 시는 사업포기 간주

5. 융자계획 공고(홍보) 및 신청접수

가. 공 고(홍보)

○ 장 소 : 시군, 읍면동, 농협 게시판

※ 홍보 : 반상회보, 마을방송, 유선방송,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활용

○ 내 용 : '16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계획

- 신청기간, 접수처, 신청자격, 지원한도액, 구비서류 등

나.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6. 1. 2. ~ 1. 31.(30일간)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자의 주민등록지가 관외일 경우 시·군에서 적의 판단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 1. 2. 3, 읍면동·시군 비치)

- 읍면 또는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일 등은 신청서 접수시 담당 직원이 확인, 가급적 신청서류 간소화

○ 접수시 유의사항 : 융자 신청자격 해당여부 확인 (주소 등)

※ 사업계획서 접수시 융자사업 포기인정서 포함 접수

※ 무자격자의 신청서 반려시 반드시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 예방

다. 융자신청결과 조치

○ 읍면동 : 신청자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총괄 집계표와 신청서를 **시군에 '16. 1. 31.한 제출**

○ 시·군 :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서 취합,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신용도 조회)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별첨 신청내역(서식 5)을 **'16. 2. 15.한 제출**

6. 융자사업 업무추진 체계

항 목	시 한	내 용
① 사업신청서 접수	1.2~1.31	**사업희망자(단체) → 읍면동·시군**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의 적정성 확인 ○ 융자신청 자격 해당여부 확인 ※ 무자격자 신청시 사유 설명 반려
② 현지조사 및 담보능력 등 확인	2.1~2.5	**시군단위 : 행정+지도+농협** ○ 조사표에 의한 현지실사 평가(서식4, 4-1, 4-2) ○ 신용도 및 담보능력 확인
③ 융자사업 신청상황 집계보고	2. 15	**시군 → 도** ○ 사업분야·자금종류별 등 집계보고(서식5) - 융자사업 우선순위(서식 5-1), 융자사업 신청서 사본(서식 1) 첨부 ※ ②항의 조사결과 부적격자 제외
④ 사업자별 융자금 한도액통보	3월초순	**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시군·농협** ○ 신청금액·친환경농업기여도 등 감안 융자한도액 통보
⑥ 자금배정신청	사업완료 15일전	**시군 → 도** ○ 농협시군지부에서 실행 가능한 융자금액을 확인 후 자금배정 신청(서식 6)
⑦ 자 금 배 정	시군신청후 (매월1회)	**도 → 기금관리부서·시군농협** ○ 시군신청에 의거 매월 1회 자금배정 조치
⑧ 융 자 실 행	사업완료후	**융자사업자 → 농협** ○ 사업완료후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및 실행

7. 행정사항(추진일정)

○ 융자지원계획 통보(도 → 시군) : **전년도 12월중**

○ 융자계획 공고(시군, 읍·면·동 및 농협 게시판) : **1. 31.**

- 농협은 게시판에 공고문 부착 및 홍보 협조 요청

○ 융자신청서 및 총괄 집계표 제출(읍면동 → 시군) : **2. 5.**

○ 융자신청서 접수결과 제출(시군 → 도) : **2. 15.**

○ 사업대상자 및 융자한도액 통보(도 →시군) : **3월 초순**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금 집행실적(시군→도) : 매분기말

【서식 1】

2016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table>
<tr><td rowspan="3">①신청자</td><td>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td><td colspan="2"></td></tr>
<tr><td>성 명
(대표자)</td><td colspan="2"></td><td>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친환경관련
종사기간</td><td colspan="2">년 월</td><td>신청
분야</td><td colspan="2">생산( ), 가공( ), 유통( ), 농자재( )</td></tr>
<tr><td>② 취급품목</td><td colspan="2"></td><td>연매출</td><td>백만원</td><td>전 년 도
매 출 액</td><td>백만원</td></tr>
<tr><td>③사업명</td><td colspan="6"></td></tr>
<tr><td>④기융자
연 도</td><td>년</td><td>기융자
자금명</td><td></td><td>기융자
기 관</td><td>국가( )도
( ) 시군
( )</td><td>기융자
금 액</td><td>백만원</td></tr>
<tr><td rowspan="2">⑤신 청
내 역</td><td>융자
금액</td><td colspan="2">백만원</td><td rowspan="2">자금
종류</td><td rowspan="2">시설( )
운영( )</td><td rowspan="2">상환
기간</td><td rowspan="2">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5년 상환( )
3년거치 7년 상환( )
10년거치 일시상환( )</td></tr>
<tr><td>자부담</td><td colspan="2">백만원</td></tr>
<tr><td>⑥첨 부
서 류</td><td colspan="3">사업계획서 1부</td><td colspan="2">⑦대출희망
금융기관</td><td>농협( ), 기타( )</td></tr>
<tr><td colspan="3">⑧신용불량, 연체등록</td><td colspan="3">여, 부 (서명)</td><td>확인일자</td><td></td></tr>
</table>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 ○ 시 장·군 수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는 유통업체만 기재하고, ③, ④번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도와 융자취금 및 대여약정 체결은 한 농협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록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 날인

【서식 2】 - 개인용

사 업 계 획 서

❑ 영농현황

성 명		신청분야	생산 · 가공 ·유통·수출
주 업 종		연간소득액	
농지규모	전 평, 답 평, 과수원 평, 하우스 평, 기타		
친환경농산물재배	o 재배 : ha(유기농산물 , 무농약 ,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품목별취급량		연간매출액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 사 업 비	만원(자기자본 , 육성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연간소득액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자 기 자 본	만원
			육 성 기 금	만원
			차 입 금	만원

※ 1.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취급량 및 연간매출액은 유통업체만 기재
2. 농지규모는 상세히 기재

【서식 3】 - 법인용

사 업 계 획 서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참여농가수	명
사 업 규 모		연간 매출액	만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사업비	만원(육성기금 , 자기자본 , 기타)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사업내용				
연간매출액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자기자본	만원
			육성기금	
			차 입 금	

【서식 4】

시군 검토의견서

신청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항 목	검 토 의 견	평 점
사업자의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취급실태		
지원대상 사업의 장 래 전 망		
사업자의 신용도		
도·시군 시책사업과 관 련 성		
종 합 의 견(약술)		

【서식 4-1】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개인 - 3천만원 미만, 단체 - 5천만원 미만)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평점
총 계 (700점)		
① 사업자의 추진의지 (50점)	o 강함 50 보통 30 미약 20	
②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취급규모(50점)	o 대 50 중 30 소 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전문성 (100점)	o 친환경농산물 취급(영농) 경력 · 5년이상 50 · 3년~5년미만 30 · 3년미만 20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친환경단체 가입 등 확인 o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 50	
④ 사업성(200점)	o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 상 100 · 중 70 · 하 35 o 사업자의 사업운영 능력 · 상 100 · 중 70 · 하 35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o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 · 상 150 · 중 100 · 하 50 o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 80%이상 100 · 50%이상 70 · 50%미만 50	
⑥ 도·시군 추진 시책사업 관련성(50점)	o 상 50 중 30 하 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년 월 일

oo시군 0000 과 직급 성명 (인)

【서식 4-2】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개인 - 3천만원이상, 단체 - 5천만원이상)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평점
총 계 (700점)		
① 사업자의 추진의지 (50점)	o 강함 50 보통 30 미약 20	
②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취급규모(50점)	o 대 50 중 30 소 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문성 (100점)	o 친환경농산물 취급(영농) 경력 · 5년이상 50 · 3년~5년미만 30 · 3년미만 20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친환경단체 가입 등 확인 o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 50	
④ 사업성(200점)	o 사업계획의 충실도 · 상 50 · 중 25 · 하 10 o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 상 50 · 중 25 · 하 10 o 부지확보등 사업추진 용이성 · 상 50 · 중 25 · 하 10 o 원료조달 및 생산·판매능력 · 상 50 · 중 25 · 하 10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 의견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평점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o 담보제공 능력 · 상 100 · 중 50 · 하 30 o 사업자금 조달능력 · 상 70 · 중 50 · 하 30 o 부채규모(신청접수일 현재) · 없음 40 · 1000만원미만 20 · 1000만원이상 10 o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 80%이상 40 · 50%이상 20 · 30%이상 10	
	농협시군지부 의견	
⑥ 도·시군 추진 시책사업 관련성(50점)	· 상 50 중 30 하 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년 월 일

조사평가자

oo시군 0000 과 직급 성명 (인)

【서식 5】

2016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순위	신 청 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자금종류	분야	비고 (신규, 기존)
	주 소	성 명			계	융자	자담			

【서식 6】

2016 ( )월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자금배정 신청

시군	융자사업자		융자금액 (천원)	자금종류	상환조건
	주소	성 명			

- 첨부 : 농협의 융자실행가능액 증빙서류 1부.

(사업자 담보능력 등 융자실행 가능액을 농협시군지부 확인후 제출)

【서식 7】 - 도 제출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포기인정서

❑ **사 업 명** :

❑ **사 업 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 업 비** : 000백만원(융자 000/ 자담 000)

❑ **사업개시일 :　　년　월　일 (사업기간 :　　)**

위 사업에 대하여 상기 명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대상자)　　성명　　(서명·날인)

○ ○ 시 장·군 수　귀하

4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촉한 명예감시원의 인증기준 준수, 현장지도 강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생명의 땅 전남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제3차 5개년 계획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20%)	시군비(70%)	자담(10%)
인증비용 지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18,000건 140명	11,700,000	2,340,000	8,190,000	1,170,000

※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농관원 위촉인원 증감에 따라 자율 조정 가능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6.1.~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연중

- 2016년도에 조성하는 친환경농업단지 및 개별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단지대표(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

  * 단, 관외 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친환경농업 실천 : ’16.1.~12월

○ 사업대상자 확정 : ’16. 12월 이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에 의거 확정 (인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17. 1월

다.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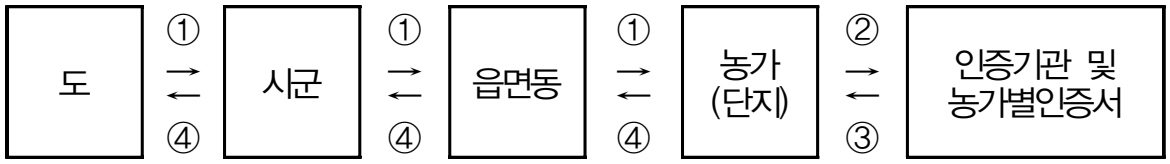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②, ③ 자료 확인(수질·토양·농약검사 등 분석여부 확인)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정산

5.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내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지 또는 농가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단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심사관리비, 토양검사,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비용 지원

○ 인증 연장신청 농가(단지) 분석비용, 영농일지 제작비 지원

- 시군 예산형편에 따라 인증에 따른 생산과정 관리, 측량비, 사후관리 비용,친환경 유기식품 인증비용 지원 가능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친환경농업단지 등 친환경농업 실천 필지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과정을 주기적으로 순회지도 및 감시토록 하고 활동비 지원

- 시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과 협의하여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 활동내용

- 재배작물의 생육상태, 제초제 사용여부, 농약·화학비료 및 사용금지 자재 사용여부, 냉해·우박·병해충 피해발생 여부 등 순회 감시활동 전개

- 주기적으로 도·시군단위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교육 및 행사에 우선 참여기회 제공

나. 지원방법

○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에 지원
- 신규 인증단지(농가), 인증면적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 단지(농가) 등에 지원
- 농가보다 단지단위 인증신청으로 비용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

○ 명예감시원 활동비 : 시군별 명예감시원의 활동상황에 따라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와 협조하여 활동사항 확인과정을 걸쳐 지원

다. 지원기준

1) 인증비용 지원

○ 지원비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시 필요한 실 소요비용

○ 지원기준 : 도비 20%, 시군비 70%, 자담 10%

*** 단,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인증획득을 못한 농가에 대해 시군예산으로 인증신청비 지원 가능**

○ 인증단계별 유효기간 준수 : 유기농 1년, 무농약 1년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과정 순회지도 및 감시활동비

○ 지원기준 : 도비 20%, 시군비 80%

- 활동일수 : 1인 월 3일(1인당 연간 30일 이내)
- 지원금액 : 1인 1일당 50천원

*** 활동일수 및 활동비 지원은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 책임하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인증비 보조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 명예감시원 활동비용은 활동상황, 활동일지 등을 확인하여 활동비용을 개별 통장에 입금

7. 행정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실적 : 2016. 9월말까지

○ 인증비용 지원결과 및 정산 보고 : 2017. 1. 15.까지

【별지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농가(조직)명</td><td colspan="2"></td><td>대표자</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인증
내역</td><td>인증구분</td><td colspan="2">유기, 무농약, 저농약</td><td>인증품목</td><td colspan="3">외 품목</td></tr>
<tr><td>인증면적</td><td colspan="2">㎡</td><td>인증유효기간</td><td colspan="3">~</td></tr>
<tr><td>인증번호</td><td colspan="2"></td><td>인증일자</td><td colspan="3"></td></tr>
<tr><td>인증농가수</td><td colspan="2"></td><td>인증기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인증수수료
납부
내역</td><td>계</td><td>신청비</td><td>심사원
출장비</td><td>심 사
관리비</td><td colspan="3">검사비</td></tr>
<tr><td>원</td><td></td><td></td><td></td><td>농약</td><td>토양</td><td>수질</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입금
계좌</td><td>은행명</td><td colspan="2"></td><td>예금주</td><td colspan="3"></td></tr>
</table>

구비서류 1. 인증비 납부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완납 증빙서류(계좌이체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1부

2. 인증비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세금계산서 1부(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에 한함)
4.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신청 연명부 1부(별지 제4호서식)
5. 필지별 내역 포함된 인증서(전·후) 사본 각 1부.

위와 같이 2016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자 주소 :

조직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2호서식】

인증비 납부확인서

□ **인증번호** :

□ **인증단계** :

□ **인증품목** :

□ **인증면적** : ㎡(**인증농가수** : 호)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납부액**

남부금액	납부자	납부일자	납부방법
금 원			*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 등으로 기재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한 인증수수료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3호 서식】

인증비 세부내역서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세부내역

구 분	비 용(원)	비 고
계		
○ 인증신청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 원 : 명
○ 심사관리비		
○ 검사비용		검사기관명 :
- 농약잔류		
- 토양		
- 수질(용수)		
- 기타 검사		

인증비 세부내역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4호 서식】

1.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실적 : 2016. 9월말

사업량 (건수)	지원실적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유기	무농약					
		ha			필지				

2. 인증비용 지원결과 및 정산 : 2017. 1. 15.한

– 사업비 지원결과

사업량 (건수)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유기	무농약	
		ha			필지

–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량(건수)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3.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결과 및 정산 : 2017. 1. 15.한

인원 (명)	활동실적 (일)		예산액(원)			집행액(원)		
	1인당	연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5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기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 정착 유도

○ 정부의 유기농 지속 직불금 지급단가가 기존 유기농 직불금의 지원액 보다 낮아 그 차액을 지원

○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므로 무농약 4회차부터 자체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2.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3.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20,000	6,287,000 (100%)	1,257,400 (20%)	5,029,600 (8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대상

○ 2016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유기농 6회차 이상 및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50% 지원

4. 지원형태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80%

○ 지급단가(ha당)

- 논 : 유기 300천원, 무농약 200천원
- 밭 : 유기 600천원, 무농약 500천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지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을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6년차부터 매년 지급
-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을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4년차부터 매년 지급

6.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인증서 사본을 관할 읍·면·동에 제출(단, 유기 지속 직불금은 정부의 유기지속 직불 신청서로 대체)

○ 신청기간 : ’16. 3. 1. ~ 3. 31.

○ 대상자 선정 : 유기는 정부의 유기지속직불 대상자와 동일하며, 무농약은 사업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는 논, 밭 등 품목별 지급단가를 적용 유기농 및 무농약 실천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 : ’16. 11월 ~ 12월

○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사업비 집행현황을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정산 보고 : ’17. 2월한

8. 사후관리

○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 ~12.31)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세부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인증현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기관	

③신청농지 현황

구분 (논·밭)	인증 종류	품 목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재배 면적 (㎡)	쌀소득 직불제 대상여부 (○, ×)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 ×)	과거 지급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④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 및 2016년도 전라남도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보조금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인증현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현황을 기재

③ 신청농지 현황

-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인증서 상 품목명 기재
- 쌀소득직불제 대상여부 : 당해연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대상 농지 여부를 기재
- 농업경영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를 기재

④ 입금계좌 : 보조금을 수령할 신청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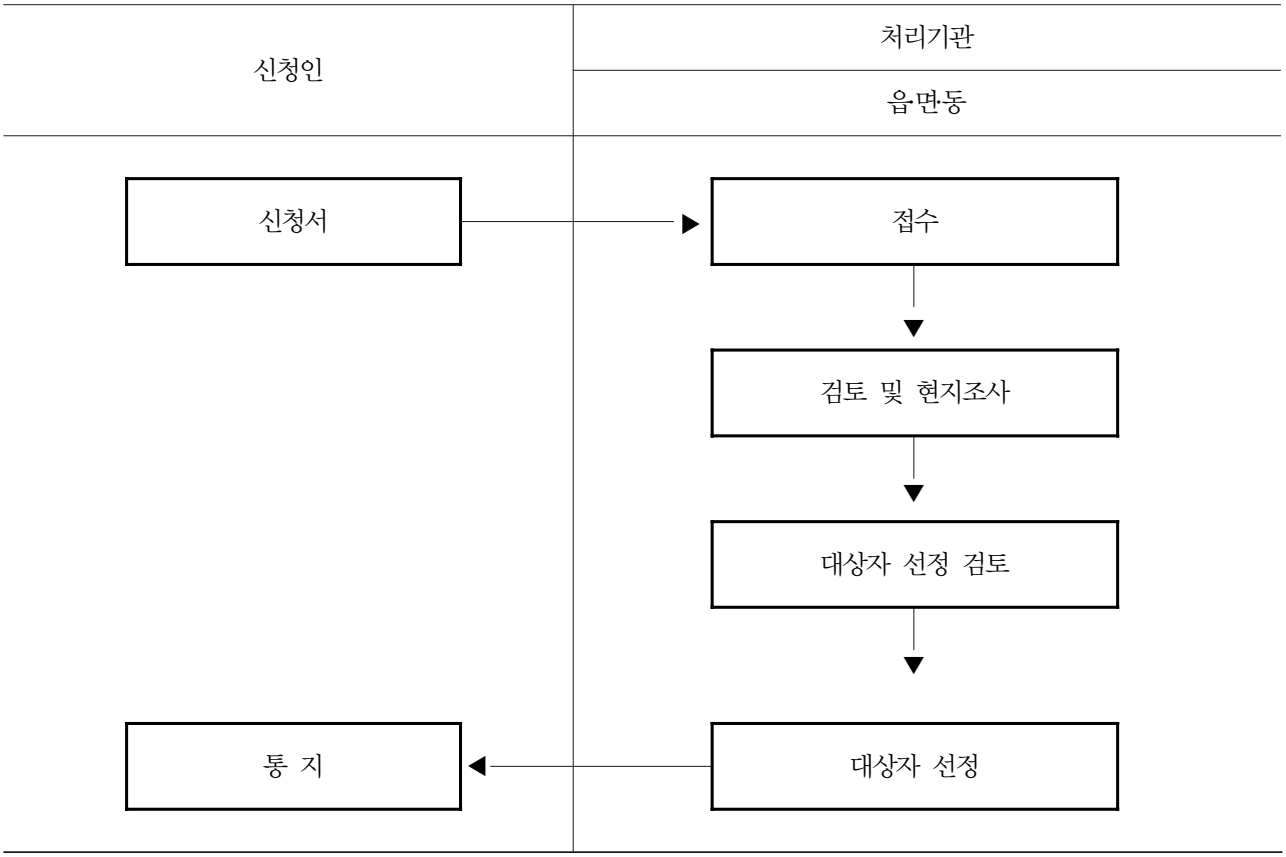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사업정산 보고

(단위 : 호, ha, 원)

구분	농가수	면적	사업비						
			예산액			집행액			도비 집행잔액
			계	도비	군비	계	도비	군비	
합 계									
유 기									
무농약									

6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 수계단위로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과수·채소 품목별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차등지원으로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인증품목 다양화 추진

○ 친환경농업 실천을 단지별로 조직화하여 안정적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소비수요 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생명의 땅 전남 실현을 위한 제3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5~'19년)』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지원 사업비 (천원)		
		계(100%)	도비(20%)	시군비(80%)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	43,141㏊	37,065,000	7,413,000	29,652,000

4. 사업추진

가. 사업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6. 1.~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선정 교육 및 사업주체와 협약체결 : 2016. 1.~3월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2016. 3.~12월

○ 사업비 정산 : 2017. 1.~2월

다.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벼,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임산물 등 인증가능 작물

○ 대상지역

- 마을 및 들녘단위 단지화 조성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 획득 지역
- 단지규모는 지역 여건을 감안 시군 자율 적용

*** 주변 여건 및 작물 특성에 따라 단지화가 어려울 경우 개별농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무농약, 유기농)을 받은 농가

○ 협약체결 및 단지조성

- 친환경농업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선도 1농가 이상을 단지대표(생산관리자)로 지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
- 단지대표는 소속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 등 제공

・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
・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기록관리
・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총괄 지도 관리

○ 지원제외 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제초제 사용 등으로 친환경 인증취소 농가

라.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무농약, 유기농)을 획득한 농가(친환경장려금 형태의 직불금 지원 가능)
- 보조금 지급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 친환경 인증 정보조회 사이트를 활용하여 인증 취소여부 재확인

※ 효율적인 단지운영 및 인증관리를 위해 생산단지별 협의 결정에 따라 농자재 공동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단지대표 등에게 일괄 지급 가능

○ 인증단계별 지원한도(㏊)

- 과수 : 유기농 1,500천원, 무농약전환기 1,3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 채소 : 유기농 1,300천원, 무농약전환기 1,100천원, 무농약 800천원
- 벼 등 : 유기농 1,200천원, 무농약전환기 1,000천원, 무농약 700천원

○ 사업비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유기농 및 무농약 실천에 따른 투입 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단가를 차등적용 지급 가능(시군 내부 지침 마련)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기질비료, 미생물제제, 해충포획기 등 농기자재 구입·제조 및 공동작업비, 단지대표(생산관리자) 활동비, 컨설팅, 교육(강사비 포함)·홍보비 등으로 집행
-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유용미생물 구입비, 토착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천일염, 설탕 등 구입비 지원

마. 사용가능 농자재

○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등 기준"에 적합한 자재(농촌진흥청 목록공시 유기농업자재)
- 공시 등 기관으로 부터 약효, 약해 검정을 받아 「품질인증」 제품으로 등록된 유기농업 자재 우선 구매 사용
- 친환경농자재의 검증체계 확립 및 공신력 있는 제품
  - 농가에서 사용한 결과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된 농기자재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실험 검증된 농기자재

※ 도내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자재에 대해 실증시범포 운영 등 제품의 특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시험 공표(농업기술원)

○ 주요 사용농자재

〈병해충 관리용〉

- 목초액, 키토산, 산화전위수, 활성수, 현미식초,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토착미생물 배양체, 유산균, 담배추출물 등

〈토양개량 및 생육촉진용〉

- 지렁이분변토, 목탄(왕겨탄), 피트모스, 맥반석, 수용성인산, 그린칼슘, 아미노산, 청초액비, 미네랄A,B,C,D, 과일효소, 바로돈, 천연식초 등
- 발효깻묵, 해조류추출물, 쌀겨 등 자가제조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농기자재〉

- 과원 및 논두렁 잡초방지용 생분해 논둑시트, 화염방사기 등
- 단지 해충방제를 위한 해충유인 포획기, 유아등, 천적 등
- 기타 연구기관 등에서 친환경농자재로 인정 또는 특허를 받은 포트묘이앙기용 포트, 미생물배양기, 이온수·산소수·미네랄활성수 제조기 등

※ 일반 관행농업에서 사용되는 상토, 육묘상자 등 농기자재는 사용 제외

○ 농자재 가격결정

- 제품별 원가산정(원재료비+제조비+유통마진)에 따른 제품의 적정가격을 제시받아 공개하고, 제품별로 제시된 소비자가격 이내에서 구매 사용
- 소비자 가격이 없는 농자재는 유사제품, 정부 물가정보, 비교견적 등으로 결정
- 농가에서 자가제조·생산 사용하는 검증된 친환경농자재는 동일 농법을 실천하는 단지의 농가별 자재가격 준용
- 농자재 대리점 및 농협에서 적정마진과 수수료를 받도록 지도권장

○ 농자재 공동구매시 준수사항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가급적 우선 사용
- 단지에서 공동구매시는 제품의 효능과 회사별 가격 등을 비교하여 공개입찰 등 여건을 감안 자율적 선정 구입
- 농자재는 친환경농업단지 또는 농가에서 자재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공급 수수료 등 절감

바. 저비용 친환경농법 실천 확대

○ 새끼우렁이농법 확대실시 및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유용미생물 공급, 토착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 등으로 생산비 절감

○ 벼 단지는 들녘별로 규모화하여 공동방제 작업 등 추진

- 친환경농업단지 운영실태 점검·진단으로 단지별 조직화 및 활성화 추진

○ 단지별 품종단일화 및 실천농법별 육묘에서 재배관리, 농자재 사용시기(기준) 등에 대한 사전 기술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체계 정립

- 친환경농업인단체, 전문가와 연계 선진지 견학, 자문 등을 통해 부실 최소화

사. 홍보 및 판로대책 추진

○ 단지별 지역농협,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RPC(미곡종합처리장), 대량소비처, 학교 급식업체 등과 계약재배로 고정 소비처 확보를 통한 안정적 판로 대책 마련

- 대도시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매장 등과 약정을 통한 고정납품

○ 개별농가 단위로 판매망을 확보할 농가는 생산제품의 상품가치를 높여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등 판매대책 적극 강구

- 그린투어리즘과 연계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기회 제공 등

○ 친환경농산물 품질보증 등 가격 차별화로 부가가치 제고

- 생산지, 생산자, 상품특성 등 생산이력추적관리제 등록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 생산, 수집, 선별, 포장, 출하 등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작업 추진

○ 무농약 이상 인증쌀 택배비 우선지원 및 각종 지원사업 인센티브 부여

5.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 : 2016. 3. 31**까지(보고서식)**

○ 단지조성(협약체결) 현황, 공동영농단 결성, 책임운영모델구축 등

나. 사업비 집행

○ 농가별 사업추진 여부를 수시점검 확인하고,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사업완료 즉시 인증단계별 사업비 집행

○ 친환경장려금 형태의 직불금 지급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확인 후 집행가능

다.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 : 2017. 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1. **사업계획서** : 2016. 3. 31까지 제출

○ 단지 현황

단지명	주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단지대표		참여 농가(호)	인증단계
				성 명	전 화		
계							

○ 개별농가 현황

농가명	주소	주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인증단계
계					

○ 공동영농단 결성

단지명	대표자	참여 농가(호)	면적 (ha)	보유농기계 수					
				계	트랙터	이앙기	방제기	콤바인	기타
계									

○ 책임운영모델 구축

단 지 명	운영주체	인증계획(ha)			참 여 농가수	협약내용
		계	유기	무농약		

※ 협약내용 : 벼 수매, 단가계약 사항 등을 기재

2.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 2017. 2. 28까지

○ 사업비 집행

(단위 : ㏊, 천원)

단지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지명	자재명	규격	단가	수량	지원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 자재명은 대표 농자재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작성

○ 책임운영모델 구축 운영실적

단지명	운영 주체	품목별	계획(톤)			실적(톤)			수매가격(원)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별표 1〉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서(안)

○ ○ 시장·군수

○ ○ 단지(작목반)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단지·작목반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Ⅰ. 약정기한 : 2016년 월 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Ⅱ. 약정내용

제1조 (구성원의 자격)

① “을”의 구성원은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로 한다.

② 단지대표는 본 단지(작목반)를 대표하며, 동 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신청, 이행 여부의 점검, 교육 등 마을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 (책임과 의무)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적인 영농실천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적 영농 실천

가.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나.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다.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라. 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② 사업추진과정에 반드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가급적 단지별(작목반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단지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을”의 각 구성원은 단지대표와 합심하여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⑤ 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할 시에는 당해년도 보조금 지원 중단 및 금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갑” 시 장 · 군 수 : 인

“을” 단지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Ⅲ. 협약대상농지 및 구성원 현황

연번	읍·면	리·동	성 명	연령	면적(㎡)	서명(인)
계						

* 본 표는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 단지별로 협약대상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조서 작성

〈별표 2〉

친환경농업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규약(안)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친환경농업단지의 영농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 작업이 효과적인 논갈이, 모내기, 논두렁 조성, 논두렁 풀베기, 농자재 살포, 수확 등 농작업 지원을 위하여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영농단 결성)

① 공동영농단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 및 단지 또는 작목반단위로 결성한다.

② 공동영농단은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는 젊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5~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결성한다.

제3조 (명칭 및 대표 선정)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공동영농단"이라고 칭한다.

② 공동영농단에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대표 1인과 총무 1인을 선임한다.

③ 단지대표는 공동영농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총무는 단지대표를 보좌하여 공동영농단을 성실하게 운영한다.

제4조 (운영)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농작업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②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농작업은 공동작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③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참여농가들이 공동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한다.

제5조 (공동작업비용 산정 및 청구)

① 공동영농단의 공동작업 비용은 인건비, 농기계 이용료, 작업량 등을 감안하고, 지역 내의 통상적인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공동작업 비용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대표 또는 개별농가 등 사업주체에게 청구한다.

제6조 (유권해석)

본 규약의 유권해석과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영농단이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영농단 구성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유 농기계	서명(인)	비고
계					

※ 본 규약은 준칙이므로 시군 실정 및 공동영농단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에 따른 필요 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활용

〈별표 3〉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서(안)

“친환경농업 ○○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농협,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등)를 “갑”이라 하고, 단지참여 농가의 대표(○○○)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분야) 친환경농업 ○○단지를 시행함에 있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단지조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재배작물은 ○○으로 한다.
2. 사업대상 면적은 ○○㏊, 참여 농가수는 ○○명으로 한다.

   (개별 참여농가 내역 별첨)
3. 품종은 ○○이며, 실천농법은 ○○으로 한다.
4. 사업비는 ○○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으로 한다.

제2조 (세부계약사항)

① 소요농자재 공급

1.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농자재는 ○○ 등 ○종류이며, 소요량은 ○○으로 한다.
2. 소요농자재 공급은 “갑”책임하에 “을”의 협조를 받아 영농기 이전 적기에 확보·공급해야 하며, “을”은 검수할 책임이 있다.

② 영농기술지도

1. “갑”은 “을”과 협력하여 단지 참여농가가 파종할 종자선택, 종자확보, 파종시기, 파종면적, 파종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공동작업 등 단계별 영농의 총괄관리와 브랜드 등 상품화를 유도한다.
3. “을”은 “갑”의 지도 및 협력하에 단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이행사항을 책임 지도해야 한다.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

1. “갑”은 단지 참여농가가 영농기록을 주기적으로 기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인증신청 및 인증획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2. “을”은 “갑”의 지도하에 참여농가의 영농기록, 인증신청 및 획득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작성해야 한다.

3.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은 “을”이 한다.(참여농가 부담)

④ 판로확보

1. “갑”과 “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수매의 주체로서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을“은 ”갑“과 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성실영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당 ○톤 기준)

3. “갑”은 생산된 물량의 수매와 판로확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을”은 “갑”의 승낙없이 생산된 물량을 타인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갑”과 공동으로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수매(판매)가격은 ○월 ○일 기준 시중형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곡 40㎏당 무농약 ○○원, 유기농 ○○원으로 한다.

5. 수매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수확시기로부터 ○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수매규격 및 수매요령은 정부공공비축수매 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3조 (협의회 운영)

① “갑”과 “을”은 협의회를 만들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성격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측의 요청으로 시군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을”은 “갑”이 제2조 세부계약내용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출 등)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갑”과 “을”은 서로 협력하여 농가 자부담분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은 매년 12월 이내로 하며, 협약서 내용의 충족 여부를 감안하여 중간지급도 할 수 있다.

③ 농가 자부담과 보조금 지급은 “갑”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조 (유권해석)

① 이 협약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관례에 따른다.

②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속한 법원에서 관할·조정한다.

제6조 (기타)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갑”과 “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016년 월 일

“갑” 주 소 :

업체명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을” 주 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시군 입회공무원” 소 속 :

직 명 :

성 명 : ㊞

※ 본 협약서는 표준안이므로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의 의견에 의거 변경이 가능함.

7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1. 목 적

○ 무농약 이상 인증확대에 따른 안전성 검증체계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철저로 소비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생명의 땅 전남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제3차 5개년 계획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30%)	시군비(70%)
계		560,000	168,000	392,000
잔류농약검사지원 퇴비 품질검사	2,000건 210점	560,000	168,000	392,000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6. 1.~12월(1년간)

○ 사업추진 : 연중

- 각 시군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 상시 운영

*** 인증단지(농가)에 대하여 연중 부정기적으로 친환경 실천상황 점검강화**

- 명예감시원, 단지대표 등이 현장지도 점검
- 신고·의심된 필지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시료 채취하여 잔류농약 검사 실시
- 불량퇴비 유통 근절을 위한 시군 교차단속 및 수시단속 실시

○ 잔류농약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민간전문분석기관, 재)생물방제센터 등

*** 퇴비검사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비료 시험연구기관**

○ 사후관리

- 잔류농약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명된 필지 농산물 판촉 지원 등
- 부적격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퇴비는 비료관리법에 의거 조치

○ 추진상황 보고 : 9월, 12월 다음달 5일까지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17. 1월

다.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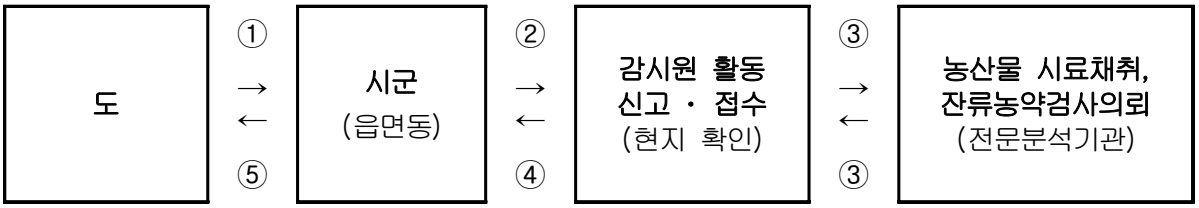

① 사업계획 수립 대내외 홍보　　② 사업추진(신고 접수, 현지확인)

③ 의심·신고 접수필지 농산물 시료채취 잔류농약 검사의뢰

④ 인증취소 통보 및 보조지원 중단, 사후관리, 추진상황 보고

⑤ 추진상황 보고, 사업비정산, 결과분석

라. 검사대상

○ 잔류농약 분석용 시료채취는 시·군 담당자, 민간인증기관 등이 합동으로 실시

○ 각 시군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단지 및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약사용 의심 필지 농산물

○ 명예감시원 등이 현장지도 과정에서 적발된 건 중 농가와 분쟁이 발생한 필지 농산물

○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 급식업체에 인증품을 납품하는 농가 및 품목을 사전 파악하여 생산단계 및 출하전 잔류농약 분석 실시 후 적격품 출하

○ 기타 도 및 시군에서 잔류농약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퇴비 검사는 도내 유통 및 공급되고 있는 제품 중 검사가 필요한 경우

마. 지원방법

○ 잔류농약검사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 지원
- 지원단가 : 250~280천원/건(도비 30%, 시군비 70%)

*** 잔류농약검사 증가 등 배정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시군 자체예산 확보(또는 농가부담) 추진**

○ 퇴비(비료)검사

- 사 업 량 : 시군별 연 10~15점
- 지원내용 : 비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 실 소요비용 지원
- 지원단가 : 200~300천원/점(도비 30%, 시군비 70%)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료 시험연구기관 등) 분석기관에 직접 자금 집행

- 잔류농약검사 결과 농약검출로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와 생산농산물 유통에 피해를 초래한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비용 지원배제 등 패널티 부여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 도에 보고

5. 행정사항

가. 추진상황 보고 : 9말, 12월말 실적 다음달 5일까지 보고

나.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17. 1. 31까지

다. 사후관리

○ 잔류농약 검사결과 농약검출 시에는 그 내역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처분 요청

○ 퇴비 검사 후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비료 관련법에 의거 조치

【보고서식】

1. 잔류농약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 : 2회(9월, 12월말)

- 잔류농약검사 실적

사업량 (건수)	검 사 실 적								검사기관명
	신고 (명예감시원 외)		적발 (명예감시원)		의심 (행정기관)		기 타 (해당농가)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 부적합 조치사항

위 반 자			위 반 상 황			조치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품목	위반내용	위반일자	

2. 퇴비(비료) 검사실적 및 조치사항 : 2회(9월, 12월말)

- 퇴비(비료)검사 실적

구분	사업량 (건수)	검사일자	검사실적			비 고
			계	적합	부적합	
합계						
교차단속검사						
수시검사						

- 부적합 조치사항

구분	위 반 자			위 반 상 황		조치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품목	위반내용	

3. 사업비 정산보고 : 2017. 1. 31까지

(단위 : 건수, 천원)

세부 사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잔류농약검사										
퇴비검사										

8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1. 목 적

○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전남 이미지 제고

○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라 무농약 이상 신규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벼농사 제초 비용 절감 등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에 기여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친환경농수산물 생산·유통·수출 지원)

○ 생명의 땅 전남 실현을 위한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5~'19년)」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10%)	시군비(80%)	자 담(10%)
새끼우렁이 공급	100천㏊	12,000,000	1,200,000	9,600,000	1,200,000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6. 1. ~ 12월(1년간)

다.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 100천㏊

○ 사 업 비 : 12,000백만원/도비 1,200(10%), 시군비 9,600(80%), 자담 1,200(10%)

○ 지원내용 : 새끼우렁이 구입비(㏊당 12㎏) 지원

○ 10a당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 공 급 량 : 1.2㎏(새끼우렁이 1,200마리 내외)

  · 새끼우렁이 공급량은 농업기술원에서 실증시험을 거쳐 제초효과가 가장 좋은 양이므로 적정밀도 유지를 위해 살포 마리수 준수

  ※ 새끼우렁이 : kg당 900～1,100마리(평균 1,000마리) 크기의 우렁이

- 지원단가 : 12,000원(새끼우렁이 ㎏당 10,000원 기준)

  · 지역 여건에 따라 새끼우렁이 대신 중패 이상 큰우렁이 공급시 지원단가를 새끼우렁이 단가로 적용 지원하고 초과액은 자부담

○ 벼 관행재배 포장 새끼우렁이 보급으로 무제초제농법 실천

- 친환경농업단지 기준을 적용 시군별로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
- 제초제 대비 새끼우렁이 비용절감 효과(50%) 등 저비용 홍보강화

라. 사업추진요령

1) 우량 새끼우렁이 안정적 공급

○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반영하여 전남우렁이생산자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가급적 책임운영모델 운영주체 또는 단지별로 직접계약 공동구입으로 비용 절감

- 계약시는 농가별로 공급시기를 명시하여 적기 공급 추진

○ 공급량은 10a당 1.2㎏ 기준으로 공급하되, 원거리 수송시 새끼우렁이 폐사와 잡초 방제효과 제고 등을 감안 도내 업체산 새끼우렁이 공급

- 공급업체간 과열경쟁 예방 및 기술지도 강화 등을 위해 시군여건에 맞는 사업추진

2) 새끼우렁이 공급 확인

○ 우렁이 공급업체에서 단지(농가)별로 새끼우렁이 공급 후 공급확인서를 발급 단지대표(농가) 등에게 제출

- 공급확인서 작성시 (사)전남우렁이생산자협의회로부터 도내산 여부 확인
- 단지대표는 새끼우렁이 검수 및 농가별 적기살포 지도

○ 공급업체에서 발급한 단지별 공급확인서에 의거 행정, 지도 등 읍면 담당공무원이 단지(농가)별로 공급상황 확인

- 시군별 실정에 맞게 새끼우렁이 현지 공급상황 점검·지도

3) **사업비 집행·정산**

○ 단지대표 또는 담당공무원의 공급확인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되, 영농초기에 공급되는 점을 감안 예산의 조기집행 등 탄력적 운용

○ 농가위임에 의거 단지대표, 농협, 우렁이생산자연합회, 공급업체 등에 새끼우렁이 대금 일괄지급 가능

5. 담당기관(단체)별 역할

가. 전라남도

○ 벼농사 저비용 새끼우렁이농법 확대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관계기관단체, 농업인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반영

○ 새끼우렁이농법 대대적 홍보 및 권역별 교육 추진(1~3월 중)

○ 새끼우렁이농법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교육 실시(농업기술원)

○ 무농약 이상 인증기반 확충과 제초효과 제고를 위한 관행 재배답 새끼우렁이 무제초제농업 지속 추진

나. 시·군

○ 2016년 새끼우렁이농법 실천에 따른 친환경농업단지 및 관내 우렁이 생산업체에 사전홍보 강화

○ 새끼우렁이는 반드시 도내업체 새끼우렁이를 입식하도록 지도

○ 새끼우렁이 공급 시 농가별 공급일자, 공급량, ㎏당 개체수, 공급단가 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공급계약 체결토록 지도

○ 단지대표 또는 담당공무원의 공급확인 절차이행 후 사업비 집행

- 영농초기에 공급되는 점과 재정 조기집행 등을 고려 친환경농산물인증 확인 절차와 관계없이 조기집행 가능

- 농가위임에 의거 단지대표, 우렁이생산자연합회, 공급업체 등에 지급

다. 우렁이 생산·공급업체

○ 새끼우렁이농법 확대보급에 사전 대비하여 새끼우렁이 확대생산 등 수급 안정대책 적극 강구

- (사)전남우렁이생산자연합회 회원 업체에 확대생산 대책 홍보

○ 생산업체에서 새끼우렁이 공급 시 적정밀도 유지를 위해 일정크기(kg당 900~1,100마리 기준)로 선별하여 출하

○ 단지(농가)대표와 공급일자, 공급량 및 공급단가 등에 대해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체 검증절차를 거쳐 우량품 공급

- 새끼우렁이 공급확인서를 발급(서식 별첨) 단지대표(농가)에 제출

○ 새끼우렁이 공급 과부족시 (사)전남우렁이생산자연합회 차원에서 적정 수급대책 마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차질 없이 공급

○ 새끼우렁이 도피 방지망을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

- 생태계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불식을 위해 공급업체에서 솔선 설치

○ 새끼우렁이 농법 실천요령 등 단지별로 현장교육 등 사후관리 추진

6. 사후관리(새끼우렁이 월동방지 대책 추진)

○ 겨울 영농교육 시 왕우렁이 제거 등 관리방법 집중교육

- 벼 수확 후 논을 잘 말리고, 간척지 주변 수초 등을 제거토록 지도
- 친환경단지별로 우렁이 입식 30일 이후 자체 수거 실시
- 주변 농수로에 오리를 투입하여 왕우렁이 개체수 감소

○ 시·군, 우렁이생산자협회, 농업기술원 공동으로 피해 방지대책 지도

- 물꼬 그물망 설치, 친환경 약제 살포, 오리 투입(90%이상 제거 가능) 등
- 간척지 우렁이 공급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최대한 공급 자제)

○ 농업기술원 및 센터에서 자체 월동 왕우렁이 피해방지 연구 실시

- 5~6월 유인제(사료) 투입 수거
- 약제 등을 이용한 방제효과 실험(파단 수화제 등)
- 왕우렁이 생태연구 및 월동방지 관찰포 또는 시범포 운영 등

7.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 : 2016. 3. 31까지(보고서식)

나. 추진실적 제출 : 2016. 7. 31까지(보고서식)

다.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 : 2017. 1. 31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1. 사업계획서

(단위 : ha, kg)

단 지 명	계획면적 (ha)	새끼우렁이 소요량(kg)	공급계획		
			업체명	업체 소재지	공급량(kg)
계					

※ 10a당 새끼우렁이 소요량 1.2kg 기준

2. 새끼우렁이 공급실적

① 농업인 교육·홍보실적

○ 교육실적 : 회, 명

- 일자별 :

○ 홍보실적(홍보매체별)

-

-

② 새끼우렁이 공급실적

(단위 : ha, kg)

단 지 명	공급면적 (ha)	새끼우렁이 소요량(kg)	공 급 내 역		
			업체명	업체 소재지	공급량(kg)
계					

③ 기타 특이사항

○

○

3. 사업비 정산 : 2017. 1. 31까지

○ 사업비 집행

(단위 : ㏊, 천원)

단지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지명	공급면적 (㏊)	공급량 (kg)	단가	지원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참 고】

농법별 제초비용 절감효과(10a)

구 분	새끼우렁이	큰우렁이	제초제
살포시기	써레질 직후	모내기 후 5일 이내	모내기 후 7~10일
살 포 량	1~1.5kg(**평균** 1.2kg) ※ kg당 900~1,100마리	3~5kg(**평균** 4kg) ※ kg당 250마리	제제별로 상이
소요비용 (구입비)	10,000~15,000원 (평균 12,000원)	15,000~25,000원 (평균 20,000원)	24,000원 (초·중·후기, 3회 살포)
제초비용 절감효과	○ **큰우렁이** 대비 8,000원(40%) 낮고 ○ **제초제** 대비 12,000원(50%) 절감가능	○ **제초제** 대비 4,000원(17%) 낮고 ○ 새끼우렁이 대비 8,000원(40%) 추가소요	○ 새끼우렁이 대비 2배이상 추가 소요 ○ 큰우렁이 대비 20% 추가 소요
비 고	○ **제초효과** 99% 이상 입증 ('09 농업기술원) ○ 큰우렁이 제초효과(95%) 보다 좋아 농가에서 호응	○ 양식기간이 50일 이상으로 길어 사료 투입량 증가 등 양식 비용 과다 소요 ○ **제초효과** 95%	○ 화학적 제초제에 내성이 강한 일명'수퍼잡초'방제 제초효과 낮음

「공급업체 보관용」

새끼우렁이 공급확인서

==========

(No :)

공급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성명 (연락처)
	양식장 소재지	
	생산지역 확인	(사)전남우렁이생산자협의회 확인
공급농가	주 소	(성명)
	공급가격(kg/원)	새끼우렁이 , 기타
	공 급 량	kg(새끼우렁이 , 기타)
	공급일자	2016. . .

---------- (절취선)

「단지(농가)제출용」

새끼우렁이 공급확인서

==========

(No :)

공급업체	업 체 명	대표 (인)
	대 표 자	성명 (연락처)
	양식장 소재지	
	생산지역 확인	(사)전남우렁이생산자협의회 확인
공급농가	주 소	(성명)
	공급가격(kg/원)	새끼우렁이 , 기타
	공 급 량	kg(새끼우렁이 , 기타)

위와 같이 제초용 새끼우렁이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귀하

9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인프라 구축

1. 목 적

○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선점 및 세계 시장 진출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우선 지원하여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쌀 위주의 생산에서 모든 농산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기능성 농산물 생산 유도

2.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총사업비	재 원 별		
		국비(지특)	시군비	자부담
4개소	2,000,000 (100%)	1,000,000 (50%)	200,000 (10%)	800,000 (40%)

※ 개소 당 사업비 : 500,000천원(국비 250,000, 시군비 50,000, 자부담 200,000)

4. 사업추진

가.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기간 : 2016. 1.~12월

다.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지원

- 생산시설 : 육묘장, 미생물 발효시설, 유기퇴비 생산시설 등
- 가공시설 : 세척기, 전문도정시설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선별·포장·예냉시설 등

※ 모든 지원시설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연관되어야 하며, 일반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 및 농기계는 지원 제외

라. 지원자격(기준)

○ 10ha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법인)로 사업부지 및 자부담을 확보하여야 함

<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방지
- 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및 별표10의 기준에 적합

마. 추진일정 및 체계

1)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지침 수립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 등

⇓

시 · 군 -- 적격자 추천(시·군당 1개소),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추진상황 확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농업법인체 등)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2)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사업대상자→시군)

3)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4)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도)

※ 사업적격자가 많지 않을 경우 전문가 평가를 자체 평가로 대체

5)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시군)

- 사업 착수전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 한 후 도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자체승인 또는 도에 변경승인 요청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특정사업 편중작성 방지 지도**

- 시군 승인사항 : 도에서 승인한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공사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진행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 도 승인사항 : 총 사업비의 10%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전년도 10월말 이전에 선정

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 단,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 농협중앙회, 연구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등) 등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및 투명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사. 준공검사 및 등기 등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은 부기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장비 등 자산취득성 사업 등의 사유화 방지 지도·점검 철저**

아.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기준 규격 이상 시설·장비 구입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시공·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자부담 포함 사업예산 집행(사업예산 절감 및 시설, 장비의 사유화 방지)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자부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준용하여 집행토록 조치

- 사업 정산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제한(근저당 설정 활용)

○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기부 열람 등)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된 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등 시설·장비는 보조지원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 설치

○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 법인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홍보·판촉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5.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 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17. 1. 15까지

【보고서식】

1. 세부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세부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규격	단가	수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 **세부 사업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2. 사업 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 : 분기보고(매 분기 말 익월 5일까지)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완료 시기
	계획	실적	%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3.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 2017. 1. 15까지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국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10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수 농가에서 무농약 상향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각종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로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 (과수 비가림하우스 재배의 특징)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2.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5	1,000,000 (100%)	300,000 (30%)	400,000 (40%)	300,000 (3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및 법인

- 과수 저농약 인증농가 우선 지원

2. 지원요건

○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3. 의무 및 보조금 회수

○ 시설 완공 후 3년이내(사업시행년도 포함)에 과수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아야함

○ 3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4. 지원조건

○ 사업비 기준 단가 : 20천원/㎡

- FTA 기금「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40% 자부담 30%

○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5.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기준 규격 이상 시설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자부담 우선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사업 착수할 때부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 사업 정산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제한

○ 시설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

6.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2016. 6월말, 12월말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17. 1. 15까지

【보고서식】

1. 사업 대상자 및 추진상황보고

사업대상자 현황				사업계획					추진상황 (구체적 기재)
성명	인증 단계	품목	재배면적 (㎡)	사 업 비(천원)				비가림 시설면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2.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 천원)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세부 사업자 내역

사업자 성명	사업실적		인증실적			
	시설위치	비가림 시설면적 (㎡)	인증 일자	인증 단계	품목	인증면적 (㎡)

[별지 서식]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나. 재배현황

(단위 : ㎡)

구 분	품 목			
	계			
면 적	㎡	㎡	㎡	㎡

다. 친환경 인증현황(신청당시)

품목명	인증년도	인증단계	인증면적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대상농지

위 치	면적	비고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비 고
단동 또는 연동				

다. 비가림하우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Φ(mm)×t(mm)@cm)	가로대 (Φ(mm)×t(mm))

위와 같이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1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 ~ 제2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안)	2017년이후
합 계	302,202	26,909	32,849	25,893	계속
국 고	302,202	26,909	32,849	25,893	계속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대상

○ 2016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동일 농가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유기농산물 : 5년(5회), 무농약농산물 : 3년(3회)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하되,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 5년간 지급. (단, 기존 무농약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도 및 인증기관 등에 시달('15. 12월~ '16.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16. 1월 ~ 3월)

- 홈페이지 안내, PCRM 발송 등

사도, 사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6. 1월 ~ 3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16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만료 전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 신청기간 : ’16. 3. 1 ~ 3. 31(신청서 전산입력 기간 : ’16. 3. 1 ~ 4. 1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5.12월)		지자체(’16.1~3월)		친환경농업인(’16.3월)

* ’16년 중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17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6. 5. 10까지)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지번)변경, 필지수·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3.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를 인증기관에 통보 후 이행점검을 요청('16. 5. 21까지)

○ 이행점검 기간 : '16. 5. 21 ~ 11. 18.

*** 인증기관에서는 시·군·구의 요청 이전에도 이행점검 가능, 이후 시스템 입력**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필지·면적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최소한 연1회 생산과정조사를 실시

○ 점검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16. 11. 18까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인증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16. 11. 25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16. 11월말까지)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6. 12월)

5.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

가.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2.31)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1.18)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나.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7. 3. 1 ~ 3. 31)

[별 표]

사 업 추 진 체 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5.12월 ~ '16. 3. 31)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 1~3. 31)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1~5. 10)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 30) ·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 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11~5. 20)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 20)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⑤ 이행점검	(5. 21~11. 18)	·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송부하고 이행점검 요청 (시·군·구담당자, 5. 21까지) ·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담당자) ·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1. 18까지) *** 인증기관에서는 시·군·구의 요청 이전에도 이행점검 가능, 이후 시스템 입력**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9~11. 25)	·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 예산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 25까지)
⑦ 보조금 지급	(12. 1~12. 31)	·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말) ·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2월)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3.18>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 명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쌀소득등보 전직불제 대 상여부(O,X)	과거 지급 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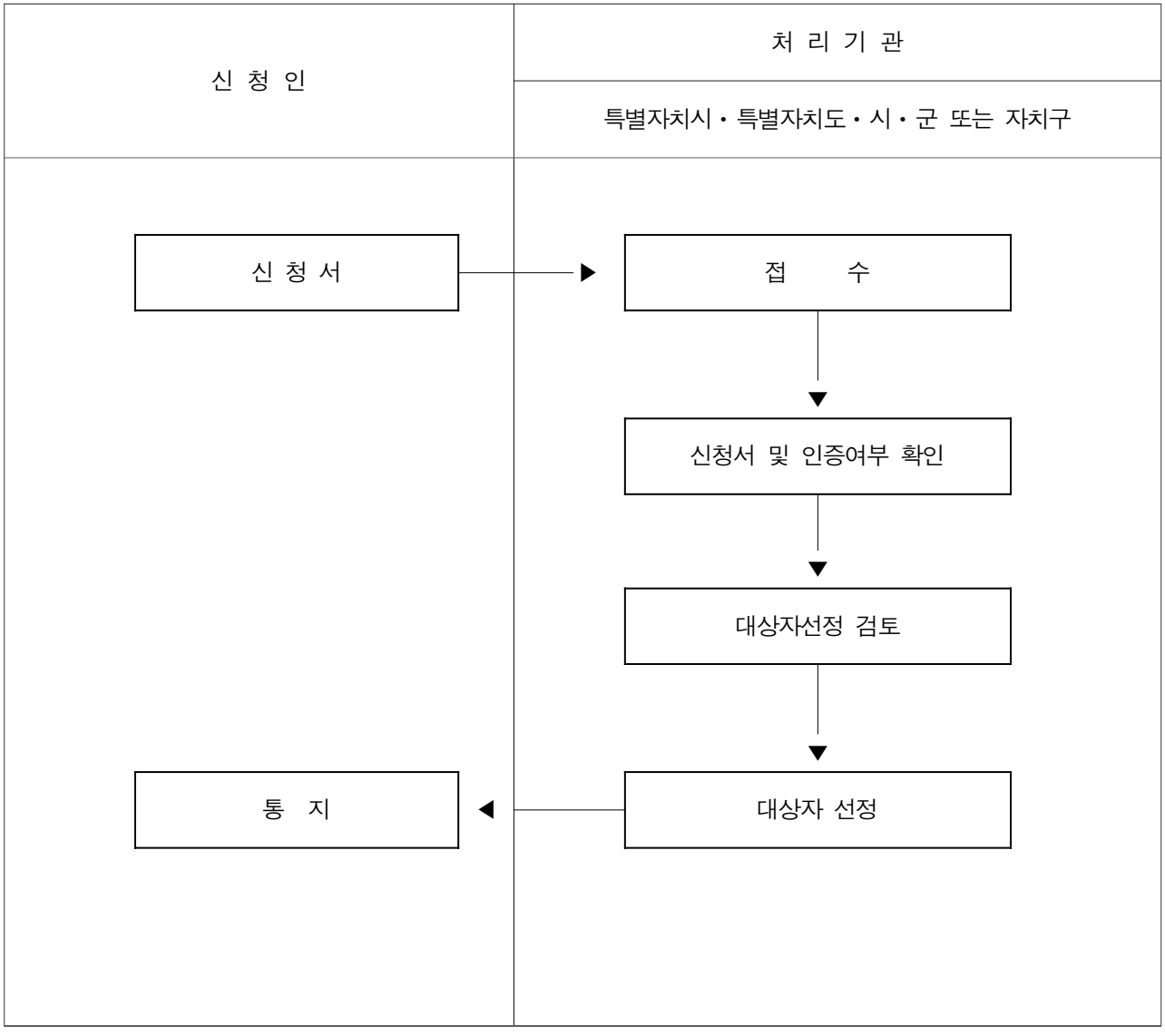

[별지 제2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3.18>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1. 인 적 사 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	쌀소득등 보전직불 제대상여부(○,×)	지급 보조금 예상액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지급보조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없 음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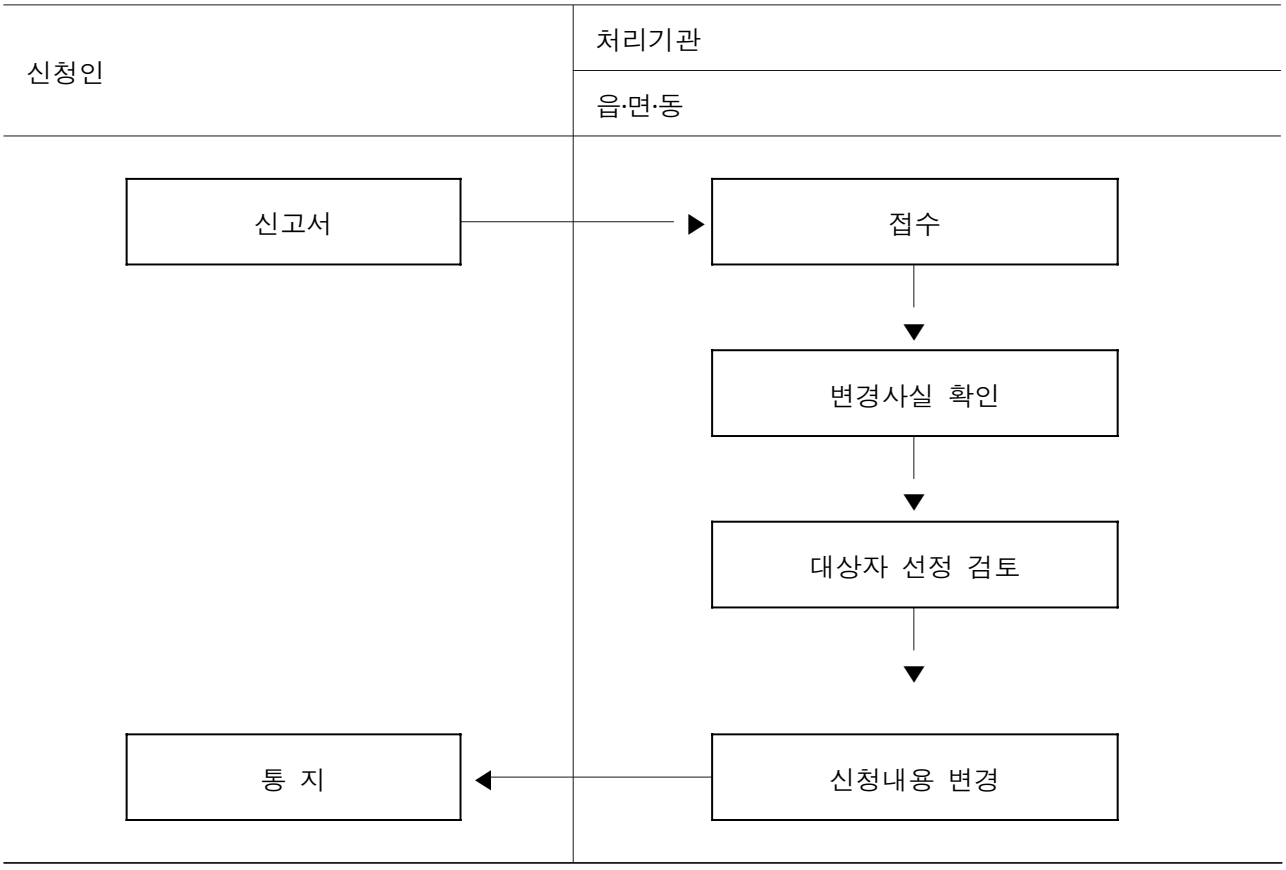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2 유기질비료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수준 유지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P		
유기물 함량 (%,부지표)	2~3	· 논밭 : 2.0 이상 · 과수 시설 : 2.5이상	· 논밭 : 2.0 이상 · 과수 시설 : 2.5이상	· 논밭 : 2.0 이상 · 과수 시설 : 2.5이상	매년 3월	경지 이용별 유기물 함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안)	2017년 이후
물량	21,119	3,200	3,200	3,200	3,200
국고(보조)	1,056,748	160,316	160,000	160,000	160,000

○ 2016년 전남 사업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유기질비료 지원	529	29,038 (100%)	29,038 (1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2015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6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
- 2016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이하 “지원대상 비료”이라 함)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지방비는 살포비에 우선 지원하고 단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

- 살포를 대행코자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업체 지정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살포대행 살포업체 지정시 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 또는 전문업체 이용시 계약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운영취지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해야 함.

*** 품질등급이 좋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 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읍·면·동), 농협중앙회(조합)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Agrix로부터 통보받은 참여업체별 계약비종과 품질등급·생산비종·제제형태·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시·도, 시·군·구 소요예산 등 협조)

○ 각 조합은 사업지침 변경내용, 농업인 신청가능 비종 등을 읍·면·동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10월초까지 읍·면·동에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 및 농가안내문 발송 등 조치

농업인 등

○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급시기(월 단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사업 신청기간 : 사업 전년도 10월 20일 ~ 11월 30일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로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각각 신청서를 작성 제출(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과거 공급내역이 [별지 제1호 서식]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 신청서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별 공급량 결정 단계 및 비료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사업 제외)
- 농업인은 공급희망년도를 1년간,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농지면적 변화 등 필요한 경우는 신청서 변경 제출 가능)
- 비료 공급희망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선정

  *** 해당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 단위 합계)으로 적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해당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경우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물량은 해당 경영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비종별 비료량을 포대단위(20kg/포대)로 기재하며, 실제 공급량은 국고 등 예산형편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음
- 가축분퇴비·퇴비는 농업인이 신청하는 등급으로 공급하되, 업체 및 등급별 신청·공급물량의 수급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높은 등급의 비료의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적어 공급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낮은 등급 신청농가에 우선 공급 가능(가격은 신청 등급을 적용)

*** 예) 특등급을 신청한 농업인이 적어 특등급에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1등급 신청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 가능(1등급은 2등급으로 공급 가능)**

· 높은 등급의 비료의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초과 신청량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등급으로 공급 가능(가격은 공급 등급을 적용)

* 예) 특등급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초과 신청량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변경하여 공급 가능(1등급은 2등급으로 공급 가능)

· 등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등급(기준등급)으로 간주하여 공급

- 해당 농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최종 공급량이 결정되기 전에 신청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최종 공급량 결정 이후 국고 지원물량 범위에 포함되는 물량은 지원액(국고, 지방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자부담하고, 국고 지원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

* 지자체의 신청정보 기준으로 농협에서 우선 공급하되, 상기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 추진(필요시 확인서 징구)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이 다른 경우로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 또한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관내경작자(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 군· 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의 기준에 따라 처리

- 농업인은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Agrix에서 지원하는 조합정보 활용 및 제공)

· 조합원인 경우는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조합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농협중앙회는 사업 신청 10일전까지 조합별 조합원 가입내역을 Agrix에 제출

·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접근성,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조합원이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비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신청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엽연초조합원의 경우는 공급회사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추진하고, 조합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농협중앙회(조합)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를 구성하고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확정

-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협의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농협 시·군 농정지원단, 지역조합 구매담당 직원, 농업인, 관련 전문가 등 6명 이내로 구성(사업실시 연도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 조합 및 업체 관련자 제외)

· 협의회는 농가가 신청한 공급업체에 대한 생산여건, 제품의 품질, 주문물량 공급가능 여부, 운송거리, 생산능력 초과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공급업체로 결정하되,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른 업체로 변경 가능

*** 부숙유기질비료 생산 업체별 공급능력(계약물량) 및 잔량 등은 Agrix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의회는 업체별 계약물량 대비 현재 신청량, 잔량 등을 활용하여 공급업체 선정**

· 농가별 공급량은 농가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관련 통계자료(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 등을 고려하여 확정

*** 농가 신청량이 품목별 단위면적별 전국 평균 신청량 이하인 경우는 우선 배정(농가 신청량 대부분 인정), 전국 평균량을 초과하는 비료량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부체계, 품목, 재배방법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 배정(농가 신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Agrix 자료 마감 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및 필지 등록 여부 최종 확인**

* 특히, 관내 농가에 정부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특정농가에 대한 과다·과소 배분, 특정작목 우선 배분 등 금지

* 협의회는 질 좋은 퇴비 생산업체를 우대하되,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행위, 품질 낮은 유기질비료의 농가공급 금지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농식품부 Agrix 자료(시·군·구 선정자료)를 통보받는 즉시 시·군 농정지원단,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정보의 교환은 전산통보(DB)가 원칙이며, 전산오류 등인 경우 일시적으로 엑셀파일 등으로 정보교류는 가능하나, 전산 복구시 엑셀 파일 등은 모두 삭제 조치**

* **Agrix 자료가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로 전달된 이후 Agrix 자료의 변경은 불가**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필요한 경우 사업 정산자료를 Agrix로 제출(사업이 종료된 후 연간 정산자료 제출)**

○ 각 조합은 시· 군· 구의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등을 농업인에게 공지(인수 날짜 및 장소 등 확인)하고 공급 실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와 동시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

- 공급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에서 농가의 변경신청서, 폐업, 납품거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농가의 배정예산 이내에서 변경(단, 농가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전에 시·군·구와 협의)

- 매월 변경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가급적 전산 통보)

- 기타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농협중앙회에서 마련 시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조합)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농협중앙회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지정하는 공급업체에 한해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5.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2015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부산물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등급 평가를 2015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2016년도 신규 참여업체 제외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을 4시간 이상 받지 않은 업체는 익년도 사업참여 제외(2017년 참여업체부터 적용)

* 단 신규 참여업체는 제외

- 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과 후숙시설에서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부산물비료(부숙 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 기준에 따라 제품생산) 생산업체와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조건에 맞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 예) 생석회를 혼합하여 안정화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정부사업 공급업체 선정기준(비료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원료 등 품질관리 기준, 공급업체별 생산능력 등 포함)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공지

○ 선정절차 등

- 정부사업 참여 공급업체 선정의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급업체 또는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신청자격, 생산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사업 신청 개시 10일전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를 경유하여 Agrix 시스템에 반영(공급 업체명, 소재지, 비종, 생산능력, 공급가능 잔량 등 신청시 참고자료 포함)

  * 업체의 생산능력은 별지 5호 서식의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과 별지 5-1호서식의 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에 따름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 가격(조합 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공급 방법 》

○ 공급기관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조합

- 농업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된 희망 공급조합이 공급. 다만, 농업인이 신청서에 '공급희망조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수정한 후, 그 내용을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

○ 공급시기 : 1~12월

○ 공급단위 : 포대(10kg, 15kg, 20kg), 톤백(500~1,000kg)

○ 공급방법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여부를 확인

- 공급업체에서는 농협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기 전에 해당 농협에 배송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공급시기를 통보하여야 함

  * 배송정보 없이 농가에 공급한 비료에 대해서는 공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조합에서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됨

- 조합에서는 배송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공급할 대상 농가, 농가별 물량,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인수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현장 확인

  * 농가당 500포(20kg기준)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이하 공급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농가인수증 및 자부담금액 수납으로 확인

- 공급업체는 농가 배송 완료시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톤백 공급시 계량확인서 첨부)

  * 인수증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한 양식을 반드시 사용

- 톤백으로 공급시에는 자체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자체계량기는 연 1회 이상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 살포차량(농가 차량 등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농업인 및 조합에서 공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톤백에 담겨진 상태의 비료를 대상으로 품질, 중량 등을 확인하여 인수하고, 인수가 완료된 후 해당 차량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 다만 인수 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인수 확인증, 계량증명서, 사진 등)

- 조합은 농가별 선정물량 한도 범위 내에서 비종별(등급별 포함)로 보조금 지급 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 처리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시 유의사항

- 부산물비료는 포장지 또는 톤백에 품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표시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함)

  * 톤백의 경우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포장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보관・판매

- 공급업체별 총 공급량(시판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 부산물비료업체에서 2개 비종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을 별도로 구분・의무표시(가축분퇴비, 퇴비) 해야 함

  * 생산능력은 발효시설 및 후숙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름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는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전산망을 관리하고, 생산능력 초과물량은 정부사업 공급대상 제외

-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중앙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비료" 생산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조원료 기재장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생산일지를 의무 비치(3년간 보존)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OEM 공급시 유의사항

-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통단속 및 품질불량 등 제품하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와 OEM을 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서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경영체별 공급실적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엽연초조합은 직접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구) 및 조합에 대하여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비료공급 및 자금 집행상황 점검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조합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

시·도(시·군·구)

○ 시· 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지급상황, 농가 만족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점검결과는 시· 도에서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이행전담점검반을 별도 운영할 수 있음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비료공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비료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및 품질등급 준수여부 등 적합 여부

* 다만, 품질등급 평가는 부숙 유기질비료에 한하며, 평가방법은 농진청 지침으로 정하되 부산물 비료 제조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년 10월초까지 지침 마련

○ 검사시기 :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은 연 2회(1·3분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 검사

- 시·도주관 지자체 자체 유통점검을 연 2회(2·4분기)이상 추가 실시

* 단속기관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결과는 종합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12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농진청·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는 농진청이 취합하여 보고하고,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직접 보고)하고, 업체 방문단속시 원료관리실태(대장기재), 업체 자체품질검사 실시 여부 및 결과 등을 확인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품질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시료는 포장(톤백 포함) 또는 산물(완제품)을 보관·유통·공급하는 제품 중에서 채취

- 필요시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15년도에 생산실적이 없어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정부사업 공급업체는 생산일정, 공급일정 등을 9월 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생산일정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9월 15일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시료를 직접 채취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즉시 통보
- 검사성적서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검사는 시료채취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시검사는 1개월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통보 시는 기준미달 업체명단, 판정결과 및 품질등급 평가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2)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자체 품질검사

○ 공급업체는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부숙도 및 수분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서만 출하하고, 검사결과를 2년간 보존(단속기관 점검시 확인)

(3) 시·군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서 농가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 실시

○ 협의회는 현장 검수대상(500포이상 공급농가) 가축분퇴비·퇴비 공급농가 중 표본을 추출하여 농가배송 제품의 현장검수 시 품질 점검(연간 2회 이상)

○ 품질 현장 점검시 협의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점검반(2인 1조) 편성

*** 다만,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인 1조로 편성 가능**

○ 점검대상 선정 : 현장 검수대상인 500포이상 가축분퇴비·퇴비 공급농가 중 임의로 표본추출 하되, 최소 20~30농가를 점검(단, 지역 공급물량, 부적합품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조절)

○ 점검방법 : 품질 점검에 필요한 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를 지참하고 배송된 가축분퇴비·퇴비의 부숙도, 수분함량, 악취여부를 간이검사

○ 점검장비 : 품질점검에 필요한 검사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는 농협에서 구비(시·군별 1～2대 이상)

○ 부적합품 조치 : 납품제한 조치 및 농촌진흥청에 정밀검사 의뢰 등

(4) 유기질비료조합에서 자체점검반을 구성하고 자체 품질점검 실시

○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부사업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부적절한 원료사용, 제품 품질수준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지도

○ 점검반 구성 :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본부·도지회 등 18명

○ 점검대상 : 회원사(정부사업 공급업체 포함)

○ 점검방법 : 업체를 상시방문, 생산제품의 품질을 점검하고, 점검실적을 매분기 익월말까지 농식품부 및 농진청에 보고

○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되, 허용원료외 사용 등 부정·불법사례의 경우 지체 없이 농진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 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장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지체없이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품질등급 평가 또는 유통단속 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라.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 교육내용 : 비료관련법규, 사업지침, 유기질비료 비료품질관리 등
- 교육대상 : 비료생산업체 대표 또는 소속업체 임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이상(1회 4시간이상)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 중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201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자신의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사용하는 자

[별표 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유기질비료)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용(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수분)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3 그 밖의 규격(염분, 유기물대 질소의비, 염산불용해물 등)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경고 - 6개월 - 1년	
4. 부숙도 측정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회 : 1년 - 2회 : 2년	
5.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 : 폐수처리오니	- 2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6.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보관·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1년	〃
7.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8. 유해성분·주성분 및 그 밖의 규격 외의 사항 위반	- 1년	〃
9.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10.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보관 또는 공급한 경우(부산물비료를 공급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1년	
11.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년	
12.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동일장소(발효 및 부숙)에서 생산한 경우 -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3. 품질등급 기준 위반에 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질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한 등급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품질등급 평가결과, 1개 등급(특등→1등급, 1등급→2등급) 격하할 경우 - 품질등급 평가결과, 2개 등급(특등급 → 2등급) 격하할 경우	- 2년 - 6개월 - 1년 - 6개월 - 2년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4. 부산물비료의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산물비료를 생산 또는 공급한 경우(석회처리 안정화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15. 판매대장, 원료장부(전자화된 장부 포함), 생산일지 - 동 대장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또는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동 대장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회 : 1년, 2회 : 2년 - 1회 : 6개월, 2회 : 1년	
16.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7.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 등급제에 따라 실제 성분량을 표시한 경우 참여제한 6개월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6개월 - 1년	
18. 부산물비료 품질검사결과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경우	- 1년	
19. 톤백 포장시 표시방법 위반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20. 제품출고전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 제품 출고전 부숙도, 수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존(2년)하지 않은 경우	- 1회 : 경고, 2회 : 1년	
21. 비료업체(판매원 포함)가 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3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가지이상 부숙유기질비료(또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부숙유기질비료 (또는 유기질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 참여 제한은 업체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 부숙유기질비료(또는 유기질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 기준에 따름

※ 유기질비료의 생산을 수탁받은 업체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게도 본 사업참여 제한기준을 적용하되, 생산을 위탁한 비종에 한함. 또한, 위반업체 및 수탁업체는 사업참여 제한기준이 해제될 때까지 OEM을 할 수 없음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연간 생산능력(또는 전년 계약물량, 유기질비료는 전년 공급물량)의 30% 축소하여 계약할 수 있음.(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별표 2]

지원사업 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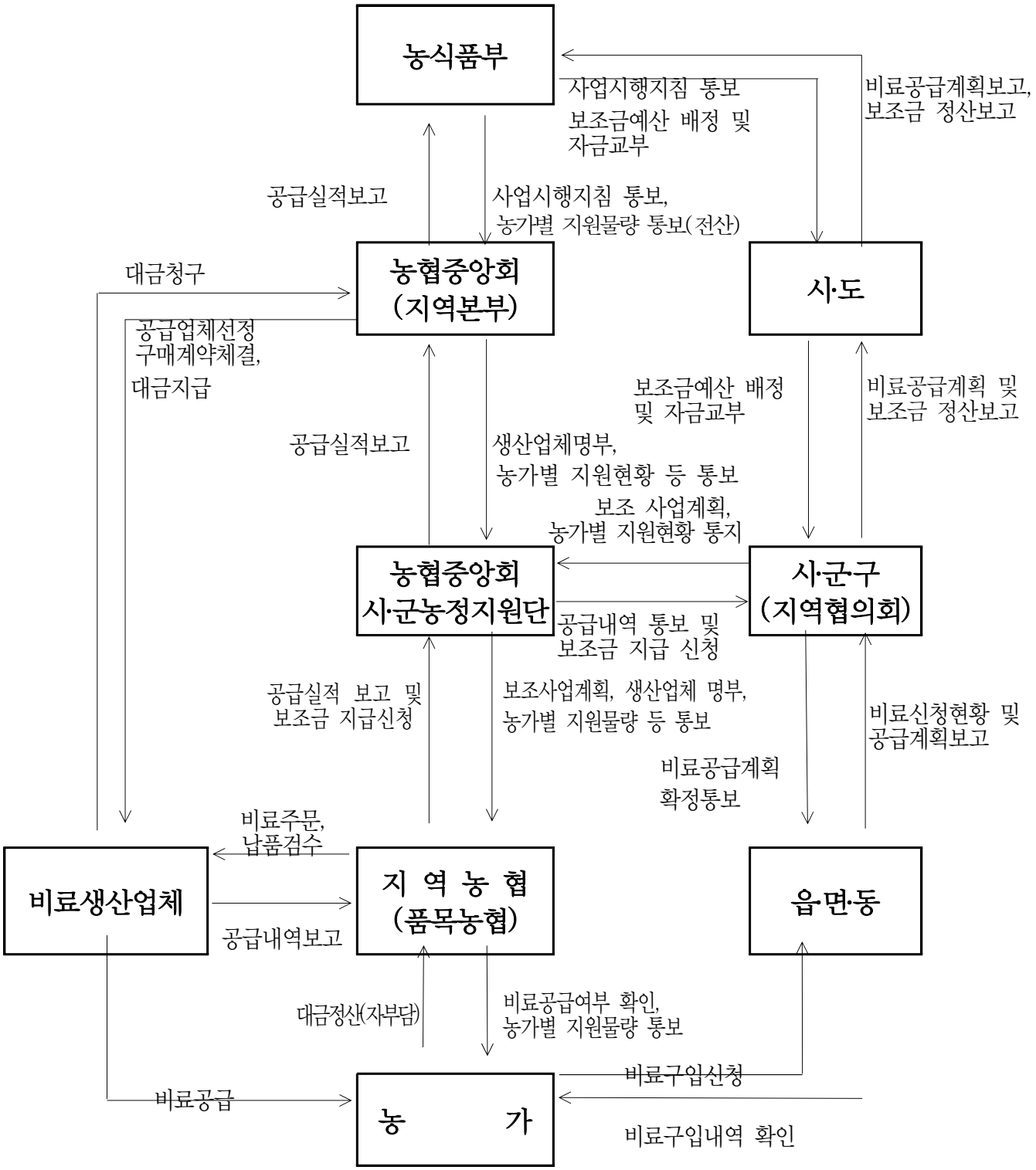

※ 담배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농산물용 / □ 엽연초용 <택1>)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공급 희망년도	□ 1년간 □ 3년간 □ 5년간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공급 희망조합	조합 가입(□ 시도 내 □ 시도 외)	□ 조합 미가입(시군 내 조합 기재)		조합명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 희망 업체 (생략가능)	상품 명 (생략가능)	비고
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단,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공급희망년도는 동 신청서로 공급을 희망연도를 선택(예 : "3년간"을 선택한 경우 이 신청서로 당년을 포함하여 3년간 신청된 것으로 간주)

주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4)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5) 비료의 종류는 순번별로 1개만 선택, 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선택(신청등급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등급으로 변경 가능, 등급 미기재는 1등급으로 간주)

주 6) 공급희망업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생략 가능), 업체별 생산능력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주 7)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량을 기재하되, 확보 예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농가 신청량 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주 8) 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가급적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가입 조합을 지정(타 시도 조합을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가입 확인서 제출), 엽연초 농가는 인근 시도의 엽연초 조합지정 가능, 조합 미가입자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조합 선택

주 9)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10)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11)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부(농산물용 1부, 엽연초용 1부)를 작성 제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의 비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 가능)	상품명 (생략 가능)	비고
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4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5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6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7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8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9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0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판 매 대 장

□ **제품명** : ○○○○

(단위 : 원, 포)

제품생산			출 하					납품처 (공급지역)	재고량 (포)
생산일자 (포장일자)	생산량 톤	생산량 포	출하일자	포장단위 (kg)	출하단가 (원)	출하량 (포)	출하금액 (원)		
'13.8.14	7	350	11월20일	20	3,000	100	300,000	○○농협	250
			11월25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0
'13.8.15	10	500	11월21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250
			11월22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0
월 계									
누 계									

주) 1. 출하단가는 운송비 제외가격임
2. 생산량의 "톤"란은 생산일지의 생산일자(포장일자)별 생산량(포장량)과 일치
3. 톤백으로 판매시 포란에 20㎏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 포장단위 란에는 톤백판매로 기입
4. 판매대장은 생산일자(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표 안의 예 참조)

[별지 제3호 서식]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

원료 구입·수입 연월일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의 수량 (kg 또는 ℓ)	비고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국가		

장부 기재방법

1. '원료 구입·수입 연월일'은 원료를 구입하거나 수입할 때마다 그 일자(예: 2015. 1. 1.)를 기재하되,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2. '비료의 종류'는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비료의 종류(예: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등)를 기재합니다.
3. '원료의 종류'는 짚류, 왕겨, 톱밥, 돈분뇨, 우분뇨, 골분, 채종유박 등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종류를 모두 기재합니다.
4. '원료의 구입처'는 원료의 공급 업체명, 그 주소와 전화번호, 생산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5. '원료의 수량'은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수량을 각 원료별로 기재합니다.

※ 원료 구입서류는 별도보관

[별지 제4호 서식]

생 산 일 지

□ **비종명** : ○ ○ ○ ○

(단위 : 톤)

원료투입 년월일	구분	원료투입				부숙 및 후숙기간			생산량 (생산일자)	비고
		톱밥	계분	원료C	계	부숙기간 (소요일수)	후숙기간 (소요일수)	합계 (총소요일수)		
2010.8.10	투입량(톤)	7	3		10	9.15~ 10.30 (45)	10.31~ 11.14 (15)	9.15~ 11.14 (60)	7톤 ('10.11.14)	
	투입비율(%)	70	30		100%					
	투입량(톤)					~ ( )	~ ( )	~ ( )	~ ( )	
	투입비율(%)									
	투입량(톤)					( )	( )	( )	( )	
	투입비율(%)									
	투입량(톤)					( )	( )	( )	( )	
	투입비율(%)									

주1) 원료투입량은 원료장부의 반입량

주2) 유기질비료는 부숙 및 후숙기간 대신 생산기간을 적을 것

[별지 제5호 서식]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 방법

1. **발효시설**

○ 교반식

- 발효조 규격 : 길이 80m 미만과 80m 이상으로 구분 (높이는 2m 이내)
- 연간 회전수 : 길이 80m 미만은 20회전, 80m 이상은 18회전 적용
- 계산식 : (길이 x 폭 x 높이) ÷ 2 x 회전수 x 시설 수 = 톤 x 50 = 포대 수

  * ÷ 2 는 퇴비의 비중을 0.5로 보기 때문에 적용함

○ 통풍식

- 발효조 규격 : 길이(7m), 폭(5m), 높이(2m) 기준 이내
- 표준설계도에 의한 생산시설(송풍라인 배열 간격 : 60cm이내, 송풍라인 폭 : 15cm 이내)은 규격 기준 초과 인정(높이 : 2m 이내, 전면차단문이 없는 경우 20% 차감)
- 연간 회전수 : 규격기준(70㎥ 이하)은 20회전, 규격기준 초과는 15회전 적용
- 계산식 : (길이 x 폭 x 높이)÷ 2 x 연간 회전수 x 발효조 수 x 차단문(유, 무) = 톤 x 50 = 포대 수

2. **후숙장**

○ 후숙장 기준 : 비 가림 시설과 바닥시설을 갖춘 시설

○ 높이 산정 기준

- 콘크리트 등 벽이 있는 경우 : 콘크리트 등 벽 높이 + 추가벽면 높이

  * 추가벽면(판넬, 강판 등)은 콘크리트 벽 높이의 2배까지 인정

  * 산정 높이는 4m 미만은 4m로 인정하고, 4m 이상은 1.2까지 인정

○ 연간 생산능력 : 계산식에서 산출된 후숙장 생산능력의 4배(연간 4회전)로 산정

○ 계산식

① 콘크리트 등 벽 높이가 4m 이상이거나, (콘크리트 벽 + 추가벽면)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 (길이 x 폭 x 높이 x 1.2) ÷ 2 = 톤

② 콘크리트 등 벽 높이가 4m 미만이거나, (콘크리트 벽 + 추가벽면)높이가 4m 미만인 경우 = (길이 x 폭 x 높이(4m) x 1.0) ÷ 2 = 톤

③ 콘크리트 등의 벽이 없는 경우

= (길이 x 폭 x 기둥 높이 ÷ 2) ÷ 2 = 톤

○ 후숙 시설은 그 외 시설과 구획으로 구분되어야 함

* 후숙시설 증설은 공장부지 내가 아닌 경우 당해공장(농장) 경계선 내에서 인정함

* 현장 실사 시 충분히 후숙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 후숙 시설에 기계장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기계장치 등으로부터 2m를 제외함.

3. **조사결과 생산능력 산정**

○ 생산능력조사(신규 및 변경)는 농협중앙회는 농협계열 업체,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회원사 등의 생산능력을 조사 한 후 상호 점검하여 확정

[별지 제5-1호 서식]

부숙유기질 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

1. 일반현황

업체명(업체코드)	성명(대표자명)	부지면적 m2
주소	전화	건물면적 m2

* 사진 : 건물, 발효장, 후숙장 등 3매 첨부

2. 발효장 규모

교반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시설수 = ( )
통풍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발효조수 × 문(유무) = ( )

3. 후숙장 규모

콘크리트벽이 있는 경우	길이 × 폭 × 높이 = ( )
콘크리트벽이 없는 경우	길이 × 폭 × 높이/2 = ( )

4. 기 타

특이사항 등	

2015. 9. .

생산업체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시.군) (서명 또는 날인)

(농협) (서명 또는 날인)

(유기질비료조합) (서명 또는 날인)

[첨부 2] : 2016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1.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 및 지원규모 : 1,600억원(추정), 3,200천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산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농업기술센터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3] : 홈페이지, Agrix에 기재할 양식, 서류 : 해당사업에 한함

1.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농촌진흥청, 시·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 통보 : 사업 전년도 10월초

- 사업계획에는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예산 배정방법,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단가 등을 명시

농촌진흥청

○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품질등급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등 세부사항을 관련단체,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중앙회에 통보 : 사업 전년도 10월초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에서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과 관할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이하 "시·군농정지원단"이라 함)과 엽연초조합에 지체없이 통보

- 사업계획에는 사업비(자부담액 제외), 지원대상, 지원단가, 농가신청 방법, 농가당 지원한도, 지원대상 비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

읍·면·동

○ 읍면동은 농가의 신청내용을 신청기간 만료일(11.30)의 익일(12.1)까지 아그릭스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완료

시·군·구

○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아그릭스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은 농가별 신청현황을 협의회를 통해 검토한 후, 그 결과(농가별 지원물량)를 12. 10일까지 아그릭스시스템에 입력

- 다만, ‘16년도 예산의 국회심의·확정이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내시 예산범위 내에서 관할지역 농가별 유기질비료 지원물량을 확정

*** 시·군·구(읍·면·동)는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관할 농업인, 농협 시·군농정지원단 및 조합에 공지 및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농가별 지원현황을 농협중앙회(엽연초 조합 포함)에 지체없이 통보

- 통보방법 : 아그릭스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전산공유하며, 농협중앙회(엽연초 조합)은 전산공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가별 지원물량을 공급할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

조합

○ 조합은 농협중앙회로부터 통보받은 농가별 지원현황을 토대로 공급업체별 물량을 지체없이 발주(‘16. 1월까지)

- 다만, ‘16년도 예산의 국회심의·확정 이전 인 경우 ’16년 상반기 중에 농가에 공급할 물량에 대해 우선 발주하고, 잔여물량은 국회의 예산확정이후에 즉시 추가 발주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이미 결정된 농가별 지원물량, 예산 가내시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당해 연도 최종 확정예산을 아그릭스 시스템에 ‘15. 12. 20일 까지 입력(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확정시 입력하고 그 이후 일정은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추진)

시·도(시·군·구)

○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별로 이미 가내시한 예산규모, 농가 지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최종확정예산을 아그릭스 시스템을 통해 ‘15. 12월말 까지 통보

○ 시·군·구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농가별 지원물량을 기준하여 관할 읍면동별 예산을 확정

- 시·군·구는 예산확정에 따라 지역협의회 결정에 의한 농가별 지원지원대상 비종별(등급포함) 수량 및 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농가별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한 후, 관할 농협 시·군농정지원단 및 엽연초조합에 통보하고 시·도에 보고 : 【별지 제2호서식】

○ 각 시·도는 시·군·구의 지원계획 확정내역을 집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연도 1월말까지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별 분기별 사업비 배정계획에 따라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배정(시·도별 배정계획 시달)

시·도(시·군·구)

○ 각 시·군·구의 자금배정 신청에 따라 매 분기 익월 25일까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배정 및 송금

○ 시·군·구는 조합별 공급실적을 확인한 후 매 분기 익월 말까지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을 통해 조합별로 보조금 지급

○ 각 시·도는 9월말 기준으로 시·군·구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시·군·구간 사업예산 전배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전배 조치하고,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배 요청 : 【별지 제3호서식】

- 사업예산의 전배로 사업량이 증가되는 시·군·구에서는 “사업자 선정단계”에 따라 추가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관할 농협 시·군농정지원단 및 엽연초조합에 통보

4. 행정사항

가. 기관별 보고사항

(1) 시·도

○ 시·군별 지원계획(선정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1월말 까지

○ 예산 전배 요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10. 31까지

○ 사업추진실적(별지 제4호 서식) 및 보조금집행실적(별지 제5호 서식)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 7. 31까지, 하반기 : 익년 1. 31까지

(2)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 보조사업 공급업체 선정기준 : 사업개시 전년말까지

○ 공급사업 추진계획 보고 : 계획수립 즉시

○ 공급실적(농협 시·군농정지원단은 각 시·군·구 보고 포함) 보고

- 상반기 : 7. 20까지, 하반기 : 익년 1. 20까지

(3)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은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결과를 종합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1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농진청·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는 농진청이 취합하여 보고하고,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보고)

나. 기타사항

○ 공급업체 선정, 공급계약 체결, 품질검사 방법 및 판매관리 실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공급업체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신규로 선정할 경우에만 한함)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공급업체가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시·도 및 농촌진흥청에 통보

- 공급업체별 공급비종, 품질등급, 판매가격, 생산능력 등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제출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품질검사와 유통단속 결과 비료관리법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농협중앙회장, 엽연초조합중앙회장 등 비료 공급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불량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별표 1]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의 제2호, 제6호, 제14호, 제15호,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중단 및 회수조치를 하고 해당업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 각 시·군·구에서는 불량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비료가 농가에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내 공급업체의 제조원료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등록된 원료와 실제 사용하는 원료와의 일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 실시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편법공급 및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 1회 이상 공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　　년도)유기질비료 신청내역

(단위 : 포,원)

시도	시군	비　종	신청물량	선정물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OO도	계	계					
		유기질 비료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					
		부숙유기질비료 2등급					
	OO시	소계					
		유기질 비료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					
		부숙유기질비료 2등급					
	OO시	소계					
		유기질 비료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					
		부숙유기질비료 2등급					

* 주) 농가별, 필지별 세부내역은 Agrix 시스템 전산입력 자료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유기질비료 지원계획

○○시·군

(단위 : 포,원)

읍면동	신청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급조합	비종(등급)	공급업체	공급희망시기	신청물량	지원물량	보조금액	
										국고	지방비

[별지 제3호 서식]

유기질비료 예산전배 요청

○○시·도

(단위 : 톤, 천원)

당 초		변 경		사 유
사업량	사업비(국고)	사업량	사업비(국고)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한 물량 및 금액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유기질비료 추진실적(반기보)

○○시·도

(단위 : 톤, 천원, %)

시·군별	사업계획(A)		추진실적(B)				집행율(B/A)	
			당 기		누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								
○○군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지원계획으로 확정한 물량·금액과 실제 지원한 물량·금액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유기질비료 보조금 집행실적

○○시·도

(단위 : 원)

시·군별	사업계획			국고보조금 교부액(A)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A-B)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B)	지방비	
계								
○○시								
○○군								

주) 1. 사업계획의 국고는 예산배정액을 기재

2.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예산액중 실제 자금교부액을 기재

13 토양개량제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6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P		
•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ppm)	157	157	157	157	매년 2월	사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정결과를 측정(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 밭토양의 토양 산도(pH)	6.5	6.5	6.5	6.5	매년 2월	사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정결과를 측정(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 '09~'11년까지는 농과원 주요농경지 토양검정결과 평균치로 산출하였으나, '12년부터 시용필지에 대한 다음 년도 검정결과로 지표 변경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안)	2017년이후
합 계	1,216,905	91,384	91,717	91,366	91,366
국 고	851,834	63,969	64,202	63,956	63,956
지방비	365,071	27,415	27,515	27,410	27,410
물 량	13,224	698	675	645	645
제주도(국고)	(10,972)	(2,274)	(2,475)	(3,328)	(3,328)
제주도(지방비)	(6,040)	(974)	(1,061)	(1,426)	(1,426)
제주도(물량)	(119)	(23)	(25)	(31)	(31)

*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07~'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 '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지원

○ 2016년 전남 사업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토양개량제 지원	159	22,060 (100%)	15,442 (70%)	1,985 (9%)	4,633 (21%)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경작하는 자

* 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함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제비용

○ 지역농협 또는 시비(施肥)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비 비용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거나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하여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소요량 산정결과는 사업 전년 2월말 까지 Agrix에 입력)

- 소요량 산정 지원(Agrix) : 농진청 흙토람 토양검정 정보(최근 3년)에 사업 실시 년도까지의 감소량을 감안하여 목표량대비 부족량을 소요량으로 환산하여 제공(Agrix 시스템)하는 등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요량 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

  * 농진청은 사업 신청연도 전 최근 3년간 흙토람 토양검정 정보 및 감소추이 등을 Agrix 시스템에 DB연계방식으로 제공(매년 1월말 까지)

  (예) 사업시행연도 2016년 인 경우 : 사업신청연도(누락 신청 등 포함)는 2015년이며, 최근 2년간은 2013.6월~2014년, 사업 시행연도까지 감소량은 2013~2014년 검정치가 매년 감소하여 2016년에 도달하였을 때 예상되는 잔류량(농도, 산도)

○ 농가별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한 법정리·동별 농경지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Agrix에서 자동 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업인

○ 농업인은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경작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음). 마을이장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 변경 및 추가 신청

- 대상 사업연도 : 2016년
- 변경 및 추가 기간 : 사업 전년도 10월 11일~30일(20일간)

  * 변경 및 추가신청에 대하여는 농업인이 제출하는 신청서(변경)를 읍·면·동(시·군)별로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해제 기간에 입력토록 함

○ 신규 신청(3년1주기) : ’13.1～4월 중 ’14～’16년 사업에 대해 신규 신청 접수(3년 1주기)를 받은바 있으며, ’17~’19년 사업에 대한 신규신청(3년 1주기)은 ’16.1～4월 중 실시할 예정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에서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전년도 11월)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제 외 대 상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5.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시·군농정지원단에서 통보받아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톤백 공급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함

○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공급확인서(농협중앙회장이 마련)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세부 착지별 3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3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에 대한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장에게 인도, 지역농협장이 책임지고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에 대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 제출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 포함) 및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 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농협·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하며, 지자체 와 농협이 공동으로 살포비를 지원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달라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공동살포를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의무 부여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제　재》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를 미살포(방치)하거나 조치사항 미이행 농업인은 다음 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1차 확인(방치 우려) : 농가와 협의하여 살포기간을 지정하여 살포하도록 조치(살포예정일 확정)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보관·포장 예정일 확정)**

- 2차 확인(조치사항 미이행)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 미살포(방치) 확인, 해당 물량에 대한 처리 등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활용

○ 미살포(방치) 농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Agrix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음주기 공급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매년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 및 조치계획 수립·추진(연 2회)

- 상반기 및 하반기 토양개량제 살포시기 이후에 현장 확인 등 조치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1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

*** 농협중앙회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 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업무에 대한 평가실시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급받은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시 살포대책 마련 및 추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지역농협에서는 농가의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및 살포확인, 살포지원

6. 성과측정단계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시용필지에 대한 토양검정결과(익년 2월까지 조사)로 하며, 필지 선정 및 수거 등의 정확성과 연속성 제고 등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Agrix 시스템으로 처리)

- (측정항목) 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 석회(패화석)의 경우 산성도
- (2015년 토양검정 실시 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 조사) 2015년도에 토양검정을 실시한 필지(2014년 시용 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에 시·군·구별로 0.5%를 선정하여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6월까지)

  * 2015년 토양검정결과는 우선 Agrix 시스템에 입력

- (2015년 토양개량제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 조사) 2015년도에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에 시·군·구별로 0.5%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실시한 토양검정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6월까지)
- (2016년 토양개량제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 조사) 2016년도에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에 시·군·구별로 0.5%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실시한 토양검정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9월까지)

  * 2016년 봄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한 필지를 대상으로 가을에 조사

- 세부내용은 농업과학원에서 정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2016. 1월 중)

※ 2016년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그 결과 입력

살포 연도	조사대상	Agrix 입력
2014	2014년 시용필지의 0.5% 토양검정 실시	’16.6월까지
2015	2015년 시용필지의 0.5% 토양검정 실시	’16.6월까지
2016	살포 필지를 무작위로 0.5% 선정	’16.9월까지

○ 농협중앙회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전년도 규산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 전년도 석회(패화석)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 ~ 2019년(3년1주기) 사업 신규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기간 : 2016. 1 ~ 4월 중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자신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2. 2017년 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2016. 10. 11. ~ 30일(20일간)

○ 지원대상 : 2017 ~ 2019년 사업 지원대상과 동일

○ 201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16.1～4월 중 ’17～’19년 사업 신규신청 접수(3년 1주기)를 받을 계획이며, 변경 및 추가 신청에 대하여는 읍·면·동(시·군)별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해제 기간에 입력토록 함

[별표 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토양개량제)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분말도, 붕괴도, 염분, 입도, 수분 등)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4.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5.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2년	〃
6.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7.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8.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9.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0.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 6개월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1년	
11.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개 비종 이상의 비료(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위반사항은 비료관리법상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영업정지 1월 : 1년, 영업정지 2월 : 2년, 영업정지 3월 이상 : 3년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기준에 따름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업체 전년 계약물량의 30%를 축소하여 계약할 수 있음.(다음년도 사업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별표 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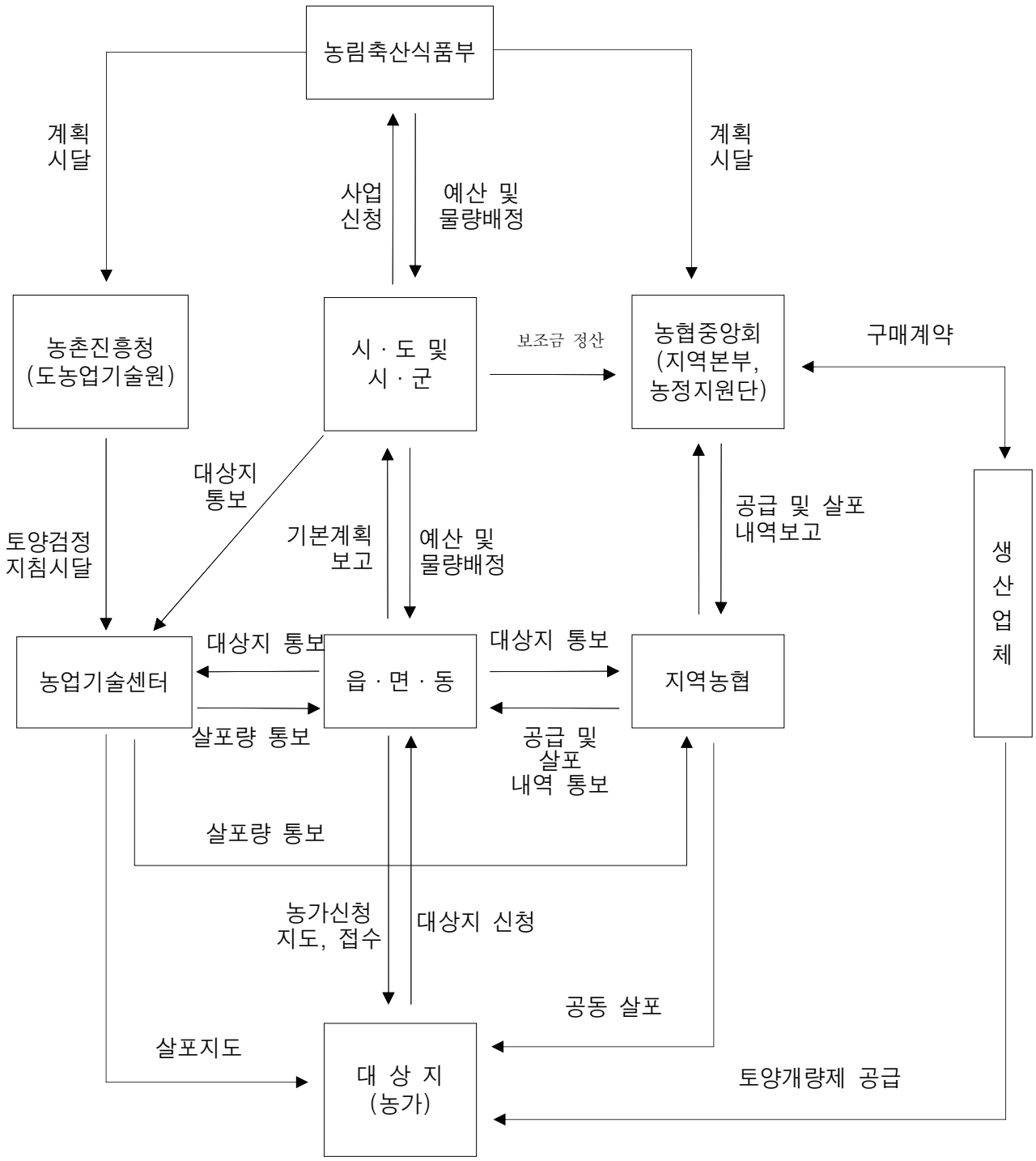

〔별지 제1호 서식〕

규산질비료 공급 신청서(□ 신규 / □ 변경)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콜센터 문의 ☎ 1644-8778

*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가의 경우 영세공급가격(국비+지방비 부담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공급희망 시기(월)
성환읍	신방리	122	답	10,085	10,085	논벼	2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토양개량제 지원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석회고토비료 공급 신청서(□ 신규 / □ 변경)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콜센터 문의 ☎ 1644-8778

*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가의 경우 영세공급가격(국비+지방비 부담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공급희망 시기(월)
성환읍	신방리	122	답	10,085	10,085	논벼	2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토양개량제 지원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패화석비료 공급 신청서(□ 신규 / □ 변경)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콜센터 문의 ☎ 1644-8778

*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가의 경우 영세공급가격(국비+지방비 부담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공급희망 시기(월)
성환읍	신방리	122	답	10,085	10,085	논벼	2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토양개량제 지원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 하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인수 및 살포 집계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 (㎡)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 (kg)⑤	확정량 (포)⑥	월별공급 희망시기 (월)⑦	농가 서명 ⑧	살포 확인⑨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포)	서명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 (㎡)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 (kg)⑤	확정량 (포)⑥	월별공급 희망시기 (월)⑦	농가 서명⑧	살포 확인⑨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포)	서명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작성 요령】

① 성명 : 농지 경작자는 농지원부로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대장으로 확인

②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③ 신청면적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④ 기준소요량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별로 기준소요량(10a당) 산정

⑤ 신청량 : (③×④)÷1,000

⑥ 확정량 : 예산배정 시 시·군에서 확정

⑦ 월별공급희망시기 : 리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고 인수물량 기재

⑨ 살포확인 : 읍·면·동장이 지역조합 또는 이장의 협조를 받아 살포여부 확인(서명은 조합직원 또는 이장)

〔별지 제3호 서식〕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사업연도 (살포연도)	( )	

☞ 토양 개량제 미살포(방치)시 조치사항 안내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미살포(방치) 장소			1차 확인(방치우려)					
읍·면·동	리·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예정일	살포 예정일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보관·포장방법 등 관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미살포(방치) 장소			2차확인(이행확인)					
읍·면·동	리·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여부 (○,×)	살포 여부 (○,×)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 입회자는 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치 등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장 등을 대상으로 확인받는 경우에 활용

[첨부 2] : 2016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1.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 사업의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자금유형(국고)

○ 사업비/사업물량 : 63,956백만원/645천톤(추정)

* 제주도에서는 광특회계에서 국고 3,328백만원(31천톤) 별도 수립(추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주기(3년1주기) 전년도 1~4월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3] : **홈페이지, Agrix에 기재할 양식, 서류 : 해당사업에 한함**

1.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2월)

시·도(지자체)

○ 읍·면·동에서는 3년1주기 사업시행 전년도 1~4월중에 농가 또는 마을이장이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Agr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시·군·구에서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법정리·동별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제출받아 Agrix에 입력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관내 3년1주기 공급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함.

- 농가 신청물량에 대한 Agrix 입력이 완료된 이후로서 사업전년도 6월까지 추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으로 포함하여 3년 1주기 공급량을 마감하고, 마감이후(7월이후) 신청물량 등 변동사항은 매년 3월(연1회)에 Agrix에 수정입력한 후에 그 변동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이때 추가신청으로 인한 예산 증액분은 익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 사업신청에 따른 시·도별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예산확보(전년도 5~12월)

○ 예산(안)을 반영하여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전년도 10월)

* 각 지자체별 원활한 지방비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안) 가내시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

○ 시·군·구에서는 예산(안) 및 Agrix를 통한 농가신청물량을 감안하여 읍·면·동별 공급 대상물량 및 금액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구매 및 공급계약 결과에 따른 시·도별 공급계획을 통보

○ 각 시·도별 토양개량제 공급 희망시기를 제출받아 월별 사업비 배정계획 마련(당해년 1월)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시기별 공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시스템 보고(DB)로 대체

○ 시·군·구에서는 Agrix 신청에 따른 읍·면·동별 공급계획 및 농가별 공급계획을 시·도에 보고하고,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 통보(별지 제1호 서식) : 시스템 보고 및 정보연계(DB)로 대체(지자체 별도 제공 금지)

○ 읍·면·동에서는 Agrix를 통한 신청결과를 반영한 농가별 공급계획에 따라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 농가 공급

○ 읍·면·동장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에 공급농가별로 정리된 자료를 농가공급 이전에 마을이장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비 배정계획을 마련하고,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배정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매 분기 익월 25일까지 사업비 배정

5.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토양개량제 공급과 살포 실적을 월별로 파악하여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3호서식)

○ 읍·면·동장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2호서식)을 지역농협 및 마을이장에게 먼저 제공하고, 지역농협 및 마을이장의 협조를 받아 살포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 농가는 살포토록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시·군·구(시·군→시·도)

<규산질 비료>

구분	지적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읍·면·동									
합 계									

<석회질 비료>

구분	지적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읍·면·동									
합 계									

【작성 요령】

① 지적면적 : 읍·면·동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② 공급대상(면적, 수량) : 읍·면·동별 3년1주기(3년물량) 공급할 총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③ 당해연도 공급(면적, 수량) : 읍·면·동별 당해연도(1년)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④ 기 공급(면적, 수량) : 읍·면·동별 3년1주기로 기 공급한 면적 및 수량

⑤ 미공급(면적, 수량) : ②공급대상 - (③당해연도 공급 + 기 공급④)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시·도(시·도→ 농림축산식품부)

<규산질 비료>

구분	지적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시·군·구									
합 계									

<석회질 비료>

구분	지적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시·군·구									
합 계									

【작성 요령】

① 지적면적 : 읍·면·동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② 공급대상(면적, 수량) : 시·군·구별 3년1주기(3년물량) 공급할 총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③ 당해연도 공급(면적, 수량) : 시·군·구별 당해연도(1년)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④ 기 공급(면적, 수량) : 시·군·구별 3년1주기로 기 공급한 면적 및 수량

⑤ 미공급(면적, 수량) : ②공급대상 - (③당해연도 공급 + 기 공급④)

〔별지 제3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실적 보고(분기별)

○○시·도(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규산질 비료>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시군구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시군구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합계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석회질 비료>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시군구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시군구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합계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작성 요령】

① 연간 공급실적과 살포실적의 계는 같아야 함(다를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

② 석회질비료는 석회고토 및 패화석임

③ 공급 및 살포 실적은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보고

14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

○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농어업 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및 제38조(친환경농어업 등의 촉진)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을 원료로 한 우수 품질의 퇴비 생산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p		
○ 1등급 이상 생산업체 (%, 주지표)	70.0	58.7	65.0	70.0	2016.1	○ 1등급 이상 생산업체수/ 전체지원업체수×100 * 조사 : 농진청(12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안)	2017 이후
합 계	9,000	9,000	8,400	8,400	8,400
국 고	1,800	1,800	1,680	1,680	1,680
융 자	2,700	2,700	2,520	2,520	2,520
지방비	1,800	1,800	1,680	1,680	1,680
자부담	2,700	2,700	2,520	2,520	2,520

* 사업코드 : 축발기금-농림수산(100)-농업농촌(101)-축산업진흥(3700, 3800)-친환경축산지원(3735, 3834)-축산분뇨처리시설(326, 327)

○ 2016년 전남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1~4개소	1,200 (100%)	240 (20%)	240 (20%)	360 (30%)	360 (3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및 별표1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5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후숙창고(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제품생산·관리장비 :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스키로다,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 지원 제외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 최근 3년('13～'15)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축산분뇨처리시설 내역사업)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28개소 이상, 8,400백만원(국비보조 1,680, 국비융자 2,520, 지방비 1,680, 자부담 2,520)

○ 지원비율(%) : 국비보조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연리 2.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환)

* 예산 여건에 따라 국비 융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지원한도 : 300백만원/개소

구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300백만원 (100%)	60 (20)	90 (30)	60 (20)	90 (30)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미참여업체 지원한도 100백만원

① 사업대상자는 개소당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필요한 개·보수시설 신청

- ㅇ 시설규모가 개소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설치 가능
- ㅇ 시설 개체 시 한도액의 100%를 지원하고 보수의 경우는 한도액의 80%이상 지원할 수 없으며, 기존시설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② 사업주관기관은 개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신청에 따라 사업량(개소) 증가,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실제 설치비용과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적용

④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공사감리 실시

- ㅇ 시설 개·보수 사업임을 감안 별도로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는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뢰 시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부담

⑤ 사업주관기관은 제품의 종류, 사양 등에 따라 설치비 등에 차이가 있음으로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에서 제품의 가격 및 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하되 시설 및 장비는 품목별로 발효시설 1억원, 후숙시설 1.5억원, 악취방지시설 1억원, 포장시설 2.5억원(로봇시설 2억원)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 구매 입찰 단가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ㅇ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숙도 측정기, 수분 측정기가 없거나 내구 연한이 지난 경우 반드시 사업에 포함토록 할 것
- ㅇ 살포기, 부숙도 측정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관련 사업목적, 사업량 및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시달(11월말)

*** 도별 업체수, 가축분뇨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정부 예산에 대하여 도별 가내시**

도(시·군)

○ 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12월 상순)

- 주요 신청내용 : 목적, 신청기간,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1월 중순까지 도에 신청

○ 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1월 하순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도별 1~4개소 신청하되, 가급적 농식품부의 가내시 범위로 신청할 것

보조사업자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사업신청서(붙임 서식 1)를 작성하여 1월 초순까지 시·군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퇴비 생산시설 : 도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 선정방식 : 예산 범위 이내일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시·도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되, 초과될 경우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 등의 방법으로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최근 3년('13~'15) 사업실적, 필요성, 자부담 능력 등 양질의 퇴비생산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대상자를 선정

○ 도별 예산배정

- 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도에 통보

도(시·군)

○ 시·군·구에서는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1월 하순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에서는 시·군·구 추천에 따라 2016. 1월 하순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선정방식 : 시·도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서면·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자부담 능력 등)
- 농식품부 신청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1월 하순까지 신청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

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붙임 서식 1)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받아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 심의를 거쳐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과 협조(현장 및 심의회 참석)

○ 사업시행 중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서가 제출되면 시·군·구에서는 사업변경계획을 검토하여 시·도에 변경승인요청을 하고, 시·도에서는 변경 승인을 하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의 포기로 보조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하는 경우는 시·군·구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신청을 하고, 시·도에서는 농정심의회를 거쳐 확정

*** 단, 연초 사업자선정 절차의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자부담 우선 집행계획 등 자금조달 계획 등 포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4. 사업시행

도(시·군)

가. 친환경퇴비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제조업체별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제공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재)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과 농촌진흥청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받은 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하며, 유찰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 업체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다.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설치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토록 함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설치업체에 대해 설치중지, 하자보수, 재설치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 등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 검사 및 정산 실시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시행 전 해당 시·군을 통해 신고 등의 필요한 절차 이행

○ 사업대상자는 설치업체와 계약체결 시 사업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서 작성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실시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은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되 시험가동 후 하자가 발생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이행 시 보조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설치업체 등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치업체 등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음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축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도(사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시설	2016	2025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제품관리 장비	2016	2020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6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선정 결과 보고	2016.1월말	시·군(도) → 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붙임 서식 2, 3
○ 2016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보고	2016.12.31한		
○ 2016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7.2.15한		

《제 재》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7. 성과측정단계

○ 1등급 퇴비 생산업체비율(%)

- 생산업체의 1등급 가축분퇴비 및 퇴비 비율 측정
- 1등급 퇴비생산업체수/전체지원업체수×100
- 측정시기 : 12월(조사 : 농진청)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업체 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사업대상업체
- 평가기간 : 2017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퇴비 공급계획 대비 실적, 품질 및 유통관리, 운영실태 등
- 평가방법 : 농식품부 및 시·도의 연 2회 점검결과(40% 반영)와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평가결과(60% 반영)를 종합하여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평가결과 상위 20%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퇴비 지원물량 10% 증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환류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201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지원대상 : 생산시설, 제품생산·관리장비 등 2016년도 지침에 의함

【서식 1】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신청자</td><td>생산자단체 등의 명칭</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퇴비 생산 경력</td><td>년</td><td>종업원 수</td><td colspan="4">명
(상근 : 명, 비상근 : 명)</td></tr>
<tr><td>생산자단체 등의 형태</td><td colspan="3">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td><td colspan="2">참여농가수</td><td>호</td></tr>
<tr><td rowspan="4">신청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6">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천 원)</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정부지원(축발기금)</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국고계</td><td>보 조</td><td>융 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업내용별 규모(량)</td><td colspan="6"></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부

(주)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첨부 1>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table>
<tr><td rowspan="6">시 설
및
생 산</td><td rowspan="3">생산
시설</td><td>발효시설</td><td>후숙창고</td><td>악취방지시설</td><td>포장시설</td><td></td></tr>
<tr><td>(규격)</td><td></td><td></td><td></td><td></td></tr>
<tr><td>(능력)</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장비</td><td>휠로더</td><td>페이로다</td><td>부숙도
측정기</td><td>수분
측정기</td><td></td><td></td></tr>
<tr><td>대</td><td>대</td><td>대</td><td>대</td><td></td><td></td></tr>
<tr><td colspan="6">연간 생산능력 : 톤(가축분퇴비 톤, 일반퇴비 톤)

- 주요 사용원료 : 톤(원료별 비율 적시)</td></tr>
<tr><td rowspan="7">정 부
지 원
실 적</td><td>구분</td><td>단위</td><td>2012</td><td>2013</td><td>2014</td><td>2015</td></tr>
<tr><td>물량</td><td>톤</td><td></td><td></td><td></td><td></td></tr>
<tr><td>금액 계</td><td>천원</td><td></td><td></td><td></td><td></td></tr>
<tr><td>-국 고</td><td>천원</td><td></td><td></td><td></td><td></td></tr>
<tr><td>-지방비</td><td>천원</td><td></td><td></td><td></td><td></td></tr>
<tr><td>공급단가</td><td>원/포</td><td></td><td></td><td></td><td></td></tr>
<tr><td>등 급</td><td>특~2등급</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합계	정부지원(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시설	○○○○									
	○○○○									
	○○○○									
장비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 양질퇴비 생산계획

<첨부 2>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table>
<tr><td>생산자단체등의 명 칭</td><td colspan="2"></td><td>생산자단체등의 형 태</td><td colspan="2"></td><td>종업원수</td><td colspan="3"></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남/여)</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3">( ) -</td></tr>
<tr><td>주 소</td><td colspan="9"></td></tr>
<tr><td rowspan="2">신청내용</td><td rowspan="2">사업명</td><td rowspan="2">사업내용</td><td colspan="6">사 업 비 (천원)</td></tr>
<tr><td>합계</td><td colspan="3">정부지원 (축발기금)</td><td>지방비</td><td>자담</td></tr>
<tr><td>계</td><td>보조</td><td>융자</td><td></td><td></td></tr>
<tr><td>퇴비생산 시설 현대화</td><td><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첨부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 신청자

<table>
<tr><td>생산자단체등의 명칭</td><td colspan="2"></td><td>생산자단체등의 형태</td><td colspan="2"></td><td>종업원수</td><td colspan="2"></td></tr>
<tr><td>성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남/여)</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
-</td></tr>
<tr><td>주소</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3">신청내용</td><td rowspan="2">사업명</td><td rowspan="2">사업내용</td><td colspan="6">사 업 비 (천원)</td></tr>
<tr><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정부지원 (축발기금)</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담</td></tr>
<tr><td>계</td><td>보조</td><td>융자</td></tr>
<tr><td>퇴비생산 시설 현대화</td><td><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자부담 확보 능력

3.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생산능력 ○사업규모 ○품질정도 ○종업원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 또는 원료조달 ○판매지역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서식 2 : 엑셀】

(　　)년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보고

<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완료 및 정산 >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자수(개소)	사업계획		사업비										이월액		불용액	
					계획					실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담	소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보조	국비융자	국비보조	국비융자
합계	시 설																	
	장 비																	
	합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서식 3】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천원)				
	합 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시설 계) - -					
(장비 계) - -					

○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액(합계) (천원)	비 고
합 계						
(시설 계) - -						
(장비 계) - -						

15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지구조성)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8년까지 유기·무농약 재배면적 비율을 15%까지 확대

- 지구단지내 유기·무농약 재배면적 비중 : ('18) 40%

* '16~'18년간 연 50ha 규모, 20여개소의 친환경농업지구 선정 추진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		
▪ 광역단지·친환경지구 내 유기·무농약 재배면적 비중(%)	37.2	34.2	35.2	37.0(p)	2017.3	(광역단지·친환경지구 내 유기·무농약 재배면적 / 광역단지·친환경지구 사업구역 면적) × 100
▪ 유기·무농약 재배면적 비중(%)	12.0	7.3	7.0	10.0(p)	2017.1	(유기·무농약 재배면적/전체 경지면적) × 100
▪ 광역단지·친환경지구 사업주체의 친환경 농산물 취급실적	신규				2017.3	(지구·단지 사업주체의 유기·무농약농산물 취급실적/지구·단지내 유기·무농약 농산물 생산량) × 100

* '16년도 사업주체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목표치는 '15년말 실적조사 후 설정 예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660,919	85,402	57,373	37,933	222,666
국고보조	273,255	25,391	17,212	11,450	66,800
융 자	29,500	-	-	-	-
지방비	243,719	35,220	24,449	16,483	111,333
자부담	114,445	24,791	15,712	10,000	44,533

○ 2016년 전남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7개소	13,158 (100%)	3,947 (30%)	1,974 (15%)	4,605 (35%)	2,632 (2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나. 인센티브

○ 사업대상자 : ’06년 ~ ’14년간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사업주체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친환경농업지구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곡류는 50ha이상 들녘, 원예·과수 등은 10ha이상 집단화된 농지구역을 우선 선정

-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대실적이 우수한 기존지구(생산자단체로 한함)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물량 증가로 인한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필요 시 사업신청 가능. 단, 시설·장비 설치공사 완료(사업비 정산 기준) 후 5년이 경과된 지구에 한하여 추가 지원 필요성, 타당성 등을 평가·선정

  * **우수지구 : 사업지원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사업구역 대비 유기 인증면적 30% 이상 또는 무농약 인증면적 50% 이상 지구로서 선정당시 보다 사업구역 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30%이상 증가한 지구**

○ 사업대상자 선정 우대조건

-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 내 관행농업인의 친환경전환 희망시 선정 우대

- 사업주체가 직접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판매하거나, 벼는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 출하하고, 원예작물은 인근 APC와 연계한 공동출하 등 판매계획이 충실 시 선정 우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 사후관리기간에 있는 사업지구('06년이후 선정) 중에서 선정이후 3년 이내 사업성과 부진지구*의 관할 시·군에 대하여 3년간 지원 배제

  * **부진지구 : 사업구역 내 유기·무농약 재배면적의 증가가 없는 지구**

- 다만, 지원배제 지역에 해당되나, ①당해 시·군 전체의 유기·무농약인증 면적이 최근 증가세로 사업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②시군내 부진지구 외 우수지구가 있어 연계사업시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기존 부진지구와 차별성이 있고, ㉯사업계획이 충실하며, ㉰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감안시 사업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에서 사업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식품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음.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관련 [별표5]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다만, 1. 공통지원요건 '마'항은 '16년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적용

나. 인센티브

○ '06~'15년간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서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의 사업주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지
- 정부의 '14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

3. 지원대상

가. 친환경농업지구

○ H/W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

○ S/W :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사업지구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관할 지자체의 S/W 추가 지원계획 등을 사업신청시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 지원제외

-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의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농기계와 차량 구입비. 단, 친환경농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 퇴비살포, 제초, 병해충 방제 등 농기계 및 친환경농산물의 저온유통을 위한 소형 냉장차량 등은 지원 가능
- 개별농가단위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농업자재)
- 홍보, 마케팅 등 추진 시 주체로서 공동참여는 인정하나, 지원 등을 통한 간접 참여는 배제
- 인건비 등 단순 사업운영비

나. 인센티브

○ 우수단지의 친환경농산물 취급물량 확대로 부족한 생산·유통·가공 등 시설·장비의 확충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 등

- 친환경농산물 취급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및 세척·포장·가공시설 등의 용량 증설 및 개보수
-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한 시설부식, 탈취시설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퇴비시설의 개보수 및 생산량 확충 등을 위한 시설·장비 증설

*** 우수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농업인 교육·컨설팅, 공동 마케팅 등 S/W 지원계획을 사업신청시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 지원제외

-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의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농기계와 차량 구입비
- 개별농가단위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농업자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친환경농업지구

○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에 필요한 H/W 및 S/W의 구축을 위해 사용

- H/W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지원가능한 주요 시설·장비 예시 >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가.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왕겨자원화 시설·장비 ○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 퇴비 제조장, 지렁이 분변토 제조장, 배합기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정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시설·장비	*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유기·무농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 시설·장비 ○INM(병해충종합관리)·IPM(작물양분종합관리)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다.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장비	○ 친환경농산물 유통·제조·가공 시설·장비 -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집하장, 공동작업장, 제조·가공 시설 등 *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은 제외 - 가공시설은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 - 기존 판매장 등에서 간단한 가공식품(팝콘 등)을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소형장비 - 친환경농산물 저온유통 차량(1~5톤) 등	*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라.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 교육 : 농업인 교육장, 기자재(PC 등) 등 - 이용자 수요가 다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지구에 한함 -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 등은 제외 ○ 체험 : 체험학습장, 원두막 등 소비자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
마. 기 타	○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 S/W : 역량강화, 상품화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강화에 소요비용

구 분	용 도
농업인 역량강화	지역리더양성 교육·컨설팅 등
R&D	현장애로해소 생산기술 개발,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산업화 등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 공동 홍보·마케팅, 공동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산지유통조직 구축 등

나. 인센티브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에 필요한 H/W 구축을 위해 사용

- 대형 퇴비화시설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등 증설 및 개보수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농업인 교육과 소비자 현장체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증설 및 개보수

5. 지원형태 및 의무량

가. 친환경농업지구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사업기간 : 지역여건, 사업규모 및 계획에 따라 자율설정(1~3년)

- 사업기간은 1~2년을 원칙 하되, 여건 등에 따라 1년 추가 가능
- 1년사업 : 당해연도 국고 100% 지원
- 2년사업 : 1년차 국고 40%, 2년차 60% 지원
- 3년사업 : 1년차 국고 10%, 2년차 40%, 3년차 50% 지원

*** 지구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별 지원액 조정 가능**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 2~3년차 사업은 1년차에 농업인조직화 등 역량강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중점하고, 2년차부터 시설·장비 설치완료 후, 지속관리

나. 인센티브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사업기간 : 1년(당해연도 국고 100% 지원. 단, 사업진척도에 따라 자금배정)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친환경농업지구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0~3,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지구별 사업계획, 사업 추진상황 등을 검토, 평가하여 총 사업비 조정 가능**

나. 인센티브

○ 지원한도액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00백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예산, 단지의 여건 및 규모 등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전년도 12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대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전년도 1월말까지)

- 공모내용/기간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10일이상

○ 시·군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군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전년도 2월말까지)

- 사업계획서 검토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지침 준수여부 등 중점 검토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전년도 3월말까지)

관련기관 협조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지역농협,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사업신청지구의 사업계획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의견서(붙임 ⑤)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관련 「별지1호서식」의 '농림축산식품 자율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동 규정 제2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성검토서, 지침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성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에 전년도 1. 31까지 제출

* 인센티브사업은 지침에 정한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

<친환경농업지구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역실정과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참여 농가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무농약 이상)에 적합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투자계획을 적절히 수립 하여야 함.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지도

④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원순환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산분뇨 퇴비·액비화, 기존시설과 연계한 퇴·액비 공급계획, 녹비작물 재배를 비롯한 윤작 및 조사료 생산 등

⑤ 미생물 배양시설은 농촌진흥청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한 시설을 우선 활용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의 중복투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⑥ 상기 “지원 가능한 시설·장비 예시”외에 시설·장비도 지역특성상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가능. 또한, 예시 중 가~다 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투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i) 나 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와 다 항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 투자 계획

(ii) 가 항의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는 사업메뉴 나, 다 항의 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 투자

(iii) 라 항의 친환경농업 교육시설·장비는 시·군 등 기존 교육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업메뉴 가~다항이 갖추어진 경우에 투자

⑦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가능

- 유기축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구 또는 농가는 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도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받을 수 있음

⑧ 퇴비·액비화 저장시설은 지구내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퇴비·액비화 저장시설 설치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퇴비·액비화 저장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 지도를 받을 것.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도 단위 평가결과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비사업자 선정(전년도 4월)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1차평가 결과의 타당성 등

*** 인센티브사업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계획은 별도 수립**

○ 시·도별 경지면적,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지구사업 추진 성과, 사업신청량, 과거 사업비의 이월·불용액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설정한 예산 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예비사업자 선정 및 예산편성 추진

- 사업 모니터링결과, 사업성과 부진지역은 3년간 지원이 제한됨.

○ 지자체의 사업비 예산 계상을 위한 가내시(전년도 10월)

- 예산 가내시에 불구, 지자체의 본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지연이 초래될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 패널티* 부여

*** 당해 시군은 2년간 지원 제한. 관할 시도는 차년도 사업비 감액 등 조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 당년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면 예비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사업 당년도 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사업신청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3월말)

- 생산자협회,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가공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지역의 친환경농업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붙임⑥)에 따라 심사
- 시도 평가기준 : 사업목표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되, 현장실사를 병행할 것
- 사업자의 사전 사업준비 상태, 산지유통주체로서 발전 가능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적격한 사업자를 선정할 것
- 시·군별 친환경농업 여건과 기 지원된 친환경농업지구의 사업성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사업자가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자 확정 통지(1월)

시·도/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된 예산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사업시행(1월)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시설·장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지구 내 참여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농업환경 기초조사

- 시장·군수(지도기관)는 사업 실시전 아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농업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환경변동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토양기초조사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 농업용수 수질검사 : 도 농업기술원

· 기타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변경

- 기본원칙 :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불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지체없이 시설·장비 설치공사 완료. 다만, 사업주체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아래의 절차 등을 거쳐 변경 가능
- 변경 절차 : 시도 승인사항은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농식품부 승인사항은 시도에서 타당성, 당위성, 실효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최종 검토·승인
- 시도 승인사항 : 시설·장비 설치공사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집행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 농식품부 승인사항 : 사업주체, 사업부지 및 사업구역 변경, 총 사업비의 10%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 사업부지 변경 제한 : 사업자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므로 사업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가능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건설업 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예냉시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설계도를 이용(한국식품연구원 등)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로 부실공사 방지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가능
- 시공업체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자는 사업내용 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다만, 개별 제조시설 없이 기존 판매장 등에서 지구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한 간단한 가공식품(팝콘 등)을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소형장비(예시, 영화관 등에서 무농약 옥수수로 팝콘을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팝콘제조기 등)는 지구 외에 설치·운용 가능

시·도/시·군

○ 사업자 선정 후, 지구내 참여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는 경영컨설팅 이수 의무가 부여됨.

- 농업인 교육 : 정부의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연 7시간 이상 이수
- 경영컨설팅 :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농진청,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경영컨설팅사업을 통해 사업계획,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영개선, 브랜드 개발, 마케팅분야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사업자 선정 후 2년이내 이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 등을 근거로 시·도별로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한 후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 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사업완료 다음년도 3월말까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연 1회 이상 보조금 시설·장비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현지 점검·시정 추진

- 시도 주관으로 관리지구 및 광역단지의 시설장비 관리실태, 담보제공 여부, 지원 목적외 사용여부 등을 조사, 부적절한 사례 시정

- 매년 7~9월 중에 연 1회 실시하고, 조사 및 처분결과를 10월상순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지원 시설·장비의 설계, 업체선정, 착공, 준공 등 설치상황 및 예산 집행실태 점검 추진(분기 1회, 필요시 수시)

○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실적·농가·면적 등의 변동상황을 조사한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연 2회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매년도 6, 12월말 기준으로 조사하여, 당년 8월말과 익년 2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한 후, 대책 등을 포함하여 이행보고서 작성·제출하고, 사후관리 및 사업지도에 철저

- 시장·군수는 이행실적 부진지구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하여야 함.

-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인 10년 동안 조사대상에 포함
- 사업성과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사업예산 배정 등 자료로 활용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기계 및 장비 (축산분뇨처리 시설 포함)	구입일 또는 준공일	5년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32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대표자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으로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시군별 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단체 등의 농업현장 기술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농업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분석)를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작물별 적정한 유기물투입량 조절,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개선,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무소장)은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수확시기에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무소장)은 사업참여 농가에서 재배조건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서의 지구내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계획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참여농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제 및 처벌》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당해 보조금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평가지표 측정 >

○ 지구별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및 사업자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을 평가

- 평가지표 : 유기·무농약 인증실적 및 사업주체의 취급실적
- 평가일정 : 매년 1월중
- 평가방법 :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및 사업주체의 취급실적 대비 지구내 생산량
- 평가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및 지자체 행정조사자료 활용

< 자료제출 >

○ 보조사업자는 시설·장비설치공사 완료 후 10년간 사업성과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친환경농업이행실적에 대한 성과 분석

- 시·도별 사업지구의 인증면적 등을 관리하여 예산배정시 인센티브 부여

《환 류》

○ 우수단지 및 지구에 한해 추가 시설장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친환경농업부문 포상대상자로 추천

○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사례에 소개하여 홍보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시군)는 예산배정시 감액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5.12월말)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16.1.31.까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16.2.28.까지)하고,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6.3.31.까지)

○ 사업지구로 선정 된지 5년이 경과되고,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구에 대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함.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공통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성검토서(별지 제3호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현황 (붙임①)
  · 사업참여농가 영농상황 (붙임②) ·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붙임③)
  · 부지사용 승인서 (붙임④)
  · 사업대상지구 참여농경지 지적도(지번으로 집단화 여부를 판별이 가능한 것)

(별지 제1호서식)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지구명 :　　(주소 :　　전화 :　　)

생산자단체명	대표자	사업 규모	참여 농가	주작목	자금집행상황		
					예산	집행	진도
		ha	명		천원		%

❑ 세부사업계획 내역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합　　계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시설·장비	소　계			
기타(설계비 등)				
S/W	소　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보고서

(단위 : 백만원, ha, 호)

시도	시군	지구	지원연도	법인형태	호당 평균 소득	사업비		사업 구역 면적	농가수				사업성과(인증면적)						사업주체의 관리실적 ('16년 취급물량)						품목
									전체농가		인증농가		선정당시 면적			현재(2016년말)			생산량			취급물량			
							국고보조		당초	현재	당초	현재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작성방법)

- ○ 작성기준은 2006년 이후 선정된 지구(엑셀로 작성)
- ○ 친환경인증면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 ○ 법인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축협 등으로 구분
- ○ 농 가 수 : 사업구역내 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구분 조사
- ○ 품 목 : '16년말 기준, 인증면적의 품목과 면적을 기재(예시, 벼 20ha, 딸기 3, 잡곡 2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신청자 :
- 법인 설립연도 :
- 사업기간 : (년)
- 사업구역(ha) :
  · 사업구역내 품목별 인증면적 :
    * 유기·무농약 재배면적을 구분 기재
- 농가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사무실 소재지(전화) :

○ 대 표 자 : (세). H·P :

- 주 소 :

○ 주요경력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 친환경농업 여건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다. 생산품목별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계획(최소 10년간)

- 사업지구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대계획을 품목별로 작성하되, 사업주체의 역할을 함께 명시

라.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 사업주체의 농가와 계약재배, RPC 또는 APC와 연계한 공동출하 계획 등 지구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4. 사업계획

가. 지구내 시설·장비 운용계획

항 목	시설·장비	사업비	용도 및 필요성
1.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 별지 작성 가능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시설·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 ○ 소 계		
5. 기타(설계비 등)	○ ○ 소 계		
6. S/W 사업비	○ ○ 소 계		
합계			

나.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규모, 단가 등을 명시)

다.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사업 추진일정(월·주간단위로 상세 계획)

마.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계획

바. 사업지원시 기대효과

사. 사업구역 도면(지번별 면적, 지적도 등 농지구역 확인 자료)

5. 붙임자료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③ 사업참여 농가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사업부지 확보 계획 (사업신청자 작성)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⑥ 사업대상지구 평가표 (시·군/시·도에서 작성)

(붙임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용도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 목 입 식 현 황				판매방식
				벼	※재배	품목	기재-	
홍길동(ㅇㅇ세) (010-111-1234)	○○리 ○○	ha	※ 없음,유기, 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계 (인증종류별계 및 총계)								

* 축산은 참여농가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축사면적(평)을 기재

(붙임 ③)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지 구 명 :

◦ 사업주체 :

◦ 사업장 소재지 :

◦ 사업구역 : ha

- 사업구역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 ha

◦ 사업구역 내 농가수 : 호

- 그중 인증농가 수 : 호

◦ 사업계획 :

◦ 농가 동의내용 : (사업지구 선정시 사업계획에 따라 관행농가는 유기·무농약 재배로 전환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존 유기·무농약 인증농가는 인증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인증면적 확대 등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④)

사업부지 확보 계획

1. 사업부지 개요

◦ 매입 또는 매입예정 토지의 지번, 면적, 도시관리계획, 용도전환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기재

2. 사업부지 확보계획

◦ 시설별 부지확보 및 인허가 가능여부 검토, 토지이용계획 사전 확인여부 등

◦ 매입금액(단가) 및 매입 재원확보 계획 등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 ○ 시장·군 수 귀하

(붙임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사업주체 :

◦ 소 재 지 :

◦ 사업구역 :

◦ 사업계획(요약) :

2. 검토의견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 지역친환경농업여건(토양성분 등 포함), 참여농업인의 친환경농업 기술 정도,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이용계획,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관련시설·장비 보유상황 등

◦ 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능력 등

◦ 농협 :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사업 실적 및 수행능력, 경영실적 및 재무구조 건전성 등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 생산계획 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시장·군수

(붙임 ⑥)

사업대상지구 평가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①사업준비(25점)	㉮사업 추진의지(5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주체의 책임성 및 열의도 등 (5단계 평가)	
	㉯사업 참여농업인 역량(5점)	○참여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교육 실적 - 80%이상 이수 : 5점, 60~80%미만 : 4점, 40~60%미만 : 3점, 40%미만 : 0점	
	㉰사업 조직의 역량(5점)	○사업조직의 친환경농업관련 활동실적 및 경영컨설팅 실적 등(5단계평가)	
	㉱사업주체의 역량강화 노력(10점)	○참여 농업인 교육, 설명회 등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의 적정성 등(5단계평가) - 특히, 사업완료후 체계적인 농업인 역량강화 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적정성	
②사업여건(25점)	㉮계획지구 내 관행농업인의 호응도(5점)	○관행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협약 실적 - 80%이상 참여 : 5점, 60~80%미만 참여 : 4점, 40~60% 미만 참여 : 3점, 40%미만 참여 : 0점	
	㉯사업구역 규모(5점)	○사업구역의 면적 - 50ha 이상 : 5점, 40~50ha미만 : 4점, 30~40ha미만 : 3점, 20~30ha미만 : 2점, 10~20ha미만 :1점	
	㉰사업구역 집단화(5점)	○사업구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 90%이상 : 5점, 80~90%미만 : 4점, 70~80%미만 : 3점, 70%미만 : 0점	
	㉱사업구역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비율(5점)	○50%이상 : 5점, 40~50%미만 : 4점, 30~40%미만 : 3점, 30%미만 : 0점	
	㉲사업부지 확보 여부(5점)	○확보 : 5, 미확보:0	
③ 사업계획(5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사업목표(5점) ○사업계획(5점)	○사업목표의 적정성, 합리성 및 명확성(5단계평가) - 연차별 사업목표치 산출근거의 신빙성, 충실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적정성 및 완성도 등(5단계 평가)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5점)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5단계 평가)	
	㉰마케팅 전략(10점)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5단계평가) - 사업법인 명의로 대형유통업체, 농협, 학교급식 등에 납품,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과 채널확보 계획	
	㉱자부담 확보 계획(5점)	○재정확보 계획의 적정성 및 신빙성(5단계 평가)	
	㉲산지유통주체로 발전 가능성(5점)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조직의 성과창출 가능성 등 (5단계평가)	
	㉳시설·장비 관리계획(5점)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운영관리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등(5단계평가)	
	㉴타 지구와 차별성(5점)	○벼외 원예, 과수, 특용작물 등 재배농가의 유기·무농약 재배 전환계획 여부 및 실현가능성(5단계평가) -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마케팅, 농업인 역량강화 방안 등의 차별화전략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 이용계획(5점)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농업 실천 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5단계평가)	
④가 점(+10점한도)	○관할 시군의 사업의지	○관할 시군의 계획지구내 농업인 역량강화 등을 위한 S/W 및 사업주체의 컨설팅 지원계획 등	
⑤감 점(-20점한도)	○현장실사 중 사업계획서 허위사실 발견	○건당-10점	
합 계			

* 5단계 평가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별지 제4호 서식)

인센티브사업 계획서

Ⅰ. 사업 개요

1. 단지 현황

○ 사업단지명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 사업주체 : ○○(대표자 : ○○○)

- 참여법인, 참여단체 : ○○농협, ○○법인, ○○, ‥

○ 주소(사업주체 법인) :

○ 참여 농가수 및 경지면적 : 호(ha)

○ 단지내 주요작물별 재배면적 : 총 ha(벼 , 콩 , 고추 , 딸기 , ‥)

- 단지내 주요 축종별 두수 : 한우 두, 젖소 두, 돼지 두, 닭 수, ‥

○ 단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 총 ha(유기 : 벼 , 콩 , 고추 , 딸기 , ‥, 무농약 : 벼 , 콩 , 고추 , 딸기 , ‥)

○ 단지내 친환경축산물 인증 : 총 두(유기 : 한우 , 젖소 , 돼지 , 닭 ‥, 무항생제 : 한우 , 젖소 , 돼지 , 닭 ‥)

2.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구분	단지내 전체 참여농가, 경지 면적 변동추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		
	농가수	경지 면적	인증농가수			인증면적			인증축산 농가수	유기	무 항생제
			유기	무농약	저농약	유기	무농약	저농약			
단위	호	ha	호	호	호	ha	ha	ha	호	두	두
사업추진 전년도									소 돼지 · ·		
사업추진년도									〃		
2년차(년)									〃		
3년차(년)									〃		
4년차(년)									〃		
5년차(년)									〃		
6년차(년)									〃		
…									〃		

3.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취급실적						취급액					
		생산량			취급물량			생산액			취급액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사업추진 전년도													
사업추진년도	벼												
	콩												
	…												
2년차(년)													
3년차(년)													
4년차(년)													
5년차(년)													
6년차(년)													
…													

* 주요 생산품목별 작성

4. 세부 사업내역

○ 기존 시설·장비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	소 계						

○ 추가 지원시설·장비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소 계						

Ⅱ. 사업계획서

※ 아래 작성항목의 내용이 포함되게 작성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추가, 작성내용 순서 변경, 작성항목의 제목(문구) 변경 등 가능

1. 인센티브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광역단지사업 추진현황

○ 기존시설의 경영수지

○ 광역단지 내 농업인 교육실적

○ 단지 경영컨설팅 결과

○ 농가 계약재배 및 마케팅실적 등

* 사업주체의 역할과 단지내 친환경농업 확산 기여도 등 기술

3. 사업 세부추진계획

○ 추가 시설·장비별 운용계획(규모, 용도, 단가, 필요성 등)

- 시설별 운영 및 수익창출 계획 포함

-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등 여건을 분석, 운용계획 수립

○ 재원(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 사업 운영비 확보계획 등

○ 사업부지 확보 여부 및 인허가 등 제한여부

○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

○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전략

4. 기대효과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검토의견은 별첨

16 친환경 농자재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등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수준 유지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P		
• 유기물 함량 (%,부지표)	2~3	· 논밭 : 2.0 이상 · 과수시설 : 2.5이상	· 논밭 : 2.0 이상 · 과수시설 : 2.5이상	· 논밭 : 2.0 이상 · 과수시설 : 2.5이상	매년 3월	경지 이용별 유기물 함량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25,000	15,000	17,000	15,980	15,980
국고보조금	5,000	3,000	3,400	3,196	3,196
지방비	7,500	4,500	5,100	4,794	4,794
자부담	12,500	7,500	8,500	7,990	7,99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다만, 특정사업 기 수혜자 등 신청자격 제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나. 천적, 미생물재제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재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를 직접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려는 자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녹비작물 종자

○ 지원자격 :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제한조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37백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 직업종사자, '경관보전직불제' 및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등 기 수혜자(해당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우선순위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녹비재배 필요성이 높은 농업(법)인(단지)에게 지원 우선순위 부여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법)인(유기>무농약, 농업단지 포함) > 친환경농업단지(광역>지구, 관행농가) > 기타(지자체 자율 결정)**

○ 지원 대상농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나. 천적, 미생물재제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 지원자격 : 천적, 미생물제제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를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 제한조건 :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관련 [별표5]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다만, [별표 5] 1.공통지원조건 “마”의 규정은 적용 제외

○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지원 대상

가. 녹비작물 종자

○ 지원 품목(4개)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

*** 들묵새는 작물 특성 및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지원**

나. 천적, 미생물재제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 지원 품목

- 천적, 미생물재제 등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규정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유기농업자재 공시 여부는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tima.rda.go.kr/organic/index.action)→공시 및 품질인증현황에서 확인 가능)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관련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2015년도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6년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자재와 자재원료 50% 이내로 지원

○ 지원 제외

- 상토 및 동일 필지에 국고보조금으로 별도 지원 중인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이 중복 지원될 경우 본 사업으로 지원 할 수 없음.
- 보조금 지원제한(판매금지 1년, 공시취소 2년) 중인 업체(합병, 승계, 분할업체 등도 포함)의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행정처분 내역은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tima.rda.go.kr/organic/index.action) → 공시 및 품질인증 현황에서 확인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녹비작물 종자

○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구입한 녹비용 작물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나. 천적, 미생물재제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다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부담이 가능

○ 사업 의무량

- 녹비작물 : 공급 받은 녹비작물 종자를 유휴농경지(신청농지)에 재배한 후, 지력 증진 등을 위해 당해 농지에 환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녹비작물 종자

○ 지원 한도 :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들묵새 20kg

- 다만, 농가(법인)당 품목별 종자 최소 신청량(지원량)을 녹비(청)보리·호밀 20kg, 헤어리베치 5kg, 들묵새 1kg으로 정함.
- 보증종자 우선 구매·공급 및 발아율 80%이상 녹비종자 대상 공급 원칙

  *** 품목별 종자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름**

○ 농가 공급단가 : 품목별 공급단가는 농협중앙회의 종자공급 완료 후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별도 통보(사업년도 11월중)

나.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 지원 사업 한도액 :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한도액이하 사업은 지원조건에 따라 자금 지원

○ 세부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원가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유기농업자재의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인 단체와 협의하여 유기농업자재를 공동구매 후 농가에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필요시 현장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Agrix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3월초)

- 사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는 신청품목을 상세히 기재하게 하되, Agrix 입력시에는 녹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로, 유기농업자재는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으로 자재원료는 '자재원료'로 입력
- 사업대상자 선정시 시·도(시·군·구)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 녹비작물은 지원 우선순위(친환경농가>친환경농업단지>기타)를 고려하여 친환경농가·단지 및 사업 참여의지가 높은 농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녹비작물 지원 대상 필지는 차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배정물량이 제한(50%이내)되고, 녹비작물 생육부진(농업기술센터 확인서 첨부)시 유기질비료 추가지원(50%이내)이 가능함을 안내 철저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중)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서약서 첨부) 제출 [별지 1호 서식]

- 신청기간 : ’16. 1. 1. ~ ’16. 2. 28.(2개월)
-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에 녹비작물 종자대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 내역 등 사업물량을 검토하여 확정한 후, Agrix 등록 및 각 시·도별 사업량을 통보(녹비종자는 농협중앙회에도 통보, 3월)

- 녹비작물 종자 품목별 사업량은 예산한도 내에서 녹비효과, 경제성, 국산화 정도,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시도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AgriX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시행**

시·도(시·군·구)

○ 시·도는 농식품부의 시·도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3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Agrix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녹비작물 종자는 각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도 통보

- 사업대상자는 매 1년 단위로 선정

* 시・군・구에서는 필요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재배하는 유기·무농약 인증 재배작물의 면적, 지원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별 국고보조 금액을 확정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증면적(해당 농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 지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종류 등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특히, 녹비종자는 사업대상자(사업량 포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된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 등 철저

농협중앙회

○ 각 시·군·구로부터 확정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량을 통보 받는 즉시 관내 조합에 통보하여 농협전산시스템과 대조(3~4월중)

* 시·군·구 사업량과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의 자료를 토대로 재입력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

○ 녹비종자별 예정공급단가를 포함한 국내외 조사를 통한 녹비작물 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보고(2월)

- 사업물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12월~1월)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보증・비보증 구분) 및 가격동향 등

-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서에는 품목별 물량 확보방안(국가별 수입량,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도입·공급 방식 및 절차(국산·수입산 구분),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국산·수입산 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특히, 품목별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전량 입찰제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품목별 적기 공급 추진(농가단위 공급은 '16.10.10.까지 완료)

* **품목별 공급기간 : (헤어리베치, 들묵새) 8.10.~9.5. / (녹비보리, 호밀) 9.1.~10.10.**

- 확보한 녹비종자를 기한내에 일선농협 및 농가에 배송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농진청(기술원, 기술센터),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농가대상 교육·홍보·지도 실시(연중)

- 녹비종자의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유기농업자재 이용방법, 자재원료를 활용한 자재 제조방법 등 농가 교육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교육·홍보 등 추진상황을 매월 집계관리

농업인 등

○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희망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공급 예정단가를 기준으로 한 자부담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녹비작물 종자 지원비용은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아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e-호조)
- 시도에서는 농식품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교부결정
- 시·군·구에서는 교부된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에 녹비종자 지원자금을 지급하되,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을 지급(시·군·구별 사업비의 70%이내)

○ 사업자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법령「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사업자금의 집행원칙)에 따라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액을 집행한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지급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구매 증빙자료(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사진 등)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실제 구매(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집행. 특히, 자재원료는 사업자 등록업체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여부를 관할지역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하여 인증 취소농가는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시·도(시·군·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별지 4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구분 명시

○ 시·도는 배정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자금 지급 요청

-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시·군·구별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산급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 공급예정단가와 최종공급단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및 농업인 등에게 차액을 청구 또는 반환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사용내역, 사업대상자명의 예금계좌에서 업체계좌로 직접 이체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현장 의견수렴 및 사업 추진상황 등 점검(연 2회이상)

- 부정수급 등 확인 시 보조금 회수, 지원 제한 등 조치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당지원 사례 등 적발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상·하반기 연 2회(4월, 12월)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파종상황, 녹비작물 생육·이용 현황 및 자금집행사항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점검 완료 후 7일 이내)

- 실제 녹비작물 재배·토양환원 여부 확인 및 생육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 점검결과 부당사용자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하는 등 관리 철저
- 일제점검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등 타사업과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사업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필요시 교차점검 또는 합동점검)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가별 대상필지(지목, 친환경단지 여부 등), 재배품목, 파종면적, 파종시기, 녹비작물 생육 및 이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대장(전자파일 형태도 가능)으로 관리

《제 재》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다른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 보조금 반납조치를 취하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시 서약서 징구[별지 2호서식]
- 공급받은 녹비작물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방치 또는 외부에 판매하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참여 제한 조치

○ 공시 및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판매금지 및 공시등 취소의 행정처분시 당해연도 공급대상에서 제외(자금집행 불가)하고 해당업체는 다음연도부터 판매금지는 1년, 공시취소는 2년간 유기농업자재 공급업체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중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당성여부 측정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17년에 추진할 사업계획 이행 소요예산을 농식품부에 사전 신청('16.10월초)

- '16년 예산 가내시 일정을 고려하여 기한 내에 제출

○ '17년도 유기농업자재공급은 친환경생산자단체를 통한 통합구매방식으로 추진 예정(농가개별구매 불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 등은 '16년도 사업내용을 참조하되, '17년도 사업 신청은 '16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

(별지 1호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주소</td><td colspan="8">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td></tr>
<tr><td>성명
(법인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4">자택 : 핸드폰 :</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d>E-mail</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신청농지(필지)</td><td colspan="4">신청 내용</td></tr>
<tr><td>읍·면·동</td><td>리·통</td><td>지번</td><td>지목</td><td>지적
(㎡)</td><td>친환경 구분</td><td>단지 구분</td><td>신청
품목</td><td>신청량
/면적</td><td>금액
(원)</td><td>파종시기(월)</td></tr>
<tr><td></td><td></td><td></td><td>1. 논
2. 밭
3. 과수원</td><td></td><td>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저농약인증
4. 관행농업</td><td>1. 광역친환경단지
2. 친환경농업지구
3. 기타</td><td></td><td>* 품목별 단위 면적당 지원기준 참고</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공급희망조합
* 녹비종자만 기재</td><td colspan="10">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td></tr>
</table>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하

* '신청품목' 란 작성 요령
  - 녹비작물 종자(4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로 구분 기재
  - 유기농업자재 : 미생물제재 등 자재명(상표명)을 기재
  - 자재원료 : 허용물질의 종류(88종)를 기재
* '파종시기' 란은 녹비작물 종자 신청시에만 기재

(별지 2호 서식)

서 약 서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면서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 등이 확인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 취소, 보조금 반납, 타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자 :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선정결과

〈시·군 → 사업대상자 통보용〉

수 신 : ○○○ 귀하 년 월 일

발 신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선 정 자	주 소			
	농가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연 락 처	

사업비(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16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구입・사용(카드구입, 통장계좌이체)하고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별지 4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수 신 :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 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우리 시·도(시·군·구)의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 천원)

시·군	사업집행실적			예 산 액				정 산 결 과			
	지원 품목별	농가수	면 적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헤어리 베치										
	녹비(청) 보리										
	호밀										
	들묵새										
	천적										
	미생물 재제 등										
	자재 원료										

5 2016년도 사업별 달라진 제도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부스 임차료 지원>

구 분	현 행(2015)	변 경(2016)	변경사유
운영 계획	○ 부스 : 28개소 ○ 총사업비 : 72.8백만원 * 개소당 지원액 : 2,600천원	○ 부스 : 28개소 ○ 총사업비 : 84백만원 * 개소당 지원액 : 3,000천원	부스임차료 인상에 대한 증액지원

<친환경직불금>

구 분	현 행(2015)	변 경(2016)	변경 사유
무농약지속 직 불 금 (신 설)	○ 친환경농업 직불금 - 유기농 직불금 : 1~5년차 (국비 100%) - 유기농 지속 직불금 : 6~8년차 (국비 50%, 지방비 50%) - 무농약 직불금 : 1~3년차 (국비 100%) * 무농약 4년차부터는 직불금 지원 중단	○ 유기농·무농약 직불금 - 유기농 직불금 : 1~5년차 (국비 100%) - 유기농 지속 직불금 : 6~8년차 (국비 50%, 지방비 50%) - 무농약 직불금 : 1~3년차 (국비 100%) **- 무농약 지속 직불금 : 무농약 4년차 농가부터 현행 무농약 직불금의 50%를 지속 지원 (ha당 논 200천원, 밭 500천원)**	무농약 인증농가의 친환경농업 포기 예방

<친환경농업 장려금 지원>

구 분	현 행(2015)	변 경(2016)	변경 사유
지원단가	○ 전 작목 동일하게 지원 - 유기농의 경우 지원 한도 (ha당) : 120만원	○ 친환경 재배 난이도에 따라 작목별 차등지원 - 유기농의 경우 지원 한도(ha당) : **과수 150만원, 채소 130만원, 벼 120만원**	친환경농업의 질적 향상과 정착을 위해 재배 난이도에 따라 지원 차등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구 분	현 행(2015)	변 경(2016)	변경 사유
지원한도 및 금리 조정	○ 개소당 지원한도 : 400백만원 ○ 융자조건 (3년 거치 3년 상환)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연리 3% - 민간(개인)업체 : 연리 4%	○ 개소당 지원한도 : 300백만원 ○ 융자조건 (3년 거치 3년 상환)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연리 2% - 민간(개인)업체 : 연리 3%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원 한도액을 축소하고 융자금리 하향 조정

<유기질비료 지원>

구 분	현 행(2015)	변 경(2016)	변경 사유
사업대상자, 지원단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가** ○ 부산물비료 지원단가 - 특등급 1,300원 - 2등급 700원	○ 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부산물비료 지원단가 - 특등급 1,100원 - 2등급 800원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부산물비료 등급별 제조원가를 반영

Ⅲ

식량작물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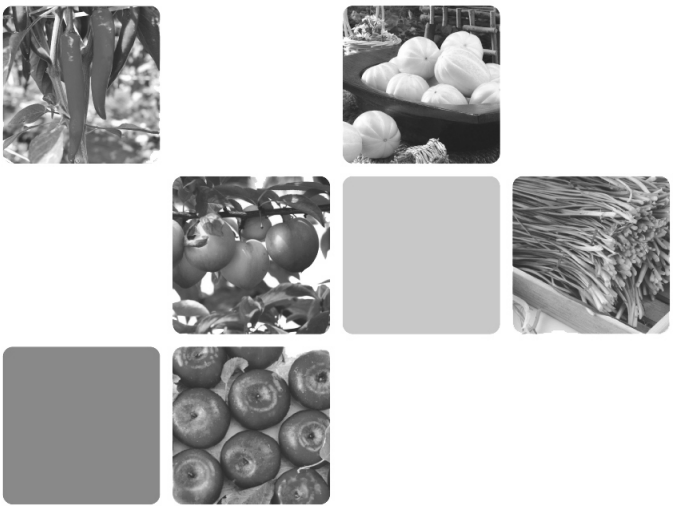

Ⅲ. 식량작물 분야

1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 및 교훈

가. 주요 성과

1) 고품질 쌀 안정 생산대책 추진으로 농식품부의 '우수기관' 표창 수상

○ 쌀 생산량 : 866,202톤(전국 4,327천톤의 20%) * 전국 1위
- 10a당 쌀 생산량 : 511kg(전년 478kg 대비 6.9% 증가)

○ 재배 면적 : 170,185ha(전년 169,585ha 대비 0.4% 증)

※ 병충해·태풍 등 피해가 없고, 벼 생육이 양호하여 '97년 이후 최대 풍작

2) 들녘별 쌀 경영체를 쌀 산업의 선도 핵심 주체로 육성

○ 50ha 이상 들녘별 쌀 경영체 지원 : 44개소(교육·컨설팅 35, 시설·장비 9)

○ 공동 농작업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3)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작물 경쟁력 제고

○ 밭 식량작물 산업 육성 : 2개소(계열화 경영체 육성 1, 맥류 건조·저장시설 1)

○ 보리, 밀 등 맥류 재배 확대 : 19천ha(전년 14천ha 대비 35.7% 증가)

○ 밭작물 품목별 주산지 지정·고시 : 맥류, 두류 등 13개 품목(35개소)

4)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및 농업 기계화율 제고

○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축 지원 : 11개소, 106억원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 8종, 146억원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5,333대, 133억원

5)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도모

○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 128,652농가, 1,756억원(국비)

○ 밭농업 직불금 지원 : 118,683농가, 367억원(국비)

○ 조건불리 직불금 지원 : 35,222농가, 83억원(국비 66, 도비 5, 시군비 12)

○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 570억원(도비 228, 시군비 342)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46개 품목, 690억원(국비 345, 도비 7, 시군비 등 338)

나. 반성 및 교훈

○ 쌀 소비감소와 생산 과잉으로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대체작목 육성 필요

○ 소비자가 선호하고, 지역에 적합한 전남쌀 대표 품종 중심으로 쌀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경쟁력 강화

2 2016년도 추진계획

가. 안전하고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

○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 77개소, 6,740백만원

- 사업내용 :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공동 이용 시설·장비 지원

○ 고품질 우량 종자 공급 확대 : ('15) 4,550톤 → ('16) 4,650톤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 9종, 14,483백만원

나. 밭농업 기계화 촉진 등 경쟁력 향상

○ 밭작물의 조직화·규모화 및 수급조절 능력 배양을 위해 품목별 주산지 지정

- 대상품목 : 16개 품목(밀, 보리, 콩, 고구마, 감자, 귀리, 수수, 메밀 등)
- 지정기준 : 품목별 재배면적과 출하량 기준 충족(밀·겉보리 200ha 이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

-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 7개소, 9,200백만원
-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 15개소, 900백만원
-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 4개소, 800백만원

○ 밭 식량작물 생산·유통 체계화를 위한 '공동 경영체' 육성 : 1개소, 9억원

다.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장치 강화

○ 현행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내실화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

- 고정 직불금 : 179천ha, 1,837억원(ha당 평균 100만원)
- 변동 직불금 :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쌀값과의 차액 85%에서 고정 직불금 제외 금액

○ 밭 농업 직불금 지급체계 일원화 개선

- 밭 고정 직불금(25만원/ha) + 밭 26개 품목(40만원/ha) → 밭 농업 고정직불금(40만원/ha)
- 논 이모작 지불금(ha당 50만원)

○ 농작물 재해 및 수입보장 보험 지원 : 농작물 - 49개 품목, 수입보장 - 4개 품목

- 지원기준 : 산출 보험료의 80% 지원, 농가는 20% 부담

라. 보리·밀 등 맥류산업 활성화

○ 맥류 재배 확대 : ('15) 19천ha(보리 15, 밀 4) → ('16) 22천ha(보리 17, 밀 5)

○ 맥류 건조·저장시설 확충(누계) : ('14) 2개소 → ('16) 5개소

○ 우리 밀 생산 장려금 지원 : 16천톤, 5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350)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식량작물분야)

1. 목 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자율적 수급 조절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사업 주관기관 : 시·군

- 시군 통합마케팅조직(또는 광역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 되도록 농가,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등 개별경영체를 1개 읍·면 단위 이상 권역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광역 통합마케팅조직 : 복수 시·군 이상의 농가,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통합마케팅조직(참여조직이 동일 품목으로 복수의 통합조직 참여는 불가)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법인 조직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나.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주관기관 요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식량작물 주산지 시·군

〈 **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현황**(2015년 11월 26일 기준) 〉

구 분	품 목	주산지 지정 기준		주산지 지정 시·군
		면 적	출하량(생산량)	
맥류	밀	200ha 이상	656톤 이상	구례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쌀보리	500ha 이상	1,245톤 이상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맥주보리	300ha 이상	825톤 이상	보성군, 해남군
두류	콩	1,000ha 이상	1,680톤 이상	고흥군, 무안군, 영광군, 신안군
	팥	50ha 이상	54톤 이상	장흥군, 신안군
	녹두	20ha 이상	19톤 이상	신안군
서류	고구마	500ha 이상	7,550톤 이상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감자	500ha 이상	12,605톤 이상	보성군
잡곡류	옥수수	100ha 이상	495톤 이상	여수시, 보성군, 화순군, 무안군
	기장	50ha 이상	60톤 이상	영광군, 신안군
	메밀	50ha 이상	45톤 이상	진도군
	조	50ha 이상	60톤 이상	고흥군, 신안군
	귀리	100ha 이상	300톤 이상	강진군, 해남군

○ 특화수준 및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특화수준 : 신청품목의 특화계수가 전국 대비 1 이상이거나 전라남도 대비 2 이상인 시·군

전국 대비 ○○군 밀 특화계수

{(○○군 밀 생산액)÷(○○군 농업 생산액)}/{(전국 밀 생산액)÷(전국 농업 생산액)}

전라남도 대비 ○○군 밀 특화계수

{(○○군 밀 생산액)÷(○○군 농업 생산액)}/{(전라남도 밀 생산액)÷(전라남도 농업 생산액)}

* 공식 통계가 없을 경우, 품목 생산액 대신 최근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재배면적 적용, 농업생산액 대신 최근 통계자료의 경지면적을 적용

- 준 주산지 : 일정기준에 해당되어 해당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주산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군(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주산지 요건을 갖추도록 생산규모 확대조건)

  * **전년도 재배면적이 주산지 기준의 90%이상이며 농가 조직화 수준,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 농발계획')' 상 식량작물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사업 품목의 지역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공동마케팅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시·군 내 통합마케팅조직이 없더라도 개별조직 단위로 신청 가능**

  * **밀, 보리와 같이 유통 여건상 현물상태로 계약재배(수매) 등으로 납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마케팅 조직과의 계열화는 필수조건에서 제외**

  * **품목광역조직(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 조직)은 통합마케팅조직과 동일한 자격부여**

○ 공동경영체의 품목별 규모

- 공동경영체가 관할하는 재배면적이 해당 시·군의 해당 품목에 대한 전체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

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조직

- 시·군에서 제출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에 대해 선정 심사 후, 심사 결과(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최대 3개년 중 2년 지원)된 조직

  *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지역 농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 지원하며, 농식품부-도-시·군 정책의 결합도가 우수한 지역 우선 지원**

○ 지원대상 품목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품목만 해당됨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 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단, 기초역량 진단 결과 정착·심화단계일 경우라도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필수 농자재 중 공동구매가 필요한 자재(생분해성필름 등) 구입비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농기계임대사업 주체를 통해서 지원**

***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토지 제외)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상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 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마.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전국 15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1년차 사업 종료 후 지원 대상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조정 가능, 1년차 평가 결과 조직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2년차 사업비 지원 유예(1회) 또는 중단

- 지원형태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한도 : 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군별 20억원 이내(1년차 30%, 2년차 70%)

  * 1개 시·군에서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밭작물공동경영체가 참여하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20억원 이내에서 조직별 사업비 배분 가능

  * 선정 심사 결과 1개 경영체의 사업규모를 감안(원예작물은 경영체의 재배면적이 시군 내 재배면적의 30% 이상, 식량작물은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하여 필요시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가능

4.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 신청 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생산자 조직화, 유통 계열화 등을 위해 사업 신청 희망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컨설팅 실시

○ 시·군은 지자체장 주관으로 시·군 단위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 내 협의를 통해 품목별 생산자 조직 중 선도 조직을 결정하고 선도조직을 중심으로 규모화·조직화하여 통합마케팅에 참여(계열화)하기 위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수립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은 지역 농발계획상 정책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 '사업계획서'(친환경농업과-4934, 2015.11.18.호 참고) 상에 조직별 지원내용, 사업물량 등을 명시

○ 시·군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에 제출

○ 도는 도 단위로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 계획일 경우 시·군과 같은 절차로 '전라남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 시·군 단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도 단위 지역 농발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해당 내용을 포함

○ 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 선정 심사에서 제외**

*** 사업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aT는 지자체, 생산자 조직, 마케팅 조직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시·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계획 수립 방향〗

(1)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반드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 주체 : 시·군

○ 계획기간 : 2016년~2018년

***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수립된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등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하며 해당 내용 명시**

(2) 주산지협의체 구성

○ 구성 :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신청 품목의 생산, 기반조성, 상품화, 유통, 마케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구성

○ 협의체의 역할

① 시·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방향 설정

② 사업계획 검토, 자문,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⑤ 기타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통합마케팅조직,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상품화-유통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 계열화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밭작물 생산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유통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신청품목 관련 생산·유통 시설 현황 및 활용도 분석(보유현황, 가동현황, 생산량 대비 과부족 등)
- 관련 상위계획 분석(상위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내용, 향후 연계 방향)

○ 중장기 비전과 목표
- SWOT분석(전략과제 제시)
-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비전과 육성목표, 핵심 전략과 로드맵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중장기 비전과 목표, 사업 추진 전략과 로드맵

○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 추진 방향 및 체계
- 농가조직화,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예산 집행 계획)
- 계획에 따른 부문별 성과 목표

○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주산지 협의체 운영계획

(5) **기타 :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 심사 평가 이후 지원 대상 경영체, 품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식품부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차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

나. 사업자 선정 단계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aT에 통보

○ aT는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서면·발표·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현장평가 시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의 생산자 조직화 등 사업여건 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마케팅조직과의 협력체계 등을 파악하고, 주산지협의체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농식품부는 aT로부터 제출된 선정 심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다. 사업비 배정단계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당해연도 사업비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 시·군(도)은 당해연도 배정액 확정 후 교부받을 금액을 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고 월별 소요자금을 전월 20일전까지 도(농식품부)에 교부 요구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예산 교부 요구가 있을 시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시·군은 공동경영체로부터 자부담액을 우선 납부 받아 예산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라.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해당 시·군은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밭작물공동경영체와 협의하여 수립하여 도에 제출

- 농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동경영체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 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6.2월말까지)

○ 농식품부는 시·도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세부사업추진 계획 검토 결과 보완 필요시에는 계획 승인 시 부대의견을 포함

○ 시·군은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도에 신청하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마. 이행 점검단계

○ 농식품부는 시·도 및 aT와 합동으로 연 3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 aT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지자체에 공지

- 사업비 집행 실적, 사업별 추진 상황, 협의체 운영 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군(또는 시·도)에 요구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밭작물공동경영체 운영 실태 조사·분석

-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관련기관(농촌진흥청, 농협 등)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

○ 도(시·군)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 도(시·군)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광역주산지협의체 단위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

바.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aT에 제출(별도 서식)

○ aT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연차평가 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

< 환 류 >

○ 농식품부는 연차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수급안정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융자지원, GAP 기반조성 지원 등 관련사업 지원 시 우대

- 연차평가 결과 2차년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은 예산 지원 중단·유예

사. 기타

○ aT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정책협의회 주관·운영

5.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2 맥류 건조 · 저장시설 지원

1.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낙후된 맥류 생산·유통구조를 체계화하여 자급기반 확충 및 맥류산업 경쟁력 제고

- 수확 후 건조·저장 등을 일괄 처리토록 하고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유통비용 절감 등을 추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3.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주관기관 : 영광군

○ 시행주체 : 영광군농업협동조합

나. 지원요건 및 자격

○ 자격요건 : ’16년 사업신청자는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법인설립이 1년 이상 경과되고, 전년도 판매실적이 3억원 이상인 법인체

○ 지원자격 : 맥류 재배면적이 3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의 사업대상자

다. 지원자금 용도

○ 지원내용 : 맥류 건조·저장을 위한 원료투입구, 사일로, 건조기 등

- 사일로는 1,000톤 규모로 설치(예시 : 500톤×2기)

< 세부 지원내역 예시 >

구분	기본사항	세부내용
신설	1,000톤 규모	원료투입구 20톤 이상, 사일로(송풍, 냉각장치, 이송라인), 건조기 20톤 이상
증설		사일로(송풍, 냉각장치, 이송라인), 건조기 20톤 이상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 가능

* 기존 건조·저장시설의 개보수 및 가공시설 설치비 지원은 제외

라. 지원형태

○ 총사업비 : 900백만원(국비 270, 도비 54, 시군비 216, 자담 360)

- 경영체의 자부담 능력이 미약할 경우 자부담의 일부를 시·군비로 부담 가능

* 부담비율 : 국고 30%, 도비 6%, 시 · 군비 24%, 자부담 40%

○ 사업기간 : 2016. 1.～12월(1년)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설은 9억원, 증설은 6억원 지원

공 정	단위 기계	밀		보 리		지원규모	
		평균설치 대수(대)	평균소요 동력(kW)	평균설치 대수(대)	평균소요 동력(kW)	처리용량	지원금액 (백만원)
원료 투입 및 정선, 계량부	풍력선별기	1	1.5	1	1.5		
	원료조선기	1	3.7	1	3.75		
	호퍼스케일	1	-			·20톤/시간	479
	버킷엘리베이터	3	10.6	3	14.7	·30톤/시간	573
	체인컨베이어	1	2.6	2	5.9		
	소 계		18.4		25.9		
화력 건조부	순환식건조기	1.5	25.1	3	51.3		
	버킷엘리베이터	0.5	2.8	2	9.2	·20톤/배치	81
	체인컨베이어	1	3.0	2	4.4	·30톤/배치	96
	소 계		30.9		64.9		
저장 사일로부	저장사일로	2	128.1	4	48.7	·400톤(평)	257
	버킷엘리베이터	2	9.2	2	11	·500톤(평)	296
	체인컨베이어	3	10.5	3	9.6	·300톤(호퍼)	214
	소 계		147.8		69.3	·400톤(호퍼)	226
						·500톤(호퍼)	226
집진부	싸이크론송풍기	1.5	32.3	3	69.3	※ 원료투입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의 지원 금액에 포함	
	백필터 송풍기	1	35	-	-		
	소 계		67.3		69.3		
기타 시설	에어 컴프레셔	1	14.8	1	15		
	소 계		14.8		15		
총 소요동력			279.2		258.8		

* 지원규모는 예시로 활용, 세부사업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4. 사업추진체계

가.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영광군에 승인요청('16.2월중)

○ 영광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요청('16. 2월말까지)

- 영광군수는 확정된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정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내역상 분류항목별로 40% 이내로 조정할 경우는 영광군수가 승인 후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사업부지 변경 및 분류항목별로 40%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하에 변경 가능

나. 자금배정 및 사업비 집행

○ 영광군에서는 월별 소요자금을 사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전까지 도에 한도배정 요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요구가 있으면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영광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라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영광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 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다.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금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1~12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자금집행상황, 시설부지확보, 조직운영, 마케팅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가급적 원안대로 추진하고 계획 변경시 도 및 시·군의 의견 등을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도 및 영광군)

○ 중간점검

- 영광군에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도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 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 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영광군수는 시설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저장·가공 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맥류 건조·저장시설	사업완료 익년 1월부터	10 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차량, 장비 등	〃	5 년간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운영 부실,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부당사용 내역에 따라 1~5년 간 사업지원을 제한

5. 행정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1월 20일까지

※ 본 사업은 2016년까지만 시행하며, 향후 맥류 건조·저장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시·군(경영체)은 2016년부터 신규 시행되는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사업」으로 신청

3 국산밀 생산장려금 지원

1. 목 적

○ 밀 재배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국산밀 재배 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 국산밀의 안정적 생산을 통한 가공·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등 국산밀 산업 육성에 기여

2. 추진배경

○ 최근 국산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부족함에 따라 국산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배 확대가 필요

○ 밀은 보리 보다 수확시기가 늦어 모내기가 다소 지연되고, 판매가격도 낮아 재배 여건이 불리함에 따라 생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 유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전라남도 국산밀 산업육성 조례 제5조(보조금 지원)

4. 지원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100%)	도비(30%)	시군비(70%)	
16천톤 (4천㏊)	500,000	150,000	350,000	

○ 지원단가 : 1,500원/40kg (㏊당 150천원) 내외 * 10a당 조곡 400kg 기준

*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 가능

○ 지급 상한면적 : 농업인 2㏊(200가마/40㎏), 농업법인 5㏊(1,000가마/40㎏) 이내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 2016. 1. ~ 12월

나. 주관기관 : 시·군(읍·면·동)

다. 사업대상자 : 밀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자격 : 지역농협, 가공업체 등 밀 수매업체와 계약 체결 후 약정을 이행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수매업체는 시·군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 농정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추진**

6.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신청

○ 국산밀 생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읍·면·동)에 제출(3월말까지)

○ 사업 신청서 시군 제출 시는 신청서 제출 시 해당 농지의 계약재배 약정서 등 밀 재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나. 대상자 선정

○ 시·군(읍·면·동)에서는 신청 농지의 밀 재배 여부, 계약체결 현황 등 사업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밀 재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다.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도에서는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시·군별 사업량, 지원단가 및 사업비를 확정하고 시·군에 보조금을 송금

○ 시·군에서는 밀 수확 후 수매실적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개인별 신청내역과 수매증 또는 수매확인서 등을 대조·확인하여 지급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최소화

7. 2017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수요조사 실시

- 시·군에서는 수매(계약)업체를 사업시행 전년도 10월말까지 선정하여 밀 재배 농업인 등에게 홍보

8.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4월말까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결과 도에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9월말까지

○ 2017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보고 : 10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

국산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지급계좌			

신청 내역	밀 재배 현황						약정체결 현황		
	읍면동	리	지번	면적(㎡)	품종	예상수확량 (가마/40kg)	계약업체	계약물량 (가마/40kg)	계약단가 (원/가마)
	합 계								

위와 같이 국산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0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계약재배약정서 사본, 수매증(수매후 별도 제출)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국산밀 생산 장려금 신청(선정) 관리대장

신 청 자			신 청 내 역		비 고 (계약 업체)
주 소	성 명	연락처(HP)	재배면적 (㎡)	예상 생산량 (가마/40㎏)	

<별지 제3호 서식>

국산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시군)

계약 업체명	농가수(명)	계약면적 (㏊)	예상생산량 (톤)	계약단가 (원/40㎏1가마)	비 고
합 계					

<별지 제4호 서식>

국산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정산서(○○시군)

사 업 량(ha)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잔액 (도비)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집행잔액 발생 시 사유 :

4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시안으로 최종 확정 후 별도 통보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11,085,344	723,630	794,030	1,009,146	3,695,800
국 고	11,085,344	723,630	794,030	1,009,146	3,695,800
○고정직불금	6,910,985	698,400	774,000	845,000	2,475,000
- 국 고	6,910,985	698,400	774,000	845,000	2,475,000
○변동직불금	4,174,359	25,230	20,030	164,146	1,220,800
- 국 고	4,174,359	25,230	20,030	164,146	1,220,8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에 따른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아래 ③과 ④의 경우에는 해당 농지분에 대해서만 지급 제외)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면적계산시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

③「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 농지분)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농지 요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법 제5조)

*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현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

- 단,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①「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나, ②「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①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단,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 「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단,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사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④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등록제한기간(5년 이내)에 해당하는 농지

○ (**지급대상자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및 농작업 일부 위탁 포함)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어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이하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법 시행령 제5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영체법 제16조 또는 제19조의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신규신청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이외의 자

  ① 경영체법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② '13년부터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쌀 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쌀 직불금을 등록한 자가 사망, 뇌사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불가피한 사유(예시) : 고령, 중환, 수감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기존 수령자)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지급 요건**

-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농업소득법 시행령 제7조)>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④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9조)>

①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②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施肥量) 기준

○ (**지급상한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단, 25인 이상의 농업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ha

3. 지원형태 및 기준

○ **지원형태 및 재원**

- 고정직불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 1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변동직불금 : 직접 수행,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지원 기준**

- 고정직불금(지급 시기 : 11월)
  - 지원단가(평균) : 1백만원/ha
    *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에 대한 지급단가는 향후 고시 예정('16.3)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변동직불금(지급 시기 : 3월)
  - 지급기준 : 당해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15년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 기준)>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단가(80kg 기준)

① 목표가격 : '13~'17년산 쌀은 188,000원/80kg으로 고정(농업소득법 제11조)

② 고정직불금 단가('14년산) : 14,286원/80kg(≒900,000원/ha ÷ 63가마)

※ '15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단가 : 15,873원/80kg(≒1000,000원/ha ÷ 63가마)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ha당 생산단수(63가마/ha) × 벼 재배면적(ha) * 10원 미만 절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관련기관 통지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월)		농식품부(1월~) 시·도(시·군·구) 및 관련기관 접수·홍보 계획 수립·실시(1월~)		농업인 및 농업법인(2.1~4.29)

*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 사업 신청 시기 및 방법

-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6. 2. 1. ~ 2016. 4. 29.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장 및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및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및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하고,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경작자*기준에 따라 처리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 주소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 경작 포함)**

○ 접수증 배부

- 읍·면·동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접수번호 기재 등 확인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에 접수여부 관리**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개인) 또는 제2호(법인) 서식

**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구분	필요 서류	비 고
1 대상 농지 관련	① '98~'00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빙 - 농지소재지의 마을 이장과 거주자* 3명이 서명한 확인서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이외의 자로 한정 ①-ㅣ) 농업소득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농업소득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97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98~'00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중 1개	신규 농지만 해당 ('05~'15년까지 1회이상 쌀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생략)
2 지급 대상자 관련	① (신규신청인) 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2-② 부분)의 증빙서류 참고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 '13년부터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및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법인(휴경 면적은 산정 제외)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13년부터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인 경우 그 증빙서류(등록신청자 명의의 다음 서류 중 1개) - R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R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 판매시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전산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 면적 계산 : 타 시·군·구 농지가 있는 경우 합한 면적 '15년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증빙 서류 면제

	㈑ 쌀 직불금 대상자의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수감으로 인한 승계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 판정서, 고령으로 인한 영농승계 확인서(이장 등), 중환에 대한 진단서, 수감확인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승계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계속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이거나,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② (기존수령자)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도시거주자(기본법상 농촌 외 거주) : 다음 중 1개 · 경작 면적 증빙(연접 시군구 포함)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액 증빙(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액) - R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R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 판매시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관내 도시 거주자 증빙 : 1년이상 관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와 1년 이상 경작(신청자 명의 '15년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 등) 증빙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05~'08년 기간 중 정당 수령 증명 서류는 제출 생략 '15년에 기존 수령자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증빙 서류 면제 (다만, 도시 거주자의 경우 직전 연도와 주소지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
3 경작사실 증명 관련	①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 및 관외 경작자 모두(서식 추후 배포)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영농기록) 관내 경작자는 다음의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산물의 판매 증빙 서류(2-①-㈑ 및 3-②의 농산물 판매액 증빙 서류 참고)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15년과 신청대상 농지가 같고, '15년과 ① 주소지가 같거나, ②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③ '15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면제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의 서류란 ㉮~㉮ 5개 중 2개(예 : ㉮의 판매액 증빙서류와 ㉯의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각 1개씩 2개)를 의미함	
4 기타 서류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②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칙, 권장),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 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 '15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임차·임대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16년에는 제출 생략 가능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016.2.1~4.29) : 읍·면·동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입력

○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법 제5조), 지급대상자 자격요건(법 제6조),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 확인

○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간 공개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공개정보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6.6.31까지 (조사·심사 결과는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등록증(변경등록증) 발급 및 대장 관리 * 발급기한 : '16.7.21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요청 * 제출기한 : '16.9.19

○ 등록증 수정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이 잘못된 경우,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 재발급)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2016. 8. 30까지)

- 변경등록 신청 :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 신고 : 등록자로부터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쌀 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망 승계요건을 갖춘 자는 변경등록 기간 내에 승계 신고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농업인) 및 제2호(농업법인) 서식

구 분	필요 서류
변경 등록 신청서 첨부 서류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나목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점유 여부 관련)
변경 등록 신고서 첨부 서류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 신고시 신고한 농업인 등이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 등록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변경등록증을 발급

  * **변경등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정 요청**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한 이행사항의 점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한국농어촌공사, 등록증발급 후 ~8.30일까지)
- 화학비료 등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수확직전 ~10월 상순)
- 농약잔류 검사(농관원, 등록증 발급 후 ~10.30.)

4. 자금배정단계

○ 고정직불금

농식품부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에서 보고한 고정직불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지		○ 고정직불금 지급 및 지급 결과보고(11월)

○ 변동직불금

농식품부	→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
○ 시·도에서 보고한 변동직불금 지급 명세를 농협에 통지		○ 변동직불금 지급(3월) 및 결과보고(4월)

5. 사후관리단계

○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공개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구 및 농식품부(재원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1.1.~12.31까지) 200만원
- 해당 연도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한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농식품부 및 관계 행정기관(직불금을 지급한 시·군·자치구, 등록 신청한 읍·면·동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신고한 경우 대상
- 신고서(별도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별도 서식)에 등록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자>

① 신고대상자의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③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⑤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쌀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기준)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됨에도 쌀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법 제14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내에서 중가산금 부과**

○ 벌칙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수령한자,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 추진 상황의 점검

- 각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4월)
- 농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10월)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직불금 지급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 실적을 평가

○ 사업실적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간 : ’17. 2. 1. ~ ’17. 4. 29.

○ 제출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 대상농지 : ’98~’00년까지 3년 연속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등록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및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5 밭농업 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시안으로 최종 확정 후 별도 통보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국 고	62,365	72,577	134,731	192,931	228,309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농지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 밭농업직접지불금(논 이모작) : 지목과 상관없이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논

※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다음 농지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②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③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④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⑥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보조금을 받는 등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밭농업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⑦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와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

※ 동일 필지에 대하여는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과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다만, 논 이모작 재배 필지의 경우는 밭농업보조금과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중복지급 가능

2. 지급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밭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 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를 분할하여 경작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동계와 하계로 시기를 나누어 경작하는 때에는 공동 소유(경작) 자간 합의를 통해 동계, 하계 중 시기를 선택하여 연간 1회만 신청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신청자격

○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지원대상

○ 대상품목

-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 모든 밭작물('12~'14년 연속하여 밭작물 재배 농지), 신청 연도는 휴경도 지급 대상임
-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 논 이모작(아래 표 참조)

논 재배 사료·식량작물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 밭농업직불금(논 이모작)의 경우는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한 필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대상품목과 비대상 품목 혼·간작시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점유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며, 지급대상 면적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점유 비율에 따라 산출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예 : 동일 필지내에 동계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재배하는 경우, 밀과 콩 중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에 대해서만 밭농업 보조금을 지급

- 동일 필지내에서 경계를 명확히 달리하여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중복되지 않게 재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동일 부지내 재배가 아니라는 증빙자료 구비)을 거쳐 밭농업 보조금 지급 가능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 보조금을 지급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밭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에는 시설도 포함되며, 해당연도 휴경시에도 지급**)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포함하지 않음

5.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6. 지원형태 및 기준

○ 지급단가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밭농업직불금(논 이모작)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500천원(㎡당 5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제곱미터.

단,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재배의 경우는 농업인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만제곱미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개최,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신청[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의함]

- 등록신청 기간 : (동계) 2016. 2. 1. ~ 2. 29. (하계) 2015. 2. 1. ~ 4. 29.
- 동계작물의 경우는 ’16. 2. 29.까지 등록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작부체계상 특수성이 있어 동·하계작물 구분에 맞지 않는 품목이 등록신청일 현재 재배중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음

  * **농업인등은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변경 신청(동계 4월 29일, 하계 8월말까지)을 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한국농어촌공사(지사)에 이행점검 반려를 요청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행점검을 재의뢰**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밭직불 보조금 등 신청 사항 포함됨)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 단, 농촌 외의 주소를 둔자의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읍·면·동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는 농업인등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및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

- 농촌외의 주소를 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만,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 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서류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APC에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농산물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APC 공식기관명의 직인 찍힌 확인서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밭작물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현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1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1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밭작물 판매 영수증, 밭작물 등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확인) 등

※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실경작 입증기준 강화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또는 읍·면·동장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동계) 2016. 2. 1. ~ 2. 29, (하계) 2015. 2. 1. ~ 4. 29.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동계) 2016. 2. 1. ~ 3. 7.

(하계) 2016. 2. 1. ~ 5. 10.

나.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 확인

다. 지급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①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자는 농식품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②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라. 농촌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의 증명, 등록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 정보공개 기간 : 하계작물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이내

○ 정보공개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조사 및 심사 : 등록증 발급 전까지 ○ 서면조사 등		○ 등록증 발급 - (동계) 2016. 3. 10.까지 - (하계) 2016. 5. 31.까지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 표본농가 선정 및 대상품목, 면적확인 등 현지 조사

○ 점검기간 : (동계) 2016. 3. 13. ~ 5. 15, (하계) 2016. 6. 1. ~ 8. 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약잔류검사

○ 검사기간 : (동계)등록증 발급 후 ~ 5. 31, (하계)등록증 발급 후 ~ 9. 30.

○ 시료 채취

- 수확 10일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밭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하여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농업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 : 토양검사

○ 검사기간 : (동계)등록증 발급 후 ~ 5. 31, (하계)등록증 발급 후 ~ 9. 30.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5. 이의신청 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 결과를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동계) 2016. 5. 16. ~ 2016. 5. 23.

(하계) 2016. 9. 1. ~ 2016. 9. 8.

○ 농관원 및 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동계) 2016. 5. 24. ~ 6. 3, (하계) 2016. 9. 12.~ 9. 2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6.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식품부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에서 보고한 밭농업보조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지	→	○ 밭농업보조금 지급 - 2016년 11월

7. 사후관리단계

가. 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 열람자의 의무 : 열람목적 및 개인정보 제공

나. 부당지급된 밭농업보조금의 환수

○ 부당지급금의 환수 :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 그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 신청참여 제한

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각 시·도는 시·군·구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대상 교차점검 실시

* 지급면적 초과신청, 밭농업보조금과 중복수령을 제한하는 타 직불금 수령자의 중복신청, 지적불일치 필지 등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조사기간 : ’17. 1월 ~ 5월

○ 조사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조사농지 : 지급대상농지로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고 ’16년도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밭농업보조금 지급신청은 2월~4월, 현지점검은 5월~8월, 보조금 지급은 12월 예정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현지 사정에 따라 마을대표에게 제출 가능), 마을대표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사업 추진 절차

업무흐름	시기(하계기준)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동계작물(2월)	('16.2～ 4.29)	·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농관원)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읍·면·동 담당자는 AgriX를 통해 등록신청인의 농업경영체등록 사실여부 확인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16.5월)	·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 (서면) 조사 및 심사 - 등록증교부 *동계작물(3월)	('16.5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적부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점검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신청내용 점검·보완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 (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지
⇓		
④신청내용 현지조사 *동계작물(3～5월)	('16.6 ～8월)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등록내용의 현장조사 실시 (농관원, 농어촌공사) → 확인조사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⑤등록내용 이의신청 *동계작물(5월)	('16.9월)	· 농관원(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결과 이의가 있는 농업인등은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 요청 및 농관원 재조사 처리
⇓		
⑥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지	('16.9 ～10월)	· 지급대상자 확정(시장·군수·구청장)
⇓		
⑦ 보조금 지급 *동계·하계 작물	('16.11)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입금(시·군·구)
⇓		
⑧ 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 공개	('16. 12)	· 농식품부, 농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6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시안으로 최종 확정 후 별도 통보**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등의 소득 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2017년이후
합 계	49,170	49,170	49,170	49,170	49,170
국 고 지방비	39,511 9,659	39,511 9,659	39,511 9,659	39,511 9,659	39,511 9,659
○ 조건불리보조금	38,635	38,635	38,635	38,635	38,635
국 고 지방비	38,635 9,659	38,635 9,659	38,635 9,659	38,635 9,659	38,635 9,659
○ 행정비	876	876	876	876	876
국 고 지방비	876	876	876	876	876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이라 한다)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은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음)

※ 2012년 전국 읍 · 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급(동(洞)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2. 지급대상 토지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법」 제2조 상의 농지 및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토지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초지)

2)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04 ·'05년 시범사업 지역은 '02년부터 '04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된 초지이어야 함.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농지 및 「초지법」 제2조1호 중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사료작물재배지를 제외한 축사, 도로,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등은 사업대상 토지가 아님(실경작재배지가 사업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o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o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o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일 전까지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o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라 약정신청서 제출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초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년 이상(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o「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o「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

o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o「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고 등록 신청된 농지

o「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아래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 과수·뽕나무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 임산물, 다만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그 묘목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

o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논·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o 규정 제33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o「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에 따라 밭농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o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단, 당해 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o 자기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

3. 신청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를 1천제곱미터 이상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자

- 단,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초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초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관리)”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초지)를 분할하여 경작(관리)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관리)하는 농지(초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초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4. 지급대상자

○ 규정 제27조의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고, 규정 제2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적합한 자

5. 지급요건

○ 보조금지급개시 연도 신청일로부터 보조금지급연도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계속하여 거주(주민등록을 기준 등)

○ 농지관리의무 필수 이행

- 농업인 등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지급개시 연도 신청일로부터 보조금지급연도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지급대상 농지(초지)를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경작(관리)하여야 함

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

나) 작목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질병·취업·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수용 등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에는 경작(관리)으로 봄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의 요구에 농업인 등이 휴경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필수) : 조성 비율 및 사용용도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활동에 사용

7.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및 지원기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고 80%, 지방비 20%

○ 지급단가[1] : 농지 50원/㎡, 초지 25원/㎡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25원 지급**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당 지원 하한면적 : 1천 제곱미터 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1) 지급단가는 조건불리 지역과 일반 지역에서의 농업소득 차의 일정수준을 보전해 주는 선에서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지

조건불리지역 선정자료 제출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단위 선정	→	법정리 코드번호 부여	→	조건불리지역 공고 및 홍보
농어촌공사 (1월초)		농림축산식품부 (1월중)		AgriX(1월중)		시·도, 시·군·구, 읍·면(1월말)

가.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에서 제출받은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와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분석한 법정리별 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 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 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1월초)

나. 시·도, 시·군·구, 읍·면

○ 시·도지사는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 통지(1. 20일까지)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읍·면장에게 알리고, 읍·면장은 해당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읍·면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법정리 또는 행정리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2월말까지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농업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공고에 포함할 내용(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5조제3항관련)>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법정리·행정리) 및 변동사항
- 보조금 신청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 계획서 제출	→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 계획서 수정 및 제출	→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통보
운영위원회(1월말)		읍·면(1월말)		시·군(2월말)

가. 마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

○ 조건불리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은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하 한다)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와 마을발전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1월말까지)

- 시·군(읍·면) 에서는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Agrix 출력물)를 해당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1월말까지)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작성을 지도·협조**

*** 마을발전계획에는 지역현황, 향후 5년간 마을발전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을 포함**

*** 민통선 안, 섬지역 등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지원대상 법정리는 해당 읍·면 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마을 농지로 출입 영농하는 농업인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거주지가 아닌 농지소재 마을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시행기간 동안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자율 이행

나.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 마을에서 제외 가능

3. 사업신청 단계

지침 시달,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	관련 기관과 협조·홍보 실시	→	약정신청서 제출(읍·면)
농림축산식품부(1월말)		시·도, 시·군·구(1월말)		농업인 등(2.1~4.29)

가. 농업인등·운영위원회

○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신청서를 제출(이 경우 3월말까지는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로 선정되어야 함)한 마을의 농업인 등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를 본인이 직접 작성 서명(대리 작성시도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해당 농지나 초지가 같은 또는 다른 시·군·자치구 내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또는 농관원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에게 제출

- 신청기간 : 2016. 2. 1. ~ 2016. 4. 29.
- 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당해 기관은 신청내용을 시스템에 입력조치
- 농관원이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원본 또는 사본을 이송하거나 전송

< 약정신청서 구비서류 >

o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다만, 약정신청서 구비서류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o 임차/사용차 농업인/농업법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 농지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농지사용대차 계약서<별지 제11호 서식> 예시 참고

o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 서식) * 다만, 신청직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이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보조금을 기 지급받은 농업인등은 시·군(읍·면)으로부터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약정신청서'를 배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

  *** 약정신청서에는 공부상 면적, 신청제외 면적(묘지, 창고, 유휴지 등 미경작 면적), 신청(실경작) 면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 신청 전에 농지원부(조사용),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사본을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제공하고, 농가의 약정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협조**

4. 사업자 선정 단계

지급 대상 자격 유무 확인 및 입력	→	지급대상자 선정·통지 (읍·면, 운영위원회) 이행사항 점검 의뢰(농관원)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제출 및 체결(시·군)
읍·면(2.1 ~ 4.29)		시·군·구(5월말)		운영위원회

가. 시·군·구

○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마을 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림(5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 등에게 알려야 함

○ AgriX시스템에서 사업대상자(농지·초지)를 확정하고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 지원 및 사무소에 시스템으로 의뢰(5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위원장은 지급대상자의 합의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운영위원은 '관리협약' 작성, 마을공동기금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시행규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o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o 운영위원회의 임무
o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o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o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o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o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마을발전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관리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협약 체결 시, 관리협약 이행표<별지 제6호 서식>,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송부**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등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 현장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

*** 현장확인은 운영위원 활용, 별도 인력 고용 등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경비는 마을공동기금 사용 가능**

<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 절차>

o **농업인등**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로 읍·면장에게 지급약정 변경을 신청(9월말까지)
o **읍 · 면** : 지급약정 변경신청인이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 농지가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스템 등으로 시장·군수에게 보고 및 농관원에 이행점검 반려를 요청하여 변경내역을 수정 입력 후, 재의뢰
o **시 · 군** :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읍·면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일 전까지 제세행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유권이전 등 소유권 변경여부를 최종 확인
–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이 경우 보조금은 지급대상자 확정시점(각 시행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자로서, 지급대상자 변경 승인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농지관리의무 이행사항 점검	→	관리협약 및 지급대상자 이행점검	→	이행점검 결과,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점검·보고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6.1~8.30)		운영위원회(8월말)		시·군·구(9.20)

가. 농관원

○ 농지관리의무(필수의무)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은 농관원에 위임한다.

o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해당연도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상 농지(초지)를 계속해서 경작(관리)하여야 하며, o 농지관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을 하거나, 작목은 재배하지 않았어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을 실시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이상 치료,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수용 등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농업인 등이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농관원장은 표본 농업인을 선정(모집단의 30%이상)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달

*** 표본농가 선정 및 방법은 농관원장이 정함.**

○ 점검기간 : 2016. 6. 1. ~ 9. 30일까지

○ 점검대상 농지

- 시·군에서 Agrix시스템으로 이행점검을 의뢰한 사업대상자의 농지 및 초지

○ 점검사항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 여부, 목장·산림 등 일부경작 농지(초지)임에도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 및 미재배농지 경운 여부 등 현지 확인

* 실 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농관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신청 농지의 면적 등 점검
- 신청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로 대체 또는 현장 사진촬영 보관

나. 마을(법정리·행정리)

○ 위원장은 자체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책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별지 제6호 서식> 및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별지 제6-1호 서식>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9.30까지)

다. 시·군·구

1)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 위원장이 제출한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및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를 참고로 지급요건의 이행 여부 점검

가) 마을공동기금 조성(필수의무) 및 적정관리 여부 확인

○ 마을별 연 1회 이상 점검하되,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 상태 등을 점검·지도

*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기금 유용 등 사적 사용 여부 점검을 통해 통장거래 내역 확인 필수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전부 사용시까지 마을별 연 1회 이상 집행 상태 등을 계속 점검·지도

o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o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o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o 다만, 당년 마을공동기금의 10% 또는 당년 기금 중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마을활성화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 가능(운영위원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o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주민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o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후 5년간 보관)

o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o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기금을 엄격히 관리

나) 마을활성화 실천 등 이행여부 확인

○ 마을에서 제출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표'를 참고로 시장·군수와 체결한 관리협약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이행 여부 점검

※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o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o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o 농용지 보전 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o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o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마을공동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 소모성 경비지출이 당해연도말 기준 마을공동 기금 총 예상잔액의 30%를 넘지않도록 함

* 부지매입 : 마을회관 건립, 폐비닐 공동수거장 설치 등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6. 이의신청 단계

이행점검 결과 통보 (신청인)	→	이의신청 (시·군·구, 읍·면·동)	→	해당 농지 재조사, 결과 수정 입력 후 재전송
시·군·구, 읍·면·동 (9.1.~9.5.)		농업인 등(9.7.~9.20.)		농산물품질관리원 (9.7.~9.20.)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2016. 9. 1. ~ 2016. 9. 5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 사유를 기록하고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2016. 9. 7. ~ 2016. 9. 20일

7. 자금배정 및 보조금 지급 단계(시군)

○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신청인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농림조건직불”로 명시)

- 보조금 산정기준 : 지급단가(㎡당 농지 50원, 초지 25원)에 지급대상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는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다음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지급**

- 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의 공동기금 조성 비율에 따라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

***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8. 대상자 관리 및 환수 등

가. 대상자 관리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기간(5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나.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 불이행의 경우 시장·군수는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아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의 처분을 받게 된 농업인 등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 이내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참여를 제한

지급 요건	점검 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2년간) ○ 3차 이상 : 보조금 지급중단(3년간)
마을공동기금 사용	용도외 사용	○ 1차 : 경고 및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2차 :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및 기금지급중단(2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협약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3년간)

※ **면책기준 : 자연재해의 경우, 농업인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농지가 토지수용을 받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함**

※ **마을공동기금을 유용, 횡령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시··군·구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 (향후 3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 조사

○ ’16년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면적, 미지원 법정리(마을) 중 ’16년 사업추진 가능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면적 추정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농지전용 등 연평균 대상지역 감소면적 등을 감안, ’17년 사업 가능면적 파악

○ 담당자에 대한 지침교육 및 리플릿 배포, 반상회보 등 활용 농업인 홍보

3.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조건불리지역 선정 방안

- 보조금을 5년간 지원한 법정리는 2016년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 적합한 법정리만을 조건불리 지역으로 선정

7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 목 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추진방침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피해위험이 큰 품목 우선가입 지원

- 벼, 과수 등 재해피해 우려가 큰 품목 적극 가입 독려

○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재해피해 시 손실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사 업 량 : 61천ha

○ 사 업 비 : 35,000백만원(도비 7,000, 시군비 14,000, 자담 14,000)

* 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50% 별도 지원(실제 농가 보험료 부담 20%)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농협)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주소지에 관계없이 농지기준으로 적용하여 지원

○ 가입자격

- 과수작물 및 논·밭·버섯작물 :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붙임 1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붙임 1의 규모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지원기준 :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60% 지방비 지원

- 재원은 도와 시군에서 일정비율로 지원하되, 도비교부결정 후 추가 지원대상이 발생할 경우 시군자체 예산으로 지원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세부 사업내용

(1) 보험대상 농작물 : 49개 품목

○ 본사업(26개 품목)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대추, 고추,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 시범사업(20개 품목) : 복숭아, 포도, 복분자, 인삼, 오디, 차, 시설파프리카, 시설멜론, 벼(전국 판매),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시설상추, 시설부추, 시설시금치,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 시설무, 시설백합, 시설카네이션

＊'16년 신규도입 : 3개 품목(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2)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 : 전국

○ 시범사업 품목 :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3)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 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

- 과수형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 : 배, 단감, 사과

· 과수형 종합위험방식 : 적과종료전까지 종합위험, 적과종료이후부터 특정위험 적용

○ 인삼

- 주계약(인삼 필수가입) :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 특약(해가림시설 선택가입) :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 느타리버섯·표고버섯

- 주계약(농업용 시설물 필수가입) :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낙뢰
- 특약(선택가입) : 화재

○ 종합위험방식

-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4) **보험 판매기간 : 붙임1**

○ 재해보험사업자(농협)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 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업용 시설물 >

○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손해보장 : 자기부담금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 다만,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품목)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5) **보험가입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다만, 옥수수·콩은 농지당 100만원 미만이고 증권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마늘·벼·차(茶)·버섯작물·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붙임1의 경작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옥수수 제외)**

*** 벼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농지는 인접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 이상 되는 경우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는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음.**

(6) **재해보험 가입절차**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7)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 가능

○ 현금 납부시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선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2회 분할납입이 가능함

- 다만,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 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

○ 보험료 현금 분납방법

구 분	납입시기	납 입 액
1회	보험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2회	5월 31일 이전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8)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도 또는 시·군별 요율 적용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시·군·구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종합위험방식(복숭아·포도·대추·참다래·자두·매실·옥수수) 및 과수형 종합위험방식(배)의 방재시설 설치 농지에 대하여는 방재시설별, 대상재해별로 5~30%의 보험료 할인율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의 주계약(태풍(강풍)·우박)에 대해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 사과 : 만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10% 인상, 중생종 5% 인상

· 배 : 중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5% 인상, 만생종 5% 인하

- 종합위험방식(매실)은 백가하 품종 비중에 따른 농지별 할인·할증

· 품종 비중 80% 초과 : 17% 인상

· 품종 미포함 : 8% 인하

-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라 최고 -25%~4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

(9) **보험기간 적용**

○ 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품목별로 따로 정함

(10) **보험가입금액 산출**

○ 시설작물·노지고추·인삼·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단, 매실 백가하 품종 비중 80% 초과 농지는 평년수확량의 50~80%임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

○ 시설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의 합이며 50%~100%(10% 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 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생산비)의 합이며 보험가액의 100%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함.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 농업용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함

- 단,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재조달가액의 50%~100% (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보험가액이 전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및 부대시설의 경우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 노지고추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생산비)의 50%~100%(10%단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

○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단위면적당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11)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12)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

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재이앙(재파종, 재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노지고추·시설작물·인삼(해가림시설 포함)·느타리버섯·표고버섯 및 농업용시설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사업주관 : NH농협손해전남총국

- 취급사무소 :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 사무소

○ 추진방법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품목별 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맞춰 지역의 해당 농가가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관내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판매(가입)시 농가부담액 중 일부(60%)를 사전 공제하고, 판매(가입신청) 접수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재해보험 가입자대상의 자부담 중 지방비 보조금을 시장·군수에게 신청(서식 1)
- 시장·군수는 보험판매기관(농협)이 농가부담 보험료의 보조금부문을 교부신청 할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이 종료되면 즉시 가입자 명단 및 보조금지원 실적을 시장·군수에게 통보(서식 2)
- 재해보험 가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기간 중 농가가 가입을 임의 탈퇴 또는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조치(농협→시군)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 지침에 의함

7. 행정사항

○ ’16년 농작물재해보험료 교부신청 및 교부(농협↔시군) : 수시(서식 1)

○ ’1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통보(시군농협→시군) : 수시(서식 2)

○ ’1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통보(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도) : 분기별(서식 3)

○ ’16년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시·군→도) : 익년 2월말(서식 4)

<붙임 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전 국	1,000	2.23~4.3 (단,봄동상해 특약은 3.20까지)
	밤	전 국	10,000	4.1~4.24
	대추	전 국	1,000	4.1~4.24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농업용시설물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고 추	전 국	1,500	(전남·제주) 4.13~5.15 (이외 지역) 4.20~5.22
	고구마	전 국	2,000	5.4~5.29
	옥수수	전 국	3,000	5.4~6.12
	감자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	1,500	봄감자 (5.18~6.12) 가을감자 (7.20~8.21)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1,000	6.1~7.10
	콩	전 국	4,500	6.1~7.31
	마 늘	전 국	1,500	(난지형) 10.5~10.30 (한지형) 11.2~11.27
	양 파	전 국	1,500	11.2~11.27
	자 두	전 국	1,000	11.2~11.27
	매 실	전 국	1,000	11.2~11.27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시범사업	벼	전 국	4,000	4.20 ~ 6.26
	시설작물 (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양배추·밀·시설미나리) * 밑줄은 '16년 신규 도입 품목판매 예정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1,000	10.5~11.13
	표고버섯	(충남) 부여·청양·보령·서천·공주 (전남) 장흥 (경북) 문경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6.1~7.10
	인삼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 (충남) 금산 (전북) 고창	1,000	11.2~11.27
	오디	(전북) 부안	1,000	11.2~11.27
	느타리버섯	(경기) 가평·광주·양평·포천·여주·평택 (강원) 영월·원주 (경북) 청도 (전남) 보성·해남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11.2~11.27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2~11.27
	복숭아	전 국	1,000	11.2~11.27
	포도	전 국	1,000	11.9~12.4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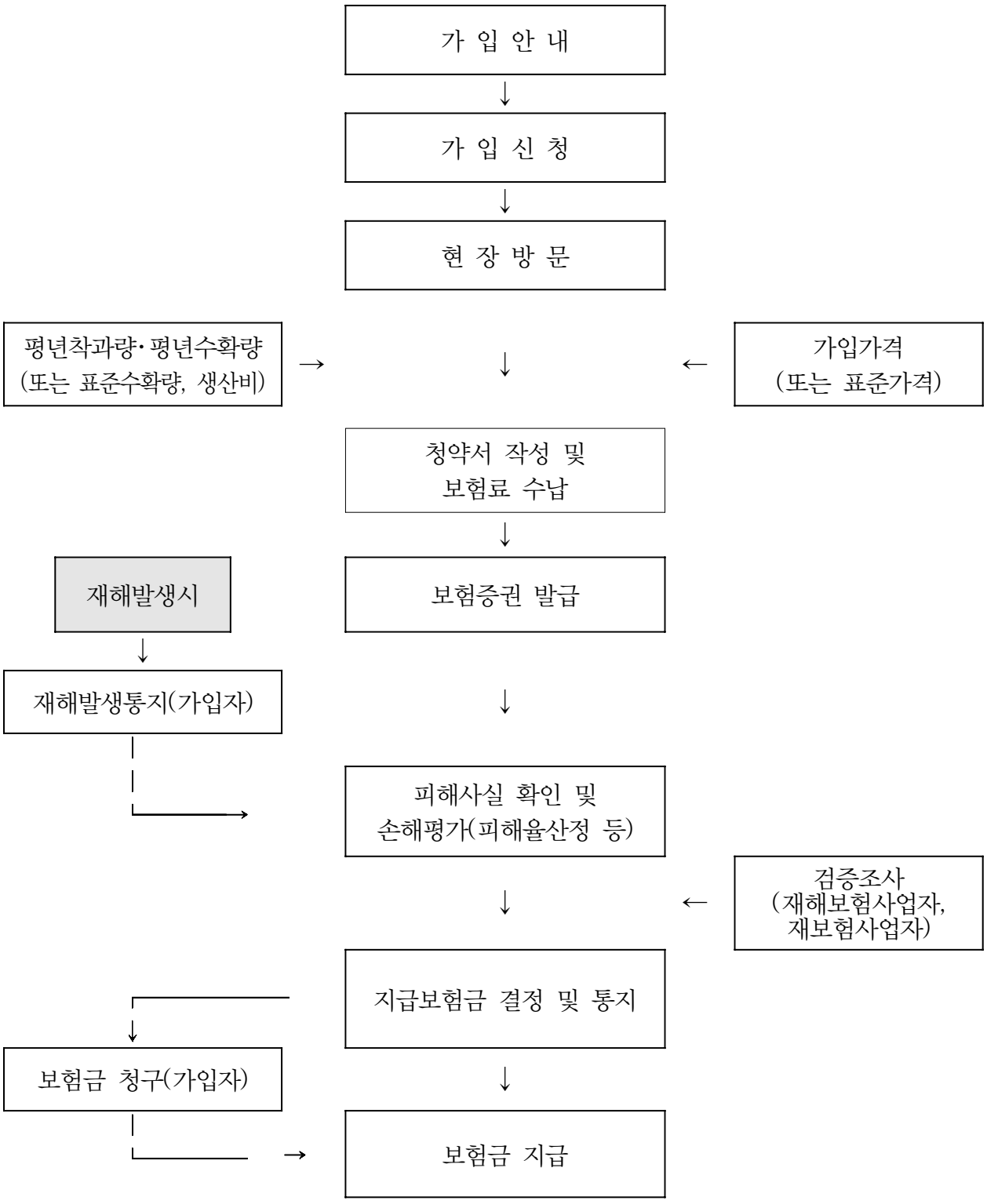

<붙임 3>

❑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농가수 (호)	면적 (ha)	계	국고	농가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기 교 부								
금회교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명단(서식 2)

읍면	농가명	주소	가입 품목	가입 면적 (㎡)	보 험 료 (천원)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통보(서식 3)

품 목	농가수	가입면적 (ha)	보 험 료 (천원)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농작물재해보험료 정산내역(서식 4)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도비 집행 잔액 (A-B)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농가	면적	계	도비 (A)	시군비	자담	농가	면적	계	도비 (B)	시군비	자담	
호	ha					호	ha					천원

○ 도비 집행잔액 발생 시 사유 :

8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 이 지침은 '15년 사업지침으로 농식품부의 '16. 1월중 사업시행 지침 확정 후 별도 통보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공동영농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으로 쌀 산업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지원 RPC

2. 지원자격 및 요건

○ 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RPC, 농협

*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실적 1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

- 농업법인, 농협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에만 들녘경영체로 선정

※ 단, 연간 벼 2,000톤 이상 가공능력이 있는 자체RPC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들녘경영체 생산물량의 80%이상을 계약재배 수매하고, 수매물량의 50%이상을 품종표시 자체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RPC와 계약재배출하 하지 않더라도 선정 가능

- 계약재배만 하고 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들녘경영체 선정 제외

※ 들녘경영체 : 집단화된 농지 50ha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조직을 구성하여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3.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교육·컨설팅>

○ 지원대상

- 지자체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최대 3년간 지원 가능)

-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들녘경영체 사업자로 선정

○ 자금용도

- 교 육 :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공동 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컨설팅 : 작부체계(전작·축산 연계 등),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들녘경영체 관리, 생산비 절감,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 운영비 : 공동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임차료 또는 유류비, 수리비, 공동육묘시 필요한 유류비·종자비(운영비는 지원금액의 30% 까지 사용가능)

*** 1년차 경영체가 운영비를 30% 이상 사용할 경우 시·군의 사전승인 얻어 40%까지 사용 가능**

*** 2년차 이상 경영체는 운영비로 50%까지 사용 가능**

<시설·장비>

○ 지원대상

- 교육·컨설팅을 1회이상 받은 들녘경영체 중 조직운영 실태 등을 외부전문평가단이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

○ 자금용도

- 공동 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토지제외) 구입·설치비 단, 공동육묘장 또는 방제기(광역방제기, 무인항공방제기)가 없는 경영체는 공동육묘장·방제기를 우선 신청

*** 공동영농 필요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시 판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교육·컨설팅 : 들녘경영체 공동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100ha미만 10백만원, 100ha이상~200ha미만 20백만원, 200ha이상~400ha미만 30백만원, 400ha이상 40백만원**

- 시설·장비 : 들녘경영체 공동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400ha미만 200백만원 이내, 400ha이상~600ha미만 300백만원 이내, 600ha이상 400백만원 이내**

○ 사업량 및 지원조건

- 교육·컨설팅 : 80개소 내외, 시설·장비 35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5. 들녘인정 기준

○ 소재지 동·리와 상관없이 50ha이상 공동영농 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작 면적이 40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선정 가능

*** 공동 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 영농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는 들녘경영체로 인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5월말까지 신청(별지 제1호 서식)

○ 아래사항을 포함된 세부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신청서와 같이 시·군에 제출

구 분	내 용
공동생산	· 공동생산 범위(육묘, 이앙, 재배관리, 수확 등) · 공동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종류와 대수 및 확보 방안 · 공동생산에 필요한 인력확보 방안
고품질 쌀 생산	· 재배품종 및 품질기준 · RPC와의 계약재배 및 출하 약정체결서
자금집행 계획	· 농작업료 비용 및 수익 처리방법 등
사업비 집행 계획	· 시설·장비 구입계획, 교육·컨설팅·운영비 집행계획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자체

- (시·군) 자체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순위를 정한 후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로 6.15일까지 신청
- (시·도) 시·군 평가결과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자체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순위를 정한 후 세부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로 6월말까지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 평가결과 및 평가단 평가를 통해 익년 1월말까지 사업자 확정

*** 국회에서 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는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자금집행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승인을 받아 집행

- 전체 사업비 중 자금집행 계획을 50% 미만 변경시 시장·군수 승인, 50% 이상 변경시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

○ 외부업체와 계약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를 준용하여 계약 체결

-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시군 또는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개찰도 조달청을 통하거나 시·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자체실시 가능

- 시설·장비 지원은 시·군이 주체가 되어 공급업체를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자는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완료 후 시·군에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정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단말기에서 출력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자는 생산비 절감률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자 확정 후 시·도는 교부받을 금액을 예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금 교부받은 시·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 시·군은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완료되면 자금사용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군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여부, 자금집행의 적정성, 계약체결의 적정성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시설 (육묘장)	시설설치완료 익년부터	10년간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무인항공방제기	장비설치완료 익년부터	6년간	
광역방제기	장비설치완료 익년부터	5년간	
기타	시설·장비 설치완료 익년부터	5년간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과 다르게 자금이 집행된 경우 시·군은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정산

○ 시·군은 사업자가 목적외 사용 등 부당사용을 확인한 경우, 부당사용액에 대하여 반납 조치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반환

- 부당사용금액과 비율에 따라 1년에서 5년간 농림사업자금 지원 중단

6. 성과측정단계

○ 시설·장비 지원 경영체의 생산비 절감률 조사(11월중)

*** 조사주체 및 방법은 별도 계획 수립후 시행**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교육·컨설팅 최대 3년간 지원 또는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정부보급종도 사전주문을 받아 우선 공급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청자</td><td>상호명</td><td colspan="2"></td><td>설립년도</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명</td><td colspan="2"></td><td rowspan="2">교육컨설팅
지원내역</td><td>지원횟수</td><td>회</td></tr>
<tr><td>휴대전화</td><td colspan="2"></td><td>지 원 액</td><td>백만원</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조직형태</td><td colspan="5">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RPC, 농협</td></tr>
<tr><td>연계조직
(또는 업체)</td><td colspan="5">* RPC의 경우 연계된 조직기입
* 비RPC는 연계된 조직과 RPC 모두 기입</td></tr>
<tr><td rowspan="7">신청내역</td><td>사업량</td><td colspan="5">들녘경영체 개소, 공동농작업 ha, 참여농가수 농가</td></tr>
<tr><td rowspan="2">재원별</td><td>계</td><td>국비</td><td>지방비</td><td colspan="2">자부담</td></tr>
<tr><td>(백만원)</td><td>(백만원)</td><td>(백만원)</td><td colspan="2">(백만원)</td></tr>
<tr><td rowspan="2">시설·장비</td><td colspan="3">시설·장비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구입액</td><td colspan="2">(백만원)</td></tr>
<tr><td rowspan="2">교육·컨설팅</td><td>계</td><td>교육</td><td>컨설팅</td><td colspan="2">운영비</td></tr>
<tr><td>(백만원)</td><td>(백만원)</td><td>(백만원)</td><td colspan="2">(백만원)</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2. RPC와 들녘경영체간 신청연도 계약재배 체결서

3. 들녘 항공사진(참여 농지 구분 표시), 참여농지 및 농가 현황

4. 법인등록증(농업법인에 한함)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시설·장비 지원에 한함)

* 통장사본은 통장인감으로 원본대조 날인하여 제출

6. 사업자 선정 평가표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1>

○○영농법인 (RPC · 농협) 들녘경영체 세부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공동농작업(계약재배) 면적		ha	계약재배 벼매입량	톤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동(㎡), 광역방제기 대, 무인항공방제기 대			
		트랙터 대, 이앙기 대, 콤바인 대			
	임대현황	광역방제기 대, 무인항공방제기 대			
들녘 경영체 1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참여농가수	호
	공동농작업 면적	ha	공동농작업 종류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동(㎡), 광역방제기 대, 무인항공방제기 대			
들녘 경영체 2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참여농가수	호
	공동농작업 면적	ha	공동농작업 종류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동(㎡), 광역방제기 대, 무인항공방제기 대			
들녘 경영체 3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참여농가수	호
	공동농작업 면적	ha	공동농작업 종류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동(㎡), 광역방제기 대, 무인항공방제기 대			

2. 사업계획

가. 공동 농작업

❑ 공동 농작업 종류 및 면적

○ *(해당 지역의 논 면적 중 들녘경영체가 공동 생산하는 면적, 향후 계획 등)*

–

*

○ *(육묘, 이앙, 병해충관리, 물관리, 수확 등 공동 농작업의 종류)*

❑ 농기계·시설 확보 방안

○ *(사업자가 보유한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 현황)*

○ *(사업자가 보유한 농기계, 시설로는 공동생산이 어려울 경우 부족한 농기계, 시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

❑ 인력확보 방안

○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인부를 어떻게 확보할지 기재, 예를 들면 농협 직원 활용, 농작업 대행 농업인에게 노임 지급 또는 임시노동자 고용 등 상세방안)*

나. 고품질쌀 생산

❑ 계약재배 면적 및 품종

○ *(계약재배 품종, 품종별 계약재배 면적)*

❑ 품질기준 및 생산지도

○ 품질기준

- *(질소함량품종순도 등 품질기준 및 품질기준에 맞는 벼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 방법, 품질 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

○ 생산지도

- *(품질기준에 맞는 벼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 방안)*

○ 제재사항

- *(품질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 계약재배 약정체결서 첨부

다. 자금 운영 계획

❑ 농가의 공동농작업 비용 처리 방법

○ *(육묘, 방제 등을 대행해 줄 경우 해당 농지 농업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납부하는 지, 납부금액은 관행비용에 비교할 때 얼마나 저렴한지 등)*

–

*

❑ 농가로부터 받은 농작업료 처리 방법

○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농작업료를 누가 관리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수입과 지출은 참여농업인에게 어떻게 보고되는지 등)*

–

*

3. 사업비 집행계획

구분	집행액	집행내역
계	*천원*	
시설·장비지원	*천원*	*· 광역방제기(무인헬기) 구입 = ○○천원* *(방제기, 무인헬기) = ○○천원* *(운반차량) = ○○천원*
교육지원	*천원*	*· ○○교육 ○○원 = ○명× ○회× ○원* *· ○○선진지 견학 ○○원* *(교통비) = ○명× ○회× ○원* *(도시락) = ○명× ○회× ○원*
컨설팅지원	*천원*	*· ○○컨설팅 ○○천원* ·
운영비지원	*천원*	*· ○○임차료 ○○원 = ○대× ○일× ○원* *· ○○유류비 = ○○천원* *(광역방제기) = ○대 ○○원* *(무인항공방제기) = ○대 ○○원* *·○ ○수리비 = ○○원*

[붙임 2]

교육컨설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1. 들녘규모 (40)	20	○ 참여 농지면적이 50ha 5점, 50ha 추가마다 5점 가점(최대 20점)	
	20	○ 공동농작업 참여 농업인수가 25명 5점, 25명당 5점 가점 (최대 20점)	
2. 공동농작업 규모(40)	20	○ 광역방제기 또는 무인항공방제기 보유(개소당 10점), 임차(개소당 5)	
	10	○ 육묘장(661㎡, 200평 기준) 1동 5점, 2동 이상 10점	
	10	○ 신청자 보유 농기계(트랙터·이앙기·콤바인) 대수당 2점 * 법인명의로 면세유를 받는 농기계 또는 법인명의로 융자 구입한 농기계이거나 농협직영 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농기계에 한하여 인정	
3. 신청자 조직형태(10)	10	○ 사업자의 조직형태에 따라 배점 - 농업법인 10점, RPC 8점, 농협 6점	
4. 시도지사 평가점수(5)	5	○ 시도별 신청자 수를 감안, 시·도 재량 판단에 따라 5단계로 강제배분(상위 20%는 5점, 이후 20%마다 1점씩 차감) * 배분없이 점수를 부여할 경우, 1점 부여 * 신청자 수가 5단계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최고 5점부터 등급 당 1점씩 차감하여 부여	
5. 기타(5)	5	○ 들녘경영체가 GAP 농산물 생산단지인 경우 ○ 들녘경영체가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도 생산하는 경우 ○ 수탁형 계약재배사업 참여 경영체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5점 부여, 기타 항목 모두에 해당하더라도 5점만 부여	
합계	100점		

[붙임 3]

시설·장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1. 들녘규모 (30)	20	○ 참여 농지면적이 200ha 5점, 50ha 추가마다 5점 가점 * 사업자가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참여농지면적에서 보유 장비로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은 차감하고 배점 (광역방제기·무인항공방제기 400ha 차감, 육묘장(200평) 100ha 차감)	
	10	○ 참여 농업인수 50명인 경우 5점, 40명 추가마다 1점 가점	
2. 농기계 이용의 용이성(15)	15	○ 참여농지가 들녘으로 집단화되어 있고, 광역방제기·무인항공방제기 이용에 불편이 없는 곳 : 15점 ○ 참여농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광역방제기·무인항공방제기 이용에 불편이 없는 곳 : 12점 ○ 참여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으나, 축사나 온실 등이 들녘내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방제기·무인항공방제기의 이용시 유의가 필요한 곳 : 9점 ○ 참여농지가 분산되어 있고 축사나 온실 등이 들녘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방제기·무인항공방제기의 이용시 유의가 필요한 곳 : 6점 ○ 참여농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거나, 광역방제기·무인항공방제기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 : 3점	
3. RPC와 연계성 (25)	25	○ RPC와 계약재배 후 출하한 비율 - 공동농작업 면적의 생산량(통계청 시·군별 평균생산량 자료 활용) 중 RPC와 계약재배하여 출하한 비율에 25를 곱하여 배점 * 농업법인·농협과 RPC간 계약, RPC와 재배단지와 계약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4. 조직운영 (20)	10	○ 고품질 쌀 생산(재배) 체계 구축 여부(세부평가 항목별 합점) - 메뉴얼 구비 : 2점 - 메뉴얼 교육 : 2점 - 메뉴얼 준수 확인 가능 : 2점 - 메뉴얼 위반시 제재 가능 : 2점 - 메뉴얼 이행 : 2점	
	5	○ 수입·지출 및 결산(생산 경비, 영농대행 소득 등)의 투명성 - 수입·지출의 기록 정리 : 1점 - 이사회 등 대표자 보고(집행부 보고 제외) : 2점 - 총회 등을 통한 참여 농업인 보고 : 5점	
	5	○ 공동농작업 등 경영체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참여 농업인에게 환원한 금액의 비율(연도말 기준) * 환원 비율에 따라 배점, 수익이 없는 경우 5점	
5. 자금조달 능력 (5)	5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인 법인 * 법인명의 통장 잔액 금액으로 확인(단기 차입금 제외)	
6. 기타(5)	5	○ 들녘경영체가 GAP 농산물 생산단지인 경우 ○ 들녘경영체가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도 생산하는 경우 ○ 수탁형 계약재배사업 참여 경영체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5점 부여, 기타 항목 모두에 해당하더라도 5점만 부여	
합계	100점		

9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 목 적

○ 인력절감 및 공동영농 등 생산기반 시설 지원으로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해 토종농산물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여 재배 확산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침

○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마을별·들녘별 쌀 관련 농업법인 등을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뒷받침하는데 중점 지원

○ 쌀, 밭작물 등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작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 기자재 등 지원으로 자립 경영체 육성

○ 기계화율이 낮아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밭작물에 대해서는 인력 절감 효과가 높은 농기계를 공급하여 기계화율 제고

○ 논에 벼 이외 토종작물 등 타작물 재배로 쌀 수급안정에 기여

3.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FTA농업경쟁력제고대책,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4.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15%)	시군비(35%)	기타(50%)	
14,210,000	2,132,000	4,973,000	7,105,000	

5. 사업추진

가. 추진 주체 : 시장·군수

나. 추진 기간 : 2016. 1. ~ 12월

다. 추진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5.12~ '16.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② 사업계획 수립 신청	(1월)	▪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수립(읍·면·동) - 시군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립 ▪ 사업신청(읍·면 → 시·군/ 1.31일한)
⇓		
③ 사업계획 수립 보고 및 확정	(2~3월)	▪ 사업계획 보고(시·군 → 도/ 2.29한) -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 사업계획 확정(도 → 시·군/ 3.31한)
⇓		
④ 사업발주 및 추진	(3~4월)	▪ 단위사업별 사업성격에 맞게 계약체결, 사업발주, 사업추진(시·군)
⇓		
⑤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5~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도·시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⑥ 보조금 지급	(6~10월)	▪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⑦ 사업비 정산	(12월)	▪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2.31일한/ 시·군)

6. 세부사업내역

가. 벼 육묘장 설치

○ 목　　적 : 벼 육묘 취약농가에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한 건전묘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육묘부담 경감

○ 지원규모 : 개소 당 660㎡ 이상(필요시 자부담을 늘려 확대 가능)

○ 지원단가(660㎡) : 자동화 160백만원, 반자동화 90백만원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들녘별 50ha이상 벼 육묘 공급 및 수매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농업관련 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별표 10의 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사항을 둠

○ 사업내용

- 자동화 육묘장

· 필수시설 : 육묘온실, 자동제어·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최아기 등

· 선택시설 :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컴퓨터, 육묘상자, 상토

- 반 자동화 육묘장 : 육묘온실, 스프링클러, 스크린(커튼) 등

※ 콘테이너는 재배면적 및 상자 공급량을 검토·제작하여 예산 절감 노력

○ 사후관리 : 완공일로부터 10년

나.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

○ 목　　적 :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광역방제 장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에 기여

○ 지원단가 : 보조금 상한가 적용

구　분	규 격	지원단가 (천원)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광역살포기	3,000ℓ	130,000	19,500	45,500	65,000
광역살포기 탑재차량	3.5톤	45,000	6,750	15,750	22,500
무인헬기	살포폭 7.5m	160,000	24,000	56,000	80,000
무인헬기 탑재차량	1.0톤	19,000	2,850	6,650	9,500

*** 사업추진 시 영세율, 부가세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멀티콥터(드론) 방제기는 필요 시 시군에서 지원단가 등을 결정 시범사업으로 추진

○ 지원대상

- 들녘별 벼 50ha이상, 밭 10ha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농업 관련 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 10의 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사항을 둠

○ 사업내용 : 광역살포기·무인헬기, 운송용 차량, 멀티콥터(드론)

○ 중점 추진 사항

-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단지 등이 집단화 되고 우수브랜드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및 계약재배를 체결한 지역농협 우선 지원
- 시장·군수는 대상 기종 구입에 있어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요구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전자입찰 구매가 가능하며, 사업자 자체 구입 시 추가 부속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시장·군수는 공급업자의 광역방제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다. 범용콤바인 구입 지원

○ 목 적 : 최근 보리, 밀 등 소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 수확 등 기계화율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기여

○ 지원단가 : 대당 56백만원/190cm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맥류 20ha 이상 농협 등과 계약재배하고 집단화된 작목반(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맥류 등 수확이 가능한 범용콤바인 및 부속장비 구입

○ 기대효과 :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밭작물 수확에 있어 다목적 수확기를 통해 인력 절감과 품질 향상 도모

라. 포트 육묘 이앙기 구입 지원

○ 목 적 : 친환경농업단지, 보리, 밀 등 이모작지대에 적합한 포트육묘 이앙기(45일 묘 이앙) 지원으로 건전육묘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단가 : 대당 58백만원/6조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임대사업 추진 시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및 친환경 벼 재배단지 단체 등

○ 사업내용 : 포트이앙기, 파종기, 육묘상자 세트 지원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 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하여 친환경농업 추진 농가에 우선적으로 임대
- 임대기간, 사후관리 등 기타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을 적용 운영

○ 기대효과 : 3.3㎡당 50주 이내 식재로 잡초 등 영농관리 용이

마.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구입 지원

○ 목　　적 : 논두렁 제초기 임대 지원으로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인력절감과 제초제 사용 억제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사업대상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및 친환경 벼 재배단지 단체 등

○ 지원단가 : 4백만원/대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임대사업 추진 시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 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하여 친환경농업 추진 농가에 우선적으로 임대 사용토록 하고 필요시 들녘별 경영체 또는 법인, 농가에 임대 활용
- 임대기간, 사후관리 등 기타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을 적용 운영

※ 논두렁 제초기 외 일반 제초기 구입 지양

바. 토종 농산물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육성 지원

○ 목　　적 : 토종농산물 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 및 논에 타작물 재배로 쌀 수급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 지원규모 : 최소 0.1ha 이상, 최대 5.0ha 한도

○ 대상품목 : 콩, 조, 수수, 기장, 메밀 등 시·군 심의회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으로 결정

○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단가 : 논 1㏊당 300만원, 밭·기타 1ha당 50만원

- 지급대상이 '논'인 경우는 '15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에 콩, 옥수수 등 타작물을 재배한 경우 1ha당 300만원 지급

  ※ 논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1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 '15년도에 토종 농산물을 재배하여 보조금을 받은 농지는 1ha당 50만원 지급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제외대상 : 한국농어촌공사가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한 간척 농지 또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해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임대한 논,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대상 논(하계작물에 한함)

○ 기　　타

- 신청농지 적합여부, 신청 작물 재배여부 등 현장 조사 후 사업을 이행한 적격 대상자에게 보조금 집행

- 작목 변경 시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

사. 종자소독기 구입 지원

○ 목　　적 : 벼 종자전염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고 균일한 발아로 건전육묘를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및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 지원대상 : 벼 재배단지 단체 또는 쌀 관련 농업법인 등

○ 지원단가 : 3,500천원/대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내용 : 종자소독기(발아기능 포함) 지원

아. 논두렁조성기 구입 지원

○ 목　　적 : 벼 친환경재배단지에 논두렁 조성으로 우렁이 유출을 방지하고, 제초작업 등 각종 농작업 능률 향상에 기여

○ 지원단가 : 5,500천원/대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벼 재배단지 단체 또는 쌀 관련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논두렁 조성기 지원

자. 임대 농기계 구입 지원

○ 목　　적 : 임대사업소 농기계구입 지원을 통한 농가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 사업내용 :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7. 추진요령(공통사항)

가.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붙임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원칙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나. 사업비 집행요령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다. 기자재 지원요령

○ 기자재 지원 대상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조합(업체)을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을 유도

라.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함

○ 사업 추진 후 보조금 잔액 발생 시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으로 추진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7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바. 사후관리

○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대장(서식 1)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벼 육묘장은 설치 이후 사후관리 대장(서식 1)을 작성 비치하고, 공동이용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이용실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사.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을 2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에서는 현장실사 이행

○ 시장·군수는 당초 도에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8. 행정사항

○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 계획서(붙임 2) 제출 : 2016. 2월말까지

○ 사업 추진상황 연 2회 제출(붙임 3) : 6월말, 10월말

○ 사업비 집행(정산)실적 제출(붙임 4) : 2016. 12월말까지

○ 벼 육묘장 및 광역방제기 활용실적 제출(붙임 5) : 2016. 12월말까지

<붙임 1>

2016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 신청서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연락처)	(0 0 0) 000-0000-0000	회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해당사업 체크 □ 벼 육묘장(자동□·반자동□) □ 광역방제기(광역살포기□·무인헬기□) □ 범용콤바인 □ 포트육묘이앙기 □ 논두렁 제초기 □ 토종농산물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육성 지원 □ 종자소독기 □ 논두렁조성기		
사업량	㎡, 대		

(단위 : 천원)

사업비 현 황	합 계	도비	군비	자담

2016 친환경농업과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인)

00시장·군수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끝.

<붙임 1-1>

2016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벼 육묘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16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시·군　　읍·면　　리　　번지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사 업 규 모 (*육묘장의 경우 출아실 포함)	육묘 컨테이너	최아기	기　타
㎡ (구조형태 :　　)	대	대	

※ 사업내용 세부적 작성과 육묘 컨테이너는 재배면적 및 공급량을 감안하여 제작 지도

○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 부지확보 계획

○ 부지 확보 및 토지사용 승낙서 완료 : 확보 및 예정(　월)

○ 시설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월

❑ 사업 실적 의무적 보고사항 준수(6월말)

○ 위 사업 신청자(대표) _____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나타난 실적에 대해 사업시행 지침(붙임 5)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의무적 보고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붙임 1-2>

2016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광역살포기, 무인헬기, 범용콤바인, 포트육묘이앙기, 논두렁제초기, 종자소독기, 논두렁조성기*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16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ㅇㅇㅇ자택, ㅇㅇㅇ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ㅁ직접 구매, ㅁ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장제·수확·파종 면 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수확·파종 작 업 비	비 고
ha	호	원/10a당	

❑ 사업 실적 의무적 보고사항 준수(광역방제기 10월말, 사업완료 즉시)

○ 위 사업 신청자(대표) _____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나타난 실적에 대해 사업시행 지침(붙임 5)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의무적 보고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붙임 1-3>

2016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토종 농산물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육성 지원*

❑ **지급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14~’15년 재배작물		’16년 재배작물 및 신청면적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14년	’15년	작물	신청면적 (㎡)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작 물 별 신청면적	○○(예, 콩)	○○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기간은 1년이므로 보조사업 이행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붙임 2>

2016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개소, 대, ㎡, 천원)

세부 사업명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등 (대표자)	사업량	지 원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벼 육묘장	자동							
	반자동							
광 역 방제기	무인헬기							
	광역살포기							
범용콤바인								
포트육묘이앙기								
논두렁제초기								
토종농산물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육성								
종자소독기								
논두렁조성기								

<붙임 3>

2016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세부 사업명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등 (대표자)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붙임 4>

2016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등 (대표자)	추 진 실 적			세부사업내용
		계 획	실 적	진도	
합 계		(㎡, 대)	(㎡, 대)	(%)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집행잔액 발생 시 사유 :

❑ 기타 건의사항(문제점)

○

<붙임 5>

❑ 벼 육묘장 공급(활용) 실적

(단위 : ㎡, ha, 상자, 원)

시·군	보 유 단 체 명	설치 년도	시설 규모	재배면적	육 묘 생산량	육 묘 공급량	공급 단가	주품종 (2개이내)

※ 엑셀 작성 제출

❑ 광역방제기 방제실적(광역살포기·무인헬기)

(단위 : ha, 회)

시·군	보 유 단체명	기종	규격	방제지역	방제 면적	방제 횟수	친환경 여 부	방제비용 (10a/원)	전년도 실 적

(서식 1)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관리대장(예시)

<table>
<tr><td>사 업 명</td><td colspan="5">무인헬기, 광역방제기, 포트육묘이앙기, 논두렁제초기,
종자소독기, 논두렁조성기 등</td></tr>
<tr><td>법인단체/
농협/대표자</td><td>농업회사
○○농협</td><td>주 소</td><td colspan="2">00시·군 00읍·면
00리 00번지</td><td>연락처</td><td>010
-0000-0000</td></tr>
<tr><td rowspan="2">사 업 비</td><td>합 계</td><td>도 비</td><td>시군비</td><td colspan="3">자 담</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사업내용</td><td colspan="6"></td></tr>
<tr><td>기종 명</td><td></td><td>제조회사
(전화번호)</td><td></td><td>규 격
(모델명)</td><td colspan="2"></td></tr>
<tr><td>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td><td></td><td>구입 년월</td><td></td><td>보관장소
(관리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td></tr>
<tr><td colspan="7">사 진</td></tr>
<tr><td colspan="3">농 기 계</td><td colspan="4">관리번호 명판</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4">ㅇ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ㅇ 그림파일에서 붙여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td></tr>
</table>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서식 2)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벼 육묘장 설치**				
쌀농업회사 법인/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010 -0000-0000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온풍기 등				
면 적(㎡)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설치업체 (전화번호)		준공년월		관리자 (연락처)	

사 진	
벼 자동화 육묘장 전경	내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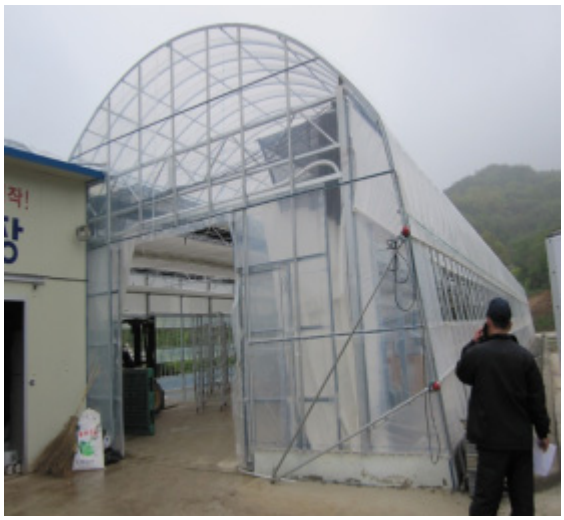	

*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진 모두 첨부

⑩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1. 목 적

○ 단순 반복의 고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 행사·축제 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하여 생산성 제고

2. 추진방침

○ 영농철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 보호

○ 고령·여성농업인 등에 우선 지원하여 농작업 능률 제고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50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40%)	시군비(40%)	자담(20%)	
250,000	100,000	100,000	50,000	

* 1대당 단가 : 500천원(도비 200, 시군비 200, 자담 100)

4.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추진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대상자 : 고령·여성농업인 등 연간 활용기간이 많은 대상자를 시군에서 자체 선정하여 사업효과 제고

○ 공급규격 : 너비 1M × 길이 2M, 중량 33KG, 높이조절 가능

○ 구매·공급 : 시장 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사업추진 체계〉

구매·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책임하에 연간 활용도 등을 감안 선정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5. 행정사항

가.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적기 이용 및 활용도 제고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의거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 및 사업비 집행실적 도에 제출 : 10. 31까지

별 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 및 사업비 집행실적**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대)			지원농가	공급단가
계 획	실 적	비 율		
		%	호	원

○ **사업비 집행실적**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 (도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기타	

* 잔액발생 시 사유 :

11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귀농인 등에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영농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5,333조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천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13,333,000	2,000,000	4,666,000	6,667,000	

* 1조당 단가 : 기종별로 각각 다름

4. 사업추진요령

가. 추진주체 : 시장·군수

나. 추진기간 : 2016. 1. ~ 12월

다. 사업대상자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에 타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라.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70만원 이상인 농기계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마. 지원기준 및 한도액 : 대당 7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 원 지원)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5. 사업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단위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 우선순위(시장군수가 우선순위 적용)

- 열성을 갖고 영농에 주력하고 있는 정착 귀농인
- 정부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 시·군에서는 농업관련 각계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종과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

나.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지원 한도(200만원) 내에서 구입비의 50% 지원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다.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사후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6. 행정사항

가.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실적(별지 제3호 서식) 제출 : 10. 31까지

나. 다목적 소형 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작성 비치 : 연중

〔별지 제1호 서식〕

2016년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수도작 ㎡, 하우스 등 ㎡

- 기타사항 :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명) :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000농기계 000대리점

위와 같이 2016년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16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년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별지 제3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천원, %)

시군	공급실적			사 업 비											
				계획				집행실적				비율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 엑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사후관리 대장

<table>
<tr><td>사 업 명</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사 업 자</td><td>주소</td><td colspan="6"></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천원)</td><td colspan="2">합 계</td><td colspan="2">도 비</td><td colspan="2">시군비</td><td>자 담</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사업내용</td><td colspan="7"></td></tr>
<tr><td>기종명</td><td></td><td>제조회사
(전화번호)</td><td colspan="2"></td><td>규 격
(모델명)</td><td colspan="2"></td></tr>
<tr><td>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td><td></td><td>구입 년월일</td><td colspan="2"></td><td>보관장소
(관리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8"></td></tr>
<tr><td colspan="8">사 진</td></tr>
<tr><td colspan="4">농 기 계</td><td colspan="4">관리번호 명판</td></tr>
<tr><td colspan="4"></td><td colspan="4">ㅇ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ㅇ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td></tr>
</table>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12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1. 목 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추돌사고 등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비(40%)	도비((20%)	시군비(40%)
3,200대	320,000	128,000	64,000	128,000

* 1개당 단가 100천원 기준

4. 사업 시행요령

가.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나.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장, 조합장, 이장단 대표, 읍면단위 농업인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으로 「읍면동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 고령농가, 영세농가에 저속차량표시등 설치 희망농가 우선 선정

○ 읍면동에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시군 「농업기계 등화장치 설치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회」 또는 「농정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 시·군에서는 농업관련 각계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종과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

다. 제품선정

○ 시험검정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농기계 등화장치 대상 선정 시·도(시·군·구)에서는 제품 선정시 시험검정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제품 공급시에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

* 등화장치 선정은 빛의 발산효과가 높아야 하며,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하여야 하며 등광색은 황색(붉은색, 청색 포함)의 구조일 것

* 저속차량표시등(등화장치)의 1등당 광도는 20칸델라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 등화장치는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 등화장치 내·외부 사진 첨부(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10개 이상)이상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검정기관 성적서 및 품질보증기관 보증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에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시 품질보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제시한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라. 사업 추진담당부서

○ 도 : 농림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061-286-6343)

○ 시·군 : 친환경농업과, 농정과 등

○ 읍·면 : 농기계(산업계)업무 담당부서

마. 사업신청 및 시행

○ 안전장비 설치 희망자가 신청서를 작성 읍면에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기계 등화장치 설치완료서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구비서류**

· 설치확인서 1부(설치업체 확인 필)

· 설치 전·후 사진 각 1매씩 부착

· 입금 은행계좌 사본 1부

· 설치업체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1부.

바. 사업관리

○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검정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자 등으로 조사 중일 경우 시험검정기간은 조사 공급업체에 대한 검정을 진행할 수 없음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보고

○ 사업비는 설치 완료 확인서 접수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후 그 결과를 도에 제출

시·군	예산액(천원)			등화장치(개) (농기계 대수)				비 고
	배정액	집행액	잔 액	계	경운기	트랙터	기 타	
				000개 (000대)	000개 (000대)	000개 (000대)	000개 (000대)	

5. 행정사항

○ 농업기계 등화장치 설치완료 후 신청인 제출서류 최소화

-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시 서류 생략 및 이장 확인 대체

○ 연 2회 이상 설치 업소별 A/S 실태 점검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주 소		연 락 처	T/
성 명			H/
구입년도 (경과기간)	년 월 일 (년 월)	내구연한	

위와 같이 2016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합니다.

2016. . .

신 청 인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2호 서식>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시·군 보관용, 엑셀파일)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개)	단가	사업비 (원)
시·군	읍·면	리·동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완료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T/
	주 소			H/
시공사	상 호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대 표 이 사		연 락 처	T/
				H/
	주 소			

위와 같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완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대표이사 : (인)

<부착 전·후 사진 각 1매>

시장·군수 귀하

13 농기계 임대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농기계 운전 및 수리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취 및 관리, 대체 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다른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3. 지원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대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함

* 단,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및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장기임대 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음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인접 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도 임대할 수 있음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

1.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어 적기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농기계 운전 및 수리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취 및 관리, 대체 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함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하나, 대형 트랙터(6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지원

- 내용연한이 종료된 동일 기종의 대체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음
-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 구입 확대 추진

○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및 세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비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비
-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컴퓨터 및 S/W 구입)

  * 가급적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입출고 관리 및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도비 15%, 시군비 35%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총사업량 : 7개소

○ 사업단가 : 1,600~8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도비 15%, 시군비 35%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단가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

- 보관창고는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고 5억 한도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교체구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초 신설사업 : 해당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추가 신설사업 : 해당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증설사업 : 기존의 임대사업소 또는 인접하여 보관창고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1,600~800백만원/개소 차등 지원

② 주산지 일관기계화

1.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충분히 확보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농기계 운전 및 수리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주요작목 재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집단재배지가 형성되어 있는 시·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주요작목 일관기계화 기계 구입

- 파종이식 및 수확 단계 농기계 중심으로 구입

○ 일관기계화 재배 컨설팅 및 기계재배 농업인 교육 비용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총사업량 : 4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도비 15%, 시군비 35%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단가 범위 내에서 주요작목의 파종이식 및 수확용 농기계 중심으로 구입

- 주요작목의 파종이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에 총사업비의 80%이상을 사용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③ 여성친화형 농기계공급

1.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충분히 확보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농기계 운전 및 수리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여성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용이 많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 (여성친화형 농기계)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여성 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되었거나 여성 농업인의 이용이 많은 농기계

* 여성친화형농기계 예시 : 승용관리기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총사업량 : 15개소

○ 사업단가 : 5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도비 15%, 시군비 35%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단가 범위 내에서 여성 친화형 농기계 중심으로 구입

- 총사업비 중 80%이상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 현지 확인하고 우선순위와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시·군·구

○ 시·군·구는 농기계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심의원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및 임대농기계 구입(임대기종 선정, 수의계약시 업체 선정 등), 임대료 부과기준 등을 심의

○ 사업계획은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기계 구입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1년 개정)를 활용하여야 함
- 밭농사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파종·이식, 수확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구입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적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2월)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임대농기계 구입계획, 농기계 임대방식, 임대료 수취방법, 이용률 제고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 세부계획(최하 3년 이상)을 수립하여 추가 제출함

- 장기임대시에는 농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 등의 보관창고 확보현황, 수리비 부담, 공동이용 농가 및 경지면적, 공동이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수립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지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기술인력 및 조직확보여부, 부지확보여부, 기계구입계획의 적정성, 홍보계획의 적정성, 임대실적, 홍보실적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구 분	시·군·구별 임대농기계 보유대수				
	200대 미만	~ 300대	~ 400대	~ 500대	500대 이상
계	4.0	5.0	6.0	7.0	8.0
정규직	2.0	2.0	3.0	3.0	4.0
계약직	2.0	3.0	3.0	4.0	4.0

* 단, 분소가 있는 경우 계약직은 임대사업소(본소+분소) 개소수 ×2명이 되어야함

▪ 가점 : 관외경작자 임대허용, 농작업대행팀 운영, 지역간 농기계 공동이용 실적, 적정 임대료 부과실적, 콜센터 설치 및 운영

▪ 감점 : 예산집행의 부적정(이월, 사업포기 등)

- 최초 신설 사업 및 추가 신설사업의 경우 우선 선정
- 증설사업의 경우 그 동안의 지원액 및 운영실적, 지역여건에 따른 증설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 농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시·군·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지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구에 통지함(당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 확정·통지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지자체의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임대농기계 추가 구입, 보관창고 확대 설치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수시)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적정 작업면적을 확보하고 기존 임작업자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임대료는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내용연수 경과 이후 임대농기계를 재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임대료는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농진청에서 발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
- 임대료 산정시 농업인, 지역농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도

○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군·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시·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의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서식 별도 통지]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 기종별 내구연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농촌진흥청)」의 임대용 농업기계 내구연수 기준을 준용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 금지	○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 및 파손 등의 경우, 농기계 교관 등 담당자의 판단 하에 폐기처분 가능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군·구) 및 관련업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추진한 시·군·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1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16년과 동일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16. 1. 15까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신청서와 세부계획서(양식 전년 동일)를 ’16. 8월말까지 제출

○ 기타사항은 ’16년도와 동일함

[별지 제1호 서식]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

<table>
<tr><td>신청기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담 당 자</td><td>소속(부서)</td><td>직 위</td><td>성 명</td><td>전화번호</td><td>FAX</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사업구분</td><td rowspan="2">최초 신설 ( ),
추가 신설 ( )
증설 ( )</td><td rowspan="2">사업비
(백만원)</td><td>합 계</td><td>국 고</td><td>지방비</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4">사업내용</td><td colspan="3">시설·장비</td><td colspan="2">소요예산(백만원)</td></tr>
<tr><td colspan="3">임대농기계 구입 : 종 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보관창고 설치 : ㎡</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관리장비 구입 : 종 대</td><td colspan="2"></td></tr>
<tr><td>전담인력
확보내용</td><td colspan="2">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td><td>조 례
제정여부</td><td colspan="2">제정( ), 미제정( )</td></tr>
<tr><td colspan="3">보관창고 건축부지 확보(기설치) 여부</td><td colspan="3">확보·기설치( ), 추후 확보( )</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대사업 세부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016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신청서

<table>
<tr><td>신청기관</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담 당 자</td><td colspan="3">소속(부서)</td><td>직 위</td><td>성 명</td><td>전화번호</td><td>FAX</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주산작목</td><td></td><td>재배면적
(ha)</td><td></td><td rowspan="2">사업비
(백만원)</td><td>합 계</td><td>국 고</td><td>지방비</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사 업
내 역</td><td colspan="5">세부 내역</td><td colspan="2">소요예산(백만원)</td></tr>
<tr><td colspan="5">파종·이식용 농기계 : 종 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수확용 농기계 : 종 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기타 :</td><td colspan="2"></td></tr>
<tr><td>전담인력
확보내용</td><td colspan="7">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016년 여성친화형농기계 사업 신청서

<table>
<tr><td>신청기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담 당 자</td><td>소속(부서)</td><td>직 위</td><td>성 명</td><td>전화번호</td><td>FAX</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신 청
개소수</td><td>0개소</td><td>신청
내역</td><td colspan="3">ㅇ 본점
ㅇ 00지점</td></tr>
<tr><td rowspan="2">구입
농기계</td><td rowspan="2">ㅇ 승용관리기 : 0대
ㅇ 000000 : 0대
ㅇ 000000 : 0대</td><td rowspan="2">사업비
(백만원)</td><td>합 계</td><td>국 고</td><td>지방비</td></tr>
<tr><td></td><td></td><td></td></tr>
<tr><td>전담인력
확보내용</td><td colspan="5">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친화형농기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계획서 1부

14 영농안전장비 지원

1. 목 적

○ 농약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2. 추진방침

○ 공동 방제단,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및 쌀 전업농, 농약살포 시 중독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지원 공급하되 밭벼 재배농가는 제외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지원 대상 농업인에게 안전사용 장비 1조씩 공급

- 안전사용 장비 : 1조(방제복 1벌, 개량마스크 5개, 차광모자 또는 보안경 1개)

※ 안전사용 장비 중 마스크, 차광기능 모자, 보안경 공급은 농업인의 선호도에 따라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조정가능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재 원 별	
			도 비(15%)	시군비(85%)
26천조	40,000원	1,040,000	156,000	884,000

4. 세부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16. 1.~5월(농약사용 성수기 이전 공급)

나. 공급규격 : 공인검사(시험) 및 검정을 받은 규격제품

※ 방제복의 원단은 방수성이 뛰어나고 땀 배출되고, 외부의 비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기능성 소재 사용제품 공급

다. 구매(공급) 방법

○ 구매방법은 시장·군수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병해충방제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결정

※ 기준단가는 예시가격이므로 조달구입, 비교견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적정가격으로 공급

○ 담당공무원은 중복공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급 상황 확인

〈사업추진 체계〉

구매·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구매 공급방법 결정(병해충방제협의회 등)

⇓

공급대상자 선정 -- 시장, 군수 책임 하에 병해충 공동방제단, 농업회사 법인, 작목반, 전업농 등 방제작업이 많은 농업인 등에게 공급(밭벼 재배농가 제외)

⇓

농가 현품 공급 -- 대상농가당 1조씩 공급

(방제복, 마스크, 차광모자 또는 보안경)

⇓

사업비 정산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의 청구내용 대조 후 일괄 정산

라.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방제대책 협의회 등 자체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영농안전 사용 장비 지원공급 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무상공급 내용, 기대효과 및 농작업 시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지도)

5. 행정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 영농안전장비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 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 영농안전장비 공급대장 시군에 비치

○ 영농안전장비 공급 및 정산실적 도에 제출 : 2016. 6. 30

〈관련 서식〉

□ 영농안전장비 공급 및 정산실적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			지원농가	공급단가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조		%	호	원	

○ 사업비 집행실적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 (도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기타	

※ 잔액발생 시 사유 :

□ 영농안전장비 공급대장(시군비치)

일 련 번 호	공 급 농 가			공 급 확 인		
	성명	면,리(동)	수량	일자	직	성명
'16 -			조			

4 2016년도 사업별 달라진 제도

<밭농업 직접지불제>

구 분	현 행(2015)	변 경(2016)	변경 사유
밭농업 직접지불제	○ 지급단가 -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26개 품목 재배 : ha당 40만원 - 지목과 관계없이 모든 밭작물 : ha당 25만원	○ 지급단가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밭작물에 ha당 40만원	지급단가의 일원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구 분	현 행(2015)	변 경(2016)	변경사유
농작물 재해보험	○ 대상품목 : 46개	○ 대상품목 : 49개 *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추가	가입대상 품목 증가
농업수입 보장보험	○ 대상품목 : 3개 (양파, 콩, 포도)	○ 대상품목 : 4개 (양파, 콩, 포도, 마늘)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구 분	현 행(2015)	변 경(2016)	변경 사유
경운기 안전장비지원	○ 경운기 안전장비 지원	○ 사업폐지	사업폐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재원비율 : 국비 40%, 시군비 40%, 자담 20%	○ 보조 100% 설치 지원	보조율 변경

<농기계 임대사업>

구 분	현 행(2015)	변 경(2016)	변경 사유
농기계 임대사업	○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지원내용의 세분화

Ⅳ

원예·특작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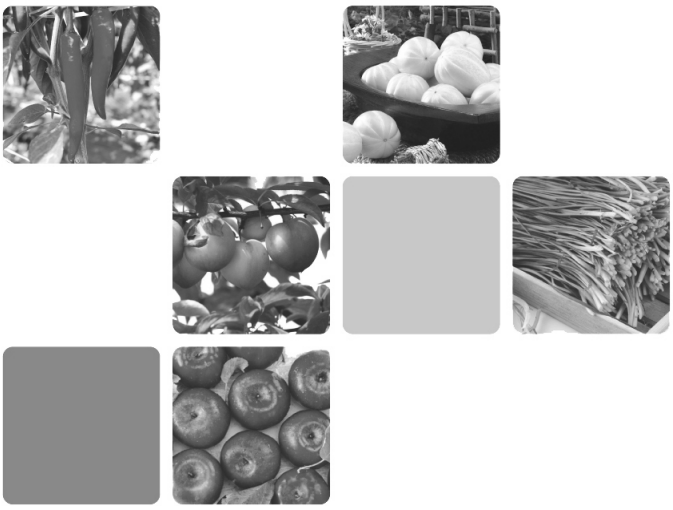

Ⅳ. 원예·특작 분야

1 2015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가.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예시설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지역 특화품목 중심으로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도모

○ 시설원예 현대화 및 원예농산물 품질개선으로 경쟁력 확보

- 품질개선사업 43개소 231억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30ha, 60억원

○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 5개소, 20억원

○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 5개소, 20억원

○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 21개 시군, 67억원

나.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원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및 고품질 과수의 안정적 생산을 통한 공급기반 구축

○ 난방비 절감을 위한 농업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 : 119ha, 221억원

○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 17개소, 11.5억원

○ FTA 대응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 563대, 16.9억원

○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 1개소, 1.5억원

다.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한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 5개소, 23억원

라.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 주산지 중심의 자율적 수급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

- 품목 : 겨울배추(해남·진도), 양파(해남·무안·함평·신안), 대파(영광·진도·신안)

○ 배추 등 노지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무·배추 출하조절사업(해남) : 70억원

2 2016년도 추진계획

가. 기본방침

○ 고품질 원예·과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공급기반 마련

○ 생산기반 확충 및 시설 현대화로 농가경영 안정 및 소득창출

○ 수급불안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유통 조절기능 강화

나. 중점 추진방향

○ 파프리카, 토마토 등 원예농산물 재배단지의 시설현대화 및 기반구축을 통해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

- 양액재배시설 등 온실 현대화를 위한 시설원예품질개선 : 43개소, 256억원
-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 : ’15) 20개소→ ’16) 22개소→’17) 25개소
- 지열, 공기열, 다겹 보온커튼 등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 101ha, 215억원
-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 40ha, 80억원

○ 시군별 지역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및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장교섭력 강화

-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 8개소, 40억원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 4개소, 24억원
- 특화품목육성을 위한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 21개시군, 66억원

○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유통조직 활성화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현대화

· 사업량/사업비 : 나주, 고흥 등 4개 권역, 17개 시군/ 85억원

· 사업내용 :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방풍망, 방조망, 우량품종갱신 등

- 유통조직 활성화를 위한 통합 마케팅 및 농가 조직화 지원 : 115억원
- 다국적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도단위 단감 브랜드 육성(’16～’18) : 9억원

○ 양파 등 노지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보장

- 품 목 : 겨울배추(해남·진도), 양파(해남·무안·함평·신안), 대파(영광·진도·신안)
- 채소류 생산안정제 : 30천톤(겨울배추 20, 양파 10)

1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폐열의 이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20,673	22,107	21,578	32,484
국 고	8,064	8,622	7,886	11,694
융 자	2,080	3,602	4,593	6,496
지방비	5,139	5,574	5,597	6,172
자부담	5,390	4,309	3,502	8,122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은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인 경우 가능
- 신규 온실설치 예정 시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등 첨부 또는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온실 신개축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가능

○ 지열·지중열냉난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 지자체가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제한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소각장 폐열의 농업용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 제약요건이 없는 지역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에 한함)

○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등 열대과수)은 지원대상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따른 규격 시설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 공통사항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제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 신규설치 온실사업자는 최대부하 발생일과 응급상황에 대응하도록 적정 보조난방 구비(단, 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냉난방

가. 대상시설 요건

○ 다음 시설규모로서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업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지중열냉난방시설은 5,000㎡ 미만)

  * 철골조온실, 단동형·연동형 파이프식 온실(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온실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주변여건과 경제성 등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이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재배사 : 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단열기준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온실의 경우 위의 2가지 경우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가능

- 버섯재배사, 무창계사돈사오리사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 보온시설 보강 및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지열 열교환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토지 확보

- 사업신청자가 권장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시 사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추진

*** 사업 착수(위수탁 협약) 전까지 필요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기존온실 주변에 매설 공간이 없는 경우는 온실 내에 굴착기가 들어가 내부 바닥을 파고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한 시설

*** 작물 재배기간과 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 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지열 열교환 설비 설치를 위한 토지를 소음·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 확보**

- 수평 밀폐형은 온실 재배 면적의 16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축산관련 시설은 시설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나. 대상 생산물 요건

○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참고,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다. 지원시설

○ 해당시설 시공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축산시설의 경우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 히트펌프 적용 기준

- 지열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
- 지중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검정제품

신재생에너지시설-폐열 재이용

가. 대상시설 요건

○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소각장 폐열을 활용하여 농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농업인으로 추진단(농업법인 등) 구성,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한 시·군

- 지자체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 참여자가 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 통지 후 1개월 내 사업추진단 설립

*** 농업시설은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대상요건에 준함**

나. 대상 생산물 요건

○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참고,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다. 지원시설

○ 지원자금 용도는 시설 도입을 위한 토목·건축, 히트펌프 등 열원 이용·이송 설비, 전기용량 증설 등 사업시행을 위한 제 비용

- 공모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설계 등 시행계획 수립·공사감독·사업관리비 등 제 경비, 폐열 이용 냉난방 공동공급 시설 등 농업활동을 위한 시설조성 사업비
-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설은 시설원예 관련시설에 70% (사업비 기준) 이상 공급하도록 계획 수립

○ 시설 부지확보는 자부담 원칙이며,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 사업비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시행

신재생에너지시설-목재펠릿난방기

○ 시설원예용 목재펠릿난방기(온풍기·보일러)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다겹보온커튼(알루미늄스크린),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등

에너지절감시설-공기열냉난방

가. 대상시설 요건

○ 농가별(법인포함) 농작물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 10,000㎡ 미만의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업시설

* 온실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2중 보온커튼·수막시설 설치

나. 대상 생산물 요건

○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참고,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다. 지원시설

○ 공기 대 공기 형식 :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공기 대 물 형식 :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축열조탱크, 순환펌프 및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히트펌프 적용 기준

- 공기 대 공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13조에 따라 신고 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공기 대 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COP(성적계수):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패키지 지원

○ 본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개별시설 2가지 이상의 시설에 대해 묶음 지원

- 다만 묶음 지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농촌진흥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컨설팅(적용진단, 별지 제8호 서식)을 통해 확인 후 결과 첨부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구 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지중열·폐열	60%	10%	20%	10%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금 다음 해 연장 시 고정금리에 한하여 대출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지열·지중열·공기열·폐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지열 형식변경 및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승인 후 처리

* 사업진행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지원형태 비율로 조정

  - 국고 또는 지방비의 추가투입 없이 계획 변경 시,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불가항력의 사유: 사업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사태를 말하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통사항 >

- 지침에 제시한 지원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 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모든 사업(위탁사업 제외)은 보급시설 선정을 위해 사업대상 농가, 농자재 보급업체 등이 참석하여 해당 농자재의 장단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후 사업추진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 폐열 재이용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 또는 면적(ha)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 업 비 : 시설 부하용량·면적(kW, ha)×적용단가

* 지열·지중열·공기열 시설 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 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설비형식		적용단가
지 열	-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지 중 열		1,069천원/kW
공기열	-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폐 열		1,250백만원/ha

목재펠릿난방기

단가	지원내용
○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가격 적용 * 농업기계가격(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가격집)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 설치비 지원 목록 -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 온실내부(온수)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 난방기가격 및 설치비 합산적용, 온실 내 미설치된 목록 지원 제외

에너지절감시설

<table>
<tr><th>세부사업</th><th>단가</th><th>지원내용</th></tr>
<tr><td rowspan="3">○ 다겹보온커튼</td><td>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td><td rowspan="2">○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td></tr>
<tr><td>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이하/㎡</td></tr>
<tr><td>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이하/㎡</td><td>○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td></tr>
<tr><td>○ 순환식수막재배시설</td><td rowspan="2">5천원이하/㎡</td><td>○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td></tr>
<tr><td>○ 열회수형 환기장치</td><td>○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td></tr>
<tr><td>○ 자동 보온덮개</td><td rowspan="2">2.5천원이하/㎡</td><td rowspan="2">○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td></tr>
<tr><td>○ 배기열 회수장치</td></tr>
</table>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 자료 활용**

패키지 지원

○ 기존 지원시설의 경우 기존 단가에 따라 시행하고, 기존 지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자재의 경우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첨부

- 유리온실 패키지: 지중열냉난방+다겹보온커튼 + 근권난방

*** 유류난방 대비 87.2% 비용 절감(파프리카, 농업에너지절감모델개발사업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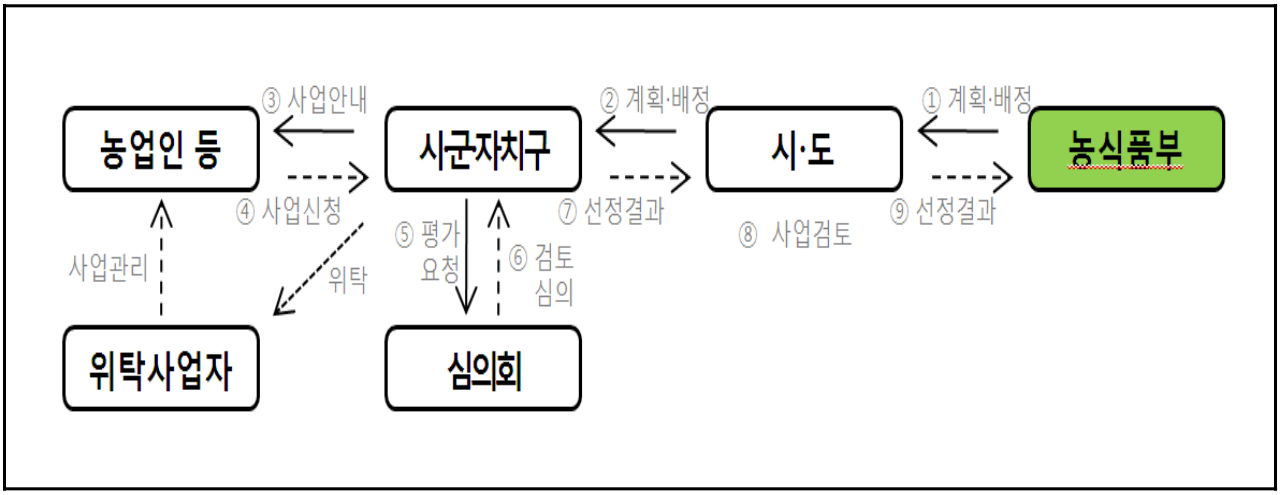

1. 사업신청 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5.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5.12월)

시·도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 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6.1월)

사업대상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6.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공기열·지열·지중열 냉난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16.1월)

○ 지자체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 지원('15.10월~)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시설원예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16.1월)

○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료 접수 및 현장조사 시행 후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16.2월)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별지 제3호 서식) 서식에 따라 사업성을 검토하여 시·군에 통보
-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6.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

폐열 재이용시설

농림축산식품부

○ 폐열재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지침 시달('16.3월)

- 사업추진계획, 공모제안서 포함사항 제시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공모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선정 및 사업추진단 구성
- 공모제안서 제출 전 참여농업인 미선정시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선정

-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는 기반시설, 시설원예, 지역개발, 농촌경제, 조경 등 담당부서 관계자와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 공모제안서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자문

○ 시·도지사는 시·군 공모제안서(의견 첨부) 및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사업대상자(사업추진단)

○ 토지, 농업시설(온실)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시·군과 협조하여 사업 추진

- 사업추진단은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징구, 사업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참여 농업인 의견수렴, 방향설정 등 수행

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시·도

○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농진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 검토

<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사업계획은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메뉴, 지원규모 및 단가 등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 특성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확인, 첨부하여야 함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목재펠릿난방기는 시·도, 시·군별 농가대상 설명회 개최하여 펠릿 및 난방기의 성능, 열효율 및 사후관리(A/S) 등을 충분히 설명 후 신청토록 조치

사업대상자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6.1월)

2. 사업자선정 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16.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별첨 참고 1-1 또는 1-2)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16.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6.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폐열 재이용시설

농림축산식품부

○ 대상지 선정방침 시·도 시달 및 공모제안서 등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지 선정, 선정결과 시·도 통보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여부 사전조사

-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제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공통사항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

* 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합본하여 교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농식품부는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지열·지중열·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장·군수는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과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분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자금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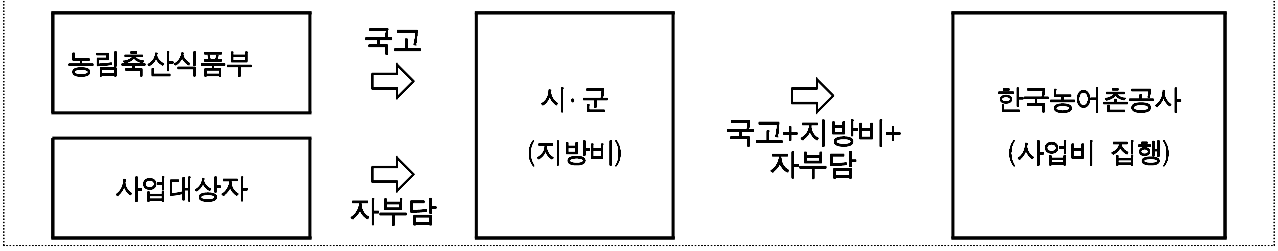

시·도, 시·군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시 시·군에 계약대행 및 시·군이 민간에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 위탁)함을 협의

○ 시·군은 사업 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 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에게 교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지열히트펌프' 구매를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하는 경우,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수시로 사업시행 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 (분기별 1회 이상)

○ 사업대상자가 경영 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변경
- 시·도, 시·군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시·군은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준공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 및 정산결과 시·도 보고, 시·도는 해당 시·군 사업결과 농식품부 보고

○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대상자의 요청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비	8.83	7.98	7.35	7.10	6.89	6.64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사업신청 ⇨ 설계단계 ⇨ 공사발주 ⇨ 시공관리 ⇨ 준공단계 ⇨ 하자관리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지열이용검토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중인 지방보급보조사업 및 그린홈 보급사업의 지열이용 검토 전문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공사착수 전)**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시·군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폐열 재이용시설

시·군

○ 시·군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 시·군으로부터 사업준공에 따른 사업결과 통보 시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필요시 소속지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시·군

○ 공모사업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관련부서 협의 및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계사업, 사업비 투입계획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

○ 시·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시장·군수 보고 후 변경

○ 공모사업자가 제출한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 사업 시행계획 수립·승인 시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

- 위탁시행 시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요율에 준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금의 흐름은 지열공기열 등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프로세스와 동일

○ 사업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필한 시공회사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계약단위 실시 원칙, 필요 시 완료공종(시설)에 대하여 부분 준공 실시

○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 준공 확정 결과를 시·도에 제출, 준공 된 시설물(토지 포함)은 선량하게 유지·관리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공모사업 예비준공검사 실시 후 시장·군수, 사업대상자에게 준공검사 입회 요청, 준공검사 실시 후 준공처리

- 준공검사 시 지적·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 준공 포함) 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장·군수에게 인계된 것으로 봄**

사업대상자(사업추진단)

○ 필요시 공동 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운영

목재펠릿난방기, 에너지절감시설

시·도, 시·군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요령 및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전 통지

○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이월(재연장) 요청 시 이월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사업 이월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에너지공단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로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 기간 연장 필요 시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 단계

공통사항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사·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시장·군수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열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튼 설치농가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사·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4호)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지열·지중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시·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 시장·군수는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자문기관은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 상황과 경영성과 분석평가

6. 성과측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우수단지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농림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7.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17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6.2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냉난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절차 : (신청) '16.4월말까지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16.10월말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6.12월말 → (사업추진) '17.1월~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6.9월

○ 신청자격: '16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6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table>
<tr><td rowspan="7">일반
현황</td><td colspan="2">유형
(해당유형 ☑ 표시)</td><td colspan="2">□ 개인</td><td colspan="3">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td></tr>
<tr><td colspan="2">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td><td colspan="2"></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남/여)</td></tr>
<tr><td colspan="2">재배작물
(사육축종)</td><td colspan="2"></td><td>재배규모
(사육두수)</td><td colspan="2">(㎡, 마리)</td></tr>
<tr><td colspan="2">소속
농가 수</td><td colspan="2">호</td><td>사업 참여
농가 수</td><td colspan="2">호</td></tr>
<tr><td colspan="2">주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일반전화번호</td><td></td><td>휴대전화번호</td><td></td><td>전자우편
(e-mail)</td><td></td></tr>
<tr><td rowspan="10">시설
현황</td><td rowspan="4">생산
시설</td><td rowspan="2">원예</td><td>유리온실</td><td>경질판온실</td><td>자동화비닐온실</td><td>일반온실</td><td>버섯재배사</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축산</td><td>무창돈사</td><td>무창계사</td><td>무창오리사</td><td>무창분만돈사</td><td>무창임돈사</td></tr>
<tr><td>마리</td><td>마리</td><td>마리</td><td>마리</td><td>마리</td></tr>
<tr><td colspan="2" rowspan="2">부대시설</td><td>양액재배</td><td>예냉·저장·선별</td><td>관수시설</td><td>환경제어</td><td>기타</td></tr>
<tr><td>㎡</td><td>㎡</td><td>식</td><td>식</td><td></td></tr>
<tr><td rowspan="4">난방
시설</td><td rowspan="2">난방
유형</td><td>온풍난방</td><td>온수난방</td><td>온수보일러</td><td>태양열병합</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가온
방식</td><td>고체연료</td><td>유류·가스</td><td>전기</td><td>지열·지중열</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신청
내용</td><td colspan="2" rowspan="4">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td><td>사업명</td><td>세부사업</td><td colspan="2">신청시설</td><td>신청면적</td></tr>
<tr><td rowspan="2">시설원예
현대화</td><td>□ 원예전문단지</td><td colspan="2"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 일반원예시설</td></tr>
<tr><td>ICT 융복합 확산</td><td>□ 스마트팜시설</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td><td>□ 신재생에너지</td><td colspan="2">□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td><td>㎡</td></tr>
<tr><td>□ 에너지절감</td><td colspan="2">□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td><td>㎡</td></tr>
<tr><td colspan="2">사업예정지</td><td colspan="6">(반드시 상세주소 기재)</td></tr>
<tr><td colspan="2">재원조달
(백만원)</td><td>계</td><td>국고</td><td>지방비</td><td>융자(신청액)</td><td>자부담</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 첨부서류 : 지열·지중열·공기열·폐열 사업신청자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③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첨: 참고2)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자에 한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첨: 참고2)

4.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이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세부계획서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지열, □ 지중열, □ 공기열(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기타	계	온풍 난방	온수 난방	기타		현재 용량	인입 거리	비상 발전기
㎡	㎡	㎡	㎡	㎡	㎡	㎡	㎡	㎡	㎡	년	kw	m	kw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 사업예정시설: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① 벤로형유리온실, ② 양지붕형유리온실, ③ 비닐연동, ④ 비닐단동, ⑤ 기타
- 기존·신규: ① 기존 보유, ② 신규 설치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 양액재배, ② 점적관수, ③ 자동환경제어, ④ 공정육묘장, ⑤ 환기시설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 ⑬ 보온판넬 75㎜, ⑭ 보온판넬 100㎜, ⑮ 보온판넬 100㎜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 다겹(2중)보온커튼, ② 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 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 부직포 1중, ⑤ 부직포 2중, ⑥ 부직포 3중

* 기타시설장비 : ① 예냉시설, ② 저온저장고, ③ 저온처리실, ④ 집하장, ⑤ 선별처리장, ⑥보광시설, ⑦ 선별기, ⑧ 운송차량, ⑩ 비고란 별도 기재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돈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돈대기사 OO㎡

(2쪽에 계속)

라.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 지열·지중열

지열냉난방 시스템									지중열 냉난방 시스템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수평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수열 교환기-히트 펌프		FCU	TUBE-RAIL	기타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	㎡					㎡	㎡	㎡	㎡			

– 공기열

공기열냉난방 시스템 선택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면적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FCU	TUBE-RAIL	기타
㎡	㎡	㎡	㎡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쪽에 계속)

(3쪽)

다.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라.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시기 및 과정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마리)	월 순	월 순	월 순	월 순	℃

마.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4		2015		20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계								

바.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1)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

2)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

○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1)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

(4쪽에 계속)

(4쪽)

2)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

○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

◦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

◦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2매 이상) 1부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에너지절감시설, □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쪽에 계속)

(2쪽)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3.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

나. 시·군·구 :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1-4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table>
<tr><td rowspan="8">일반
현황</td><td>선정사업</td><td colspan="5">□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td></tr>
<tr><td>유형</td><td colspan="5">□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td></tr>
<tr><td>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td><td colspan="2"></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남/여)</td></tr>
<tr><td>재배작물
(사육축종)</td><td colspan="2"></td><td>재배규모
(사육두수)</td><td colspan="2">(㎡, 마리)</td></tr>
<tr><td>소속
농가 수</td><td colspan="2">호</td><td>사업참여
농가 수</td><td colspan="2">호</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일반전화번호</td><td></td><td>휴대전화번호</td><td></td><td>팩스번호</td><td></td></tr>
<tr><td rowspan="14">사업
계획</td><td>사업명</td><td colspan="2">사업내용</td><td>규모·수량
(㎡, 대, 개소)</td><td>소요액
(백만원)</td><td>추진시기
(기간)</td></tr>
<tr><td rowspan="6">당초</td><td colspan="2">합계</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변경</td><td colspan="2">합계</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변경사유
(상세히 작성)</td><td colspan="5"></td></tr>
</table>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조사 확인서

냉난방시설 현장조사 확인서

신청자	사업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	법인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연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가온재배경력		년		
	연락처	일반전화			팩스(FAX)				
		휴대전화			전자우편				
기존시설 규모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타		
		면적/마릿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난방면적	㎡	㎡	㎡	㎡			
	난방방법	기종	온풍난방기( ), 온수보일러( ), 기타( )						
		난방연료	계	경유	중유	석탄	전기	기타	
		연간 사용량		ℓ	ℓ	톤	kW		
		연간 사용액	백만원						
		난방기간	월 ~ 월(일간)			동계최저 설정온도		℃	
	부대시설 형식·규모						기타		
		㎡	㎡	㎡	㎡	㎡			
수출 납품	최근 2년간 실적 (톤/백만원)	품목명(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국							
		수출시기	월 ~ 월		월 ~ 월		월 ~ 월		
	참여연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상황 (백만원)	자산	동산		부동산		예금			
	부채	금융대출		임대보증금		기타			
	연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기타			
사업신청 내용	신청내용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 대상시설 (○)	기존·신규	기존시설( ),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월 일						
		자동화정도	완전자동( ), 반자동( ), 수동( )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 검토(의견)서

사업성검토(의견)서

1. 신청자

<table>
<tr><td>신청자</td><td colspan="2"></td><td>생산자단체
등의 형태</td><td colspan="2"></td><td>참여자수</td><td colspan="2"></td></tr>
<tr><td>성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남/여)</td><td colspan="2"></td><td>전화</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3">신청내용</td><td>사업명</td><td colspan="2"></td><td colspan="5">사업비(천원)</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2"></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정부지원(재원명)</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담</td></tr>
<tr><td>사업
예정지</td><td colspan="2"></td><td>계</td><td>보조</td><td>대출</td></tr>
</table>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경영 규모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소장/○○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장 전시 표찰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1. 준 공 일 : 년 월 일

2. 사업장소 :

3. 성 명 : (휴대전화 :)
법인체명 : (참여 가구 수 : 호, 대표:)

4.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백만원(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7. 재배(사육,양식)대상 : (기간 :)

8. 기대효과
○
○

9. 기술지도 :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 전화 :)
○ ○축 산 과 학 원 (담당자 : 전화 :)
○ ○ ○ ○ ○ ○ ○ ○ (담당자 : 전화 :)

10. 시공업체 : (담당자 : 전화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시도·○○시군구

<사업장 전시표찰 규격>

○ 규격 : 가로 120cm × 세로 90cm

○ 재질 : 고밀도 압축판(포맥스)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배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공정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첨단온실”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원예전문단지, 일반원예시설
- ICT융복합확산: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첨단온실: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첨단온실 :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난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별지 제6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업량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정산)					대비(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A)	실적(B)	대비(B/A)	계	국고(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계											%											%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등 기재

다. “주 재배작물” :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추진성과 보고서

지원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1. 재배(사육·양식) 현황

시군명	성명 법인명	재배·사육 대상	시설유형	면적 (㎡)	재배·사육 방법	기간 (월일~월일)	생산량 (kg, 단, 분)

* 인근에서 경유온풍기를 활용하는 대상시설과 비교하되,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도>전국 평균자료로 비교

2. 0.1ha당 수익성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총수량(kg, 단, 분)			上品 수량(kg, 단, 분)			수입(천원)			소 득(천원)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3. 0.1ha당 난방비 절감시설 및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구 분	외피 복재	내피 복재	난방 기간	기간 설정 온도	전 기		유 류	
							전기 소모량	비용	경유 소모량	비용
					월. 일 월. 일	℃	kw	천원	ℓ	천원
		사업장								
		인 근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 ⑬ 보온판넬 75㎜ ⑭보온판넬 100㎜ ⑮ 보온판넬 100㎜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 다겹보온커튼 ② 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 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 부직포 1중 ⑤ 부직포 2중 ⑥ 부직포 3중

4. 교육 및 평가결과

시군명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횟수	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회	명	회	명	회	명	명					

5. 미흡한점 및 개선방안

시군명	미흡한점	개선방안

6. 사업 추진 단계별 사진

[별지 제8호 서식] 패키지 지원 적정성 검토결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패키지 지원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대상자		생년월일	(남/여)
주소			
패키지 시설 구성			

□ 패키지 시설 구성 적정성

□ 패키지 시설 사업규모의 적정성

□ 패키지 시설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에너지·경영비 절감 등)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패키지 지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직인)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직인))

[별첨: 참고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평가표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

지 역	○○시·군구	사업자명	
주 소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 자동화·현대화 정도 - 완전자동(7), 반자동(5), 수동(4), 인력(3), 시설낙후(1)	7	5	4	3	1	
2. 내부 보온피복재에 의한 보온력 정도 <온실> - 다겹보온커튼+부직포(6), 다겹보온커튼(5), 부직포 2중(4), 부직포 1중(3), 내부보온피복 없음(1) <온실이외의 경우> - 단열판넬 100㎜ 이상(6), 75㎜ 이상(5), 75㎜ 미만(4)	6	5	4	3	1	
3. 전기시설 설치 여건 - 기존용량 활용가능(6), 전기 거리공사비 거리 200m이내(5), 201~500m(4), 501~1,000m미만(3), 1,000m 이상(1)	6	5	4	3	1	
4. 최근 2년간 수출납품 실적 및 수출 참여기간 <개인> - 납품액 2천만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5년 이상(10) - 납품액 1천만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4년 이상(8) - 납품액 5백만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3년 이상(6) - 납품액 5백만원 미만 또는 참여기간 2년 이하(4) - 수출실적 없음(2) <법인체> - 납품액 3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5년 이상(10) - 납품액 2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4년 이상(8) - 납품액 1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3년 이상(6) - 납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참여기간 2년 이하(4) - 수출실적 없음(2)	10	8	6	4	2	
5. 경영 참여 경력 - 10년 이상(5), 6~9년(4), 2~5년(3), 2년 미만(2), 무경험(0) -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참석 10일 이상(2) -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참석 5일 이상(1)	5	4	3	2	1	
6. 사업신청 장소 토지 소유권자 - 자가 토지(10), 임차 잔여기간 16년 이상(8), 임차 잔여기간 11~15년(6), 임차 잔여기간 6~10년(4), 임차 잔여기간 5년 이하(2)	10	8	6	4	2	
7. 기존시설 연간 10a당 난방비 소요액 및 난방기간 - 난방비 1천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50일 이상(7) - 난방비 5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20일 이상(5) - 난방비 3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90일 이상(4) - 난방비 1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60일 이상(3) - 난방비 1백만원 미만 또는 난방기간 60일 미만(1)	7	5	4	3	1	

(2쪽에 계속)

(2쪽)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8. 재배작물 선택의 적합성(별첨 : 참고 1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적용) <시설원예> - 고온성작물 선택/육묘장/최저설정온도 20℃ 이상(7) - 고온성작물 선택/육묘장/최저설정온도 15℃ 이상(5) - 중온성작물 선택/최저설정온도 12℃ 이상(4) - 중온성작물 선택/최저설정온도 10℃ 이상(3) - 저온성작물 선택/최저설정온도 10℃ 미만(1) <시설원예 이외의 경우> - 최저 설정온도 30℃ 이상(7), 25℃ 이상(5), 20℃ 이상(4) - 최저 설정온도 10℃ 이상(3), 10℃ 미만(1)	7	5	4	3	1	
9. 지역안배, 지역별, 면적 등 적용	5					
10. 신청자 냉난방 시스템 선택유형 적정성	5					
11. 부대시설 설치 공간 확보 가능성(축열조, 기계실 등)	5					
12. 시공을 위한 공간 확보 가능성 - 자가 토지 확보가능 우선	5					
13. 입지조건 - 암석토, 매립지, 기타 설치 불가능한 토양 여부 - 개발예정지역 여부 - 상습침수지역 여부	7					
14. 재원확보 및 농가 여건 - 당년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 사업신청자 자부담능력 가능 여부 - 온실 등 시설물의 임차농 여부 - 신청자 자산소득보다 부채가 많아 재정건전성의 취약 정도	7					
15. 유형별 특성화단지 우선 선정 - 에너지절감 특성화 센터 - 수출농업 육성 특성화 센터 - 기타 특성화 단지	6					
계	100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 참고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평가표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단체명(사·군·구명) : □ 총득점: ( ) 점

1.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50%)**

(단위: 톤)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50	▪ '13년: ▪ '14년: ▪ '15년: ▪ 합계(A):	▪ '13년: ▪ '14년: ▪ '15년: ▪ 합계(B):	(A/B)×100 = ( )% ( )점
▪ 80%이상~90%미만	40			
▪ 70%이상~80%미만	30			
▪ 60%이상~70%미만	20			
▪ 50%이상~60%미만	10			
▪ 50%미만	0			

2.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30%)**

(단위: 백만원)

구분	배점	수출금액	총 출하금액	득점
▪ 100%	30	▪ '13년: ▪ '14년: ▪ '15년: ▪ 합계(A):	▪ '13년: ▪ '14년: ▪ '15년: ▪ 합계(B):	(A/B)×100 = ( )% ( )점
▪ 75%이상~100%미만	24			
▪ 50%이상~75%미만	18			
▪ 25%이상~50%미만	12			
▪ 25%미만	6			

3. **주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단위: 톤)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 100%	20	▪ '13년: ▪ '14년: ▪ '15년: ▪ 합계(A):	▪ '13년: ▪ '14년: ▪ '15년: ▪ 합계(B):	(A/B)×100 = ( )% ( )점
▪ 75%이상~100%미만	16			
▪ 50%이상~75%미만	12			
▪ 25%이상~50%미만	8			
▪ 25%미만	4			

4. **가점**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필수, 10점) : ( )점

○ 국산품종으로만 생산·수출하는 원예전문단지(화훼, 채소)(5점) : ( )점

○ 시·도지사 선정 '색깔 있는 마을'이 포함된 조직(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 점

5. **감점**

○ 최근 3년간 시설원예 분야 사업 포기경력 있는 경우(-10점 : ( )점

[별첨: 참고2]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구분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채소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쑥갓, 철쭉
화훼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튜울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안개초, 프리지아, 페츄니아, 팬지, 프리뮬라, 시크라멘

* 주)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견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 소 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멜론	15	18	28~30	35
고추	13	16	23~30	35
가지	13	16	22~30	35
파프리카	15	18	25~30	35
토마토	10	16	25~30	33
호박	10	11	23~25	35
오이	8	12	25~28	35
참외	8	11	22~28	35
수박	10	13	25~30	35
무	8	11	15~20	25
딸기	3	6	17~20	30
배추	5	8	13~18	23
상추	5	8	15~20	25
시금치	5	8	15~20	25
샐러리	5	8	15~20	25
쑥갓	5	8	15~20	25

〈화 훼 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심비디움	12	15	20~25	30
장미	5	15	24~27	30
아나나스	12	15	20~25	30
야자류	12	15	25~30	40
호접란	15	23	25	30
유스토마	12	15	20~25	30
백합	13	16	20~25	30
국화	7	15	18~20	30
거베라	7	13	16~20	30
고무나무	10	13	25~30	40
글라디올러스	10	13	25~30	35
동양란	10	13	20~25	40
선인장	10	13	25~30	50
카네이션	7	13	15~21	30
철쭉	4	8	20~25	35
프리지아	7	10	13~16	30
튜울립	5	10	15~20	30
아이리스	7	10	15~20	30
숙근안개초	7	10	15~18	20
금어초	7	10	15~20	25
스톡크	7	10	20~25	25
팬지	7	10	15~20	25
데이지	7	10	15~20	25
페츄니아	7	10	20	30
프리뮬라	7	10	15~20	25
시크라멘	7	10	18~20	30

* 주) 야간온도설정: 최저생육한계온도 + 3℃

[별첨: 참고3] 기성고 확인서

기성고 확인서

1. 사업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2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 주소(사업지역) :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비				
	총투자계획 (A=B+C+D)	보조(B)		국고융자 (C)	자부담 (D)
		국고	지방비		

4. 사업실적(20 년 월 일 현재)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투자계획 (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국고융자 지원 : 총 금액 천원(기지원 , 금회지원)

6. 증빙자료 : 별첨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농협장·농협은행장 귀하

[별첨: 참고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참고5]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2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22,806	23,108	25,605	32,484
국 고	3,195	4,617	5,120	6,497
융 자	8,506	4,637	7,680	9,745
지방비	4,794	6,927	7,684	9,745
자부담	6,311	6,927	5,121	6,497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전문단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 종합평가

- 일반원예시설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 전국단위 생산자 연합회 소속으로 수국, 심비디움,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등 화훼류 재배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 참여('16년 사업신청 포함)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 품목별 전국단위협의회 추천('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사업' 필수)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화훼분야 전략품목 고품질 주년생산에 필요한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양액재배시설,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탄산가스발생기,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지원제외 대상 >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 현대화 지원 원칙적 제외**
  - **단동형 온실 적합품목(수박·멜론 등)은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등(융자지원 전환)**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품목**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시설현대화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700백만원/ha(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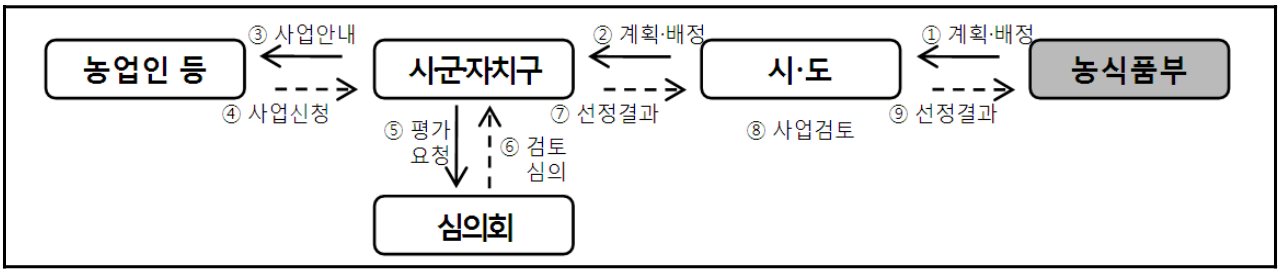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5.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5.12월)

시·도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출하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6.1월)

사업대상자

○ 원예전문생산단지

-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전문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6.1월)

○ 일반원예시설

- 농업인 등은 사업계획과 출하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신청자에 제출하고,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6.1월)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 농업인은 본인이 소속된 품목별 전국단위 생산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16.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지원대상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 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른 선정여부 검토 및 농식품부 보고('16.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별첨 참고 1-1 또는 1-2)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16.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6.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 「지하수법」, 전기시설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조직배양실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합본하여 교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농식품부는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해당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원예전문단지: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생산 대비 수출실적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및 수출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7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6.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6.9월

○ 신청자격: '16년도 신청자격 확인

* 채소류 재배시설은 '18년부터 GAP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등에 한하여 지원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6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통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 (고추 비가림 재배의 특징) 생산성이 노지재배 보다 2배 이상 높고,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 살포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6,000	6,000	8,000	9,000
국 고	1,200	1,200	1,600	1,800
융 자	1,800	1,800	2,400	2,700
지방비	1,800	1,800	2,400	2,700
자부담	1,200	1,200	1,600	1,8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상기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

- 고추 종합처리장 또는 농협과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농업법인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내 사업희망 농업인·농업법인
- GAP(고추)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3. 의무부과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 재배

4.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농가단위 지원면적 : 3,000㎡를 기준으로 하되 증감 가능

- 1,000㎡ 이상 권장(’17년부터는 최소 1,000㎡ 이상으로 변경 예정)

○ 사업비 기준 단가: 20천원/㎡

-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지침시달(농식품부→지자체·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지자체→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통보(농식품부→지자체·농협→사업자) ⇒ 사업계획 승인(지자체→사업자) ⇒ 기성고(준공) 확인 및 자금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요구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 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농협)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 사후관리(지자체)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시행지침을 시·도 시달(’15.12월)

시·군

○ 사업지침 및 기본계획을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시달(’15.12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제출(’15.11월)

시·군

○ 사업신청서 접수(별지 제4호 서식)

- 농가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 후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4-1,2호 서식으로 제출(’15.11월)

○ 시장·군수는 고추 재배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언론 홍보·교육 등 조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량 배정(’15.12월)

시·도, 시·군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 농가 최종확정 및 사업 시행·관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

○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여부 승인, 고추재배 여부 확인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2) 사업계획 변경 절차

○ 동일사업자의 사업내역 변경은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 동일 시·군 내 사업자 변경 및 사업자별 사업면적 변경은 시장·군수 승인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 시·군 간 사업자 변경 및 사업면적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시·도, 시·군

○ 고추재배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 확인, 연작피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 시 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7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6. 9월

○ 신청자격 : ’16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6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table>
<tr><td rowspan="8">일반
현황</td><td colspan="2">유형
(해당유형 ☑ 표시)</td><td>□ 개인</td><td colspan="4">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td></tr>
<tr><td colspan="2">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td><td colspan="2"></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남/여)</td></tr>
<tr><td colspan="2">재배작물
(사육축종)</td><td colspan="2"></td><td>재배규모
(사육두수)</td><td colspan="2">(㎡, 마리)</td></tr>
<tr><td colspan="2">소속
농가 수</td><td colspan="2">호</td><td>사업 참여
농가 수</td><td colspan="2">호</td></tr>
<tr><td colspan="2">주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일반전화번호</td><td></td><td>휴대전화번호</td><td></td><td>전자우편
(e-mail)</td><td></td></tr>
<tr><td rowspan="10">시설
현황</td><td rowspan="4">생산
시설</td><td rowspan="2">원예</td><td>유리온실</td><td>경질판온실</td><td>자동화비닐온실</td><td>일반온실</td><td>버섯재배사</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축산</td><td>무창돈사</td><td>무창계사</td><td>무창오리사</td><td>무창분만돈사</td><td>무창임돈사</td></tr>
<tr><td>마리</td><td>마리</td><td>마리</td><td>마리</td><td>마리</td></tr>
<tr><td colspan="2" rowspan="2">부대시설</td><td>양액재배</td><td>예냉·저장·선별</td><td>관수시설</td><td>환경제어</td><td>기타</td></tr>
<tr><td>㎡</td><td>㎡</td><td>식</td><td>식</td><td></td></tr>
<tr><td rowspan="4">난방
시설</td><td rowspan="2">난방
유형</td><td>온풍난방</td><td>온수난방</td><td>온수보일러</td><td>태양열병합</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가온
방식</td><td>고체연료</td><td>유류·가스</td><td>전기</td><td>지열·지중열</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신청
내용</td><td colspan="2" rowspan="4">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td><td>사업명</td><td>세부사업</td><td colspan="2">신청시설</td><td>신청면적</td></tr>
<tr><td rowspan="2">시설원예
현대화</td><td>□ 원예전문단지</td><td colspan="2"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 일반원예시설</td></tr>
<tr><td>ICT 융복합
확산</td><td>□ 스마트팜시설</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td><td>□ 신재생에너지</td><td colspan="2">□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td><td>㎡</td></tr>
<tr><td>□ 에너지절감</td><td colspan="2">□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td><td>㎡</td></tr>
<tr><td colspan="2">사업예정지</td><td colspan="5">(반드시 상세주소 기재)</td></tr>
<tr><td colspan="2">재원조달
(백만원)</td><td>계</td><td>국고</td><td>지방비</td><td>융자(신청액)</td><td>자부담</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단체) 개요

○ 기본현황

사업종류	□ 원예전문생산단지, □ 일반원예시설 (해당사업 ☑ 표시)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 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 〈원예전문생산단지〉

2012년	2013년	2014년
점	점	점

○ 기타 〈원예전문생산단지〉

수출 업체명		담당자 :	연락처 :
기술지도기관		담당자 :	연락처 :
단지관리기관		담당자 :	연락처 :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쪽에 계속)

(2쪽)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3쪽에 계속)

(3쪽)

마. 생산 및 수출 세부현황

○ 생산현황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3						
	2014						
	2015						
	2016 계획						

○ 수출현황 〈원예전문생산단지〉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2					
	2013					
	2014					
	2015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원예전문생산단지>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	%	%	%	%	%	%	%
2013								
2014								
2015								
2016 계획								

사. 교육실적(안전성, 수출 등)

◦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여건

◦

2) 기 설치 및 계획 중인 생산·유통·가공·처리 시설과의 연계계획

◦

(4쪽에 계속)

(4쪽)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2) 수출 확대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5) 기타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1) 사업참여 의향 조사

◦ 전체 농가 수 : 호

◦ 참여 농가 수 :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 연락처 :

◦ 구성원 수 :

- 구성원:

◦ 운영실적 및 계획: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 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 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5쪽에 계속)

(5쪽)

6. 물류표준화 및 안전성 관리 대책

가. 물류표준화를 위한 해당 단지의 노력

◦

나. 고품질 안전성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단지 추진 노력

◦

7.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문제점

◦

나. 애로(건의)사항

◦

8.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 대표자명 :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1-4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배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공정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						㎡		%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첨단온실”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 원예전문단지, 일반원예시설
- ICT융복합확산 :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첨단온실 :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첨단온실 :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난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3. 기타 참고사항

○

[별지 제3-1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계											%											%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 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관정, 저온저장고 등 기재

다. “주 재배작물” :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요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연 락 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		
생산면적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기타	계		
		㎡	㎡	㎡	㎡		
사업계획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농지1						㎡
		농지2						㎡
		계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4~1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4-1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남/여)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모사전송 :

나. 시설현황

(단위 : ㎡)

고추 재배면적 (합계)	세부사항			
	일반비닐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	㎡	㎡	㎡

다. 계약재배 실적(최근년도 기준)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 지번	면적	밭기반정비사업지구·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	
농지2						㎡	
계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단동 또는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Φ(mm)×t(mm)@cm)	가로대 (Φ(mm)×t(mm))

라. GAP 인증 여부 및 향후 계획

GAP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20 년도 인증
GAP 미인증 농업인·농업법인(향후 계획)	*(예시: 2017년 GAP 인증 신청)*

마.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4-2호 서식]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비가림시설 설치 농지 현황						비가림시설 설치 면적 (㎡)	사업자 현황		
시·도	시·군	읍·면·동	지번	농지 면적 (㎡)	밭기반(정비) 사업(정비) 지구여부		성명	계약 재배 여부	GAP 인증 여부

* 밭기반(정비)사업(정비)지구 여부 : ○ 또는 × 표시
* 계약재배 여부 : 고추종합처리장 또는 농협과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경우 ○, 아니면 × 표시
* GAP인증 여부 : ○ 또는 × 표시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참고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원예전문생산단지)

□ 단지명(사군구명): (신청자명:), □ 총득점: ( ) 점

1. 원예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50%)

구분	'13년(10%)		'14년(15%)		'15년(25%)		합계
	배점	득점(A)	배점	득점(B)	배점	득점(C)	
▪ 90점이상	10		15		25		
▪ 80점이상~90점미만	8		12		20		
▪ 70점이상~80점미만	6		9		15		A+B+C = ( )점
▪ 60점이상~70점미만	4		6		10		
▪ 50점이상~60점미만	2		3		5		
▪ 50점미만	0		0		0		

* 사업대상자 제외: 예비단지, 최근 평가결과 2년 연속 저평가 단지,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단지

2.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30%)

(단위: 백만원)

구분	배점	수출금액	총 출하금액	득점
▪ 100%	30	▪ '13년: ▪ '14년: ▪ '15년: ▪ 합계(A):	▪ '13년: ▪ '14년: ▪ '15년: ▪ 합계(B):	(A/B)×100 = ( )% ( )점
▪ 75%이상~100%미만	24			
▪ 50%이상~75%미만	18			
▪ 25%이상~50%미만	12			
▪ 25%미만	6			

3. 단지 총 재배면적 중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 폐열, 목재펠릿) 설치 실적 비율(20%)

(단위: ha)

구 분	배점	설치면적	총 재배면적 (B)	득점
▪ 50%이상	20	▪ 기존 : ▪ 계획 : ▪ 합계(A) :		(A/B)×100 = ( )% ( )점
▪ 40%이상~50%미만	16			
▪ 30%이상~40%미만	12			
▪ 20%이상~30%미만	8			
▪ 10%미만	4			

4. 가점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필수, 10점) : ( )점

○ 국산품종으로만 생산수출하는 원예전문단지(화훼, 채소)(5점) : ( )점

○ 시·도지사 선정 '색깔 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단지(5점) :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 점

5. 감점

○ 최근 3년간 시설원예 분야 사업 포기경력 있는 경우(-10점) : ( )점

[별첨: 참고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일반원예시설)

□ 단체명(사·군·구명): □ 총득점: ( ) 점

1.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50%)

(단위: 톤)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50	▪ '13년: ▪ '14년: ▪ '15년: ▪ 합계(A):	▪ '13년: ▪ '14년: ▪ '15년: ▪ 합계(B):	(A/B)×100 = ( )% ( )점
▪ 80%이상~90%미만	40			
▪ 70%이상~80%미만	30			
▪ 60%이상~70%미만	20			
▪ 50%이상~60%미만	10			
▪ 50%미만	0			

2.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30%)

(단위: 백만원)

구분	배점	수출금액	총 출하금액	득점
▪ 100%	30	▪ '13년: ▪ '14년: ▪ '15년: ▪ 합계(A):	▪ '13년: ▪ '14년: ▪ '15년: ▪ 합계(B):	(A/B)×100 = ( )% ( )점
▪ 75%이상~100%미만	24			
▪ 50%이상~75%미만	18			
▪ 25%이상~50%미만	12			
▪ 25%미만	6			

3. 주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단위: 톤)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 100%	20	▪ '13년: ▪ '14년: ▪ '15년: ▪ 합계(A):	▪ '13년: ▪ '14년: ▪ '15년: ▪ 합계(B):	(A/B)×100 = ( )% ( )점
▪ 75%이상~100%미만	16			
▪ 50%이상~75%미만	12			
▪ 25%이상~50%미만	8			
▪ 25%미만	4			

4. 가점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필수, 5점) : ( )점
○ 국산품종으로만 생산·수출하는 원예전문단지(화훼, 채소)(5점) : ( )점
○ 시·도지사 선정 '색깔 있는 마을'이 포함된 조직(5점) :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 점

5. 감점

○ 최근 3년간 시설원예 분야 사업 포기경력 있는 경우(-10점) : ( )점

[별첨: 참고2] 기성고 확인서

기성고 확인서

1. 사업명 : ○○○○○○○○○사업(2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 주소(사업지역) :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비				
	총 투자계획 (A=B+C+D)	보조(B)		국고융자 (C)	자부담 (D)
		국고	지방비		

4. 사업실적(20　　년　　월　　일 현재)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 투자계획 (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국고융자 지원: 총 금액　　천원(기 지원　　, 금회지원　　)

6. 증빙자료: 별첨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농협(은행)장 귀하

[별첨: 참고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첨단온실 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계	36,474	33,236	12,000	42,000
국고	-	-	-	-
융자	36,474	33,236	12,000	42,000
지방비	-	-	-	-
자부담	-	-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온실 신·개축

- 일반유형 : 온실을 신축 및 개축하여 채소·화훼·버섯류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자체 개발유형 : 일반유형 대상자 및 일정요건을 갖춘 귀농업인 등

○ 시설개선 : 채소·화훼류 등 재배 온실 내 예냉·저장, 선별, 피복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및 귀농업인 등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귀농업인 자격조건(모든조건 충족) >

▪ 농어촌 이외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 귀농어업인의 육성)
- 농촌이외 지역에서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단독세대 가능)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 농촌진흥청, 지자체 주관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 포함
- 영농종사 3개월 이상인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 농업인턴(3월 이상) 이수자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온실에서의 작물재배 경험(1년 이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관련 영농교육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

- APC·농협·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자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 참여('16년 사업신청 포함)

* '목재펠릿난방기'는 자동화비닐온실을 신축하려는 사업대상자에 한함

- 수출 실적이 있거나,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자
- 기존 온실을 경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온실을 신축하여 규모화 도모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되어 온실신축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철골(유리, 경질판)온실은 15년 이상, 자동화 비닐온실은 10년 이상(귀농업인은 5년 이상)

< 지원자격 제한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 위의 기업진단 또는 법인이 지분확보·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
  - 해당법인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이거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대표이사 선임, 주요 의사결정 행사, 상호간 인사교류 등)을 행사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온실 신·개축 : 다음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무인방제기, 관정·빗물 활용 단순 용수공급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유동팬, 환기팬, 측고인상시공, 천창환기장치 등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냉난방, 폐열재이용, 목재펠릿난방기)은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원

- 필수적인 구축물로 연면적 300㎡ 이하의 건축물(단, 보일러실, 히트펌프실, 양액실, 제어실 용도로 신축하는 것에 한함)

○ 시설개선 : 예냉·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장기성필름 등)

* 예냉·저장, 선별시설은 온실 내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지원제외 대상 >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관정 이외 용수공급시설,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제외(연동형 온실보다 단동형 온실이 적합한 수박·멜론 등의 재배시설은 시장·군수가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부가가치세 환급금

○ 수출 또는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 신개축 및 시설개선 비용 융자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이차보전

○ 지원형태 : 국고융자 100%(융자금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자별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실 융자 가능액 지원

구분		신청규모	온실유형	융자금리	상환기간
온실신축	일반유형	0.2ha 이상 ~ 2ha 이하	비닐	1.0%	3년거치 7년상환
		0.5ha 이상 ~ 2ha 이하	철골	1.0%	5년거치 10년상환
		2ha 초과 ~ 5ha 이하	철골	2.0%	5년거치 10년상환
	지자체 개발유형*	3ha 초과 ~ 5ha 이하	철골	2.0%	5년거치 10년상환
시설개선		-	-	1.0%	3년거치 7년상환

* 지자체 직접 또는 귀농·귀촌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설원예단지 조성 시 지자체와 사업대상자가 각각 금리 1% 부담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단가

- 온실신축: 철골온실 3,000백만원/ha, 비닐온실 750백만원/ha
- 시설개선: 100백만원/ha

* 예시 기준으로 기성고(준공) 확인서 상 실 집행금액 지원,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지원범위(온실신축에 한함)

- 철골온실: 사업대상자별 0.5ha이상 ~ 5ha까지
- 자동화비닐온실 : 사업자별 0.2ha이상 ~ 2ha까지

* 일반유형의 자동화비닐온실의 경우 귀농업인은 661㎡ 이상부터 지원 가능

○ 온실면적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총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금리 적용

- 시·군을 달리하여 분할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시·도를 달리하여 분할신청하는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확인 통보하여 해당금리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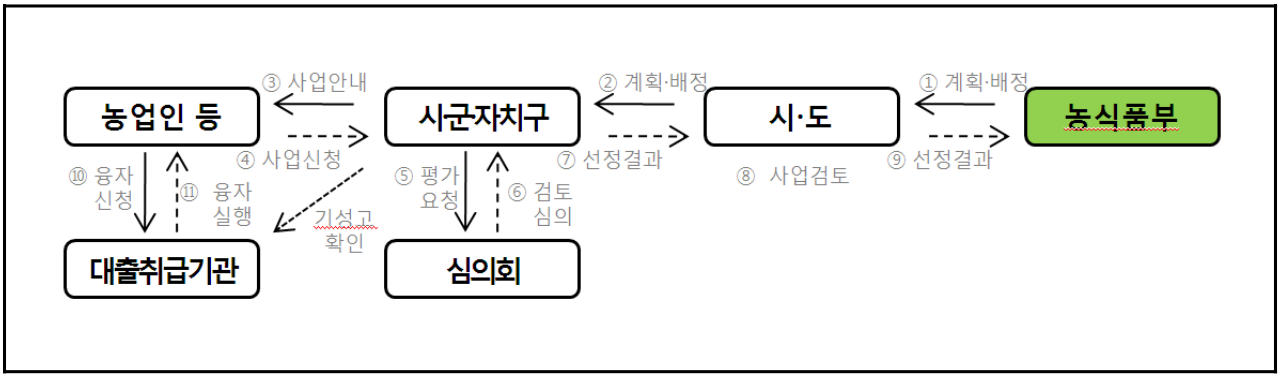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5.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6.1월)

시·도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 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6.1월)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신청자 신용조사서 발급신청 시 반드시 '융자가능액'을 기재하여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발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대출신청자료(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5.1월)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 '온실신축'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본 지침상 지원요건·담보능력·지역별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및 수지예산서(별지 제4호 서식) 첨부

- 견적서: 각 공종별로 2개 이상의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자료 제출

▪ 기 설치된 철골(유리·경질판)온실, 비닐온실 면적, 자금조달계획, 수출실적·계획 등 작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16.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 기준(별첨 참고 1-1 또는 1-2)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도에 보고 (’16.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6.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 등 적격 여부 검토·승인

-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적격 여부 검토 요청(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감리 의뢰한 경우에 한 함)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 보완 또는 수정의견 회신 시, 타당성 확인 후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후 승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검토를 의뢰 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토의견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설계내역, 도면 등의 기술적 타당성, 융자계획 대비 설계 물량의 적정성 등 검토

- 시장·군수로부터 보완된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에 대하여 재검토 의뢰를 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검토의견서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통해 최근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온실구조 설계기준 개정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자재단가 정립 등 추진

사업대상자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유자격자를 통해 실시 설계도서 작성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공사발주 진행

-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절차에 따라 승인 후 사업진행(대출금 지급을 위한 기성고 확인 기준으로 정확한 작성 필요)

○ 설계 및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를 통해 설계 및 시공

* 유자격자: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대출금 지원 신청서류 제출 시 시장·군수의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3) 첨부

< 온실신축 단계별 시행계획 >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가 승인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함

2) 설계·시공·감리

○ 사업자는 온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

○ 철골(유리·경질판)온실은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설계·시공

○ 철골온실·자동화비닐온실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 에게 감리를 의뢰하여 시행

* 유자격자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단, 감리업체는 시공업체와 별도 구분하여 선정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등 별도의 구조해석을 실시하지 않고 시공하는 비닐온실의 경우 필요시 시·군에서 자동화비닐온실의 감리절차에 준하여 감리 시행

○ 공사감리자가 확정되면 시·군 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자, 공사감리자 간에 공사감리 용역계약 체결

○ 감리시행자는 준공 후 감리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자동화비닐온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의 시설을 설치

* 시설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온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 사용

- KS비닐온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온실 도금강관 합격기준(예시):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mm미만 +0.13mm, 1.6mm이상 +0.17mm, (아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기타조건) 생략
- 파이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다음 요율기준을 적용

(단위: %)

구분 \ 대상금액	10 억원	20 억원	50 억원	100 억원	200 억원	500 억원	1,000 억원	2,000 억원
설계	1.84	1.74	1.59	1.47	1.36	1.22	1.12	1.03
공사감리	1.66	1.53	1.45	1.41	1.37	1.35	1.34	1.32
사업관리	0.51	0.47	0.43	0.40	0.37	0.33	0.31	0.29

* 설계·사업관리비 요율은「농어촌정비법」상 기반시설 측량·설계기준의 30%, 공사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각각 적용
* 요율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은 순공사비+지급자재비 적용(부가가치세, 용지매수비는 제외)
  - 자동화비닐온실 설계·감리비는 위 요율기준의 70%를 적용
  - 공정육묘장의 설계·감리비는 위 요율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사업관리비는 시장·군수가 단지별 설계·감리대상 주요시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요율기준 관리비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할 수 있음
* 설계·사업관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감리 완료 후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실비 정산 처리

구분	공사 착수 전	공사 착수 후
업무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를 통해 시공

○ 관정은 「지하수법」,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관리

3)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서비스(A/S망)"구축 등을 위해 철골, 유리, 철재파이프, 알루미늄바 등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가 시공업체를 선정·계약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4)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사유서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적격 여부 검토, 사업시행과정 점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 할 수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와 실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 제출
- 변경이 필요한 사업계획 부분에 대하여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을 지급 할 수 없음

※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은 부분의 기성고 확인 불가

5) 사업자의 신고의무

○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종료, 폐지,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사업시행주체의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즉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대출취급 기관에 소요 융자 한도액 배정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성고(준공) 확인 지원 및 준공검사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공사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요청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기성고(준공) 실적의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증빙자료 첨부) 및 대출취급기관 통보(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유도)

○ 시장·군수는 제반 내용에 있어 허위사실 발견 시, 사업계획의 임의 변경 또는 중지, 실적확인을 위한 검사 거부 등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사업 취소 등 조치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절차 이행

농협은행(농·축협)

○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자금배정 한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로 제출

○ 온실 또는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 시장·군수로부터 융자실행 전 기성고(준공) 확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승인 도서에 따른 사용자재, 구조물 규격, 품질시험 및 성과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집행 실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7일 이내에 제출

○ 시장·군수로부터 준공검사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준공 도서에 의한 사업비 집행확인서와 정산서 검토 등 시·군의 준공검사 지원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 대출 기간 연장 필요 시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 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한 설비시설 및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융자금 상환기간 까지 매각·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 등 관리절차 이행, 필요시 시·도지사 승인

○ 사후관리기간

구 분	사후관리기준·기간	
유리온실	대출기간	최장 15년
비닐온실		최장 10년
주요기계·장비		최장 15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사업비(융자금)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융자금 회수 및 지원 축소 등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융자금 배정 취소 또는 기 배정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주요 측정지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생산 대비 수출실적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및 수출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에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7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6.2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사업대상자는 '16년 내 사업대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절차 : (신청) '16.4월말까지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16.10월말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6.12월말 → (사업추진) '17.1월~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6.9월

○ 신청자격: '16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6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첨단온실 사업신청서

<table>
<tr><td colspan="2">사업구분</td><td colspan="6">□ 온실 신개축, □ 시설개선(해당사업 ☑ 표시)</td></tr>
<tr><td rowspan="6">신청자</td><td>사업자(법인)명</td><td colspan="2"></td><td>농 가 수</td><td colspan="2">호</td></tr>
<tr><td>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남/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소 속
원예전문단지</td><td colspan="2">(해당자만 기재)</td></tr>
<tr><td>재배작물</td><td colspan="2"></td><td>재배규모</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기존온실
면 적</td><td>유 리</td><td>㎡</td><td rowspan="3">연락처</td><td>일반전화</td><td></td></tr>
<tr><td>경질판</td><td>㎡</td><td>휴대전화</td><td></td></tr>
<tr><td>비 닐</td><td>㎡</td><td>모사전송
(FAX)</td><td></td></tr>
<tr><td rowspan="5">신청
내용
(해당사업
☑ 표시)</td><td>사업예정지</td><td colspan="6">(반드시 상세주소 기재)</td></tr>
<tr><td rowspan="2">온실 신개축</td><td colspan="6">□ 신축, □ 개축</td></tr>
<tr><td colspan="2">유 리</td><td colspan="2">경질판</td><td colspan="2">자동화비닐</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시설개선</td><td>□ 예냉시설</td><td>□ 저장시설</td><td>□ 선별시설</td><td>□ 피복시설,</td><td colspan="2">□ 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v</td></tr>
<tr><td rowspan="2">사업
계획</td><td rowspan="2">재원조달
(백만원)</td><td rowspan="2">계</td><td rowspan="2">국고융자</td><td rowspan="2">자부담</td><td colspan="2">지방비</td></tr>
<tr><td>보조</td><td>융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위와 같이 첨단온실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붙임 참조

[별지 제1호 서식-붙임]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유의사항	○ 신청 농가별로 구비서류를 작성, 농업법인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 ○ 사업대상자 평가용 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 시설개선사업 신청자는 1번, 2번, 5번, 6번 제출

1. 첨단온실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 1부
3. 사업비 수지예산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4.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 유	임 차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 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별첨 : 참고2) 1부

5.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④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8.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 사실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첨단온실 사업계획서

첨단온실사업 계획서

(신청 농가별 작성)

1. 일반현황

가. 개요

사업자명		연락처	
주소(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부류	□ 채소류, □ 화훼류	재배품목	

2. 사업계획

가. 온실종류: □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자동화비닐온실 (해당사항 ☑ 표시)

나. 부지면적: ㎡

다. 세부 사업내역

종류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식)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온실 신개축	□ 신축 □ 개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기타설비				
시설개선	피복시설				
	예냉·저장시설				
	선별시설				
계					

* 단위는 ㎡(m, 개소, 대, 식) 등으로 병행표기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합계)	국고융자	자부담	지방비*	
			보조	융자

* 지방비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만 작성

3. 생산수출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신청 농가별(온실 신개축 신청자에 한함)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 천달러)
생산실적 및 계획	2013					
	2014					
	2015					
	2016 계획					
수출실적 및 계획	2013					
	2014					
	2015					
	2016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생산실적 :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등 출하금액 및 수출금액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위와 같이 첨단온실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대출신청자료

대 출 신 청 자 료

(신청 농가별 작성)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농가	호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2. 신청내용

사업명	첨단온실 건축지원사업	사업규모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	㎡	㎡
주소(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고융자	지방비		
			보조	융자	

* 지방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만 작성

3. 예금 및 융자 현황

(단위: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 현황			
금융기관	예금종류	금액	금융기관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예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성명	관계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

사업명	첨단온실사업		사업구분	□ 온실 신개축, □ 시설개선(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			공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업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면적	㎡		시공회사			
공사금액	금회 기성(준공)금액					
천원	계약금액	전회까지 기성금액	금회신청 기성금액	기성누계 (B)	잔액 (A-B)	기성율 (B/A)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붙임: 기성(준공) 사진첩 1부

위 사업자의 금회지원분(융자금)에 대한 대출시행을 위해 사업비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단, 수중 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은 신청자의 확인에 의함.)

20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본부)장 (직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붙임] 기성 사진첩

○○지구 사업 기성(준공) 사진첩

(온실 신개축 사업 작성)

00 착공 전	00 준공 후
< 사 진 설 명 >	< 사 진 설 명 >
-	-
-	-
-	-
-	-
-	-
00 착공 전	00 준공 후
< 사 진 설 명 >	< 사 진 설 명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첨단온실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계획			집행실적(정산)			대비(D/C)	다음해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A)	실적(B)	대비(B/A)	계	융자(C)	지방비	계	융자(D)	지방비		융자	융자		
									㎡	㎡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 신축, 개축 / 시설개선

나. “세부사업” : 철골온실 1%, 철골온실 2%, 철골온실 3%, 자동화비닐온실 / 피복, 예냉·저장, 선별

다. “주 재배작물” :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사업비 수지예산서

(온실 신개축 사업 작성)

(단위: 천원)

구분	공종	사업비	비고
□ 수입			
• 국고 융자			
• 지방비 보조			
• 지방비 융자			
□ 지출			
• 공사비			
- 건축공사	소계		
	지급자재		
	순공사비		
- 기계설비공사	소계		
	지급자재		
	순공사비		
- 전기공사	소계		
	한전납입금		
	지급자재		
	순공사비		
- 기타공사	소계		
	지급자재		
	순공사비		
• 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각 항목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온실 경작사실 확인서

1. 경작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거주지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2. 온실 경작 현황

온실 주소	재배품목	온실유형별 면적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상기 온실은 경작자인 O O O 이(가) 년 월 일에 신축(취득, 임대)하여 년 월 일까지 약 년 간 상기 온실에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첨: 참고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사업자 선정기준표

(원예전문단지 소속 온실 신개축 사업신청자 평가용)

□ 시·도(시·군·구)명 : (신청자명:), □ 총득점: ( ) 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원예전문단지 운영실태 (50)	□ 소속 원예전문단지 최근 3년간 운영실태 평가 • 평균 90점이상 • 평균 80점이상 ~ 90점미만 • 평균 60점이상 ~ 80점미만 • 평균 60점미만	 50 40 30 20		* 최근 3년간('13~'15년) 평균점수 반영
② 수출 실적 (30)	□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 • 80% 이상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20% 미만	 30 20 15 10 5		* 출하금액 :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 출하 금액 + 수출금액 * 실적 증명서류 확인 - 최근 3년('13~'15년)
③ 신축·개축 면적 (30)	□ 기존 온실 면적 대비 • 300% 이상 • 200% 이상 ~ 300% 미만 • 100% 이상 ~ 200% 미만 • 100% 미만	 30 20 10 5		* 기존 온실 5,000㎡이상 경영자에게만 해당
④ 농업법인 가점 (30)	□ 온실 1ha당 출하실적(최근 3년 평균)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15 10 5		* 출하금액: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 출하 금액 + 수출금액 * 실적 증명서류 확인 - 최근 3년('13~'15년)
	□ 법인의 사업신청자 수 • 출자자의 70% 이상 • 출자자의 30% 이상 ~ 70% 미만 • 출자자의 30% 미만	 15 10 5		
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예정 (30)	□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예정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예정	30 15		
⑥ 지방비 지원 (30)	□ 지방비 지원 비율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5% 이상 ~ 10% 미만	 30 20 10 5		* 융자금 중 일부 지자체 보조 또는 융자 가능 * 관련 방침 문서 등 지방비 확보 여부 (관련 공문 확인)
⑦ 색깔있는 마을 소속(10)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에 포함된 지역에 온실을 신축	10		* 관련 공문 확인

※ 증빙 서류 미 제출 시 0점 처리

[별첨: 참고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사업자 선정기준표

(원예전문단지 소속 이외 온실 신개축 사업신청자 평가용)

□ 시·도(시·군·구)명 :　　(신청자명 :　　), □ 총득점 : (　　) 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공동선별·공동계산,계약재배 실적 (40)	□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실적 또는 유통업체를 통한 계약재배 실적 • 3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25 20 15 10		* 조직 : APC, 농협, 농업법인 등 * 실적 증명서류 확인 -'14년 실적 포함 * 기타실적 : 시설채소·화훼 이외 작물의 출하 또는 계약재배 등 실적 (1년 이상)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약정 잔여기간 및 계약재배 잔여기간 또는 조직과 출하권 위임계약 체결 실적 • 3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또는 기타 실적	 15 10 7 5		
②수출 실적 (30)	□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 • 80% 이상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20% 미만	 30 20 15 10 5		* 출하금액: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금액 + 수출금액 * 실적 증명서류 확인 * 최근 3년 : '12~'14.11월
③신축·개축 면적(30)	□ 기존 온실 면적 대비 • 300% 이상 • 200% 이상 ~ 300% 미만 • 100% 이상 ~ 200% 미만 • 100% 미만	 30 20 10 5		* 기존 온실 5,000㎡ 이상 경영자에게만 해당
④농업법인 가점(30)	□ 온실 1ha당 출하실적(최근 3년 평균)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15 10 5		* 출하금액 :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 출하 금액 + 수출금액 * 실적 증명서류 확인 - 최근 3년('13~'15년)
	□ 법인의 사업신청자 수 • 출자자의 70% 이상 • 출자자의 30% 이상 ~ 70% 미만 • 출자자의 30% 미만	 15 10 5		
⑤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예정(30)	□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예정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예정	30 15		
⑥ 지방비 지원 (30)	□ 지방비 지원 비율 • 30% 이상 • 20% 이상 ~ 3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5% 이상 ~ 10% 미만	 30 20 10 5		* 융자금 중 일부 지자체 보조 또는 융자 가능 * 관련 방침 문서 등 지방비 확보 여부 (관련 공문 확인)
⑦ 색깔있는 마을 소속(10)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에 포함된 지역에 온실을 신축	10		* 관련 공문 확인

※ 증빙 서류 미 제출 시 0점 처리

[별첨: 참고2]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 대상목적물(토지):

○ 임대차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첨: 참고3] 기성고 확인서

기 성 고 확 인 서

1. 사업명: 첨단온실사업(2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남/여)

○ 주소(사업지역) :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분)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비				
	총투자계획 (A=B+C+D)	보 조(B)		국고융자 (C)	자부담 (D)
		국고	지방비		

4. 사업실적(20 년 월 일 현재)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투자계획 (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국고융자 지원: 총 금액 천원(기 지원 천원, 금회 지원 천원)

6. 증빙자료: 별첨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 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알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농협(은행)장** 귀하

[별첨: 참고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참고5] 온실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온실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 법인명칭 • 주소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공사수급자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주소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면허번호
	연대보증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주소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업명		
	단위사업내용		
	계약금액	금 원정(₩)총공사금액	
	계약보증금	금 원정(₩)총공사금액의 10%	
	선급금	금 원정(₩)총공사금액의 10%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발주자와 공사수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연대보증인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온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경쟁 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온실설치공사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20 년 월 일

발주자(영농조합법인 대표) (인)
공사수급자 (인)
공사수급자의 연대보증인 (인)
입회 및 승인자(시장·군수·구청장) (인)

4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시설원예 및 노지 채소의 토양환경 개선과 각종 토양병해충 등 연작피해를 예방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창출

2. **추진방침**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시장·군수는 방제 대상지 및 농가 선정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 방제약제는 시군(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4.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토양훈증소독)	347㏊	1,249,200 (100%)	250,000 (20)	374,600 (30)	624,600 (50)

Ⅱ. 2016 사업시행 및 추진요령

1. **시행주체**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16. 1. ~ 12월

3. **사업대상농가 선정**

○ 농가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1,000㎡이상 재배농가(영농법인)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시설원예 농가 및 마늘·양파 등 노지재배 농가 지원

○ 계약재배 및 공동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 수출원예전문단지 및 일반원예단지 우선 지원

4. 약제구입 및 방제

○ ’16년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주산단지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하여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 약제살포 및 세부 추진방법은 시군단위로 사전교육 실시

- 주　　관 : 시군 친환경농업과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 요령 등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거양

○ 방제는 파종 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 사전에 토양 소독 실시

○ 시군에서는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5. 사업추진 지도

○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등 공무원(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 지도하고 방제효과를 관찰 분석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지역(마을)별로 농작물 적기 파종에 차질이 없도록 방제기간 및 일정 등 교육 실시

6.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토록 하고 방제효과(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지도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함.

○ 농가별 방제대장 작성비치 및 방제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16. 12. 31까지)

※ 농가별, 필지별, 보조금 지원내역 등을 기록

나.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서식 1) : 선정 완료 후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2) : 매분기말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 3) : ’16. 12. 31한

(보고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서식 1)

읍 면	재배현황		방제대장		비 고
	농가수	면 적	농가수	면 적	
계	호	ha	호	ha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2)

읍 면	방제계획		방제실적		비 율 (B/A)	사용약제		완료일
	농가수	면적 (A)	농가수	면적 (B)		약제명	사용량	
계							kg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사업완료

읍 면	농가수	방 제 면 적			약제명	농 약 사 용		
		계획 (A)	실적 (B)	B/A		계 획 (A)	실 적 (B)	B/A
계	호	ha	ha	%				

○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읍 면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도비 집행잔액 발생시 그 사유를 기재

5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무·배추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가격 및 수급안정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연도별 투입계획(전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ㅇ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65,543	16,062	17,650	10,686	29,647
- 국 고	20,454	3,261	5,295	3,157	8,894
- 지방비	4,428	3,261	5,295	3,157	8,894
- 융 자	15,981	4,770	-	-	-
- 자부담	24,680	4,770	7,060	4,372	11,859

○ 2016년 사업계획(전남)

(단위 : 백만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6	1,638	491	148	344	655
나주	1	231	69	21	49	92
화순	2	702	211	63	147	281
영암	2	517	155	47	108	207
장성	1	188	56	17	40	75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 동안도 충족해야 함.

○ 사업주관 기관 : 지방자치단체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산지저온시설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5년도 또는 '14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1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저장시설(저온저장고 및 저온선별장) 165㎡(50평)이하 소규모는 연간 3억원 이상인 법인도 지원가능

○ 저온수송차량 :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 자격과 동일한 법인(김치가공업체도 가능)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3. 지원 대상

○ 산지저온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5. 지원형태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 신 규 : 106만원/m2 ▪ 개보수 : 신규의 25%	▪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사업효율화를 위해 지원규모의 50%까지 확대 가능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 신 규 : 91만원/m2 ▪ 개보수 : 신규의 25%	
		진공식(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 660m2	90 ~ 660	22.5 ~ 165	▪ 신 규 : 100만원/m2 ▪ 개보수 : 신규의 25%	
	저온선별장		99m2 ~ 660m2	79.2 ~ 528	19.8 ~ 132	▪ 신 규 : 80만원/m2 ▪ 개보수 : 신규의 25%	▪ 개보수는 상온선 별장에서 저온선 별장으로 개보수 시 적용
	저온수송 또는 PCM저온수송 냉장차량	1톤이상 ~ 5톤이하	1대	110	30	▪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 기준 단가는 예시로 활용, 세부사업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15. 11. 7.한)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시·군은 사업별 신청서를 시·도에 제출('15.11.21 한), 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15.12.12 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하고 사업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 계획 연계성 :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지역맞춤형농정지원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등 시·군별 전략과의 연계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 산지 여건, 무·배추 수급관리 능력 등을 종합 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단,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는 제외)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시군은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4. 자금배정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전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6. 사후관리단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도 및 시군)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준공일	10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 단, 보조금 실행 전 정책자금 지원목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담보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 차량 및 운반구	구입일	5년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주관기관(도 및 시군)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7. 성과측정단계

《사업운영평가》

○ 목 적 : 저온유통시설을 지원받은 조직에 대하여 사업실시 후 3년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조직에게는 인센티브, 부진 조직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발전 지향적인 경쟁구도 마련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사업익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평가기준 : 별도 마련

※ 사업자는 선정이후 3년간 저온유통사업계획 및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

- 우수 사업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사업자에게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고 부진사유에 대해 대책 마련 및 저온유통경영개선 클리닉 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저온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Ⅳ. 2017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지원체계

1. 2017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군에서는 '17년도 사업신청대상자 수요조사서를 '16. 3월 중순까지 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는 '16. 3월말까지 농식품부 제출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 시·군 → 도 → 농식품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 사업희망자 → 시·군('16. 9. 20) → 도('16. 9. 25)
  → 농식품부('16. 10. 10한)

○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16. 10월중

※ 업무형편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한은 달라질 수 있음

3. 기타 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2016년도 산지저온시설 지원 신청서

1. 일반현황

조 직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연도		주요취급품목	
취급물량(톤)		출 자 금	
출자조합원수		*정부사업 참여 현황	

* 정부사업 참여현황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 또는 참여여부(APC사업, 수급안정사업 포함) 등

2. 산지저온시설 설치 계획

(단위: ㎡, 백만원)

시 설		신 규					개보수				
		규모	사 업 비				규모	사 업 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예냉 설비	차압식										
	강제통풍식										
	진공식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저온수송차량											
PCM 저온수송차량											

주1) 예냉설비의 신청은 조직당 1종류로 한정하며, 신규와 개보수 중 선택

주2) 규모·신청금액은 공고문의 “시설별 지원한도액 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규모와 금액 기재

주3) 예냉설비의 종류는 지역, 품목의 특성에 맞게 신청

□ 산지저온시설 설치예정 부지 현황

시 설 명	설치 예정지 주소	근저당 설정 현황	
		설정여부	설정 내역
예냉설비			은행/ 백만원
저온선별장			
저온저장고 (개보수)			
저온저장고 (신규)			

▶ 저온저장고(신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지적도 및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 예냉시설, 저온선별장, 저온저장고(개보수):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예냉시설을 별도의 부지에 설치코자 할 경우 : 설치 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 저온저장고(신규) 및 예냉설비 별도설치의 경우 부지 확보현황(해당사항 체크)

- 부지 기 확보(법인 또는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야 함) ( )
-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지급 혹은 소유권 이전 중 ( )
- 부지 미 확보 ( ) → 부지확보계획 ( )

※ 산지저온시설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확보된 부지의 사용가능 여부(해당사항 체크)

- 설치예정 부지에 해당 건축물 증·개축시 관련법 저촉 여부 ( )

※ 해당 부지 건폐율 및 개발제한 등을 지자체에 사전 조사하여야 함

- 관련법에 저촉 시, 행정당국의 조건부 허가 등으로 증·개축 가능 여부 ( )

3. 최근 결산 2개년 사업실적

▶ **증빙첨부!! 법인 : 최근년도 결산 완료 재무제표 & 2개년 품목별 판매실적 자료**

농협 : '14년말, '13년말 합계잔액시산표 및 손익내역표(일반유형/세목) & 품목별 판매실적 자료

가. 원예농산물 매출실적

취급품목	2013(또는 2014년)		2014(또는 2015년)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합 계				

주1) 취급품목은 양곡, 축산을 제외한 원예농산물의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기재

주2) 상위 3개 품목은 품목별로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은 합하여 기타 란에 기재

나. 중점지원품목 매출실적

취급품목	2013(또는 2014년)		2014(또는 2015년)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합 계				

주) 중점지원품목: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시금치, 상추,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4. 저온유통시설 보유 현황

▶ 증빙첨부 : 최근 사업년도 말 기준「고정자산명세표」혹은「사무소별 자산현황」)에 해당시설 체크하여 첨부(단, 장부상 시설내역 불명확할 경우 해당 시설 관련 별도 증빙 추가 첨부)

가. 저온유통 관련 시설투자 현황 (보유시설 기준)

구 분	면적(㎡)	취득가액(천원) (A)	감가상각누계액 (천원) (B)	장부가액(천원) (A - B)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수송차량				
총 계				

주) 시설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타 저온유통관련 시설보유 시 빈 칸에 추가 작성

나. 주요 시설 이용 현황

(단위: ㎡, 대)

구 분	저장고		선별장		예냉시설	농산물수송차량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자 가							
임 대							
합 계							

주) 임대는 임대계약을 체결 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원예농산물 거래처별 판매실적

▶ 증빙첨부!! 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농협: 출하처별 매출실적 총괄표 및 세부내역표

품 목 / 구 분	( )		( )		기 타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공영도매시장								
공 판 장								
유사 및 간이공판장								
대형유통업체								
전자상거래								
식자재업체								
수 출								
군 납								
기 타								
합 계								

주) 취급규모가 큰 2개 품목을 ( )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산 기타에 기재 / 단위 : kg, 백만원

6. 기타 사업 현황

가. GAP 및 품질관리사 보유 여부

▶ 증빙첨부!! "여"체크 시, GAP 시설 및 조직 인증서 사본, 품질관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GAP 시설인증		GAP 조직인증		농산물품질관리사 보유		
여	부	여	부	여 *인원 기재		부
					* 명	

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만 체크

나. 정부사업 참여 여부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배추·무 수급안정사업 참여 여부	
여	부	여	부

▶ 법인 : "여"체크 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첨부

▶ 농협 : "여"체크 시 계약재배 품목, 금액, 참여 농가수 별지 작성 첨부

첨 부 : 저온유통사업계획서(선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 시 활용)

< 첨 부 >

저온유통사업계획서

❑ 사업 참여 동기

○

○

○

○

❑ 물량 확보 계획

※ 관내 원예농산물 생산농가작목반 현황, 재배품목·면적·생산량 자료 포함

○

○

○

○

❑ 저온유통사업 목표

○

○

○

○

[별지 제2호 서식]

2016년도 산지저온수송차량 지원 신청서

1. 일반현황

조 직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연도		주요취급품목	
취급물량(톤)		출 자 금	
출자조합원수		*정부사업 참여 현황	

* 정부사업 참여현황: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 또는 참여여부(APC사업, 수급안정사업 포함) 등

2. 저온수송차량 구입 계획

(단위: 톤, 백만원)

규모(톤)	예상 구입금액	이용품목	이용용도

주) 규모는 1톤이상 ~ 5톤이하 중 선택

○ 사업비 지출 계획

(단위: 대, 백만원)

사업 규모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액

주1) 사업비는 선정공고 상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보조금 신청은 지원비율 한도(보조 50%)를 초과할 수 없음

3. 최근 결산 2개년 사업실적

▶ 증빙첨부!! 법인 : 최근년도 결산 완료 재무제표 & 2개년 품목별 판매실적 자료

농협 : '14년말, '13년말 합계잔액시산표 및 손익내역표(일반유형/세목) & 품목별 판매실적 자료

가. 원예농산물 매출실적

취급품목	2013(또는 2014년)		2014(또는 2015년)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합 계				

주1) 취급품목은 양곡, 축산을 제외한 원예농산물의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기재

주2) 상위 3개 품목은 품목별로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은 합하여 기타 란에 기재

나. 중점지원품목 매출실적

취급품목	2013(또는 2014년)		2014(또는 2015년)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합 계				

주) 중점지원품목: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시금치, 상추,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4. 저온유통시설 보유 현황

▶ 증빙첨부!! 최근 사업년도 말 기준「고정자산명세표」혹은「사무소별 자산현황」)에 해당시설 체크하여 첨부(단, 장부상 시설내역 불명확할 경우 해당 시설 관련 별도 증빙 추가 첨부)

가. 저온유통 관련 시설투자 현황 (보유시설 기준)

구 분	면적(㎡)	취득가액(천원) (A)	감가상각누계액(천원) (B)	장부가액(천원) (A - B)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수송차량				
총 계				

주) 시설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타 저온유통관련 시설보유 시 빈 칸에 추가 작성

나. 주요 시설 이용 현황

(단위: ㎡, 대)

구 분	저장고		선별장		예냉시설	농산물수송차량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자 가							
임 대							
합 계							

주) 임대는 임대계약을 체결 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원예농산물 거래처별 판매실적

▶ 증빙첨부!! 법인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농협: 출하처별 매출실적 총괄표 및 세부내역표

구분 \ 품목	( )		( )		기 타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공영도매시장								
공 판 장								
유사 및 간이공판장								
대형유통업체								
전자상거래								
식자재업체								
수 출								
군 납								
기 타								
합 계								

주) 취급규모가 큰 2개 품목을 ( )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산 기타에 기재 / 단위 : kg, 백만원

6. 기타 사업 현황

가. GAP 및 품질관리사 보유 여부

▶ 증빙첨부!! "여" 체크 시, GAP 시설 및 조직 인증서 사본, 품질관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GAP 시설인증		GAP 조직인증		농산물품질관리사 보유		
여	부	여	부	여 *인원 기재		부
					* 명	

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만 체크

나. 정부사업 참여 여부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배추·무 수급안정사업 참여 여부	
여	부	여	부

▶ 법인 : "여" 체크 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첨부

▶ 농협 : "여" 체크 시 계약재배 품목, 금액, 참여 농가수 별지 작성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2016년도 김치가공업체 지원 신청서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연도		사업유형*	
주요취급품목		취급물량(톤)	
출자(자본)금		출자조합원수 (주주)	

* 사업유형: 농협, 주식회사, 법인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산지저온시설 설치 계획

(단위: ㎡, 백만원)

시 설		신 규					개보수				
		규모	사 업 비				규모	사 업 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예냉설비	차압식										
	강제통풍식										
	진공식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저온수송차량											
PCM 저온수송차량											

주1) 예냉설비의 신청은 조직당 1종류로 한정하며, 신규와 개보수 중 선택

주2) 규모·신청금액은 공고문의 "시설별 지원한도액 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규모와 금액 기재

주3) 예냉설비의 종류는 지역, 품목의 특성에 맞게 신청

❑ 산지저온시설 설치예정 부지 현황

시 설 명	설치 예정지 주소	근저당 설정 현황	
		설정여부	설정 내역
예냉설비			은행/ 백만원
저온선별장			
저온저장고 (개보수)			
저온저장고 (신규)			

▶ 저온저장고(신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지적도 및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 예냉시설, 저온선별장, 저온저장고(개보수) :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예냉시설을 별도의 부지에 설치코자 할 경우 : 설치 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 저온저장고(신규) 및 예냉설비 별도설치의 경우 부지 확보현황(해당사항 체크)

- 부지 기 확보(법인 또는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야 함) ( )
-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지급 혹은 소유권 이전 중 ( )
- 부지 미 확보 ( ) → 부지확보계획 ( )

※ 산지저온시설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확보된 부지의 사용가능 여부(해당사항 체크)

- 설치예정 부지에 해당 건축물 증·개축시 관련법 저촉 여부 ( )

※ 해당 부지 건폐율 및 개발제한 등을 지자체에 사전 조사하여야 함

- 관련법에 저촉 시, 행정당국의 조건부 허가 등으로 증·개축 가능 여부 ( )

3. 최근 결산 2개년 사업실적

▶ 증빙첨부!! 주식회사, 법인: 최근년도 결산 완료 재무제표 & 2개년 품목별 판매실적 자료

농협 : '14년말, '13년말 합계잔액시산표 및 손익내역표(일반유형/세목) & 품목별 판매실적 자료

가. 매출실적

취급품목	2013(또는 2014년)		2014(또는 2015년)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합 계				

주1) 취급품목은 양곡, 축산을 제외한 원예농산물의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기재

주2) 상위 3개 품목은 품목별로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은 합하여 기타 란에 기재

나. 원물 확보 현황

▶ 증빙첨부!! 원물 확보내역

품 목	지 역	원물 확보방법*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합 계		

* 원물 확보방법 : ①자가생산 ②계약재배 ③산지생산자 직구매 ④산지조합 ⑤도매시장 ⑥산지수집상 등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김치류 저장 및 가공 시설 보유 현황

▶ 최근 사업년도 말 기준「고정자산명세표」혹은「사무소별 자산현황」에 해당시설을 체크하여 첨부 (단, 장부상 시설내역 불명확할 경우 해당 시설 관련 별도 증빙 추가 첨부)

가. 가공시설 투자 현황(보유시설 기준)

구 분	면적(㎡)	취득가액(천원) (A)	감가상각누계액(천원) (B)	장부가액(천원) (A - B)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예냉시설				
총 계				

주) 시설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타 김치가공 관련 시설 보유 시 빈 칸에 추가 작성

나. 주요 시설 이용 현황

구 분	이 용 시 설 (㎡)			
	예냉시설	저장고	선별장	가공시설
자 가			( )	( )
임 대			( )	( )
합 계			( )	( )

주) 임대는 임대계약을 체결 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은 일반, 저온 여부 기재

5. 거래처별 판매실적

▶ 증빙첨부!! 주식회사, 법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농협: 출하처별 매출실적 총괄표 및 세부내역표

구분 \ 품목	( )		( )		기 타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공영도매시장								
공 판 장								
유사 및 간이공판장								
대형유통업체								
전자상거래								
식자재업체								
수 출								
군 납								
기 타								
합 계								

주) 취급규모가 큰 2개 품목을 ( )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산 기타에 기재 / 단위 : kg, 백만원

6. 기타 사업 현황

❑ 품질인증 여부

▶ 증빙첨부!! "√" 체크 시, 각 인증서 사본

전통식품품질인증	HACCP	ISO 9001	GAP 인증	가공식품KS인증	기타

첨 부 : 김치류 저장사업 계획서(선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 시 활용)

< 첨 부 >

김치류 저장사업 계획서

❑ 사업 참여 동기

○

○

○

○

❑ 물량 확보 계획

※ 관내 배추·무 생산농가작목반 현황, 재배품목·면적·생산량 자료 포함

○

○

○

○

❑ 김치류 저장 사업 목표

○

○

○

○

6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등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중 고품질의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예냉과 저온저장 등을 통해 유통과정상 발생되는 원예농산물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불안 해소

2. 추진방침

○ 생산시설이 규모화 된 단지 또는 수출실적(계획)이 있는 원예특작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생산·유통시설 등 지원

○ 입지여건,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원예전문 생산단지로 육성

3. 지원계획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별	총사업비	재 원 별		
		지특(국비)	시군비	자담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4,000,000	2,000,000 (50%)	400,000 (10%)	1,600,000 (40%)

※ 개소당 500백만원 내외

Ⅱ.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1년)

2.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3. 사업내용

○ 생산시설 :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및 보완

○ 부대시설 : 양액재배시설, 자동제습시스템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신규설치 및 보완 등

○ 기타시설 : 기준시설 외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 등

※ 원예·특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지원 제외

4. 지원자격(요건)

○ 생산 및 부대시설(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

- 생산시설을 2ha이상 보유한 법인이 추가로 신규설치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 생산면적에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에 주 생산품목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
- 2ha이상의 생산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등

○ 유통시설

- 원예·특용작물을 2ha이상 재배하는 법인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이 연간 2억원 이상인 법인

○ 공　　통 : 사업부지(예정지)가 확보된 법인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사전확인 후 신청(시군당 1개소 추천을 원칙)

○ 최근 3년 이내('16년 사업대상자 확정 포함)에 총 사업비 5억원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법인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사업자의 추진의지,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5. 지원기준

가) 생산시설(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자동공정육묘장 등)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신규 20천원/㎡, 보완 15천원/㎡ 내외)

* 설치유형에 따라 도와 협의를 거쳐 단가 조정 가능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농업시설 표준 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나) 부대시설(양액재배시설, 자동제습시스템 등)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등의 단가를 적용하되 단가 산출이 어려울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다) 유통시설(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 지원단가 : 저온저장고(신규) 1,000천원/㎡, 저온저장고(보수) 250천원/㎡ 저온선별장(신규) 800천원/㎡, 저온선별장(보수) 200천원/㎡

라) 기타시설

○ 지원단가 : 정부고시 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설치방법 : 건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를 선정 시공

6. 추진일정 및 체계(2016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15. 9. 30.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15. 10. 2.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점검, 3차 공개발표 평가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도) : '15. 10 .15.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시군→도) : '16. 12. 31.

○ 사업추진 체계

도	-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읍면동)	-	▪ 적격자 추전, 추진상황 확인 및 보고(서식1) ▪ 신청서 확인·보안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2),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7.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반드시 동 변경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보조사업자 변경 등 중요사항은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지도관리 철저

'16년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계획 신청서

❑ 조직현황

조직현황	조직명/주소	조직명 : (대표명 :) 주 소 :		설립연월일	
	사업대상지	외 필지(ha)			
	전 화	(핸드폰 :)			
	참여농가수	호(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품 목		생산면적/생산량('14)	ha/ 톤	
			연간수출액(')	백만원	

❑ 사업내용 : 생산, 부대, 유통, 기타 등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원 단가	사업비			
			계	지특(국비)	시군비	자 담
계	(ha, ㎡)	천원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끝.

2015. .

신청자 : (인)

추천자 : 시장·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세부 사업계획

❑ 필 요 성

○ 지역여건(지리적, 유통, 조직 등), 현재 추진상황, 사업필요성, 목적 등

❑ 현황 및 육성비전

가. 현 실태

○ 위　　치 :

○ 조 직 명 :　　(대표　　, ☎　　)

○ 참여농가수 :

○ 단체조직운영 실태(조직형태, 법인운영에 따른 회의, 교육실적 등)

-

○ 주 생산품목 :

- 면　적 :　　ha(친환경면적 :　　ha)

- 자체 브랜드 유무 :　　(브랜드 명:　　)

○ 생 산 량 :　　톤

○ 년간 매출액 :　　백만원(수출지역/수출액 :　　/　　백만원)

○ 주 판매처 :

○ 기본계획 : 목표, 생산 및 유통현황

나. 사업성과 및 목표

○ 장기적 산업화(기업화) 도달 목표나 비전 제시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15	2016	2017이후	
1. 참여농가 소득(백만원)				
2. 일자리 창출(명)				
3. 수출(백만원)				

❑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지특　　, 시군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 원 단 가	사 업 비			
			계	지특(국비)	시군비	자 담
계	(ha, ㎡)	천원				

* 최근 3년이내 동일사업 지원실적이 있는지 여부 :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 운영전략(자부담확보, 공동등기가능여부, 조직체 구성원 의견반영)

○

○

❑ 기대효과

○

○

* 필요시 서식변경 가능

< 서식 1 >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실적(/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지특 , 시군비 , 자담)

- 집행실적 : 천원(지특 , 시군비 , 자담)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지특	시군비	자담
계	(ha, ㎡)		(%)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되게 작성

○ 세부 사업별 추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

< 서식 2 >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원(지특 , 시군비 , 자담)

- 집 행 액 : 원(지특 , 시군비 , 자담)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추진실적(ha, ㎡,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	
계	지 특	시군비	자 담	계	지 특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시 사유)

○

○

7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일조량 등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자동화온실 등 환경제어가 가능한 현대화된 온실을 중심으로 생육 환경 개선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친화형 재배시스템 지원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생산·공급하여 시장교섭력 강화

○ 시군별 차별화 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2. 추진방침

○ 세분화된 원예·특용작물 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자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효율성 증진

○ 지역별 농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별	총사업비	재 원 별		
		도비	시군비	기타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구축	6,666,660 (100%)	1,000,000 (15%)	2,333,330 (35%)	3,333,330 (50%)

Ⅱ.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 기간 : 2016.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6.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사업설명·홍보(시·군, 읍·면)
⇓		
② 추진계획수립	(1월)	▪ 신청접수 및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안 수립 (시군, 읍·면) - 사업수요 및 여건 등을 감안, 자율 수립
⇓		
③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보고	(2월)	▪ 사업 대상자 및 세부 사업계획 확정 (시군, 읍면) - 심의회 개최 ▪ 세부 사업 추진계획 보고 (시·군 → 도/ 2. 28일한, 서식 1)
⇓		
④ 추진일정 수립 및 사업착공	(3~4월)	▪ 세부사업별·지원대상자별 추진일정 수립, 사업계약 체결, 사업착공(시군) - 복수견적, 일괄계약, 농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사업비 절감 및 투명성 제고
⇓		
⑤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4~11월)	▪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독려(도·시군) - 사업장별 현지 점검 및 문제점 도출 - 추진지침, 설계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		
⑥ 보조금 집행	(5~11월)	▪ 보조금 송금 및 적정 집행(도, 시군) - 사업성격 등을 감안 추진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후 보조금 잔액 집행 ※ 자부담 선집행 지도 및 확인
⇓		
⑦ 사업비 검정 및 정산	(12월~ 익년 2.월말)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군)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서식 3) ※ 자부담 집행실적(증빙자료) 철저 확인

2.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 재배 희망 농가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홍보

< 지원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관련 품목별 조합 등과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의 경우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3.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설치 및 기기 구입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 보완시설 :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원예 분야 기계 등

○ 특용작물분야 : 녹차, 버섯, 약용작물, 양잠업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등 재배사 신축
- 보완시설 : 작물의 냉풍해 방지 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특용작물 분야 기계・방충망 등 구입

○ 특화작목 분야 : 시장·군수가 재배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화작목

- 시장·군수가 재배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종자·종근·묘목 구입비를 지원 가능

4.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20천원/㎡, A형지붕 버섯재배사 120만원/3.3㎡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농림식품부 고시 2014-78호, 2014. 7. 24)」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

2) 보완시설

○ 지원내용 :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등 원예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기 구입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14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의 단가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3) 기 타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특화작목 종자·종근·묘목 구입 등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5.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추이 등을 감안하여 2월중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다수 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시장·군수 주관으로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최대지원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함

6.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 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7.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목적과 지원범위 및 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금액 총액 조정, 명시되지 않은 지원범위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8.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도에 보고함

9.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융자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서식 1 >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신청자</td><td>법인(농가)명</td><td colspan="2"></td><td>사업자 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생산품목</td><td colspan="2"></td><td>재배규모</td><td colspan="3">㎡</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3">(남/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 rowspan="2">연 락 처</td><td colspan="3" rowspan="2">전 화) :
핸드폰) :
팩 스) :</td></tr>
<tr><td>사업장
소재지 주소</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기 존
시 설</td><td rowspan="2">재배시설</td><td>비닐하우스</td><td>버섯재배사</td><td>*기타</td><td>*기타</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생산기기</td><td>냉방기</td><td>난방기</td><td>양액재배</td><td>*기타</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사 업
계 획</td><td rowspan="2">사업규모
(천원)</td><td colspan="2">비닐하우스 등</td><td colspan="3">*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td></tr>
<tr><td colspan="2">냉풍해 방지시설 등</td><td colspan="3">*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td></tr>
<tr><td rowspan="2">재원조달
(천원)</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보조</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소계)</td><td>도비</td><td>시군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7">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7">첨부 : 법인등기(법인만 해당)</td></tr>
</table>

< 서식 2 >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농가명 (법인명)	주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 신규시설(㎡) - 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등
- 보완시설 및 기타(종) - 기기구입은 종으로 작성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 서식 3 >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개소)		(%)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

< 서식 4 >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집 행 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 집 행 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세 부 사업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비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

8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이후
합 계	4,500	16,500	21,500	25,000	25,000	197,500
국 고	2,250	8,250	10,750	12,500	12,500	98,750
지방비	1,800	6,600	8,600	10,000	10,000	79,000
자부담	450	1,650	2,150	2,500	2,500	19,75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 주관기관 : 시·군·구, 시·도

- 시군 통합마케팅조직(또는 광역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되도록 농가,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등 개별 경영체를 1개 읍면 단위 이상 권역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광역 통합마케팅조직 : 복수 시군 이상의 농가,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통합마케팅조직(참여조직이 동일 품목으로 복수의 통합조직 참여는 불가)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법인 조직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주관기관 요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원예농산물(채소류) 및 식량작물 주산지 시·군

- 원예농산물(과수류)은 과수산업발전계획(농식품부 승인)에 포함된 시·군 중 당해 주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시·군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2014년 6월 30일 기준)〉

품목	단지 지정 기준		
	범 위	면 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12,84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15,850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300ha 이상	30,860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500ha 이상	32,350t 이상
봄 무	시·군·구	70ha 이상	6,020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7,060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110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500ha 이상	92,350t 이상
고 추	시·군·구	700ha 이상	1,620t 이상
마 늘	시·군·구	1,000ha 이상	12,530t 이상
양 파	시·군·구	800ha 이상	52,600t 이상
대 파	시·군·구	250ha 이상	6,740t 이상
생 강	시·군·구	100ha 이상	1,280t 이상
당 근	시·군·구	100ha 이상	3,600t 이상
참 깨	시·군·구	250ha 이상	100t 이상
땅 콩	시·군·구	100ha 이상	240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2015년 10월 14일 기준)〉

품 목		주 산 지 정 기 준		
		범 위	면 적	출하량(생산량)
맥류	밀	시·군·구	200ha 이상	656톤 이상
	쌀보리	시·군·구	500ha 이상	1,245톤 이상
	겉보리	시·군·구	200ha 이상	494톤 이상
	맥주보리	시·군·구	300ha 이상	825톤 이상
두류	콩	시·군·구	1,000ha 이상	1,680톤 이상
	팥	시·군·구	50ha 이상	54톤 이상
	녹두	시·군·구	20ha 이상	19톤 이상
서류	고구마	시·군·구	500ha 이상	7,550톤 이상
	감자	시·군·구	500ha 이상	12,605톤 이상
잡곡류	수수	시·군·구	50ha 이상	76톤 이상
	옥수수	시·군·구	100ha 이상	495톤 이상
	기장	시·군·구	50ha 이상	60톤 이상
	메밀	시·군·구	50ha 이상	45톤 이상
	조	시·군·구	50ha 이상	60톤 이상
	귀리	시·군·구	100ha 이상	300톤 이상
잡곡류 통합		시·군·구	300ha 이상	273톤 이상

○ 특화수준 및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특화수준 : 신청품목의 특화계수가 전국 대비 1 이상이거나 관할 시·도 대비 2 이상인 시·군

□ **전국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군 양파 생산액)÷(△△군 농업 생산액)}/{(전국 양파 생산액)÷(전국 농업 생산액)}

□ **○○도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군 양파 생산액)÷(△△군 농업 생산액)}/{(○○도 양파 생산액)÷(○○도 농업 생산액)}

*** 공식 통계가 없을 경우, 품목 생산액 대신 최근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재배면적 적용, 농업 생산액 대신 최근 통계자료의 경지면적을 적용**

- 준 주산지 : 일정기준에 해당되어 해당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주산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군(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주산지 요건을 갖추도록 생산규모 확대조건)

*** 전년도 재배면적이 주산지 기준의 90%이상이며 농가 조직화 수준,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 농발계획')' 상 원예, 식량작물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사업 품목의 지역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공동마케팅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시 · 군 내 통합마케팅조직이 없더라도 개별조직 단위로 신청 가능

  * 밀, 보리와 같이 유통 여건상 현물상태로 계약재배(수매) 등으로 납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마케팅 조직과의 계열화는 필수조건에서 제외

  * 품목광역조직(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 조직)은 통합마케팅조직과 동일한 자격부여

○ 공동경영체의 품목별 규모

- 공동경영체가 관할하는 재배면적이 해당 시·군·구의 해당 품목에 대한 전체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시·군에서 제출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에 대해 품목별(원예, 식량) 선정심사 후, 심사 결과(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최대 3개년 중 2년 지원)된 조직

  *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지역 농발계획(원예, 식량부문 포함)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 지원하며, 농식품부-시·도-시·군 정책의 결합도가 우수한 지역 우선 지원

○ 지원대상 품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품목만 해당됨

  * 과수는 해당 지역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대상 품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단, 기초역량 진단 결과 정착·심화단계일 경우라도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필수 농자재 중 공동구매가 필요한 자재(생분해성필름 등) 구입비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농기계임대사업 주체를 통해서 지원

*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토지 제외)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상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 시 판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15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1년차 사업 종료 후 지원 대상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조정 가능, 1년차 평가 결과 조직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2년차 사업비 지원 유예(1회) 또는 중단

- 지원형태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한도 : 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군별 20억원 이내(1년차 30%, 2년차 70%)

* 1개 시·군에서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밭작물공동경영체가 참여하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20억원 이내에서 조직별 사업비 배분 가능

* 선정 심사 결과 1개 경영체의 사업규모를 감안(원예작물은 경영체의 재배면적이 시군내 재배면적의 30% 이상, 식량작물은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하여 필요시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 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생산자 조직화, 유통 계열화 등을 위해 사업 신청 희망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컨설팅 실시

○ 시·군은 지자체장 주관으로 시·군 단위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 내 협의를 통해 품목별 생산자 조직 중 선도 조직을 결정하고 선도조직을 중심으로 규모화·조직화하여 통합마케팅에 참여(계열화)하기 위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수립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은 지역 농발계획 상 정책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제2호)' 상에 조직별 지원내용, 사업물량 등을 명시

○ 시·군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우선순위(원예·식량작물 구분)를 결정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도 단위로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 계획일 경우 시·군과 같은 절차로 '시·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 시·군 단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시·도 단위 지역 농발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해당 내용을 포함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 선정 심사에서 제외

* 사업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aT는 지자체, 생산자 조직, 마케팅 조직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시·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계획 수립 방향〗

(1)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 주체 : 시·군(또는 시·도)

○ 계획기간 : 2016년~2018년

*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수립된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등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하며 해당 내용 명시

(2) **주산지협의체 구성**

○ 구성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신청 품목의 생산, 기반조성, 상품화, 유통, 마케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구성

○ 협의체의 역할

① 지자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방향 설정

② 사업계획 검토, 자문,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⑤ 기타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통합마케팅조직,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상품화-유통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 계열화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밭작물 생산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유통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신청품목 관련 생산·유통 시설 현황 및 활용도 분석(보유현황, 가동현황, 생산량 대비 과부족 등)
- 관련 상위계획 분석(상위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내용, 향후 연계 방향)

○ 중장기 비전과 목표
- SWOT분석(전략과제 제시)
-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비전과 육성목표, 핵심 전략과 로드맵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중장기 비전과 목표, 사업 추진 전략과 로드맵

○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 추진 방향 및 체계
- 농가조직화,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예산 집행 계획)
- 계획에 따른 부문별 성과 목표

○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주산지 협의체 운영계획

(5) **기타 :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 심사 평가 이후 지원 대상 경영체, 품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식품부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차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

2. 사업자 선정 단계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보

○ aT는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서면·발표·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현장평가 시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의 생산자 조직화 등 사업여건 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마케팅조직과의 협력체계 등을 파악하고, 주산지협의체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농식품부는 aT로부터 제출된 선정 심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3. 사업비 배정단계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당해연도 사업비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 당해연도 배정액 확정 후 시·도는 교부받을 금액을 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고 월별 소요자금을 전월 20일전까지 농식품부에 교부 요구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예산 교부 요구가 있을 시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시·군은 공동경영체로부터 자부담액을 우선 납부 받아 예산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해당 시·군은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밭작물공동경영체와 협의하여 시·도에 제출

- 농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동경영체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6.2월말까지)

○ 농식품부는 시·도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세부사업추진 계획 검토 결과 보완 필요시에는 계획 승인 시 부대의견을 포함

○ 시·군(시·도)는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5. 이행 점검단계

○ 농식품부는 시·도 및 aT와 합동으로 연 3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 aT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을 농식품부 협의·수립하여 지자체에 공지

- 사업비 집행 실적, 사업별 추진 상황, 협의체 운영 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군(또는 시·도)에 요구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밭작물공동경영체 운영 실태 조사·분석

-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 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관련기관(농촌진흥청, 농협 등)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광역주산지협의체 단위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별지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aT에 제출

○ aT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연차평가 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

<환 류>

○ 농식품부는 연차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수급안정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융자지원, GAP 기반조성 지원 등 관련사업 지원 시 우대

- 연차평가 결과 2차년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은 예산 지원 중단·유예

7. 기타

○ aT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정책협의회 주관·운영

* 기본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배정액 확정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고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기본정보</td><td>경영체명</td><td colspan="2"></td><td>설립년도</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명</td><td colspan="2"></td><td rowspan="2">통합마케팅
조직
참여현황</td><td colspan="2">□ 참여(조직명)
□ 미참여</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2">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td><td>참여연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6"></td></tr>
<tr><td>조직형태</td><td colspan="6">☐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협 ☐ 기타( )</td></tr>
<tr><td rowspan="4">사업현황
('15년
기준)</td><td rowspan="3">총취급액
(백만원)</td><td>(품목1)</td><td rowspan="3">품목별
재배면적(㎡)
/
신청지역
재배면적(㎡)</td><td>(품목1) /</td><td rowspan="3">품목별
취급액
(백만원)</td><td>(품목1)</td></tr>
<tr><td>(품목2)</td><td>(품목2) /</td><td>(품목2)</td></tr>
<tr><td>(품목3)</td><td>(품목3) /</td><td>(품목3)</td></tr>
<tr><td>참여조직별
취급액
(백만원)</td><td colspan="2">(조직1)
(조직2)
(조직3)</td><td colspan="3">(조직4)
(조직5)
(조직6)</td></tr>
<tr><td rowspan="2">참여농가
현황(호)</td><td>총농가수</td><td colspan="2"></td><td>품목별
농가수
(호)</td><td colspan="2">(품목1)
(품목2)
(품목3)</td></tr>
<tr><td>참여조직별
농가수(호)</td><td colspan="2">(조직1)
(조직2)
(조직3)</td><td colspan="3">(조직4)
(조직5)
(조직6)</td></tr>
<tr><td rowspan="7">신청내역</td><td>신청단계</td><td colspan="6">□ 기초 □ 정착 □ 심화</td></tr>
<tr><td>신청유형</td><td colspan="6">□ 내수확대형 □ 수출지향형 □ 로컬푸드형 □ 6차산업형
□ 기타( )</td></tr>
<tr><td rowspan="2">사업량</td><td>참여조직수(개)</td><td></td><td>참여농가수</td><td colspan="3"></td></tr>
<tr><td>주요품목</td><td></td><td>공동경영면적</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사업비
(백만원)</td><td>계</td><td>국비</td><td>지방비</td><td colspan="3">자부담</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신청내용</td><td>교육
(백만원)</td><td></td><td>컨설팅
(백만원)</td><td></td><td>운영비
(백만원)</td><td></td></tr>
<tr><td rowspan="3">시설·장비</td><td colspan="3">내 역</td><td colspan="3">예상액(백만원)</td></tr>
<tr><td colspan="3">(1)</td><td colspan="3">(1)</td></tr>
<tr><td colspan="3">(2)
(3)</td><td colspan="3">(2)
(3)</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2. 밭작물공동경영체와 통합마케팅조직간 출하계약서(또는 협약서)
3. 밭작물공동경영체와 참여농가(조직)간 출하약정서(또는 계약재배 체결서)
4. 밭작물공동경영체 기초자료(법인등록증,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서식은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따라 변경·수정 작성 가능

「20○○년 ○○시(군)」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일 : 20○○년 ○○월 ○○일

구 분	이름	소속	부서	연락처
주관부서				
연계부서				
연계기관				

목 차

Ⅰ. 밭작물 생산 · 유통 현황 ·····

1. 시 · 군 농산업 현황 ·····

2. 신청품목 생산 현황 ·····

3. 신청품목 생산 · 유통조직 및 시설 현황 ·····

4. 밭작물 관련 주요 농정 현황 ·····

5.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Ⅱ. 중장기 비전과 목표 ·····

2. 00품목 육성 비전과 목표 ·····

3.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비전과 목표 ·····

Ⅲ.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1. 추진방향 및 체계 ·····

2. 부문별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3. 1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

Ⅳ.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1. 주산지 협의체 운영 계획 ·····

2. 기타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

Ⅰ.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1. 시·군 농산업 현황

1) 생산현황 * 품목별 생산농가 및 재배면적 : 농발계획 및 산지유통종합계획 내용 활용

부류별		품목명	생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생산비 (%)	생산비중(%)	
							전국대비	도대비
식량작물	맥류	밀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소계						
	두류	콩						
		팥						
		녹두						
		소계						
	서류	고구마						
		감자						
		소계						
	잡곡류	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조						
		귀리						
		소계						
	식량작물 합계							
채소류	과채류	수박						
		참외						
		오이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소계						
	엽채류	배추						
		시금치						
		상추						
		양배추						
		소계						
	조미 채소류	고추						
		대파						
		양파						
		생강						
		마늘						
		소계						
	근채류	무						
		당근						
		소계						
	채소류 합계							

부류별	품목명	생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생산비 (%)	생산비중(%)	
						전국대비	도대비
과실류	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소계						
특작	참깨						
	들깨						
	땅콩						
	인삼						
	소계						
합계							

* 자료 : 00시통계연보, 00도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

* 품목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통합마케팅 현황

○ 공동브랜드 현황

적용 품목	품목1	품목2	품목3
일반 현황	- 브랜드명 : - 소유 및 관리 - 사용권 - 관리제도		
생산 기준	-	-	
저장 선별 기준	-	-	
BI 이미지			
유통 현황	- 주출하처1 - 주출하처2		

○ 통합마케팅조직 현황

구 분	주요 취급품목	농산물 취급액('15년)			조직화 취급액('15년)			비고
		계	수탁	매취	계	수탁	매취	
통합마케팅조직명								
참여조직1								
참여조직2								
참여조직3								
000								
000								
000								
합계	총( )개소	0	0	0	0	0	0	

2. 00품목 생산 현황

1 생산 현황

○ 00품목 생산 여건 변화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4년전(a)							
2년전							
신청년도(b)							
a/b 등락율(%)							

○ 읍·면별 생산 현황(2015년 말 기준)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호당 면적 (ha)	시군대비 (%)
00읍					
00면					
전체면적					

○ 영농규모별 농가 현황

구 분	0.1ha 미만	0.1~ 0.5	0.5~ 1.0	1.0~ 1.5	1.5~ 2.0	2.0~ 3.0	3.0ha 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연령대별 농가 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2 주요 품목 특화도

○ 전국 대비 특화도

품 목 명	전국 농업생산면적 (ha)	전국 00품목 재배면적(ha)	시·군 농업생산면적 (ha)	시·군 00품목 재배면적 (ha)	특화도

○ 시·도 대비 특화도

품 목 명	00도 농업생산면적 (ha)	00도 00품목 재배면적 (ha)	시·군 농업생산면적 (ha)	시·군 00품목 재배면적 (ha)	특화도

3. 00품목 생산 유통조직 및 시설 현황

1) 조직 현황

○ 생산농가조직 현황 기초 생산자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 유통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2) 시설 현황

○ 생산시설 현황

기반시설1	기반시설2	묘목생산		농기계1	농기계2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ha (%)	ha (%)	ha	천주	대	ha	%	

* 맥류 및 콩 생산시설 : 건조, 저장시설 등

○ 유통시설 현황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 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								
전년도 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3) 생산·유통 여건 분석

[1]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내 밭작물 산업 현황과 문제점

- 주체육성, 생산기반, 상품화 기반, 유통기반 등 부문별로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

[2] 선결 과제

○ 00품목을 비롯한 지역 내 밭작물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부문별로 간략하게 제시

4. 신청품목 관련 주요 농정 현황

* 신청품목에 대해 지원되는 농림사업, 도단위 사업, 시·군 자체사업 현황 기재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육, 생산기반, 유통시설, 마케팅)	지원의 성격 (HW, SW)	사업비 (백만원)	지원기간		조성비율(%)				지원조건(%)	
					개시	종료	국	시·도	시·군	자부담	융자	보조

5.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상위 계획 중 밭작물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산지유통조합계획

○ 기타(포괄보조사업계획,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등)

Ⅱ. 밭중장기 비전과 목표

1. SWOT분석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o o o o o	o o o o o

기 회(Opportunity)	위 협(Threat)
o o o o o	o o o o o

(개선의 방향성)	
전략1(SO)	◦ ◦ ◦
전략2(ST)	◦ ◦ ◦
전략3(WO)	◦ ◦ ◦
전략4(WT)	◦ ◦ ◦

2. 00 품목 육성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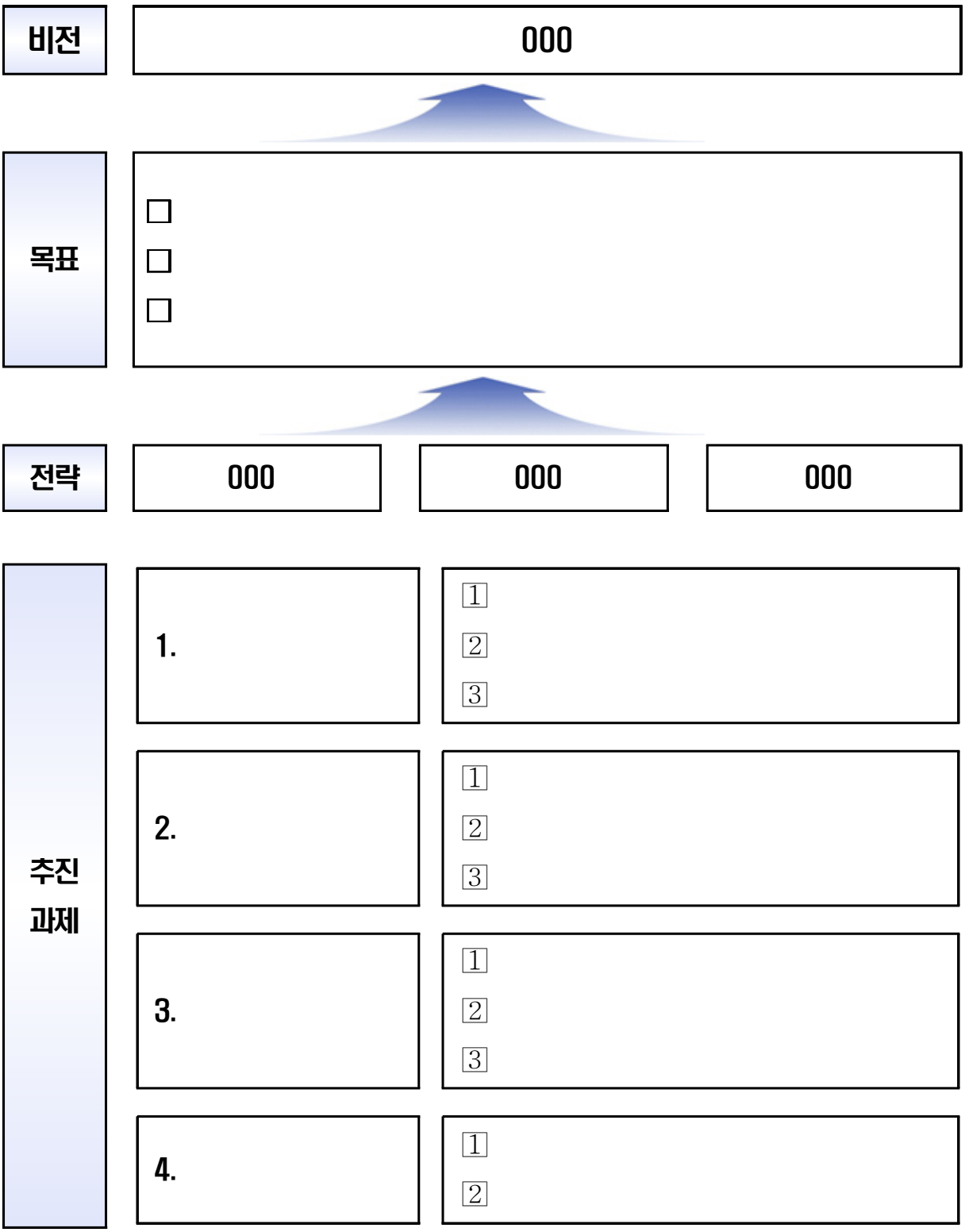

3.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비전과 목표

1) 비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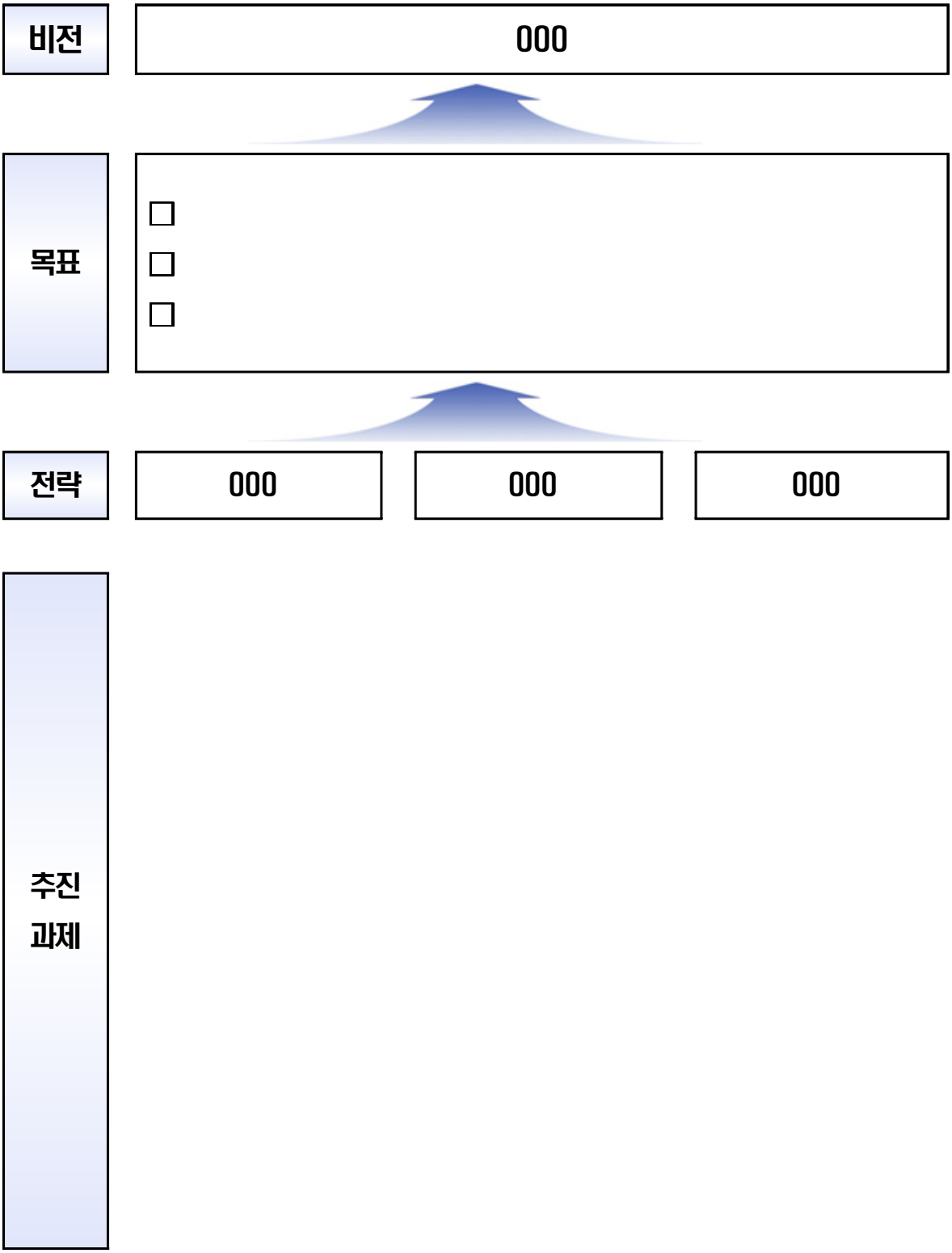

2) 부문별 목표

○ 정량적 목표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수치로 제시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 생산 (톤)	밭작물 공동경영체 생산점유율 (%)	통합마케팅 비중 (%)
2015년(A)						
2016년						
2017년						
2018년(B)						
증감(%) (B-A)/A						

○ 정성적 목표

- 생산, 유통 등 분야별 전략목표 제시

3) 사업추진 로드맵

○ 연차별 핵심과제 및 사업목표

- 00품목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중장기 비전과 목표에 따라 연차별 사업목표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전략과 과제 제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략목표			
핵심과제			
핵심성과			

4) 연차별 투융자 계획

○ 사업별, 부문별 투융자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재원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농가조직화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생산성 향상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신상품 개발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품질향상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노동력 절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Ⅲ. 세부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밭작물공동경영체지원사업 모델(총괄)

- 신청품목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모델 도식화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 사업간 연계구조

  * 생산, 상품화, 유통, 마케팅 각 영역별 정책 지원 체계

2) 추진체계

○ 협력체계

- 00품목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체계 제시

구 분	
지자체	- - -
통합마케팅조직	- - -
참여조직(밭작물공동경영체)	- - -
기초생산자조직	- - -
지원기관(농업기술센터 등)	- - -

2. 부문별 세부사업 추진 계획

1) 농가조직화

1 현황 및 문제점

-

2 추진방향

- 시·군 농가 조직화 여건에 따라 '조직화 필요성 인식, 사업 참여 원칙 확립, 재배기술 향상, 리더육성 등' 농가조직화 프로그램의 주안점을 제시

3 세부 사업 내용

○ 농가 조직화 교육

- 교육대상 :
- 교육시기 및 회수 :
- 주요 교육 내용 :

회차	개최시기	참석자	주요내용

○ 00품목 주산지협의체 운영

- 참석대상 기관 :
- 협의체 개최 시기 :
- 협의체 주요 안건

회차	개최시기	참석자	주요내용

2) 생산성 향상

1 현황 및 문제점

- 00품목의 생산시설 확충 필요성 : 생산, 포장, 가공 등 상품화 기반 현황 및 여건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규 시설 도입 및 보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방향

- 농정수요에 따른 연차별 생산시설 설치 방향 제시

3 세부 사업 내용

○ 생산시설 설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명							
○ 시설명							

3) 신상품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 00품목의 공동육묘 시설 설치 필요성 : 재배품종 및 모종 조달 현황 및 여건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규 시설 도입 및 보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방향

- 농정수요에 따른 연차별 신상품 개발 시설 설치 계획

3 세부 사업 내용

○ 공동육묘 시설 설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명							
○ 시설명							

4) 품질향상

1 현황 및 문제점

- 00품목의 GAP 인증 시설 설치 필요성 : GAP 농산물 유통 관련 시장 현황 및 여건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규 시설 도입 및 보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방향

- 농정수요에 따른 연차별 품질향상 시설 설치 계획

3 세부 사업 내용

○ GAP 인증 시설 설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명							
○ 시설명							

5) 노동력 절감

1 현황 및 문제점

- 00품목의 노동력 절감 필요성 : 노동생산성 저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동 농기계 구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방향

- 농정수요에 따른 연차별 노동력 절감 기계 구입 계획 제시

3 세부 사업 내용

○ 공동 농기계 구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명							
○ 시설명							

3. 2016년 사업 추진 계획

1) 2016년 예산 요구액(총괄)

○ 부문별 사업량

부문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 -							
◦ - -							
◦ - .							

2) 지방비 확보 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 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Ⅳ.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1. 주산지 협의체 운영 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

2) 추진 방향

○

3) 주요 운영 계획

○

2. 기타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 지역 내 농정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산지협의체, 농업회의소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시

9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 신규 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 배제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업경영체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

- 일정 면적 이상의 과수(시설)재배 경영체(조직)로 경영·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자구의지가 강한 경영체(조직)에 대하여 지원
-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4.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30%)	자담 (20%)	
8,495,000	1,699,000	764,550	1,783,950	1,151,000	3,096,5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경영체,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⑧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

* 참여조직은 '15년 취급액의 10% 이상을 상위조직으로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 ('16년에는 20% 이상)

< 우선지원 >

- GAP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 (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가점부여** >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가점 부여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경영체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영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선정기준 미달 경영체에 대한 재심사]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체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제 구축

- 사업성취 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후 대출기관에 통보

* 심사위원회 : 과수발전협의회,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단체 등으로 구성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 과수분야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사업과 연계되는 시설을 본사업을 통해 지원을 원할 경우 포괄지원 가능(사업대상자 자격요건 등은 본지침 준용)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1등급)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등), 추가 사업(1개)

○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필요한 사업

- 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및 병해충 예찰 모니터링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 필요한 장비 및 제어
- 과수원의 센싱·제어 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네트워크 CCTV를 통한 실시간 농장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알림 정보

* ICT융복합 사업 추진 시 대상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경영체 지원제외 대상**]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벡 등 다공질필름 등)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6)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7)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6.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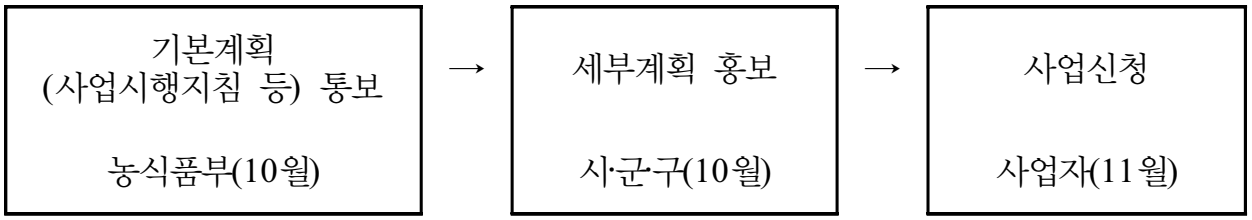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0월)

나. 농 가

○ 사업신청서[별표 1-1호 서식]와 출하약정서[별표 1-5호 서식]를 참여조직과 시행주체를 통해 지자체에 제출(전년도 11월중)

○ 융자 희망 경영체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융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별표 1-6호 서식]를 제출

다.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또는 참여조직)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전년도 11월말)

* 시·군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주체가 우선순위 선정, 도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시·군 통합(참여)조직에서 우선순위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융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료 등을 제출토록 안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라. 시·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서 발급을 의뢰하고, 융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대출 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마.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신용조사서[별표1-7호 서식]를 제출한다. 단, 3천만원 미만의 경우 대출가능액 기재를 생략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분기별로 등록·관리, 시·도 담당자는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2)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미 이행시 사업계획 지원 제외 등 페널티

예) A,B 경영체가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을 신청 ⇒ A,B 경영체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경영체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경영체는 차기 지원)

3)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4)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영체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경영체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5)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6)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또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엄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경영체의 투자 예측성 강화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경영체의 투자 예측성 강화

7) 시·군은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으로의 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참여조직 단위로 사업비 배분

- 참여조직은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선정, 출하이행관리 등 담당
-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관리 및 통합마케팅 추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경영체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G4C, 토지대장 등의 검색을 통해 확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식품부 제출

나. 지원단가 결정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Agrix를 통해 타 시·군의 동일 사업 단가와 비교하는 등 매년 검토를 거쳐 반드시 조정하여야 함

다. 사업추진 컨설팅

○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 수립·보완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사업계획 수립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

○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자지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의 내용 등을 농식품부에서 검토하여 기금사업 운영비에서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며,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시·군 및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마. 시공방식 결정 등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제53조)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경영체)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 등에서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보조금 부당수령 관련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명단 지속 관리)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비가림하우스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경영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지정고시 제2013-146('13.10.7)호 참고)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바.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시·도에서는 [별표 1-6호 서식]에 따라 실적보고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4. 자금배정단계

가.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경영체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요구

- Agrix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 자금집행상황 등을 Agrix에 분기별로 입력·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함

나. 대출취급기관

○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이미 시설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동 사실을 직접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가능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요청시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융자금 대출 실행 실적을 통보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3조의 2)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 거래 불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⑥항에 따라 추진

-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의 확인 하에 지급 가능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환수할 경우 지원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종물	준공일	5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준하여 실시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의 중요재산이 방제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시·군 판단에 따라 손망실 처리 (사용 가능한 중요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1)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3)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4)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나.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 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6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사업추진상황 Agrix 미 입력 등 지침 미 준수시 감점, 사업지원 제외 등 조치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주체 및 시·군에 제출('16.1.31일까지)

○ 시·군은 사업 참여희망 경영체가 제출한 2016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16.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16년도 사업신청 현황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로 전송('16.3.30일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송받은 사업신청 현황을 기초로 201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16.6.13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및 수요조사 실시

- 매년 하반기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홍보 및 수요파악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 제1-1호 서식]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소 속
(법인 등)</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EL
H·P</td></tr>
<tr><td>사 업
예정지</td><td>소재지</td><td colspan="5">외 필지(별지 기재)</td></tr>
<tr><td rowspan="3">과 수
재배현황</td><td colspan="2">과종</td><td>재배면적(㎡)</td><td>생산예상량(kg)</td><td>과수수령</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사업신청</td><td rowspan="2">세부사업명</td><td rowspan="2">사업량
(㎡,m,공)</td><td rowspan="2">지원단가
(천원)</td><td colspan="4">사업비(천원)</td><td rowspan="2">비고
(융자희망
여부)</td></tr>
<tr><td>계</td><td>보조</td><td>융자</td><td>자부담</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출하조건</td><td>순 위</td><td>약정률</td><td colspan="5">세부 조건</td></tr>
<tr><td>1순위 신청</td><td>%</td><td colspan="5">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거점APC 50% 이상, 약정기간 3년 이상</td></tr>
<tr><td>2순위 신청</td><td>%</td><td colspan="5">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약정율 80% 이상, 약정기간 3년 이상</td></tr>
<tr><td>3순위 신청</td><td>%</td><td colspan="5">계통 출하, 약정율 80% 이상, 출하권 위임, 약정기간 3년 이상</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귀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경영체심사표
2. 출하약정서
3.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4.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5.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은 2017년까지 시행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연리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참여조직)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6.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최소 5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
7. 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8.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9. 2순위로 신청한 경영체는 1순위 경영체를 지원한 이후에 지원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제1-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 심사표

사업 신청경영체 심사표(안)

(세부사업명 :)

신청경영체 현황	성 명	(서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외	필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기존과원 여부('12년 3월 15일 이전 과원)	○, ×		
	2.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3.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4. 자부담 능력 여부	○, ×		
	5. 출하권 위임여부	○, ×		
	6.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		
시행주체(참여조직) 출하계획	8. 출하 약정율[약정출하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15		
	9. 출하 예상량[출하 예상량 / 10톤 × 15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시행주체(참여조직) 출하실적	10.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 100% 이상은 만점	15		
	11.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사업여건	12.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3		
	13.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3		
고품질 생산 및 유통	14.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3		
	15.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5		
	16.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5		
	17. 수출조직 참여경영체	3		
	18.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3		
	19.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5		
	20.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5		
세부사업별 특성	20.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5		
기 타	21. 지역별 특성 감안한 평가지표	5		
	1.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 : 3점 2.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 2점 3.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용으로 국내육성품종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 : 5점			
총 계		105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점수 배점 및 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20 . . .

평가자[시행주체(참여조직)]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표 제1-3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출하약정서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체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이하 "을" 이라 한다), ○○시장·군수(이하 "병"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 갑" 의 경영체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예상량 (톤)	출하약정량 (톤)	약정비율 (%)	비 고
전년도 출하 실적						
○○년(1년차)						
○○년(2년차)						
○○년(3년차)						

※ 품종갱신사업은 사업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단, 타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 시행주체, 수출전문조직 등 농식품부가 인정한 조직에 출하한 경우 출하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출하약정량은 원칙적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이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최소 50%까지 조정가능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병”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농 가 명: (인)

"을"

주 소:

시행주체:

(참여조직)

대 표 자: (인)

"병"

○ ○ 시장·군수 (인)

[별표 제1-4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대출신청자료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table>
<tr><td>생산자단체등의 명 칭</td><td colspan="2"></td><td>생산자단체등의 형 태</td><td colspan="2"></td><td>참여자수</td><td colspan="2"></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남/여)</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 ) -</td></tr>
<tr><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3">신청내용</td><td>사업명</td><td colspan="2"></td><td colspan="5">사 업 비 (천원)</td></tr>
<tr><td rowspan="2">사업 규모</td><td colspan="2" rowspan="2"></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정부지원 (재원명기재)</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담</td></tr>
<tr><td>계</td><td>보조</td><td>융자</td></tr>
<tr><td>사 업 예정지</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표 제1-5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천원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표 제1-6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품종갱신) 지원실적

00년 품종갱신사업 지원실적

시도	시군	지원농가명	지원액				대상품목명	품종명	묘목수	구입업체명	자체보증묘목여부	보증번호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시작번호	끝번호

[별표 제1-7호 서식]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00년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시도	시군	지원대상	지원유형	과종	지원면적(ha)	농가수(호)	일시	장소	예상참석인원	시군 담당자			기타
										성명	연락처(핸폰번호)	이메일주소	
			IPM										
			IFP										
			GAP										

<붙 임>

사업별 지원원칙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지정고시 제2013-146('13.10.7)호 참고)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별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2. 관정개발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농산물운반기	
4. 무인방제시설	
5. 방풍망시설	
6. 배수시설	
7. 비가림시설	○비밀폐식으로 가온가능시설은 제외
8. 비가림하우스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 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9. 다겹 등 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 하우스의 동해방지용)	○ 기존 일반형 비가림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포도 등의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10. 서리우박피해방지	
11.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12. 작업로정비	

13. **지주시설**	
14. **친환경과원관리**	○ 개소당 20ha 이상, 개별 경영체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 시·도지사는 신규 친환경과원관리사업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표 1-7호 서식]
15. **품종갱신**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1-6호 서식]에 따라 실적보고 ○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16. **공동이용설비**	○ 과수목파쇄기, 꽃가루은행, 석회유황합, 식품영양제조기 등 ○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7. **지역·품목별 맞춤형 사업**	○ 전년도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1등급)에서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공동이용설비** (고소작업대, 농업용 굴삭기, 승용제초기, SS기, 다목적 운반기, 운반차량 등)	○ 공동이용설비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임대나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장비를 3억원 이내에 지원 ○ 지역 내 영농여건, 농가수요,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여부, 전담운영인력, 보관방법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임대료는 농진청에서 발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 ○ 공동이용설비 운영주체는 설비 및 장비관리대장과 설비 및 장비 임대관리대장을 사무소에 상시 비치 <붙임 2>
- **추가 사업** 1	○ 추가로 1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시행 가능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생력화 등에 필요한 사업 -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구조개선 정책과 부합하는 유통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주체와의 출하약정 없이 지원 가능

[별표 제2-1호 서식]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1. 사업자(법인)명 : ○○○○○○○○

2. 현 황

가. 지역 내 과수산업 일반현황 및 사업자 전년도 취급규모

품목명	과수산업 일반현황			전년도 취급규모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A)	취급량 (톤, B)	취급액 (백만원)	취급비중 (B/A)
계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명)	총출자액 (천원)	평 균 (천원)	최 고 (천원)	최 저 (천원)

다. 공동이용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현황

부서명	직급	성 명	담당업무	이력 및 자격	비고
계					

라. 사업수요 조사결과

◦ 조사기간 :

◦ 조사지역 :

◦ 조사대상 농가 수 :

◦ 조사결과

3. 구입 및 설치계획

가. 보관 및 설치장소 : 기 확보( ), 확보예정( )

시설명	주소	시설면적 (㎡)	현재 사용용도	소유자	비고(확보 완료일)
합 계					

나. 세부사업 추진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규격	수 량 (대)	단 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구입 및 설치 완료예정일
합 계					

4. 연간 운영계획

가. 사업유형 : 단기임대( ), 농작업 대행( ), 기타 ( )

나. 연간 운영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농작업명	임대농가수 (세대)	임대수수료 (천원)	면 적 (㎡)	1일 사용료 (천원)
합 계					

5. 기대효과(정성 및 정량적 효과, 추정 손익 등 기재)

◦

◦

[별표 제2-2호 서식]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급					평점
		A	B	C	D	E	
기본요건 (평점란에 ○ 또는 × 표기, ×가 1개 이상이면 지원제외)	①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이거나 참여조직인가?						
	② 사업시행주체 등 상위 조직과 협약을 체결했는가?						
	③ 전년도 취급액 중 지침의 참여조직 인정 기준 이상을 상위 조직으로 출하했는가?						
1. 사업추진의지와 적극성	① 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는 확고한가? ② 사업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10	8	6	4	2	
2.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력을 확보했는가?	20	16	12	8	4	
3. 사업비 확보 계획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사업 신청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10	8	6	4	2	
4. 사업수요	① 사업수요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했는가? ② 사업수요 조사결과, 사업이 타당한가?	10	8	6	4	2	
5. 설치계획의 적정성	① 보관 및 설치장소(사업예정지)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세부추진계획 또는 투자계획이 적정한가?	10	8	6	4	2	
6. 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① 사업추진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했는가? ② 인력 등 운영여건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계획과 같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가?	20	16	12	8	4	
7. 기대효과	①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내 파급효과 ② 추정 손익 등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성과	20	16	12	8	4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점부여 ①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5점) ②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조직)(5점)		**가점**					
		총점 (기본점수+가점)					

[별표 제2-3호 서식] 설비 및 장비 관리대장(안)

설비 및 장비 관리대장(안)

관리번호	기 종 명 - 일련 번호

구입금액					
합계(천원)	국비	융자	도비	시군비	자 부 담

구입 년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사 또는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설비/장비	관리번호 명판

[별표 제2-4호 서식] 설비 및 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안)

설비 및 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안)

일련번호	신청일자	임차인		임대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료		임작업내역		반납	
		성명	주소	기종명	관리번호	대수		임대료(원)	수납확인	작업내용	면적(㎡)	반납예정일	반납확인
							~						

⑩ 과실 브랜드 육성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DDA/FTA 등으로 과실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공동브랜드를 육성

○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과실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한 과실 브랜드화 추진

○ 2017년까지 국산과실 유통량의 20%를 전문 공동브랜드 경영체가 담당토록 지원·육성

-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1개소, 지역공동브랜드 경영체 19개소 육성

○ 중장기 투융자계획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

○ 기존의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되 추가지원사업도 일괄 지원하는 방식 채택

- 회원농가의 기술지도 등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홍보 및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일괄지원

○ 전국공동브랜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공동브랜드는 시·도에서 추진

- 전국공동브랜드와 지역공동브랜드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3.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300,000	300,000	300,000
- 국 고	90,000	90,000	90,000
- 지방비	90,000	90,000	90,000
- 자부담	120,000	120,000	120,0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 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 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연계 추진 시행주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3. 지원대상

○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 브랜드 경영체가 회원농가 기술지도 → 고품질 과실생산 → 상품화(선별, 가공 등) → 브랜드 관리를 일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품질관리 : 기술지원단·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산지·소비지 품질조사,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등

* 수발주관리, 거래처관리, 회원관리 등 브랜드 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 지원가능 (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마케팅 운영 : 인건비·마케팅 활동비, 바이어 사업설명회, 상품개발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 브랜드 홍보 : 광고·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브랜드개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 지원비율

- 전국공동브랜드 : 국고 70%, 자부담 30%
- 지역공동브랜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00~3,0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10억원(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 1, 2" 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 통보 농식품부(12월)	→	세부계획 홍보 시·군·구(12월)	→	사업신청 브랜경영체(1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신청서 양식 : 별지 4-1호 서식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제출**(1월말까지 시·군·구)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회원조합,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포함

○ 과실 생산,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유통, 경영, 품목생산 등 분야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관련 행정기관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10명 내외)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 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및 전망분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사업완료시와 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참여농가 수, 브랜드 출하비율 등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거점 APC 등 기존시설 또는 계획 중인 유통시설을 이용한 마케팅 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회원관리, 과실 생산·유통 및 소비지 관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마케팅 운영 및 브랜드 홍보 지원 계획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예비심사 시·군(2월말)	→	사업계획 우선순위 결정 시·도(3월말)	→	서면·공개발표평가 후 선정 농식품부(5월말)

시·군

○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시·군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o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기간, 사업 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4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혁신 및 계획)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연합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브랜드경영체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시·군)에 제출(20일 이내)

- 매년 사업비 확정 후에는 당해년도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브랜드사업 추진

○ 브랜드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참여자들의 이행체제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품목조직 대표, 기술지원단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브랜드운영에관한규약』을 제정하여 조직원들이 반드시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배제 및 지원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수매·가공·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품목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규격을 생산자조직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격품을 수매 또는 위탁판매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브랜드의 명칭, 로고 등을 신규 제작할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감안 세계시장에서 이미지 표출이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목표로 제작

다. 사업추진 컨설팅

○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평가, 농업인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사항의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세부사업별 비중 조정은 총사업비 축소와 전체 지원비율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시·도(시·군), 연합회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도(시·군)는 브랜드 경영체가 작성한 세부추진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개월 이내)

나.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기준사업비 내 품명과 세부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 연합회)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비의 30%를 초과 증감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사업비 조정 절차]

○ <붙임 1, 2> 사업비 세부내역(예시)의 항목별 사업비는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단, 사업비 증감조정의 범위는 30% 이내이며, 30% 초과할 경우는 농식품부의 승인

○ 사업비 조정 시에는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과수발전협의회(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시·군, 연합회)

○ 사업추진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

○ 사업시행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2월말 기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연합회는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연합회는 과실브랜드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른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등) - 부동산의 종물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 추진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및 점점일정 : 시·도(시·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연합회)

○ 시·도지사 및 연합회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연차평가 : 세부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시행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매년 3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차등 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 제도개선, 예산 일부삭감, 예산지원 중단 등 페널티 부여

- 대상자 확정 후 법인등록까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부진조직으로 분류
-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거나, 브랜드 통합 독립법인 설립이 불투명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17년 사업 예비신청서 : [별지 제4-1호 서식]의 첨부물 없이 제출(’15.1월말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브랜드 경영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체계 】

□ 전국공동브랜드사업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생산·유통부)

○ 기금위탁 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① 전국공동브랜드 회원 가입 및 생산지원 신청(농가 → 회원조합)

② 전국공동브랜드 과실 생산계획 및 생산지원 신청(회원조합 → 연합회)

③ 전국공동브랜드 생산·유통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연합회 → 농식품부)

④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농식품부 → 연합회)

⑤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시행(연합회)

⑥ 중앙평가(농식품부)

□ 지역공동브랜드사업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 사업시행기관 : 브랜드경영체(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기금위탁 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①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서 제출(브랜드경영체 → 시·도지사)

②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보완 및 대상자 심사 추천(시·도지사 → 농식품부)

③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심사평가 및 사업비 조정(농식품부)

④ 예산 및 자금배정(농식품부 → 시·도지사 → 브랜드경영체)

⑤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브랜드경영체)

⑥ 중앙평가(농식품부)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시행 체계도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 브랜드 경영체 사업계획 확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 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 사업 시행지침 통보 ○ 사업계획 확정 통보 ○ 자금배정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 시행	

< 지역공동브랜드 사업시행 체계도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사업계획서 보고	↑ ↓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시·도(시·군)	
○ 사업계획 보완·검토,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추진 및 지원, 예산집행 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등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기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활용)	
○ 경영체별 사업계획 제출 ○ 사업실적보고	↑ ↓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브랜드 경영체)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브랜드 육성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 신규사업(지역공동브랜드) 신청절차 >

사업시행기관(브랜드경영체)		시·도(시·군)		농림축산식품부
○참여조직원 여론 수렴 ○전문가 협의체 토론 등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반영 ○지역공동브랜드육성계획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보완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우선순위를 결정(2개소 이상 신청시)한 후 심의위원회 상정 ○농정관련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공개발표평가 →심의·확정

< 신규사업 선정평가절차 >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2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50%)

↓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발표 후 질의응답 및 사업여건 현장 확인
-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

④ 사업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확정·시달

↓

⑤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 연차평가 등을 근거로 사업비 조정 및 확정

<붙임 1>

전국공동브랜드 사업비 세부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1. 브 랜 드 품질관리	174,000	□ 고품질 안전과실 재배·유통 지도 ○ 전문 강사료 : 48,000 - 200×20회×12월 ○ 전문위원 수당 : 102,000 - 500/인×17인(사과10,배5,감귤2)×12월 ○ 현장지도 실비 : 24,000 - 일 50/인×2인×20일/월×12월
	26,400	□ 포탈사이트 운영 및 관리 ○ 인건비 : 12,000(1,000/인×12월) ○ 전용 회선비 : 2,400(200/월×12월) ○ 시스템 향상 유지보수 1,000 ○ 홈페이지 개편 10,000 ○ 도서구입 등 정보수집비 1,000
	35,800	□ 품질조사 및 브랜드 인지도 조사 ○ 품질조사(잔류농약분석) : 25,800 - 분석비 25,000=100점×250/점 - 시료대 400=4천원/점×100점 - 시료운송비 400=4천원/점×100점 ○ 브랜드 인지도 조사 : 10,000
	60,000	□ Work-shop 및 사업평가회 개최 ○ Work-shop 개최 : 30,000 - 10,000×3회(사과, 배, 감귤) ○ 사업평가회 개최 : 30,000 - 10,000×3회(사과, 배, 감귤)
	11,700	□ 유통교육(회원조합 임직원) ○ 강사료 : 5,200 - 200×2인×13개지역×1회 ○ 제비용(교재대 등) : 6,500 - 500×13개지역×1회
	15,200	□ 브랜드 컨설팅 : 15,200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2. 마 케 팅 운영지원	6,000	□ 과일 선별 전문가 수당 ○ 선별 전문가 : 6,000(150/일×1인×40일)
	48,000	□ 마케팅 활동비(시장조사 및 거래처 발굴 등) ○ 6인×10개소×200×4회 = 48,000
	20,000	□ 바이어 사업설명회 ○ 5,000×4회 = 20,000 - 장소임대료, 식대, 안내장, 선물 등
	20,000	□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비 ○ 5회×20명×200 = 20,000
	43,800	□ 사무실 운영비 ○ 임차료 : 37,800 (90㎡×35/㎡×12월) ○ 통신, 소모품비 등 : 6,000(500×12월)
	155,100	□ 상품개발(box 디자인 등) ○ 소포장 및 서브 브랜드 개발 등 : 50,000 ○ box 견본 : 1,000(100매×5건×2,000원/매) ○ 디자인 등록비(특허청) : 1,100 □ 판매촉진 유통비 : 103,000
3. 브 랜 드 홍보지원	225,000	□ 광고 및 홍보비 ○ 광고제작비 : 20,000 ○ 신문광고 : 10×5,000=50,000 ○ 지하철 홍보 : 4개노선×1개월×10,000=40,000 ○ 판촉 홍보물 제작 : 20천개×2,000=40,000 ○ 라디오 광고 : 50회×1,500/회=75,000
	97,000	□ 소비촉진 행사 ○ 시연회 과일 - 10,000×6회=60,000 ○ 행사운영요원 - 6인×150/일×6회×5일= 27,000 ○ 기타경비 - 2,000×5회=10,000
	12,000	□ 홍보물 제작 ○ 생활용품 등 : 12,000(3,000매×4,000/매)
합계	950백만원(기금 665, 자부담 285)	

<붙임 2>

지역공동브랜드 사업비 세부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① 브랜드 품질관리	12,000	□ **기술지도 및 교육** : 12,000 ○ 지도위원수당 - 4인×200천원×10회=8,000 ○ 자문위원수당 - 4인×200천원×5회=4,000
	9,000	□ **홈페이지 관리 및 브랜드유통정보화** : 9,000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 2회×3,000천원=6,000 ○ 시스템 유지보수 : 100천원×10월=1,000 ○ 회선관리비(IDC) : 100천원×10월=1,000 ○ 장비구입 및 수리비 : 100천원×10월=1,000
	22,000	□ **품질조사** : 22,000 ○ 산지 품질조사: 6,000 - 안전성 검사비 : 10점×200천원×3회=6,000 ○ 소비지 품질조사: 6,000 - 안전성 검사비 : 2개소×5점×200천원×3회=6,000 ○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 : 10,000 - 1회×10,000천원=10,000
	11,000	□ **유통교육** : 11,000 ○ 임직원 및 약정농가 교육 : 11,000 - 강사료 : 5명×300천원×2회=3,000 - 제비용(교재인쇄비 등) : 2,000천원×4회=8,000
	30,000	□ **브랜드 컨설팅** : 30,000 ○ 지역공동브랜드 컨설팅 : 30,000
	10,000	□ **표준메뉴얼 제작** : 10,000 ○ 브랜드 표준 매뉴얼 제작 : 10,000
	10,000	□ **브랜드 평가회** : 10,000 ○ 지역공동브랜드 평가회 : 10,000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② 마케팅 운영지원	10,000	□ **바이어 사업설명회** : 10,000 ○ 2회×5,000천원=10,000 - 장소임대료, 식대, 안내장, 선물 등
	20,000	□ **협의회비** : 20,000 ○ 10회×10명×200천원=20,000
	40,000	□ **상품개발비** : 40,000 ○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 40,000
	6,000	□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 6,000 ○ 빔 프로젝트 1대×4,000천원=4,000 ○ 노트북 1대×2,000천원=2,000
③ 브랜드 홍보지원	170,000	□ **광고·홍보비** : 170,000 ○ 신문, 잡지,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 - 광고제작비 : 20,000 - 신문광고 : 5회×5,000천원=25,000 - 지하철 홍보 : 4개노선×2개월×10,000천원=80,000 - 전광판 홍보 : 5개소×1개월×5,000천원=25,000 - 판촉 홍보물 제작 : 10천개×2,000원=20,000
	50,000	□ **소비촉진 시식회** : 50,000 ○ 시연회 과일 - 5,000천원×2회=10,000 ○ 행사 도우미 - 10인×150천원×2회×12일=36,000 ○ 기타 경비 - 2,000천원×2회=4,000
계	400**백만원(기금** 120, **지방비** 120, **자부담** 160)	

[별지 제4-1호 서식]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지 역						
	사 업 목 표						
	연차별 투·융자계획	구 분	’16	’17	’18	계	
		보조 국 고					
		보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계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 ○ 사업계획서
-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흔글 2002)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8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2.7, 아래쪽12.7,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2.7, 꼬리말 12.7

○ 신청서 분량 : 본문 30쪽 이내, 세부내역 등은 붙임으로 첨부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별지 제4-2호 서식]

OO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예시)

1. 과수산업 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광역시군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 현황

❑ **사업신청품목** :

❑ **사업신청지역** : ○○군,○○군,○○군 등

❑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10(A)							
2014							
2015(B)							
A/B 등락율(%)							

❑ **과원규모별 현황**

구 분	0.1ha미만	0.1~0.5	0.5~1.0	1.0~1.5	1.5~2.0	2.0~3.0	3.0ha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브랜드 조직 과원별 규모는 ( )로 내서

❑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브랜드 조직 과원별 규모는 ( )로 내서

❑ 수령별 과수현황

구 분	미과수	성 과 수				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면적(ha)						
비율(%)						100.0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 종							기 타	계
재 배 면 적 (ha)	’10							
	’15							
	비율							100.0
생산량 (톤)	’10							
	’15							
	비율							100.0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 키낮은 과 원	관수시설	묘목 생산		SS 방제기	방풍방조 시 설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ha (%)	ha (%)	ha	천주	대	ha	%	

* 키 낮은 과원은 예시이며, 해당 품목에 맞는 메뉴로 변경기재(예, Y자형과원 등)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								
’15처리량 (톤)								
투자비 (백만원)								

❑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과수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공동브랜드 육성 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항목별 목표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브랜드출하 비율(%)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17년							
( )년							
(최종)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참여 농가수, 총 재배면적 중 브랜드참여 면적 비율, 브랜드 출하비율 등

나. 추진전략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

다. 사업추진 로드맵('17~'20)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 5년간의 연차별 목표와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 가능한 사업만 작성)

※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필수적으로 작성

❑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 기타수익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일반관리비 ○ 기타비용			

❑ 20　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 기타수익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일반관리비 ○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현황

가. 사업시행기관(브랜드 경영체) 현황

❑ 공동브랜드 경영체명 :

<table>
<tr><td>조직결성일</td><td colspan="2"></td><td>*지원시설</td><td colspan="4"></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2"></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d>Fax</td><td colspan="2"></td><td>재배면적</td><td>ha</td></tr>
<tr><td>작목반수</td><td colspan="2"></td><td>조합원수</td><td colspan="2"></td><td>생 산 량</td><td>톤</td></tr>
<tr><td rowspan="2">생산시설</td><td>키낮은과원</td><td>관수시설</td><td>묘포장면적</td><td>묘목 생산실적</td><td>SS방제기</td><td>방풍방조시설</td><td>농로개설</td></tr>
<tr><td>ha</td><td>ha</td><td>ha</td><td>천주</td><td>대</td><td>ha</td><td>%</td></tr>
<tr><td rowspan="2">유통시설</td><td>집하시설</td><td>선별시설</td><td>예냉시설</td><td>저온저장고</td><td>일반창고</td><td>선별(과)기</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대</td><td></td></tr>
</table>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GAP, 친환경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수산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과원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노력
-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IFP, IPM, INM, 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농진청, 기술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과실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공동구입 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과수재해보험 가입현황(※ 보험증권, 증서 등 가입증빙자료 첨부)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

· 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수출 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출하주체 광역화 등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간 상호이용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물량, 금액 등)

※ 수출실적 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첨부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GAP, 친환경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 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2) **조직명 : ○ ○ 법인**

<table>
<tr><td>조직결성일</td><td colspan="2"></td><td>지원시설</td><td colspan="3"></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2"></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d>Fax</td><td></td><td>재배면적</td><td>ha</td></tr>
<tr><td>작목반수</td><td colspan="2"></td><td>조합원수</td><td></td><td>생 산 량</td><td>톤</td></tr>
<tr><td rowspan="2">생산시설</td><td>*키낮은과원</td><td>관수시설</td><td>묘포장면적</td><td>묘목생산실적</td><td>SS방제기</td><td>방풍방조시설</td><td>농로개설</td></tr>
<tr><td>ha</td><td>ha</td><td>ha</td><td>천주</td><td>대</td><td>ha</td><td>%</td></tr>
<tr><td rowspan="2">유통시설</td><td>집하시설</td><td>선별시설</td><td>예냉시설</td><td>저온저장고</td><td>일반창고</td><td>선별(과)기</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GAP, 친환경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

※ 참여조직(단체)은 모두 기재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브랜드경영체, 회원조합,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전문가협의체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나. 투융자계획

❑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17	’18	’19	’20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생산혁신자재지원						
기 타						

< 사업 계획 >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 전국공동브랜드 육성 - .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품종·재배형태별, GAP, 친환경인증 등 생산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 브랜드 경영체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재배면적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농가조직화 및 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GAP인증 친환경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전문인력 확보 등**

○ 품질관리, 마케팅, 브랜드 홍보, 생산혁신 자재지원 등

○

❑ **기 타**

○

다. 생산·판매·수출 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브랜드 육성 및 관리계획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6. 평가계획

❑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

7. 기대효과

❑

○

❑

8. ’17년도 사업추진 계획

가. ’17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 - - ·							
○ - - ·							
○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o

-

o

(1) **브랜드 품질관리 지원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등) 조달계획

o

(2) **마케팅 운영지원 사업**

(3) **브랜드 홍보지원 사업**

(4) **생산혁신 자재지원 사업**

※ (2), (3), (4) **사업도 (1)번 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사업신청시 첨부할 참고자료 목록, 해당 실적이 있을 경우>

1.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1-1. 브랜드경영체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등)

1-2.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2. 각종 인증서, 증명서

2-1.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과수 재해보험 가입율(품목별 해당 시·군 과수재해보험 평균가입율과 비교하되 지역 통계자료가 없을 시는 전국 가입률 기준)

2-2. 브랜드경영체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 계약서, 협약, 규약 등

3-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브랜드운영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및 사업참여농가 명단 등

3-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3-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3-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3-5. IFP,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농진청, 기술센터 등 확인)

3-6. 조직(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3-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4. 사업 준비상황 자료

4-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4-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4-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4-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4-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4-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4-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4-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산출 자료

[별지 제4-3호 서식]

과실브랜드육성사업 심사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1-1.사업목표의 명 확 성	5	4	3	2	1	① 지역농업 혁신 차원에서 과실 경쟁력제고의 목표가 적정한가? ② 해당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1-2.추진전략의 적 정 성	5	4	3	2	1	①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적정한가? ② 브랜드 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 등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자금투자계획 적 정 성	5	4	3	2	1	① 각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적정하며, 지원단가, 산출근기 등이 적절히 계산되었는가? ② 자금활용 방안 등 자부담 계획은 적정한가?	
	1-4.세부사업간 연 계 성	5	4	3	2	1	① 세부 사업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은 있는가? ② 기존의 자원 및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5.심사평가/ 피드백시스템	5	4	3	2	1	① 사업계획 사전심사여부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컨설팅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과를 평가할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피드백 할 시스템이 있는가?	
2.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25점)	2-1.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5	4	3	2	1	①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 및 구성인력은 적정하며,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한가? ②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예산(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2-2. 전문인력 확보	5	4	3	2	1	① 브랜드 경영체의 전문경영인 확보여부 및 자질, 경영능력은 우수한가? ②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은 확보 되었는지?없는 경우 앞으로 확보 계획은 있는가?	
	2-3.브랜드경영체 참여비율	5	4	3	2	1	① 당해 지역, 당해 품목의 재배면적이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50%이상(7점), 40%이상(5점), 30%이상(3점), 20%이상인 경우(2점)	
	2-4.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5	4	3	2	1	①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협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적정한가? ② 경영체가 브랜드와 관련하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2-5.성공가능성	5	4	3	2	1	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브랜드경영체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3-1.고품질 생산	5	4	3	2	1	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정도는 어떠하며 향후 확보계획은 적정한가? ② 생산기술 향상·평준화 등을 위한 기술지도, 교육 등의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3-2.안전과실 생 산	5	4	3	2	1	①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도입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GAP, IEP, IPM, INM 도입 등) ② 친환경과실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3-3.생산성향상	5	4	3	2	1	① 사업 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있으며, 향후 규모화 계획은 어떠한가? ② 기계화, 과학화 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3-4.농업인의 경영안정	5	4	3	2	1	①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실적 및 가입계획은 있는가?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 제외) ② 분산출하, 노동력 분산, 생산성 향상, 가동율 제고, 위험분산 등을 감안하여 재배품종은 적절하게 선택·구성되었는가?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30점)	4-1.유통시설 활 용	5	4	3	2	1	① 거점 APC 등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 사용계획은 적정한가? ② 계획 중인 산지유통시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가?	
	4-2.물류개선	5	4	3	2	1	① 물류표준화, 물류기계화, 파렛트 출하 등 산지 유통 개선실적과 계획은 있는가? ②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의 이행 실적과 그 상황은 어떠한가? ③ 소비자 기호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소포장, 개별포장 등)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4-3.수확후 관리	5	4	3	2	1	① 예냉·선별·저장·수송 등 고품질유지를 위한 수확후 관리 시스템의 보유 및 부분별 연계성은 적정한가 ? ② 수확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4-4.판매계획	5	4	3	2	1	① 브랜드 명칭으로 대형 유통업체(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② 지속적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영향력 있는 거래처 유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4-5.출하형태	5	4	3	2	1	① 브랜드 마케팅에 적정한 생산규모의 보유여부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②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은 있는가?	
	4-6. 운영주체 사업실적	5					① 전년도 매출액 / 30억 × 5점(최대 5점)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①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 : 2점 B : 1점 C : 0점 D : -1점 E : -2점) * 평가직전 최근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② 공동계산 실적이 있는 경우 : 전체 매출규모의 10% 이상(2점), 5% 이상(1점) ③ 자조금참여(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1점) ④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3점) ⑤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 브랜드를 함께 표시해 판매하는 출하납품 약정을 체결한 경우(2점) * 가점은 항목별 내역을 최종 확인하여 평가기관에서 일괄적용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1차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2차 : 1차 선정대상자를 평점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150%범위 내에서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11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FTA 체결,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 대표 과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 과수 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제고, 과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2.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3. 사업목표

○ 2017년까지 과수 공동계산액 200억원 이상 광역 과수통합마케팅 조직 및 시군 통합조직 육성

4. 지원계획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고
	도비(30%)	시군비(50%)	자담(20%)	
1,115,000	345,000	550,000	220,000	

※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 1,100,000천원(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

※ 인센티브 지원(평가 후 우수 통합마케팅 조직에 지원) : 15,000천원(도비 100%)

Ⅱ. 2016년 사업시행계획

1. 사업기간 : 2016. 1. ~ 12월(1년)

2.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3. 사업대상 : 과수 통합마케팅조직

○ 과수산업발전계획 시행주체 : 2개소(나주시, 고흥군)

○ 시군단위 통합조직 : 15개소

- 도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 통합조직

4. 지원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시행주체이거나, 도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조직 중 시군통합조직(농협연합사업단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

5. 지원내용

○ 사 업 비 : 1,115백만원(도비 345, 시군비 550, 자담 220)

-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 1,100백만원(도비 330, 시군비 550, 자담 220)
- 인센티브 : 15백만원(도비 15)

○ 보조비율

-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
- 인센티브 : 도비 100%

○ 지원기준 : 50백만원 ~ 100백만원/개소

○ 사용용도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에 소요되는 비용
- 조직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또는 상품화 등에 필요한 비용 등

※ 세부 지원내용 별첨

※ 인센티브 사업비는 평가 후 별도 통보

6. 추진일정 및 체계

가) 세부사업계획 제출(사업대상자→시군)

나) 세부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시군) 및 제출(시군→도)

다) 세부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결정(도)

라)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시군)

마) 사업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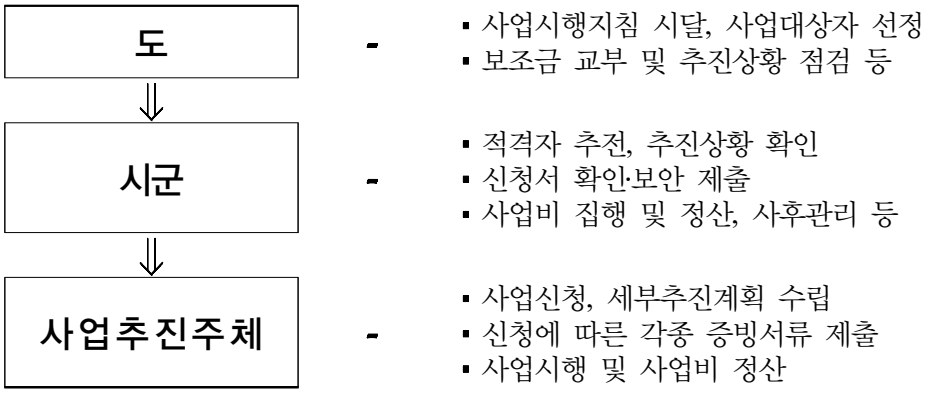

7.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계획 변경

- 주요 항목별로 30%미만 변경 시 : 시장·군수 승인 후 도지사에 보고

- 주요 항목별로 30%이상 변경 시 : 도지사 승인 후 사업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수 및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나)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조사·감독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시설물 및 기자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는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타당성을 판단하여 도에 승인 요청

다) 이행점검

○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의 원물 확보, 판매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분기별 보고 (서식 3)

8.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세부계획서(서식 2) 제출 : 2016. 1월말

나) 사업 추진상황(서식 3) 보고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4) : 2016. 12. 31까지

〈참고자료〉

세부사업 내용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운영	○ 전산화 기반 구축 - 결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등	
	○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사무처리용 전산장비 제외
	○ 회계 및 업무용 전산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료	
	○ 외부 회계감사 비용	
	○ 감사보고서 및 세무기장 등 대행	
	○ 세무 및 법률, 회계 등 자문	
	○ 전문인력 운용비용 - 신규채용 또는 법인 파견 인력만 지원 가능	인건비의 50% 이내, 총사업비 10% 이내
② 산지 조직화 및 전문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개별적인 국외 선진지 연수는 제외)	국외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주관만 인정
	○ 농가조직화 및 경영 컨설팅	
	○ 지도위원 수당 및 활동비	
	○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 검사비 및 활동비 등	
③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마케팅 활동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④ 상품화 (직접비용만 인정)	○ 물류비(택배비 포함)	
	○ 상장수수료	
	○ 상하차비	
	○ 판매장려금	
	○ 위탁판매 수수료	
	○ 입점 수수료(인터넷 쇼핑몰 및 홈쇼핑 포함)	
	○ 공동선별비(일용 인부임 등)	
	○ 품질관리단 운영 - 품질관리사 및 모니터링 요원 수당, 활동비 등	
	○ 포장재비(공동 포장재에 한함)	
	○ 유통시설 및 장비 임차료(소비지 판매시설 제외)	
	○ 친환경·GAP·HACCP 등 인증 수수료 - 각종 인증 관련 조사 및 컨설팅 비용 포함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 출하수수료에서 직접비용으로 계산이 곤란한 간접비용(기존 수탁수수료 등)은 제외
·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서식 1〉

'16년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신청서

통합조직명					대표	
주소					전화	
					FAX	
담당자	법인	직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시군	소속	직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출자액		백만원	전년 매출액	억원	설립일자	

신청사업비 내역(천원)

단위사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비고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계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현황

조직명	대표	연락처	취급품목	전년도 실적(백만원)		비고
				취급실적	공선실적	
총계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실적 포함 작성
(통합조직명)						
참여조직						

통합마케팅 사업계획(백만원)

구분	1차년도(2015)	2차년도(2016)	3차년도(2017)	4차년도(2018)
취급액	*실적작성*	*계획작성*	*계획작성*	*계획작성*
공동계산액 (비율)	(%)	(%)	(%)	(%)

상기와 같이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통합마케팅조직 대표)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2〉

'16년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취급 품목 생산현황('15)

○ 취급품목 :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 품목)

품목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비고

2. 유통현황

명칭	주요 취급품목	농산물 취급액('15년)			공동계산취급액('15년)			비고
		계	수탁	매취	계	수탁	매취	
통합마케팅 조직								
참여조직								

※ 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 포함하여 작성하고 참여조직 실적과 일치

※ 시군단위 통합조직은 시군통합조직 실적 작성

3. 유통시설 보유현황

구 분		규 모	비고
건축물	소 계		
	저온저장고		
	부산물집하장		
	작업장		
	냉동·냉장창고		
기계설비	**소 계**		
	선별기		
	.		
	.		

Ⅱ 통합마케팅조직 운영계획(과수산업발전계획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

1. 통합마케팅조직 개요

○ 조 직 명 : (대표 , ☎)

○ 설 립 일 :

○ 조직유형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형), 상법상 주식회사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직 원 수 : 명

○ 출 자 금 : 백만원(출자내역 상세 작성)

2. 조직 구성·운영 방향

○ 조 직 도

○ 전문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 : 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판매사 등 자격증 보유자, 유통전문교육 이수자, 농산물 유통관련 종사경력 등

3. 연차별 주요품목 취급계획

(단위 : 백만원)

품목	관내 생산액	취급실적 (2015)		취급목표							
				2016		2017		2018		2019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합계											

※ 관내 생산액은 소득자료집 활용 추정치 작성(사업시행주체의 경우 참여 시군 포함하여 작성)

4. 통합마케팅 참여조직별 참여계획 또는 목표(공동계산액 기준)

조직명	취급품목	참여실적 (2015)	참여계획·목표(공통계산액,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계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5. 시설확보계획

○ 시설설치 계획 및 임차 등을 통한 필요시설 확보 방법 등

6. 원물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원물확보 방안

○ 정부지원자금 사용계획 포함

※ 계약재배 등 취급계획에 대한 구체적 확보방안

7. 상품생산 및 판매계획

○ 브랜드 개발(현재, 향후) 및 대량수요처 판로 확보 등 포함

※ 취급물량에 대한 상품화 계획 및 판매계획을 기재

Ⅲ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계획

1. 사업기간 :

2. 통합마케팅조직(대표조직) :

3. 참여조직 :

4. 취급품목 :

5. 사업계획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6. 취급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생산액				
취급액				
취급비중 (취급액/생산액)				
공동계산액				

7. 기대효과

〈서식 3〉

'16년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추진실적(/ 분기)

❑ 추진현황

○ 조직운영 현황

조직명	대표자	참여조직수 (농가수)	부서명	직원명	업무	인력 확보방법	조직 운영비 (연간)
						파견	
						신규 채용	
						기존 인력	

※ 조직 운영비는 파견직원 인건비를 파견조직에서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까지 산출 반영

○ 취급물량 및 매출현황(분기별 작성-과수산업발전계획 지원 품목)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A품목	B품목	C품목	.	.	.	합계
취급 물량	전기							
	당기							
	누계							
매출액	전기							
	당기							
	누계							
공동 계산액	전기							
	당기							
	누계							
주요출하처								

○ 과수통합마케팅 참여조직별 참여실적(공동계산액)

(단위 : 백만원)

참여조직별	취급품목	'16 공동계산액 목표(a)	취급실적			비율 (b/a)
			전기까지	당기	누계(b)	
통합조직						
참여조직						

※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실적까지 조직별로 작성

❑ 자금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 쟁점 및 애로사항,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

< 서식 4 >

'16년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집 행 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비잔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시 사유)

○

○

12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1. 목 적

○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어려운 과수재배 농업인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

2.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과수 수출단지 및 부녀화, 고령화된 과수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농가소득과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4. 지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과수 전동가위	300대	3,000	900,000	135,000	315,000	450,000

5.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기간 : 2016. 1. ~ 12월

다. 사업대상자 :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을 희망하는 법인 및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 전동가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라. 지원 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마. 지원기준 및 한도액

○ 공급기준 : 법인의 참여 농가수 및 법인·농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공급

※ 농가단위 지원은 1농가 1대 지원(법인은 예외)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비의 50% 지원(1대당 최대 150만원)

○ 재 원 별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6. 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시·군「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회」또는「농정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 우선 순위

- 시장·군수가 자체 선정한 우선순위 등을 적용 선정

· 공동사용을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법인

· 과수 수출단지에 속해 있거나 수출하고 있는 농업인

·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 농업인

· 농기계분야 정부 및 도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오래된 농업인

※ 시·군에서는 행정, 지도, 지역농협, 시·군 농업인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을 참여시켜 사업목적에 적합한 실수요자 및 실효성이 높은 기종이 선정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

나.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지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 지원

○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과 사업계획서를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자 승계지원 가능

○ 확정된 지원대상자는 자부담을 납부한 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농기계 공급자에게 제출하고 농기계를 인수

○ 농기계 공급자는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군에서는 농기계 공급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확인(자부담 납부는 반드시 계좌이체 및 카드사용만 인정)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농기계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부과하여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을 명시

다.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공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내구연한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신농법 및 새로운 농기계로 대체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망,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농가에 농기계를 관리전환 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농기계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일	구입일로부터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제한 기준 적용제외 가능(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

7. 행정사항

가.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매분기 1회

나. 최종 집행(정산)실적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완료 즉시(2016. 12. 30까지)

다. 농기계 공급대장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별지 제5~6호 서식) : 시·군(읍·면·동)

〔별지 제1호 서식〕

2016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농가·법인명(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 참여농가 수 : 명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 영농규모(계획) : ㎡

- 배 ㎡, 사과 ㎡, 단감 ㎡ 등 * 품목별 작성

- 기타작목 :

○ 수출단지 참여 여부 :

- '15년 실적 : 수출량 톤, 수출금액 백만원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명) :

○ 농기계 가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000농기계 000대리점

위와 같이 2016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00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

❑ **보조사업자**

○ 농가·법인명(대표자)/성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전화 :　　)

❑ **구입희망 농기계**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사 업 비(원)				공 급 업 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과거 3년이내 동일사업 지원실적이 있는지 여부 :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 **사업기간**

○ 사업착수 예정일 : 2016.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16.　.

❑ **사업 필요성 및 활용방안**(*구체적으로 작성*)

○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 및 필요성

-

○ 전동가위 활용방안

-

□ **사업효과**

○

〔별지 제3호 서식〕

'16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정산서

1. 농가·법인명(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2.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 확인내역

기 종 명	형 식 명 (규 격)	제 조 회사명	제조 번호 (사후봉사이행보증번호)	수 량 (대)	단 가 (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농기계 납품일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① 본 사업자(자필 서명)는 자부담을 ( )업체에 납부하고 위와 같은 농기계를 인수함.

② 본 사업자는 보조금을 공급자에게 위임하니, 공급자가 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인수자)
법인명(성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피위임자(공급자)
주 소 :
상 호 명 :
대 표 자 :
송금계좌 : (은행명)

첨 부 : 세금계산서 1부, 기대구입 사진 내역

위와 같이 2016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으로 전동가위를 구입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주 소 :

성 명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16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공급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

구 입 자		기종명	규격	수량 (대)	단가 (천원)	농기계 구입 금액(천원)		
주 소	농가 · 법인명 (성명)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상기와 같이 2015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에 의거 전동가위를 공급하였기에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보조금을 공급자가 정하는 송금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계좌번호 : (은행명)

붙임 : 별지 제3호 서식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2016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주 소	농가·법인명(성명)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모델명)	농기계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			구 입 년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별지 제6호 서식〕

'16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table>
<tr><td>사 업 명</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사 업 자</td><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농가 · 법인명
(성명)</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 업 비</td><td colspan="2">합 계</td><td colspan="2">도 비</td><td>시군비</td><td>자 담</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사업내용</td><td colspan="6"></td></tr>
<tr><td>기종명</td><td></td><td>제조회사
(전화번호)</td><td colspan="2"></td><td>규 격
(모델명)</td><td></td></tr>
<tr><td>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td><td></td><td>구입 년월</td><td colspan="2"></td><td>보관장소
(관리자)</td><td></td></tr>
<tr><td colspan="7"></td></tr>
<tr><td colspan="7">사 진</td></tr>
<tr><td colspan="3">농 기 계</td><td colspan="4">관리번호 명판</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4">o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o 그림파일에서 붙여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td></tr>
</table>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16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 실적 보고

(단위 : 대, 천원, %)

시군	공급실적			사업비											
				계획				집행실적				비율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 엑셀로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16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확인서 발급대장

(단위 : 대, 천원, %)

발급번호	성명	주소	기종명	규격(모델명)	생산업체	구입처	기대금액				담당자 확인		
							계	보조	자부담	구 입 (예정) 일	직	성명	확인

※ 융자 실행을 위한 확인서 발급시 발급대장 작성

13 양잠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양잠 주산지에서 생산되는 오디, 누에 뽕잎 등 원료 및 제품의 예냉·저온처리를 통한 품질 유지,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 추진경과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 기 설치 현황(전국)

- ’11) 10개소 → ’12) 8개소→’13) 5개소→’14) 5개소→’15) 5개소

○ ’16년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결과 : 전국 3개소

- 충북 1, 전남 2(나주, 영광)

4.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별	총사업비	재 원 별(농안기금)		
		국비	시군비	자담
양잠산물저온 유통체계구축	108,000 (100%)	32,400 (30%)	32,400 (30%)	43,200 (4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양잠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격이 있는 생산자단체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에도 이를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 도 및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양잠산물저온유통 : 양잠산물(오디, 누에, 뽕잎 등)의 저온유통을 취급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 ※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에서 직접 수요 조사 추진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급속냉동시설, 저온냉동시설, 작업실

4. 지원형태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사업자는 정부의 출하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비축 등 필요시 저온저장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 (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양잠산물 저온유통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66㎡이상	54	-	▪ 급속냉동(-40℃이하) 시설 9.9m2이상 ▪ 저온냉동(-20℃이하) 시설 23.1m2이상 ▪ 작업실 33㎡이상	-

※ 기준 단가는 예시로 활용, 세부사업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별 신청서를 시·도에 제출('15.11.21 한), 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15.12.12 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하고 사업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관련기관 담당관 5인으로 구성

※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한잠사회 등 5인

- 선정방법 : 1차(서류심사), 2차(공개평가)

※ 사업신청 미달시 담당자 서류심사에 의한 적격성 여부만 평가(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공개평가는 최고득점 순으로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단,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는 제외)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시군은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 사업법인은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 도지사(시장·군수)에 제출

○ 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6.2월)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30%이내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도지사가 검토, 시행하고 기본방침과 주요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4. 자금배정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농식품부는 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도 및 시·군)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준공일	10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 단, 보조금 실행 전 정책자금 지원 목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담보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 차량 및 운반구	구입일	5년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 재》

사업주관기관(도 및 시·군)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6. 성과측정단계

○ 선정 조직의 채소·버섯류 예냉비율의 증감으로 인한 전년대비 저온유통품 매출 증가분

- 조사기관 : 지자체
- 조사방법 : 산지유통종합평가(대형산지조직, 중형산지조직) 실시 시 산지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취합
- 측정방법 : 산지 조직의 채소·버섯류 출하량 대비 채소·버섯류 예냉출하량 비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운영평가》

○ 목 적 : 저온유통시설을 지원받은 조직에 대하여 사업실시 후 3년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조직에게는 인센티브, 부진 조직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발전 지향적인 경쟁구도 마련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사업익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평가기준 : 별도 마련

※ 사업자는 선정이후 3년간 저온유통사업계획 및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

- 우수 사업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사업자에게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고 부진사유에 대해 대책 마련 및 저온유통경영개선 클리닉 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저온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Ⅳ. 2017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지원체계

1. 2017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군에서는 '17년도 사업신청대상자 수요조사서를 '16. 3월 중순까지 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는 '16. 3월말까지 농식품부 제출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 시·군 → 도 → 농식품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 사업희망자 → 시·군('16.8.20) → 도('16.9.4) → 농식품부('16.9.25한)

○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16. 10월중

※ 업무형편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한은 달라질 수 있음

3. 기타 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붙임1>

2016년도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 신청서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연도		출자금	
주요취급품목		취급물량(톤)	
출자조합원수		정부사업 참여현황	

* 정부사업 참여현황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 또는 참여여부(APC사업, 수급안정사업 포함) 등

2.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계획

시 설	규모(㎡)	신청금액 (백만원)
급속냉동시설		
저온냉동시설		
작 업 실		

* 급속냉동시설은 -40℃이하 시설로 9.9㎡ 이상, 저온냉동시설은 -20℃이하 시설로 23.1㎡ 이상, 작업실은 33㎡ 이상, 단. 에너지절감을 위해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 인증을 받은 장치** 우선 설비 권장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부지 현황

가. 확보현황(해당사항 체크)

□ 부지 기 확보 〔조합(법인) 또는 대표자명의로 등기〕 ( )

□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지급 혹은 소유권 이전 중 ( )

□ 부지 미 확보 ( ) / 부지확보 계획 ( )

□ 기 타 ( )

▶ 증빙첨부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본,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등

나. 확보된 부지의 사용가능 여부

□ 설치예정 부지에 해당 건축물 증개축시 관련법 저촉 여부 ( )

※ 해당 부지 건폐율 및 개발제한 등을 지자체에 사전 조사할 것

□ 관련법에 저촉 시, 행정당국의 조건부 허가 등으로 증개축 가능 여부 ( )

3. 지방비 확보 및 보조금 신청 내역

구 분	사업비 총계 (백만원)	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금 (40%)	비고 (지방비 확보 여부)

주1) 사업비는 선정공고 상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보조금 신청은 지원비율 한도(보조 30%)를 초과할 수 없음

4. 최근 결산 2개년 사업실적

▶ 증빙첨부 법인 : 최근년도 결산 완료 재무제표& 2개년 품목별 판매실적자료
농협 : 합계잔액시산표 및 손익내역표(일반유형/세목) & 품목별 판매실적 자료

가. 양잠산물 매출실적

품 목	2014년		2015년	
	물량(톤)	금액(천원)	물량(톤)	금액(천원)
합 계				

주1) 품목은 오디, 누에, 뽕잎 등을 기재

5. 거래처별 판매실적

▶ 증빙첨부 법인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농협 : 출하처별매출실적 총괄표 및 세부내역표

(단위 : kg, 천원)

품 목 / 구 분	누에		오디		기 타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공영도매시장								
공 판 장								
유사 및 간이공판장								
대형유통업체								
전자상거래								
식자재업체								
수 출								
군 납								
기 타								
합 계								

주) 취급규모가 큰 2개 품목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산 기타에 기재

6. 기타 사업 현황

가. GAP 및 품질관리사 보유 여부

▶ 증빙첨부: "예"체크 시, GAP 시설 및 조직 인증서 사본, 품질관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GAP 시설인증		GAP 조직인증		농산물품질관리사 보유		
여	부	여	부	여 * 인원기재		부
					명	

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만 체크

< **붙임** 2>

확 인 서

2016년 양잠산물 저온유통 사업을 위해 제출된 본 사업 신청서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거나 고의 또는 부정으로 정보를 왜곡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사업자로서 선정된 후 60일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 신청자격이 박탈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 . .

조직명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3>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부지확보(가능) 여부	① 자부담확보		
	② 지방비확보		
	③ 부지확보*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사업추진가능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와 협의 후 검토서 제출
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충족 여부	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② 농업인 5인이상 참여		
	③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관련분야 운영실적 제출
	④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 (부적격자 : 보조금 부정 수급자)		

(담당자) 소속(시·군·구)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시·군·구) 직위(직급) 성명 서명

14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별	총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500,000 (100%)	100,000 (20%)	45,000 (9%)	105,000 (21%)	250,000 (5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6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인증(GAP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당해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만 선정

* 의무자조금 납부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16년 부터는 GAP인증 또는 GAP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는 지원금액 우선지원 (GAP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단계적 축소

* 지원한도액 비율(’15년 : 100% → ’16년 : 90% → ’17년 : 50% → ’18년 : 미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14-78호, 2014.7.24)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 가능(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자금

4. 지원형태

○ 자금의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5. 지원한도액 기준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 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형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함

* GAP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5. 12월)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통보('16. 1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을 배정(3월말)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5. 1월말)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

○ 농업경영체는 GAP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 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 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월말)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등은 지자체간 협조

3.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도지사(시장·군수)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도(시·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추진

- 도 사업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3월말)하고, 보조금 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도지사(시장·군수)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 직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 GAP 인증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GAP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하도액의 90%까지 지급)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지자체)

○ 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업비 검정 및 정산(지자체)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 거래 불가)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지자체)

○ 도지사(시장·군수)는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 장비·자재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 하는 등 적정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지자체)

○ 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단위면적당 인삼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평가

- 인삼농협, 인삼공사 등의 생산량 통계조사 활용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2호 서식을 참고하여 ’17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16. 6월말)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소 속
(법인 등)</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EL
H·P</td></tr>
<tr><td>사 업
예정지</td><td>소재지</td><td colspan="5">외 필지(별지 기재)</td></tr>
<tr><td>인 삼
재배현황</td><td>재배면적
합 계
㎡</td><td colspan="2">4년근 이하
㎡</td><td colspan="2">5년근
㎡</td><td>6년근
㎡</td></tr>
<tr><td rowspan="4">사업신청</td><td rowspan="2">세부
사업명</td><td rowspan="2">사업량
(㎡,m,공)</td><td rowspan="2">지원단가
(천원)</td><td colspan="5">사업비(천원)</td><td rowspan="2">비고
(융자희망
여부)</td></tr>
<tr><td>계</td><td>국고</td><td>지방비</td><td>융자</td><td>자부담</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붙임 2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

❑ ○○시·군

(단위 : ㎡, 톤)

순위	성명	주 소	인삼 재배면적	시설 설치 계획	사업계획(천원)					비 고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인삼 재배면적은 연근 구분없이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

15 특용작물(버섯, 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버섯산업 및 특용작물(녹차, 약용작물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버섯 재배사 개·보수 지원 및 특용작물 생산, 보관 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2. 사업계획

○ 추진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자금의 재원 : FTA기금

○ 지원규모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 조건(융자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고정금리시 연이율 2.0%, 변동금리시 연이율 : 시중금리 - 2.0%
- 시중금리 : 농협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는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3년 거치, 7년 상환, 대출은행은 농협중앙회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별	총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특용작물(버섯, 녹차 등)생산시설현대화	600,000 (100%)	120,000 (20%)	54,000 (9%)	126,000 (21%)	180,000 (30%)	120,000 (2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

○ 지원대상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하는 법인경영체 또는 재배농가

※ 법인체의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조합원이 5인 이상(단, 농업회사법인은 2인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0% 이상)

○ 개소당 총 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1년)

2. 지원내용 및 기준

가. 버섯

○ 지원내용

- 버섯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 버섯종균배양시설 등 버섯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 구입 및 교체
-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등 (단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가공·유통시설은 제외)

○ 장비 및 기계 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40%이내 지원

- 총사업비가 10억원인 경우 버섯재배사 개·보수비 6억원, 장비 및 기계구입비 4억원 이내 사업추진

※ 법인이나 개별농가가 버섯재배사 개보수와 장비 및 기계 구입을 동시에 할 경우 총사업비의 60%는 버섯재배사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취지(단 종균배양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 버섯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계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400백만원, 농가는 8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버섯재배사

· 농산 및 임산을 구분하지 않음, 다만 중복 보조는 배제 ·시설 개·보수는 3,3㎡당 100만원 기준, 재배기기는 실제 구입비 대비 예산 한도내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인정(종균배양시설은 제외)

· 기존 비닐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개·보수시 지원(비닐재배사의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에 기기구입 및 교체는 불가, 단,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가능)

※ 예시 :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등 버섯재배농가의 비닐재배사 개·보수, 재배기기 구입가능

- 버섯종균배양시설(자가용)

· 신규가능, 토지매입비 및 운영비는 지원제외, 개인 및 법인 사업비 동일 지원

○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 자부담은 추가부담 가능, 지원상한액은 상기 총 사업비 기준에 지원비율 적용

○ 사업비 집행 및 관리·감독, 사후정산, 시설물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400	80	120	120	80
농 가	80	16	24	24	16

나. 특용작물(녹차·약용작물 등)

○ 지원내용

- 특용작물(녹차, 약용작물 등)재배와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신규 제외)
- 특용작물(녹차, 약용작물 등)의 냉·풍해방지 시설 등 특용작물재배와 직접 관련된 기기구입(소모성 자재, 대형농기계, 농자재는 제외)
- 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단, 유통가공시설은 농업법인, 영농법인으로 약용작물농가와의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해야 함)

3. 추진요령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에서 시공 유도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시설과 관련하여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검토·결정하고 보고

○ 사업신청 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의 주소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확인)

○ 사업 대상자에게 우수한 버섯관련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을 농산물 담당부서에 신청하는 경우 접수 후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되는 사업인지 확인 후 사업을 진행

4. 지원 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버섯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5. 우선지원 대상

○ 지자체 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출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수출 선도조직(법인), 수출 및 수출계획을 가진 우수농가, 주산지,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에 우선지원 가능

6.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신청서 1부

○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융자·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5. 12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6. 1월말)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 지원 신청자의 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16, 2월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을 배정(3월중)

3.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도지사(시장·군수)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도(시·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추진

- 도 사업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6. 3월말)하고, 보조금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 도지사는 버섯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 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 직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 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지자체)

○ 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업비 검정 및 정산(지자체)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 후 정산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지자체)

○ 도지사(시장·군수)는 버섯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호 서식>

'16년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신청단지
일반개요</td><td>법인(농가)명</td><td colspan="2"></td><td>사업자
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생산품목</td><td colspan="2"></td><td>재배규모</td><td colspan="3">㎡</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3">(남/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 rowspan="2">연 락 처</td><td colspan="3" rowspan="2">전 화) :
핸드폰) :
팩 스) :</td></tr>
<tr><td>사업장 소재지
주소</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기 존
시설규모</td><td>재배시설</td><td>간이(비닐)
재배사 ㎡</td><td>판넬
재배사 ㎡</td><td>콘크리트
재배사 ㎡</td><td>기 타 ㎡</td><td colspan="2">계 ㎡</td></tr>
<tr><td>부대시설</td><td>㎡</td><td>㎡</td><td>생산기기
식</td><td>기 타</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사업계획</td><td rowspan="2">사업규모
(백만원)</td><td colspan="2">버섯 재배시설(재배사)</td><td colspan="5">*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td></tr>
<tr><td colspan="2">버섯 생산기기 등</td><td colspan="5">*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td></tr>
<tr><td>재원조달
(천원)</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국 고</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소계)</td><td>보조</td><td>융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재배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시행 계획서	수수료
	없음

<붙임 1-1호 서식>

’16년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조직 현황

□ 사업신청 법인(농가) :

□ 사업신청 특용작물 품목 (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

□ 사업신청 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 일반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 산 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품목	면적(㎡)	품목	생산량(톤)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13(실적)	합계		합계		합계 :			
’14(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법인(조직 및 농가) 세부현황

결성일 (사업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	
작목반수			조합원수 (종사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	
	㎡	㎡	㎡	㎡	㎡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
	㎡	㎡	㎡	㎡	㎡	대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배지혼합기	탈병기	입병기	살균기	기타

사업실적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3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첨부

3.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 농가수 (호)	비 고
시 설 현대화 사 업	재배사 개·보수						
	생산시설 및 장비						
	기타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 ○ 생산시설 및 장비 - ○ 기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위와 같이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 ○ 귀하

16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우수종묘 증식보급)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 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우수종묘증식보급 기반구축	41,748	22,800	22,697	17,859	58,127
- 국 고	17,657	10,024	10,828	8,520	27,460
- 지방비	17,147	9,904	10,318	8,119	27,157
- 자부담	6,944	2,872	1,551	1,220	3,51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3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허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허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조금 조성·운영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별표10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후 사업부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종자업 등록

-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육묘(실생·접목) 생산 영농법인은 제외)

○ 농업경영정보 등록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소속 시·군(사업자가 시·도인 경우 시·도)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기준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씨감자	300ha	○과수 묘목	500ha
○고구마 종순	300ha	○화훼 종묘	-
○약용작물 종자	500ha	○녹비작물 종자	-
○버섯 종균	연면적 2ha	○종묘삼	200ha
○육묘(실생·접목)	-	○마늘 종구	300ha
○딸기 종묘	50ha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양식2] 제출

3. 지원내용

가. 지원내역

○ 시설 : 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묘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나. 시설설치 지원기준(단가)

시설구분	기준단가 (한도)	비 고
유리온실	600천원/m2 (1,000m2 기준)	▫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유리), 전기시설, 천측창 자동개폐장치, 난방, 차광, 환기팬, 포그시스템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비닐온실	90천원/m2 (1,000m2 기준) 50천원/m2 (10,000m2 기준)	▫비닐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비닐), 커튼, 자동개폐장치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사)한국농업시설협회(www.akaf.or.kr) 참조
온실내부시설	90천원/m2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용수 공급시설, 제습시설, 살수장치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온실(유리·비닐) 내부시설 설치 비용
망실하우스	40천원/m2 (10,000m2기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조직배양실	2,00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배양실, 멸균실, 무균실, 실험실, 검정실, 기계실, 기타 부속 시설 등
종균배양실	65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내부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전기시설, 소방시설, 냉장·냉동시설, 냉·난방시설, 가습시설, 환기시설, 공조시설 등
저온저장고	1,000천원/m2 (330m2 기준)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기준단가 적용(99~660m2 기준)
정선시설	1,700천원/㎡ (330㎡ 기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기준단가 - 대략정선기, 정밀정선기, 저장빈, 포대봉합기 등
냉난방시설	비고참조	▫기본규정 별표4에 따른 기준단가 적용

주) 1. 정해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되,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2.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구비(소관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3.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업체 견적, 시중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

다.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토지, 건물 등)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7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7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7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주) 1.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2.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라.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구입비 등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가.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버섯 종균, 마늘 종구)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종묘삼)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딸기 원묘·보급묘, 육묘(실생·접목), 씨감자, 과수 묘목)

※ '16년도부터는 지원조건 변경(통일) 예정(지원조건은 '16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1ha이상 대면적이 소요되는 종묘생산용 하우스 설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자부담(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

나. 개소당 지원기준

사업비	1년 국고지원액	지원분야(사업주체)
20~30억원 (사업기간 2년)	지자체 : 5~7.5억원 민 간 : 3~7.5억원	□ 씨감자(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 고구마 종순(시·도, 시·군) □ 약용작물 종자(시·도) □ 버섯 종균(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12~20억원 (사업기간 1년)	민 간 : 3.6~6억원	□ 육묘(실생·접목)(생산자단체)
8~12억원 (사업기간 1년)	지자체 : 4~6억원 민 간 : 2.4~3.6억원	□ 딸기 원묘·보급묘(생산자단체) □ 과수 묘목(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 화훼 종묘(시·도, 시·군) □ 녹비작물 종자(시·도, 시·군)
5~8억원 (사업기간 1년)	지자체 : 2.5~4억원 민 간 : 1.5~4억원	□ 종묘삼(생산자단체) □ 딸기 원원묘(시·도) □ 마늘 종구(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 육묘(실생·접목)(생산자단체)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지원규모가 작은 사업대상자(분야별 최소규모의 70% 이상)에게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 지원내용」에 명시된 기준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보	⇒	사업 기본계획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자체사업) 시·군 → 도 - (민간사업) 희망자 → 시·군 → 도
농식품부(전년도 8~9월)		지자체(전년도 8~9월)		도(전년도 9월말) → 농식품부 접수

○ 신청서 : [양식1] 사업신청서 작성양식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	사업 평가 기본계획 수립	⇒	서면 또는 공개발표 평가 후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농식품부(전년도 9월)		농식품부(전년도 9월)		농식품부(전년도 10~11월)

○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가점)** >

①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되거나,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동 신청(+5점)

② 연초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5점)

< **패널티(감점)** >

○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전체(-3 ~ -5점)

- 전년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 ~ 90%미만 -3점

*** 해당연도 사업이 완료된 경우(정산 결과 집행잔액 반납 등)는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확정 시달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당해년도 1월)		시·군 → 도 (당해년도 1월)		농식품부(당해년도 1~2월)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 ▪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 ▪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

4. 자금배정단계

○ (시·도) 시·군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농식품부)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서를 검토하여 자금교부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주관기관(해당 시·군)이 입찰방식으로 사업수행자(시공사) 선정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사업은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회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필요시 증빙자료 점검 및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6.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7년

* '15년에 완공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14년 완료사업까지는 지원 당시의 지침을 따름

** 건물, 유리온실 등 관리기간이 10년인 중요재산은 10년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시·도), 2016년 3 ~ 4월

○ 제출양식

지원분야	사업주체	2016 사업비 (단위 : 백만원)				2016년 사업희망 개소수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주) 1. 현행 지원분야 및 추가 희망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요조사 제출

2.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 사업은 제외(원예경영과에서 별도 추진)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16년 8 ~ 10월

- 2017년도 사업규모는 사업수요 및 '17년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결정

[별표1 :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사업신청양식(양식1)]

20××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

1. 사업자(시·도명, 시·군명 또는 기관명) :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사업담당(시·군)	과장	사무관(급)	주무관(급)
성 명			
전화번호			

○ 생산자단체

명 칭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종자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지자체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양식2 참조) 제출

다.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라.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시설설치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부지 확보여부 : 확보, 미확보

-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 년

* 첨부자료 : 시설부지 확보 증빙자료

나. 시설 설치계획(부지구입비는 제외)

○ 총사업비

구분		계 (100%)	국고보조 (%)	지방비 (%)	자부담 (%)
총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 첨부자료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증빙서류),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등

다.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설치종류	비고
○ 부지					
○ 조직배양실					
○ 온실(유리, 비닐)					
○ 기자재					
…					

라.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4. 종자(종묘)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생 산 량		주(구) 또는 kg		
공급단가		원/주(구) 또는 kg		
생 산 액		원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생산종자(종묘) 공급계획

품종명 (국내/외 품종)	공급량(개)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표시

○ 국내 품종 비율 : %

다. 사업운영 계획

구 분	'15	'16	'17	'18	'19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신규 채용계획 (당해년도)	명				

라.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

○ 생산된 종묘(구) 공급 후 이품종,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16	'17	'18	'19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 생산액*					
사업추진에 따른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직접 생산액 : 기반구축시설 생산 종묘 보급에 따른 생산액**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기반구축시설에서 생산된 종묘를 공급받는 농가들의 생산액 증가(총합) 추정액**

○ 직접 생산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량 × 공급단가 등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증가량 × 공급단가 + 우수등급 생산 증가 × 단가차이 등*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양식 2]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부지확보 (가능) 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잔고 확인서 등 확인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등) 농식품부 제출
	③ 부지확보 * 임차시 임차 잔여기간 10년이상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
종자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① 종자업 등록		
	②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법인 공통지원 요건 충족 여부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④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소속 지자체(시·군·구)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해당품목 : 재배면적 :

※ 지방비 확보(예정) 증빙자료는 농식품부에 제출, 나머지 증빙자료는 지자체에서 보관

(확인자) 소속(시·군·구) 성명 서명

V

원예·특작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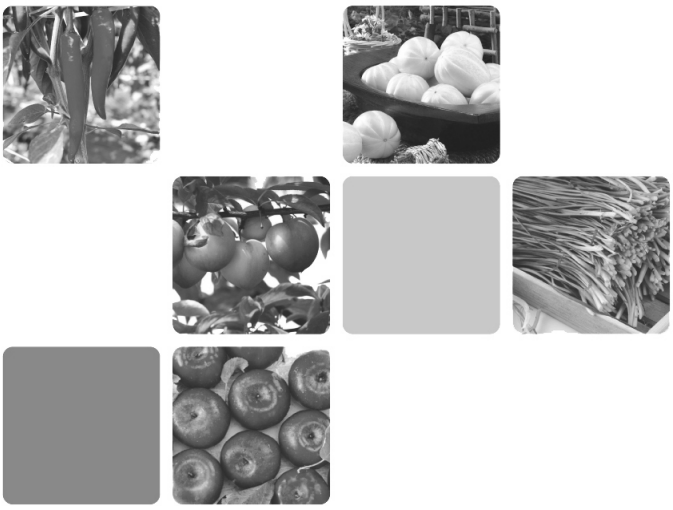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단위 : 건,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2,000	383,331	115,000	268,331	
목포시	-	-	-	-	
여수시	-	-	-	-	
순천시	104	20,000	6,000	14,000	
나주시	90	17,000	5,100	11,900	
광양시	90	17,000	5,100	11,900	
담양군	70	13,027	3,908	9,119	
곡성군	75	14,477	4,343	10,134	
구례군	26	5,085	1,525	3,560	
고흥군	30	5,538	1,661	3,877	
보성군	260	50,000	15,000	35,000	
화순군	18	3,590	1,077	2,513	
장흥군	218	41,767	12,530	29,237	
강진군	130	25,000	7,500	17,500	
해남군	130	25,000	7,500	17,500	
영암군	173	33,333	10,000	23,333	
무안군	53	10,122	3,037	7,085	
함평군	266	50,989	15,297	35,692	
영광군	72	13,875	4,163	9,712	
장성군	17	3,333	1,000	2,333	
완도군	27	5,195	1,559	3,636	
진도군	47	9,000	2,700	6,300	
신안군	104	20,000	6,000	14,000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 업 량 (회/부스)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계	20/28	84,000	42,000	42,000	
목포시	-	-	-	-	
여수시	1/1	3,000	1,500	1,500	
순천시	2/4	12,000	6,000	6,000	
나주시	1/1	3,000	1,500	1,500	
광양시	-	-	-	-	
담양군	1/1	3,000	1,500	1,500	
곡성군	2/2	6,000	3,000	3,000	
구례군	2/2	6,000	3,000	3,000	
고흥군	2/2	6,000	3,000	3,000	
보성군	1/2	6,000	3,000	3,000	
화순군	1/1	3,000	1,500	1,500	
장흥군	-	-	-	-	
강진군	2/4	12,000	6,000	6,000	
해남군	1/2	6,000	3,000	3,000	
영암군	-	-	-	-	
무안군	1/2	6,000	3,000	3,000	
함평군	-	-	-	-	
영광군	1/2	6,000	3,000	3,000	
장성군	-	-	-	-	
완도군	1/1	3,000	1,500	1,500	
진도군	-	-	-	-	
신안군	1/1	3,000	1,500	1,500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단위 : 건, 천원)

시 군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8,000	11,700,000	-	2,340,000	8,190,000	1,170,000
목포시	8	2,000		400	1,400	200
여수시	377	247,000		49,400	172,900	24,700
순천시	1,023	667,000		133,400	466,900	66,700
나주시	346	225,000		45,000	157,500	22,500
광양시	1,169	759,000		151,800	531,300	75,900
담양군	569	370,000		74,000	259,000	37,000
곡성군	785	509,000		101,800	356,300	50,900
구례군	546	355,000		71,000	248,500	35,500
고흥군	792	513,000		102,600	359,100	51,300
보성군	823	533,000		106,600	373,100	53,300
화순군	754	489,000		97,800	342,300	48,900
장흥군	1,208	785,000		157,000	549,500	78,500
강진군	592	385,000		77,000	269,500	38,500
해남군	1,754	1,143,000		228,600	800,100	114,300
영암군	1,623	1,054,000		210,800	737,800	105,400
무안군	562	366,000		73,200	256,200	36,600
함평군	938	612,000		122,400	428,400	61,200
영광군	954	621,000		124,200	434,700	62,100
장성군	308	199,000		39,800	139,300	19,900
완도군	362	235,000		47,000	164,500	23,500
진도군	1,069	693,000		138,600	485,100	69,300
신안군	1,438	938,000		187,600	656,600	93,800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20,000	6,287,000	-	1,257,400	5,029,600	-
목포시	3	943		189	754	
여수시	792	248,965		49,793	199,172	
순천시	812	255,252		51,050	204,202	
나주시	801	251,794		50,359	201,435	
광양시	526	165,348		33,070	132,278	
담양군	781	245,507		49,101	196,406	
곡성군	1,119	351,758		70,352	281,406	
구례군	385	121,025		24,205	96,820	
고흥군	1,618	508,618		101,724	406,894	
보성군	476	149,631		29,926	119,705	
화순군	123	38,665		7,733	30,932	
장흥군	768	241,421		48,284	193,137	
강진군	315	99,020		19,804	79,216	
해남군	725	227,904		45,581	182,323	
영암군	2,252	707,916		141,583	566,333	
무안군	522	164,091		32,818	131,273	
함평군	886	278,514		55,703	222,811	
영광군	1,149	361,188		72,238	288,950	
장성군	211	66,328		13,265	53,063	
완도군	1,454	457,065		91,413	365,652	
진도군	3,160	993,346		198,669	794,677	
신안군	1,122	352,701		70,540	282,16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장려금]사업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43,141	37,065,000	-	7,413,000	29,652,000	-
목포시	15	12,000		2,400	9,600	
여수시	941	614,700		122,940	491,760	
순천시	2,270	2,034,000		406,800	1,627,200	
나주시	900	900,000		180,000	720,000	
광양시	2,284	1,996,000		399,200	1,596,800	
담양군	1,500	1,932,000		386,400	1,545,600	
곡성군	1,600	1,490,000		298,000	1,192,000	
구례군	1,100	700,000		140,000	560,000	
고흥군	2,000	1,605,000		321,000	1,284,000	
보성군	2,200	1,782,000		356,400	1,425,600	
화순군	1,800	1,334,000		266,800	1,067,200	
장흥군	2,670	2,210,000		442,000	1,768,000	
강진군	1,249	1,249,000		249,800	999,200	
해남군	4,178	3,309,000		661,800	2,647,200	
영암군	3,864	3,924,300		784,860	3,139,440	
무안군	1,535	1,107,000		221,400	885,600	
함평군	2,000	1,968,000		393,600	1,574,400	
영광군	2,500	2,170,000		434,000	1,736,000	
장성군	640	535,000		107,000	428,000	
완도군	1,000	700,000		140,000	560,000	
진도군	3,375	2,523,000		504,600	2,018,400	
신안군	3,520	2,970,000		594,000	2,376,000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단위 : 건, 천원)

시 군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2,000	560,000	-	168,000	392,000	-
목포시	-					
여수시	32	9,000		2,700	6,300	
순천시	100	28,000		8,400	19,600	
나주시	32	9,000		2,700	6,300	
광양시	111	31,000		9,300	21,700	
담양군	50	14,000		4,200	9,800	
곡성군	239	67,000		20,100	46,900	
구례군	54	15,000		4,500	10,500	
고흥군	75	21,000		6,300	14,700	
보성군	71	20,000		6,000	14,000	
화순군	82	23,000		6,900	16,100	
장흥군	107	30,000		9,000	21,000	
강진군	57	16,000		4,800	11,200	
해남군	200	56,000		16,800	39,200	
영암군	157	44,000		13,200	30,800	
무안군	71	20,000		6,000	14,000	
함평군	118	33,000		9,900	23,100	
영광군	107	30,000		9,000	21,000	
장성군	29	8,000		2,400	5,600	
완도군	36	10,000		3,000	7,000	
진도군	104	29,000		8,700	20,300	
신안군	168	47,000		14,100	32,900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00,000	12,000,000	-	1,200,000	9,600,000	1,200,000
목포시	10	1,200		120	960	120
여수시	1,169	140,280		14,028	112,224	14,028
순천시	2,369	284,280		28,428	227,424	28,428
나주시	6,180	741,600		74,160	593,280	74,160
광양시	674	80,880		8,088	64,704	8,088
담양군	2,729	327,480		32,748	261,984	32,748
곡성군	3,605	432,600		43,260	346,080	43,260
구례군	618	74,160		7,416	59,328	7,416
고흥군	3,605	432,600		43,260	346,080	43,260
보성군	6,592	791,040		79,104	632,832	79,104
화순군	4,532	543,840		54,384	435,072	54,384
장흥군	6,180	741,600		74,160	593,280	74,160
강진군	5,570	668,400		66,840	534,720	66,840
해남군	8,809	1,057,080		105,708	845,664	105,708
영암군	12,360	1,483,200		148,320	1,186,560	148,320
무안군	2,987	358,440		35,844	286,752	35,844
함평군	6,695	803,400		80,340	642,720	80,340
영광군	10,728	1,287,360		128,736	1,029,888	128,736
장성군	3,811	457,320		45,732	365,856	45,732
완도군	2,060	247,200		24,720	197,760	24,720
진도군	3,567	428,040		42,804	342,432	42,804
신안군	5,150	618,000		61,800	494,400	61,800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4	2,000,000	1,000,000	-	200,000	8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1	500,000	250,000	-	50,000	200,000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1	500,000	250,000	-	50,000	200,000
해남군	1	500,000	250,000	-	50,000	200,000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	500,000	250,000	-	50,000	200,000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5.0	1,000,000	-	300,000	400,000	300,000
목포시						
여수시	1.0	200,000		60,000	80,000	60,000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0.9	184,400		54,920	74,560	54,920
무안군	0.3	66,000		19,800	26,400	19,800
함평군	2.1	417,600		125,280	167,040	125,28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0.7	132,000		40,000	52,000	40,000
신안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6,000	10,000,000	10,000,000	-	-	-
목포시	2	1,250	1,250			
여수시	155	96,875	96,875			
순천시	996	622,500	622,500			
나주시	296	185,000	185,000			
광양시	1,186	741,250	741,250			
담양군	428	267,500	267,500			
곡성군	936	585,000	585,000			
구례군	398	248,750	248,750			
고흥군	664	415,000	415,000			
보성군	790	493,750	493,750			
화순군	379	236,875	236,875			
장흥군	1,651	1,031,875	1,031,875			
강진군	726	453,750	453,750			
해남군	1,273	795,625	795,625			
영암군	1,160	725,000	725,000			
무안군	678	423,750	423,750			
함평군	1,275	796,875	796,875			
영광군	878	548,750	548,750			
장성군	315	196,875	196,875			
완도군	71	44,375	44,375			
진도군	914	571,250	571,250			
신안군	829	518,125	518,125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단위 : 톤,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528,849	29,038,000	29,038,000	-	-	-
목포시	2,288	117,947	117,947			
여수시	14,466	828,996	828,996			
순천시	46,142	2,449,066	2,449,066			
나주시	41,336	2,372,410	2,372,410			
광양시	35,081	1,790,913	1,790,913			
담양군	28,679	1,002,932	1,002,932			
곡성군	18,986	1,481,160	1,481,160			
구례군	18,038	943,966	943,966			
고흥군	42,253	2,292,462	2,292,462			
보성군	26,961	1,415,100	1,415,100			
화순군	19,681	1,009,546	1,009,546			
장흥군	29,356	1,490,430	1,490,430			
강진군	10,698	675,270	675,270			
해남군	29,819	1,792,460	1,792,460			
영암군	20,598	1,273,590	1,273,590			
무안군	27,167	1,467,195	1,467,195			
함평군	19,268	1,138,000	1,138,000			
영광군	18,178	1,084,910	1,084,910			
장성군	23,012	1,250,005	1,250,005			
완도군	11,096	567,292	567,292			
진도군	18,196	1,061,325	1,061,325			
신안군	27,550	1,533,025	1,533,025			

※ 지방비 : 600원/20kg 정액 의무부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단위 : 톤,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59,063	22,059,849	15,441,895	1,985,387	4,632,567	-
목포시	117	17,237	12,066	1,551	3,620	
여수시	1,959	275,508	192,856	24,796	57,856	
순천시	5,071	705,293	493,705	63,476	148,112	
나주시	15,708	2,193,947	1,535,762	197,455	460,730	
광양시	9,723	1,293,731	905,614	116,436	271,681	
담양군	5,012	698,234	488,764	62,841	146,629	
곡성군	4,652	661,513	463,059	59,536	138,918	
구례군	2,982	419,041	293,329	37,714	87,998	
고흥군	17,099	2,242,175	1,569,522	201,796	470,857	
보성군	4,564	646,617	452,631	58,196	135,790	
화순군	4,137	569,500	398,650	51,255	119,595	
장흥군	12,799	1,773,844	1,241,690	159,646	372,508	
강진군	6,518	907,842	635,489	81,706	190,647	
해남군	17,744	2,499,433	1,749,603	224,949	524,881	
영암군	9,848	1,369,558	958,691	123,260	287,607	
무안군	6,069	845,167	591,617	76,065	177,485	
함평군	3,784	530,529	371,370	47,748	111,411	
영광군	8,415	1,178,516	824,962	106,066	247,488	
장성군	5,856	828,697	580,088	74,583	174,026	
완도군	2,612	366,594	256,616	32,994	76,984	
진도군	3,196	452,679	316,875	40,741	95,063	
신안군	11,198	1,584,194	1,108,936	142,577	332,681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융자
계	3	1,200,000	240,000	-	240,000	360,000	36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	400,000	80,000	-	80,000	120,000	120,00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2	800,000	160,000	-	160,000	240,000	240,00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7	13,158,200	3,947,460	1,973,730	4,605,370	2,631,640
목포시						
여수시	1	1,491,000	447,300	223,650	521,850	298,200
순천시						
나주시	1	2,500,000	750,000	375,000	875,000	500,00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1	791,400	237,420	118,710	276,990	158,28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1	3,000,000	900,000	450,000	1,050,000	600,000
화순군	1	1,240,000	372,000	186,000	434,000	248,000
장흥군						
강진군	1	1,135,800	340,740	170,370	397,530	227,160
해남군						
영암군	1	3,000,000	900,000	450,000	1,050,000	600,000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곡성 종방지구, 강진 현산지구는 2015~2016년(2개년) 추진사업임.

친환경 농자재 지원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8,920	2,676,000	535,200	240,840	561,960	1,338,000
목포시						
여수시	283	85,000	17,000	7,650	17,850	42,500
순천시	33	10,000	2,000	900	2,100	5,000
나주시	560	168,000	33,600	15,120	35,280	84,000
광양시	732	219,500	43,900	19,755	46,095	109,750
담양군	548	164,500	32,900	14,805	34,545	82,250
곡성군	637	191,000	38,200	17,190	40,110	95,500
구례군	427	128,000	25,600	11,520	26,880	64,000
고흥군	743	223,000	44,600	20,070	46,830	111,500
보성군	417	125,000	25,000	11,250	26,250	62,500
화순군	333	100,000	20,000	9,000	21,000	50,000
장흥군	163	49,000	9,800	4,410	10,290	24,500
강진군	667	200,000	40,000	18,000	42,000	100,000
해남군	413	124,000	24,800	11,160	26,040	62,000
영암군	984	295,000	59,000	26,550	61,950	147,500
무안군	87	26,000	5,200	2,340	5,460	13,000
함평군	273	82,000	16,400	7,380	17,220	41,000
영광군	683	205,000	41,000	18,450	43,050	102,500
장성군	567	170,000	34,000	15,300	35,700	85,000
완도군	77	23,000	4,600	2,070	4,830	11,500
진도군	160	48,000	9,600	4,320	10,080	24,000
신안군	133	40,000	8,000	3,600	8,400	20,000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

(단위 : 가마/40kg,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100%)	도비(30%)	시군비(70%)	
계	166,667	500,000	150,000	350,000	
목 포					
여 수					
순 천	2,500	7,500	2,250	5,250	
나 주	4,100	12,300	3,690	8,610	
광 양	500	1,500	450	1,050	
담 양	2,600	7,800	2,340	5,460	
곡 성					
구 례	26,267	78,800	23,640	55,160	
고 흥	1,500	4,500	1,350	3,150	
보 성	5,200	15,600	4,680	10,920	
화 순	1,200	3,600	1,080	2,520	
장 흥	4,600	13,800	4,140	9,660	
강 진	400	1,200	360	840	
해 남	74,000	222,000	66,600	155,400	
영 암	2,600	7,800	2,340	5,460	
무 안	1,500	4,500	1,350	3,150	
함 평	14,800	44,400	13,320	31,080	
영 광	12,100	36,300	10,890	25,410	
장 성	8,100	24,300	7,290	17,010	
완 도					
진 도	1,400	4,200	1,260	2,940	
신 안	3,300	9,900	2,970	6,930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단위 : ha, 개소, 천원)

시군	총사업비	쌀소득보전직불금		사업관리비 및 심사운영비	
		면적	사업비 (국비)	심사위원회설치	사업비 (국비)
계	172,622,400	175,000	171,922,000	258	700,400
도	12,000				12,000
목 포	69,785	69	67,785	1	2,000
여 수	2,409,594	2,418	2,375,444	18	34,150
순 천	7,313,953	7,401	7,270,743	14	43,210
나 주	12,412,009	12,587	12,365,469	19	46,540
광 양	2,251,724	2,264	2,224,154	12	27,570
담 양	4,871,650	4,925	4,838,320	12	33,330
곡 성	6,576,516	6,665	6,547,696	11	28,820
구 례	2,778,668	2,805	2,755,632	8	23,036
고 흥	12,006,150	12,179	11,964,650	16	41,500
보 성	9,330,261	9,463	9,296,451	12	33,810
화 순	5,290,827	5,353	5,258,787	13	32,040
장 흥	8,441,691	8,563	8,412,291	10	29,400
강 진	9,471,820	9,611	9,441,846	11	29,974
해 남	22,361,243	22,718	22,319,163	14	42,080
영 암	15,864,509	16,112	15,829,429	11	35,080
무 안	8,331,063	8,447	8,298,333	9	32,730
함 평	8,270,443	8,389	8,241,353	9	29,090
영 광	11,058,500	11,225	11,027,440	11	31,060
장 성	6,387,628	6,470	6,356,128	11	31,500
완 도	2,125,988	2,141	2,103,318	12	22,670
진 도	5,586,926	5,661	5,561,366	11	25,560
신 안	9,399,452	9,534	9,366,202	13	33,250

밭농업 직접직불제 지원

(단위 : ha,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100)	도비	시군비
계	133,831	42,000,000	42,000,000	0	0
목 포	238	50,910	50,910		
여 수	2,044	446,747	446,747		
순 천	3,187	1,046,477	1,046,477		
나 주	9,463	2,947,383	2,947,383		
광 양	742	192,093	192,093		
담 양	2,640	970,824	970,824		
곡 성	2,787	861,942	861,942		
구 례	2,391	893,609	893,609		
고 흥	10,847	3,445,975	3,445,975		
보 성	9,188	3,083,056	3,083,056		
화 순	3,480	1,087,813	1,087,813		
장 흥	8,366	3,223,473	3,223,473		
강 진	7,235	2,652,799	2,652,799		
해 남	24,678	6,894,430	6,894,430		
영 암	9,073	2,781,600	2,781,600		
무 안	13,709	3,153,600	3,153,600		
함 평	6,990	2,289,236	2,289,236		
영 광	9,226	3,019,271	3,019,271		
장 성	4,148	1,373,480	1,373,480		
완 도	493	238,330	238,330		
진 도	1,005	490,617	490,617		
신 안	1,901	856,335	856,335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단위 : ha,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80)	도비(6)	시군비(14)
계	19,200	9,600,000	7,680,000	576,000	1,344,000
목 포					
여 수	1,010	517,000	413,600	31,020	72,380
순 천	851	431,000	344,800	25,860	60,340
나 주	72	40,000	32,000	2,400	5,600
광 양	390	203,000	162,400	12,180	28,420
담 양	8	8,000	6,400	480	1,120
곡 성	449	229,000	183,200	13,740	32,060
구 례	443	224,000	179,200	13,440	31,360
고 흥	1,130	576,000	460,800	34,560	80,640
보 성	189	99,000	79,200	5,940	13,860
화 순	238	124,000	99,200	7,440	17,360
장 흥	107	57,000	45,600	3,420	7,980
강 진					
해 남	19	13,000	10,400	780	1,820
영 암	16	11,000	8,800	660	1,540
무 안	7	7,000	5,600	420	980
함 평	49	27,000	21,600	1,620	3,780
영 광	2	5,000	4,000	300	700
장 성	77	43,000	34,400	2,580	6,020
완 도	2,690	1,353,000	1,082,400	81,180	189,420
진 도	3,591	1,791,000	1,432,800	107,460	250,740
신 안	7,862	3,842,000	3,073,600	230,520	537,880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단위 : ㏊,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61,000	35,000,000	7,000,000	14,000,000	14,000,000
목 포	44	5,500	1,100	2,200	2,200
여 수	272	60,000	12,000	24,000	24,000
순 천	2,058	1,650,000	330,000	660,000	660,000
나 주	5,421	12,040,000	2,408,000	4,816,000	4,816,000
광 양	527	630,000	126,000	252,000	252,000
담 양	623	625,000	125,000	250,000	250,000
곡 성	207	215,000	43,000	86,000	86,000
구 례	505	320,000	64,000	128,000	128,000
고 흥	6,076	1,305,000	261,000	522,000	522,000
보 성	3,682	1,550,000	310,000	620,000	620,000
화 순	161	335,000	67,000	134,000	134,000
장 흥	5,264	825,000	165,000	330,000	330,000
강 진	5,098	1,435,000	287,000	574,000	574,000
해 남	9,253	2,860,000	572,000	1,144,000	1,144,000
영 암	7,089	5,550,000	1,110,000	2,220,000	2,220,000
무 안	1,475	441,000	88,200	176,400	176,400
함 평	2,810	765,000	153,000	306,000	306,000
영 광	3,430	620,000	124,000	248,000	248,000
장 성	545	1,083,500	216,700	433,400	433,400
완 도	675	120,000	24,000	48,000	48,000
진 도	3,730	1,800,000	360,000	720,000	720,000
신 안	2,055	765,000	153,000	306,000	306,000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계(100%)	국비(50)	도비(0)	시군비(40)	자담(10)
계	77	54	23	6,740,000	3,370,000	0	2,696,000	674,000
목 포								
여 수	1	1		20,000	10,000		8,000	2,000
순 천								
나 주	6	5	1	340,000	170,000		136,000	34,000
광 양								
담 양	3	1	2	430,000	215,000		172,000	43,000
곡 성	1	1		20,000	10,000		8,000	2,000
구 례								
고 흥	4	3	1	380,000	190,000		152,000	38,000
보 성	3	2	1	260,000	130,000		104,000	26,000
화 순	3	2	1	250,000	125,000		100,000	25,000
장 흥	2	1	1	220,000	110,000		88,000	22,000
강 진	11	8	3	1,150,000	575,000		460,000	115,000
해 남	12	8	4	1,224,000	612,000		489,600	122,400
영 암	10	7	3	940,000	470,000		376,000	94,000
무 안	1	1		20,000	10,000		8,000	2,000
함 평	4	3	1	246,000	123,000		98,400	24,600
영 광	9	6	3	710,000	355,000		284,000	71,000
장 성	2	1	1	280,000	140,000		112,000	28,000
완 도	2	2		30,000	15,000		12,000	3,000
진 도								
신 안	3	2	1	220,000	110,000		88,000	22,000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4,213,334	2,132,000	4,974,667	7,106,667
목 포					
여 수	2종	232,000	34,800	81,200	116,000
순 천	5종	662,000	99,300	231,700	331,000
나 주	7종	1,214,000	182,100	424,900	607,000
광 양	1종	5,500	825	1,925	2,750
담 양	6종	884,000	132,600	309,400	442,000
곡 성	4종	527,500	79,125	184,625	263,750
구 례	1종	1,500	225	525	750
고 흥	7종	1,482,500	222,375	518,875	741,250
보 성	6종	396,500	59,475	138,775	198,250
화 순	4종	573,500	86,025	200,725	286,750
장 흥	8종	1,641,500	246,225	574,525	820,750
강 진	8종	1,282,500	192,375	448,875	641,250
해 남	5종	394,200	59,130	137,970	197,100
영 암	5종	543,500	81,525	190,225	271,750
무 안	1종	424,000	63,600	148,400	212,000
함 평	4종	228,000	34,200	79,800	114,000
영 광	4종	430,000	64,500	150,500	215,000
장 성	8종	1,127,500	169,125	394,625	563,750
완 도	2종	153,000	22,950	53,550	76,500
진 도	4종	635,000	95,250	222,250	317,500
신 안	7종	1,375,134	206,270	481,297	687,567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40)	시군비(40)	자담(20)
합계	500	250,000	100,000	100,000	50,000
목 포	4	2,000	800	800	400
여 수	30	15,000	6,000	6,000	3,000
순 천	26	13,000	5,200	5,200	2,600
나 주	20	10,000	4,000	4,000	2,000
광 양	30	15,000	6,000	6,000	3,000
담 양	20	10,000	4,000	4,000	2,000
곡 성	20	10,000	4,000	4,000	2,000
구 례	20	10,000	4,000	4,000	2,000
고 흥	50	25,000	10,000	10,000	5,000
보 성	26	13,000	5,200	5,200	2,600
화 순	20	10,000	4,000	4,000	2,000
장 흥	30	15,000	6,000	6,000	3,000
강 진	4	2,000	800	800	400
해 남	40	20,000	8,000	8,000	4,000
영 암	10	5,000	2,000	2,000	1,000
무 안	-				
함 평	20	10,000	4,000	4,000	2,000
영 광	20	10,000	4,000	4,000	2,000
장 성	20	10,000	4,000	4,000	2,000
완 도	20	10,000	4,000	4,000	2,000
진 도	20	10,000	4,000	4,000	2,000
신 안	50	25,000	10,000	10,000	5,000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5,333	13,333,000	2,000,000	4,666,000	6,667,000
목 포	15	37,500	5,625	13,125	18,750
여 수	300	750,000	112,500	262,500	375,000
순 천	320	800,000	120,000	280,000	400,000
나 주	350	875,000	131,250	306,250	437,500
광 양	173	432,500	64,875	151,375	216,250
담 양	230	575,000	86,250	201,250	287,500
곡 성	230	575,000	86,250	201,250	287,500
구 례	180	450,000	67,500	157,500	225,000
고 흥	380	950,000	142,500	332,500	475,000
보 성	330	825,000	123,750	288,750	412,500
화 순	220	550,000	82,500	192,500	275,000
장 흥	320	800,000	120,000	280,000	400,000
강 진	175	437,500	65,625	153,125	218,750
해 남	400	1,000,000	150,000	350,000	500,000
영 암	220	550,000	82,500	192,500	275,000
무 안	170	425,000	63,750	148,750	212,500
함 평	280	700,000	105,000	245,000	350,000
영 광	200	500,000	75,000	175,000	250,000
장 성	200	500,000	75,000	175,000	250,000
완 도	110	275,000	41,250	96,250	137,500
진 도	300	750,000	112,500	262,500	375,000
신 안	230	575,500	86,375	200,875	288,250

농기계 임대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6	10,900,000	5,450,000	1,635,000	3,815,000
목 포	-				
여 수	-				
순 천	여성1	50,000	25,000	7,500	17,500
나 주	1/주산지1/여성2	1,960,000	980,000	294,000	686,000
광 양	1/여성1	1,250,000	625,000	187,500	437,500
담 양	여성1	50,000	25,000	7,500	17,500
곡 성	여성1	50,000	25,000	7,500	17,500
구 례	여성1	50,000	25,000	7,500	17,500
고 흥	1	1,200,000	600,000	180,000	420,000
보 성	-				
화 순	-				
장 흥	여성1	50,000	25,000	7,500	17,500
강 진	-				
해 남	-				
영 암	여성1	50,000	25,000	7,500	17,500
무 안	1/여성1	1,250,000	625,000	187,500	437,500
함 평	-				
영 광	1/주산지2/여성2	2,160,000	1,080,000	324,000	756,000
장 성	1/여성1	1,680,000	840,000	252,000	588,000
완 도	-				
진 도	주산지1/여성 2	300,000	150,000	45,000	105,000
신 안	1	800,000	400,000	120,000	280,000

영농 안전장비 지원

(단위 : 조,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85)
계	26,000	1,040,000	156,000	884,000
목 포	50	2,000	300	1,700
여 수	650	26,000	3,900	22,100
순 천	2,200	88,000	13,200	74,800
나 주	3,200	128,000	19,200	108,800
광 양	500	20,000	3,000	17,000
담 양	1,000	40,000	6,000	34,000
곡 성	1,000	40,000	6,000	34,000
구 례	1,300	52,000	7,800	44,200
고 흥	-		0	0
보 성	1,000	40,000	6,000	34,000
화 순	1,000	40,000	6,000	34,000
장 흥	1,000	40,000	6,000	34,000
강 진	1,400	56,000	8,400	47,600
해 남	2,100	84,000	12,600	71,400
영 암	2,000	80,000	12,000	68,000
무 안	1,200	48,000	7,200	40,800
함 평	1,500	60,000	9,000	51,000
영 광	1,000	40,000	6,000	34,000
장 성	700	28,000	4,200	23,800
완 도	500	20,000	3,000	17,000
진 도	1,500	60,000	9,000	51,000
신 안	1,200	48,000	7,200	40,800

신재생 에너지시설[지열]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60)	도비(2)	시군비(18)	융자(10)	자담(10)
계	4,547,200	2,728,320	90,944	818,496	454,720	454,720
목포시						
여수시	2,500,000	1,500,000	50,000	450,000	250,000	250,000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2,047,200	1,228,320	40,944	368,496	204,720	204,720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신재생 에너지시설[목재펠릿]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30)	도비(3)	시군비(27)	융자(20)	자담(20)
계	80,000	24,000	2,400	21,600	16,000	16,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80,000	24,000	2,400	21,600	16,000	16,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에너지 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3)	시군비(27)	융자(30)	자담(20)
계	8,476,576	1,695,315	254,298	2,288,675	2,542,973	1,695,315
목포시	16,900	3,380	507	4,563	5,070	3,380
여수시	189,200	37,840	5,676	51,084	56,760	37,840
순천시	250,046	50,009	7,502	67,512	75,014	50,009
나주시	525,514	105,103	15,765	141,889	157,654	105,103
광양시	170,280	34,056	5,108	45,976	51,084	34,056
담양군	1,787,458	357,492	53,625	482,612	536,237	357,492
곡성군	1,003,562	200,712	30,107	270,962	301,069	200,712
구례군	270,106	54,021	8,103	72,929	81,032	54,021
고흥군	800,000	160,000	24,000	216,000	240,000	160,000
보성군	483,010	96,602	14,490	130,413	144,903	96,602
화순군	362,956	72,591	10,889	97,998	108,887	72,591
장흥군	458,480	91,696	13,754	123,790	137,544	91,696
강진군	300,000	60,000	9,000	81,000	90,000	60,000
해남군	25,300	5,060	759	6,831	7,590	5,060
영암군	260,956	52,191	7,829	70,458	78,287	52,191
무안군	250,400	50,080	7,512	67,608	75,120	50,080
함평군	386,000	77,200	11,580	104,220	115,800	77,200
영광군	271,134	54,227	8,134	73,206	81,340	54,227
장성군	565,274	113,055	16,958	152,624	169,582	113,055
완도군	100,000	20,000	3,000	27,000	30,000	20,000
진도군						
신안군	-					

에너지 절감시설[공기열]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3)	시군비(27)	융자(30)	자담(20)
계	596,785	119,357	17,903	161,133	179,035	119,357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82,160	36,432	5,465	49,183	54,648	36,432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414,625	82,925	12,438	111,950	124,387	82,925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에너지 절감시설[수막시설]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3)	시군비(27)	융자(30)	자담(20)
계	43,390	8,678	1,302	11,715	13,017	8,678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21,390	4,278	642	5,775	6,417	4,278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5,000	1,000	150	1,350	1,500	1,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17,000	3,400	510	4,590	5,100	3,400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에너지 절감시설[자동보온덮개]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3)	시군비(27)	융자(30)	자담(20)
계	128,750	25,750	3,863	34,762	38,625	25,75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28,750	25,750	3,863	34,762	38,625	25,75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원예전문단지]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3)	시군비(27)	융자(30)	자담(20)
계	17,625,965	3,525,198	528,779	4,759,005	5,287,781	3,525,20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79,600	35,920	5,388	48,492	53,880	35,920
광양시	110,000	22,000	3,300	29,700	33,000	22,000
담양군						
곡성군	1,800,000	360,000	54,000	486000	540,000	360,00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1,742,615	348,523	52,278	470,506	522,785	348,523
화순군	10,226,245	2,045,249	306,787	2,761,086	3,067,874	2,045,249
장흥군						
강진군	1,452,505	290,506	43,576	392,171	435,742	290,510
해남군						
영암군	1,815,000	363,000	54,450	490,050	544,500	363,000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300,000	60,000	9,000	81,000	90,000	60,00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일반원예시설]

(단위 : 천원)

시군별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3)	시군비(27)	융자(30)	자담(20)
계	11,520,000	2,304,000	345,600	3,110,400	3,456,000	2,304,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995,356	199,071	29,861	268,746	298,607	199,071
광양시	369,600	73,920	11,088	99,792	110,880	73,920
담양군	710,309	142,062	21,310	191,784	213,091	142,062
곡성군						
구례군	73,800	14,760	2,214	19,926	22,140	14,760
고흥군	1,564,106	312,821	46,923	422,309	469,232	312,821
보성군	904,226	180,845	27,127	244,141	271,268	180,845
화순군	1,800,000	360,000	54,000	486,000	540,000	360,000
장흥군	863,500	172,700	25,905	233,145	259,050	172,700
강진군	1,604,045	320,809	48,121	433,092	481,214	320,809
해남군	200,000	40,000	6,000	54,000	60,000	40,000
영암군	252,204	50,441	7,565	68,095	75,662	50,441
무안군	105,590	21,118	3,168	28,509	31,677	21,118
함평군						
영광군	157,000	31,400	4,710	42,390	47,100	31,400
장성군	1,363,764	27,2753	40,913	368,216	409,129	27,2753
완도군	556,500	11,1300	16,695	150,255	166,950	11,1300
진도군						
신안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비					
	계(100%)	국 비(20)	도비(3)	시군비(27)	융자(30)	자담(20)
계	8,000,000	1,600,000	240,000	2,160,000	2,400,000	1,600,000
목 포						
여 수	300,000	60,000	9000	81,000	90,000	60,000
순 천	600,000	120,000	18,000	162,000	180,000	120,000
나 주	500,000	100,000	15,000	135,000	150,000	100,000
광 양	46,400	9,280	1,392	12,528	13,920	9,280
담 양						
곡 성	208,380	41,676	6,251	56,263	62,514	41,676
구 례	39,600	7,920	1,188	10,692	11,880	7,920
고 흥	500,000	100,000	15,000	135,000	150,000	100,000
보 성	400,000	80,000	12,000	108,000	120,000	80,000
화 순	334,060	66,812	10,022	90,196	100,218	66,812
장 흥						
강 진	400,000	80,000	12,000	108,000	120,000	80,000
해 남	1,293,920	258,784	38,818	349,358	388,176	258,784
영 암	700,000	140,000	21,000	189,000	210,000	140,000
무 안	500,000	100,000	15,000	135,000	150,000	100,000
함 평	700,000	140,000	21,000	189,000	210,000	140,000
영 광	292,840	58,568	8,785	79,067	87,852	58,568
장 성	79,200	15,840	2,376	21,384	23,760	15,840
완 도	500,000	100,000	15,000	135,000	150,000	100,000
진 도	105,600	21,120	3,168	28,512	31,680	21,120
신 안	500,000	100,000	15,000	135,000	150,000	100,000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단위 :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	도비(20)	시군비(30)	자담(50)
계	347.0	1,249,200	-	250,000	374,600	624,600
목포시	1.0	3,600		720	1,080	1,800
여수시	14.0	50,400		10,080	15,120	25,200
순천시	10.0	36,000		7,200	10,800	18,000
나주시	70.0	252,000		50,560	75,440	126,000
광양시						
담양군	10.0	36,000		7,200	10,800	18,000
곡성군	25.0	90,000		18,000	27,000	45,000
구례군	18.0	64,800		12960	19,440	32,400
고흥군	10.0	36,000		7200	10,800	18,000
보성군	10.0	36,000		7200	10,800	18,000
화순군	10.0	36,000		7200	10,800	18,000
장흥군	5.0	18,000		3600	5,400	9,000
강진군	9.0	32,400		6480	9,720	16,200
해남군	8.0	28,800		5760	8,640	14,400
영암군	15.0	54,000		10800	16,200	27,000
무안군	65.0	234,000		46,800	70,200	117,000
함평군	52.0	187,200		37,440	56,160	93,60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5.0	18,000		3,600	5,400	9,000
진도군						
신안군	10.0	36,000		7,200	10,800	18,000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30%)	도비(9%)	시군비(21%)	기타(40%)
계	6	1,637,800	491,300	147,400	343,900	655,200
도						
목 포						
여 수						
순 천						
나 주	1	230,800	69,200	20,800	48,400	92,400
광 양						
담 양						
곡 성						
구 례						
고 흥						
보 성						
화 순	2	702,000	210,600	63,200	147,400	280,800
장 흥						
강 진						
해 남						
영 암	2	517,000	155,100	46,500	108,600	206,800
무 안						
함 평						
영 광						
장 성	1	188,000	56,400	16,900	39,500	75,200
완 도						
진 도						
신 안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50%)	도비(%)	시군비(10%)	기타(40%)
계		3,000,000	1,500,000	0	300,000	1,200,000
도						
목 포						
여 수						
순 천						
나 주						
광 양						
담 양						
곡 성						
구 례						
고 흥						
보 성						
화 순	3	1,500,000	750,000		150,000	600,000
장 흥	1	500,000	250,000		50,000	200,000
강 진	1	500,000	250,000		50,000	200,000
해 남						
영 암						
무 안						
함 평						
영 광	1	500,000	250,000		50,000	200,000
장 성						
완 도						
진 도						
신 안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22	6,667,000	1,000,000	2,333,500	3,333,500
목포시	1	180,000	27,000	63,000	90,000
여수시	1	220,000	33,000	77,000	110,000
순천시	1	350,000	52,500	122,500	175,000
나주시	1	350,000	52,500	122,500	175,000
광양시	1	200,000	30,000	70,000	100,000
담양군	1	350,000	52,500	122,500	175,000
곡성군	1	500,000	75,000	175,000	250,000
구례군	1	200,000	30,000	70,000	100,000
고흥군	1	330,000	49,500	115,500	165,000
보성군	1	300,000	45,000	105,000	150,000
화순군	1	500,000	75,000	175,000	250,000
장흥군	1	300,000	45,000	105,000	150,000
강진군	1	200,000	30,000	70,000	100,000
해남군	1	450,000	67,500	157,500	225,000
영암군	1	350,000	52,500	122,500	175,000
무안군	1	330,000	49,500	115,500	165,000
함평군	1	300,000	45,000	105,000	150,000
영광군	1	200,000	30,000	70,000	100,000
장성군	1	327,000	49,000	114,500	163,500
완도군	1	200,000	30,000	70,000	100,000
진도군	1	200,000	30,000	70,000	100,000
신안군	1	330,000	49,500	115,500	165,000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 비 (20%)	도 비 (9%)	시군비 (21%)	자담 (융자30+자담20%)
계	17	8,495,000	1,699,000	764,550	1,783,950	4,247,500
목포시	-					
여수시	-					
순천시	1	350,000	70,000	31,500	73,500	175,000
나주시	1	1,320,000	264,000	118,800	277,200	660,000
광양시	1	180,000	36,000	16,200	37,800	90,000
담양군	1	100,000	20,000	9,000	21,000	50,000
곡성군	1	500,000	100,000	45,000	105,000	250,000
구례군						
고흥군	1	900,000	180,000	81,000	189,000	450,000
보성군	1	1,100,000	220,000	99,000	231,000	550,000
화순군	1	140,000	28,000	12,600	29,400	70,000
장흥군	1	45,000	9,000	4,050	9,450	22,500
강진군	1	140,000	28,000	12,600	29,400	70,000
해남군	1	450,000	90,000	40,500	94,500	225,000
영암군	1	1,200,000	240,000	108,000	252,000	600,000
무안군	1	150,000	30,000	13,500	31,500	75,000
함평군	1	50,000	10,000	4,500	10,500	25,000
영광군	1	150,000	30,000	13,500	31,500	75,000
장성군	1	1,700,000	340,000	153,000	357,000	850,000
완도군	1	20,000	4,000	1,800	4,200	10,000
진도군	-					
신안군	-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100%)	도비(30)	시군비(50)	자담(20)	
계	17	1,115,000	345,000	550,000	22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100,000	30,000	50,000	20,000	
나주시	1	100,000	30,000	50,000	20,000	
광양시	1	50,000	15,000	25,000	10,000	
담양군	1	50,000	15,000	25,000	10,000	
곡성군	1	50,000	15,000	25,000	10,000	
구례군	1	50,000	15,000	25,000	10,000	
고흥군	1	100,000	30,000	50,000	20,000	
보성군	1	50,000	15,000	25,000	10,000	
화순군	1	50,000	15,000	25,000	10,000	
장흥군	1	50,000	15,000	25,000	10,000	
강진군	1	50,000	15,000	25,000	10,000	
해남군	1	50,000	15,000	25,000	10,000	
영암군	1	100,000	30,000	50,000	20,000	
무안군	1	50,000	15,000	25,000	10,000	
함평군						
영광군	1	50,000	15,000	25,000	10,000	
장성군	1	100,000	30,000	50,000	20,00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	50,000	15,000	25,000	10,000	
인센티브		15,000	15,000			도비 100%

’16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 사업비 내역

(단위: 대, 천원)

시 군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300	900,000	135,000	315,000	45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31	93,000	13,950	32,550	46,500	
나주시	82	246,000	36,900	86,100	123,000	
광양시	30	90,000	13,500	31,500	45,000	
담양군	7	21,000	3,150	7,350	10,500	
곡성군	19	57,000	8,550	19,950	28,500	
구례군	7	21,000	3,150	7,350	10,500	
고흥군	11	33,000	4,950	11,550	16,500	
보성군	10	30,000	4,500	10,500	15,000	
화순군	5	15,000	2,250	5,250	7,500	
장흥군	10	30,000	4,500	10,500	15,000	
강진군	5	15,000	2,250	5,250	7,500	
해남군	3	9,000	1,350	3,150	4,500	
영암군	25	75,000	11,250	26,250	37,500	
무안군	5	15,000	2,250	5,250	7,500	
함평군	5	15,000	2,250	5,250	7,500	
영광군	5	15,000	2,250	5,250	7,500	
장성군	25	75,000	11,250	26,250	37,500	
완도군	5	15,000	2,250	5,250	7,500	
진도군	5	15,000	2,250	5,250	7,500	
신안군	5	15,000	2,250	5,250	7,500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9)	시군비(21)	융자(30)	자담(20)
계	12	500,000	100,000	45,000	105,000	150,000	1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	20,000	4,000	1,800	4,200	6,000	4,000
나주시	1	10,000	2,000	900	2,100	3,000	2,000
광양시							
담양군	1	12,000	2,400	1,080	2,520	3,600	2,400
곡성군	1	90,000	18,000	8,100	18,900	27,000	18,00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1	20,000	4000	1,800	4,200	6,000	4,000
화순군	1	10,000	2,000	900	2,100	3,000	2,000
장흥군	1	18,000	3,600	1,620	3,780	5,400	3,600
강진군	1	20,000	4,000	1,800	4,200	6,000	4,000
해남군	1	120,000	24,000	10,800	25,200	3,6000	24,000
영암군	1	80,000	16,000	7,200	16,800	24,000	16,000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1	70,000	14,000	6,300	14,700	21,000	14,000
장성군	1	30,000	6,000	2,700	6,300	9,000	6,00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9)	시군비(21)	융자(30)	자담(20)
계	15	600,000	120,000	54,000	126,000	180,000	120,000
목포시							
여수시	1	100,000	20,000	9,000	21,000	30,000	20,000
순천시	1	10,000	2,000	900	2,100	3,000	2,000
나주시	1	12,000	2,400	1,080	2,520	3,600	2,40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1	36,000	7,200	3,240	7,560	10,800	7,200
구례군	1	10,000	2,000	900	2,100	3,000	2,000
고흥군	1	73,000	14,600	6,570	15,330	21,900	14,600
보성군	1	70,000	14,000	6,300	14,700	21,000	14,000
화순군	1	17,000	3,400	1,530	3,570	5,100	3,400
장흥군	1	23,000	4,600	2,070	4,830	6,900	4,600
강진군	1	10,000	2,000	900	2,100	3,000	2,000
해남군	1	125,000	25,000	11,250	26,250	37,500	25,000
영암군	1	30,000	6,000	2,700	6,300	9,000	6,000
무안군	1	10,000	2,000	900	2,100	3,000	2,000
함평군	1	15,000	3,000	1,350	3,150	4,500	3,000
영광군							
장성군	1	59,000	11,800	5,310	12,390	17,700	11,80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4개소	4,706,667	2,252,000	435,600	1,216,400	802,667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육묘)	부담비율	계(100%)	국비(30%)	도비(9%)	시군비(21%)	자담(40%)
	1개소	506,667	152,000	45,600	106,400	202,667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버섯)	부담비율	계(100%)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1개소	1,500,000	750,000	1,35,000	315,000	300,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버섯)	부담비율	계(100%)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1개소	1,500,000	750,000	1,35,000	315,000	300,00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회훼) (농업기술센터)	부담비율	계(100%)	국비(50%)	도비(10%)	시군비(40%)	-
	1개소	1,200,000	600,000	120,000	480,000	-

2016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시행지침**

발 행 일 : 2016년 1월

발 행 처 : 전라남도청

자료문의처 : 전라남도청 친환경농업과 (061-286-6322)

인 쇄 : 동성기획